

본 보고서는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2023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발간사

올해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출범 10년, 북한인권결의 채택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휴전선 이북의 북녘 땅은 여전히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와 피를 나눈 북한 동포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보다 실효적인 노력을 펼쳐가야만 합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기반하여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파악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특수 인권문

제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으며,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북한인권의 개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 핏줄인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본 보고서가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의 발간이 오랜 기

간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고, 북한인권법이 하루 속히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도 의미있는 역할을 해내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 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그 날까지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북한인권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인권 침해 경험을 들려주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조사와 분석을 위해 지식과 고견을 전해주시신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하여 「북한인권보고서」의 작성과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 장관 권 영 세

목차

발간사 · 권영세 통일부 장관	04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88
I 발간개요	11	11.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202
II 요약	19	12. 참정권	211
1. 시민적·정치적 권리	20	13. 평등권	221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33	IV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37
3. 취약계층	42	1. 식량권	238
4. 특별사안	48	2. 건강권	260
III 시민적·정치적 권리	53	3. 근로권	280
1. 생명권	54	4. 교육권	334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67	5. 사회보장권	352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77	V 취약계층	363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89	1. 여성	364
5. 피구금자의 권리	98	2. 아동	379
6.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125	3. 장애인	399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39	VI 특별사안	415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60	1. 정치범수용소	416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76	2.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435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경제난이 지속되자 북한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과정과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유엔 총회 또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당국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인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며, 11년간 논의를 거쳐 2016년 3월에 여야 합의를 거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를 두고, 기록센터로 하여금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수집, 보존, 발간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기록센터는 2016년 9월 28일 설립되었으며, 예비조사와 시범조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4주 단위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22년까지 총 3,412명을 조사하고 2,075명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국회에 보고해왔으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널리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정부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이 북한인권 실태를 알 수 있도록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종합하여 백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발간목적은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감하여, 2022년 북한의 인권상황을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이 10명이 되지 않고 2020년까지 기간을 넓혀도 40명이 채 되지 않아 이들로부터 수집한 사례만으로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충분치 못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하는 상황과 더불어, 본 보고서가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개하는 첫 번째 공식보고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록센터가 조사를 시작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발간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편집방향에 따라 작성되었다. 첫째, 일반국민들이 전반적인 북한인권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현재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6년간의 북한인권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셋째, 인권규약상 권리별 실태를 균형된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상반된 증언이 있을 경우 양측의 증언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의 본문은 국제인권규약과 북한인권에 대한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이하 ‘자유권’)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하 ‘사회권’), 취약계층, 특별사안 총 4

개의 장으로 나누었다. 먼저 자유권과 사회권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였으며, 자유권은 13개 권리, 사회권은 5개 권리 실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보다 많은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실태로 따로 구성하였다. 특별사안은 두 가지 사안으로 작성하였는데, 정치범수용소는 중대하고 심각한 북한 인권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사안임과 동시에 북한인권법에서도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 함께 묶어 별도로 구분하였다.

본 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자료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된 자료는 기록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기록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기록센터가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하나원에 입소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동의 과정을 거쳐 1대1 대면(對面)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아동이거나 건강상 문제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또는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는 국제인권규약에서 명시한 권리들을 중심으로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조사결과 구체적인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내용을 법정 양식에 따라 문답서에 작성하였다. 최근의 북한인권 상황을 담기 위해 기록센터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 2017년부터 2022년에 발생한 사건을 선별하였으며, 2022년까지 문답서를 작성한 2,075명 중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을

진술한 508명이 경험한 1,600여개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바탕이 되었다. 다만, 2017년 이후 수집된 사례가 적은 경우 2010년 이후 발생한 사례를 반영하였으며, 정치범수용소나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사안의 특성상 사례가 매우 적을 경우 2010년 이전 사례라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포함시켰다. 둘째,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인권 관련 법제부분은 국제인권조약과 북한의 법률, 북한이 발표하거나 공식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북한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보고서, 자발적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그리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과 통일부에서 발간한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보고서 작성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된 문답서의 출처인, 2017년 이후 상황을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은 기록센터에서 조사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유사하지만 성비 등에서 일부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자 성별은 여성 53%, 남성 47%로 기록센터가 조사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성비(여성 80%, 남성 20%)와는 차이가 난다. 이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중국 등 제3국 체류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의 침해사례를 기록한 본 보고서에서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 전 거주지는 양강도, 함경북도 등 접경지역이 76%로 많은 편이며, 이는 기록센터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와 비슷하게 집계되었다. 다만, 기록센터에서 조사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평양시 출신은 3%이나, 본 보고서에서 인용된 508명

중 평양시 출신 비율은 11%로 다소 높은 편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이 통제됨에 따라, 해외파견노동자가 북한이탈주민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해외파견노동자는 평양시 출신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은 전체 조사대상자와 비

항목	세부항목	북한이탈주민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238	46.9
	여성	270	53.1
합계		508	100
탈북연도	2017년	63	12.4
	2018년	156	30.7
	2019년	251	49.4
	2020년	19	3.7
	2021년	10	2
	2022년	9	1.8
합계		508	100
탈북시 연령	~10대	86	16.9
	20대	158	31.1
	30대	97	19.1
	40대	83	16.3
	50대	71	14
	60대 이상	13	2.6
합계		508	100
탈북전 거주지	양강도	300	59.1
	함경북도	88	17.3
	함경남도	17	3.3
	평안북도	8	1.6
	평안남도	20	3.9
	황해북도	12	2.4
	황해남도	3	0.6
	강원도	5	1
	자강도	0	0
	평양시	55	10.8
합계		508	100

교해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대가 31%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이하는 67%이다. 탈북연도를 보면 2019년이 49%로 가장 많으며, 2018년과 2019년에 탈북한 경우가 전체의 80%이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탈북은 7.5%에 불과하고 2022년 탈북한 경우는 1.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보고서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증언자가 양강도·함경북도 등에 편중되어 접경지역의 사례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인용되었으며, 북한 전역의 인권 실태로 곧바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둘째, 코로나19로 북한이 엄격한 국경봉쇄와 비상방역조치를 취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급감하여 2020년 이후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2022년 상황을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은 9명에 불과하여, 2023년 지금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겪은 사례의 발생시기와 탈북 후 증언시기와의 시간적 간극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의 소실·약화 등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2022년까지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본 보고서에서는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최근 제정된 법령의 내용은 일부 수록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권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추후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된 사례를 포함시켜 보고서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요약 정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제반실태를 종합해보면,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 사례들이 수집되고 있으며,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마약범죄, 한국영상물 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규약 하에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금시설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북한 당국에 의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침해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은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일부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신문과정에서 구타, 고정체세 유지 등 다양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공개처형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형수와 목격자의 입장에서 모두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나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교화소와 노동단련대에서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정해진 시간을 넘어 구금자가 노동에 투입되고 있으며, 재판소의 선고가 아닌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노동교양처벌을 받고 건설현장에 동원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자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체포하지 않도록 북한 사회주의헌법과 형법 등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실, 구류장,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된 자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난방, 급식, 위생 등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의 수감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수감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가혹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인권유린을 하지 말도록 하는 방침이 하달되어 구금환경이 나아지고 가혹행위가 줄어드는 등 개선된 부분도 있다는 증언이 일부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여행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여행증명서, 숙박검열 등의 제도로 인해 주민의 이동 및 여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평양 등 특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승인이 필요하며, 강제이주조치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민반 제도와 조직 내 생활총화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반종교 교육 등을 통해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반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다. 북한 당국은 특별전

담조직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이나 유포를 강력하게 통제 해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제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참정권이 보장 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성분과 계층을 바탕으로 주민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분, 계층은 거주지역과 직업 배정, 승진, 이직, 대학진학 등에 있어 차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즉결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구금시설에서 수형자가 도주하다가 붙잡혀 공개처형되거나 피구금자가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비밀처형이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늘려왔으며, 최근에는 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방역조치 위반행위 등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18세 미만 아동과 임신 부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도 수집되었다.

북한에서는 신문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백을 강요받은 경우가 다수였고, 자백

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방식의 하나로 구타 등 고문이 가해졌다고 한다. 한편 구금시설에서 구타행위를 금지하거나 신문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으나 구타행위는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되었는데 이는 처형을 당하는 사람과 이를 목격하는 사람 모두에게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공개처형은 운동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총살의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여기에 학교, 기업소, 인민반 등을 통해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집단 동원되었다고 한다. 실험대상자의 동의 없이 실시된 북한당국에 의한 생체실험에 대한 증언들도 수집되었다.

북한에서는 형 집행시설인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에게 부과되는 노동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감자가 아프더라도 계획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할당량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폭행이나 처벌이 있거나 면회를 제한하고 면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북한은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결정으로도 노동부과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처벌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높은 강도의 노동과 열악한 구금환경 때문에 기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출소일을 앞당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기실, 여행자·비법월경자 집결소 등 임시수용시설에서도 강제노동에 수시로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송환되어 거주지 이송과정 중 비법월경자 집결소에서의 노동력 동원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일없이 기상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노동해야 했다는 진술이 많았다. 일반주민들도 인민반·직

장·학교 등 사회조직을 통해 지역의 건설현장이나 농촌동원 등에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별로 동원된 횟수는 다양했으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구성된 조직에 따라 ‘여맹돌격대’, ‘대학생 돌격대’, ‘가족돌격대’ 등으로 불리우며 각종 건설현장 등에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자의적·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의견표명, 종교행위 등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체포·구금하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체포·구금하였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체포당시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을 통고받지 못했으며, 구속된 후에 구속사유와 장소를 가족에게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다수였고, 법정 최대 구금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종교행위, 체제비판, 인신매매 등의 다양한 사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인 강제실종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북한 내 형 집행시설의 구금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금공간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매우 비좁으며 한 공간에 수용되는 인원이 비교적 적은 곳이라 해도 대부분 유엔 최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이불이나 장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제공되는 식사의 양과 질도 낮은 편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면식 없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로 영양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물

과 세면용품도 부족하며, 구금기간 중 제대로 씻지 못하여 빈대, 머릿니 등 해충도 있었으며 청결상태가 좋지 않아 시설 내 악취가 심하였다는 진술도 많았다. 또한 수감 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수용실 안에서 고정자세를 취해야 하고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으며 수감자가 자백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과 같은 굴욕적이고 잔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들도 다수 수집되었다. 면회와 서신은 제한되며 미결수와 기결수, 미성년자와 성년의 분리수용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소지품 검사를 위해 나체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의 질 내부까지 직접 확인하는 체강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체·체강검사 시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여러 명을 동시에 실시하며, 남성 계호원이 자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성폭력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강제낙태나 임신부에 대한 구류구속 금지와 형벌집행 정지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당국의 지침이 하달되어 폭행행위를 가한 기관원에 대한 처벌이 있거나 구금환경이 개선되는 등 일부 구금시설에서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진술도 수집되고 있으나,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여행증 없이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시·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여행증을 발급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급기간을 단축하고자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거나 여행증 없이 이동을

시도했다는 증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평양시나 국경지역 등의 경우에는 여행증 발급이 더욱 까다롭고 발급을 위해 더 많은 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행증을 소지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여행증 검사는 각 지역의 구간별로 존재하는 초소나 열차 등 여러 곳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단속을 당하더라도 대부분 뇌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북한주민은 여행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곳에 숙박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숙박자는 숙박검열의 단속 대상이 되는데, 단속될 경우 뇌물을 주고 처벌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속 과정에서 불순녹화물 시청, 무허가 전자제품 사용 등 다른 위법행위가 단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주민은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시·도로 이전하거나, 평양 등 특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해서 거주지를 이전하기가 어렵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사유·남한정보 접촉·마약 밀매 등을 이유로 강제이주 조치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이주는 현재 거주지의 이용허가를 취소·박탈하고, 강제이주 지역에 주거를 새롭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함께 이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북한주민은 출국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과 같은 출입국증명서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소지하지 않고 국경을 이동한 경우에는 국경비법출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경우 처벌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는데, 중국 체류기간이 매우 짧아 뇌물을 제공하거나 처벌 없이

풀려난 경우도 있었지만, 중국 체류기간이 긴 경우에는 노동교화형까지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도 징역형의 성격을 갖는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국가·반민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법원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활동이 진행된다’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사법부는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공개재판 제도가 주민교양을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본보기를 위해서 수백 명 앞에서 현지공개재판이 실시된 경우도 있었다. 피의자를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공개폭로모임 등이 행해지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변호권, 진술거부권, 상소권 등 피고인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변호인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변호인이 재판에서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재판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당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회조직에 소속되어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단위의 인민반 제도는 주민을 감시하는 가장 하부조직이며, 인민반장을 비롯하여 당국의 지시를 받은 통보원, 정보원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사상동향,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을 수행하는데, 탈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은 더욱 엄격한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고 한다. 주민들은 학교, 직장, 군대, 인민반, 여맹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노동자나 유학생까지도 소속된 조직에서 주 1회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하는데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며 불참 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외부정보 접촉, 밀수품·전자제품 단속 등을 위해 가택수색도 시행되고 있는데, 숙박검열을 할 때 함께 수색하기도 하며 영장제시 등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순녹화물이 있는지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길거리나 대학 등에서 수시로 휴대전화 검열을 하며, 주민들의 통화를 감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서신검열, 초상휘장 검열, 복장검열 등을 정기·수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검열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지도사상을 밝히고 있다. 사상교육은 유년기부터 음악, 미술, 체육활동의 형태로 시작되어 소학교부터 전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군대, 직장 등 조직생활을 통해 학습회, 강연회의 형식으로 계속되고 인민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급 기관·기업소·학교 등에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연구실이, 각 시·도에는 혁명사적관과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설치되어 있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것을 강요받는다고 한다. 모든 가정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겉옷에 이들의 초상휘장을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외에는 어떠한 사상도 허용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반이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고, 연합지휘부 등이 비사회주의 행위들을 단속하고 처벌한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명문상 규정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종교탄압 정책으로 북한주민 대부분이 종교를 접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나 조직생활에서 반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성경 소지나 선교 활동을 이유로 공개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는 증언들도 수집되고 있다. 미신행위도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미신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노동교화형을 받거나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감시나 검열에 의해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제한받고 있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언론·출판 내용이 정해지고 있으며,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트릴 수 있는 출판물은 회수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 당국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나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말반동’이라고 하는데, 말반동을 이유로 체포되어 행방불명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등 구체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했거나 전해 들었다는 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당국의 감시와 통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정보는 주로 유학생, 해외노동자, 장사꾼 등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109연합지휘부라는

특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가택수색, 길거리 불시검문 등으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단속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뿐만 아니라, 외부정보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는 옷차림, 생활방식 등까지 단속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외부정보로 단속될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뇌물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점 필요한 뇌물의 액수가 늘어났다고 하며 최근에는 공개비판을 받거나 노동교화형 등 처벌받은 사례도 다수 수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외부정보 접촉·보관·유포에 대해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접촉·보관·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은 학생, 노동자, 농민, 군인, 주부 등 신분과 관계없이 관제집회나 군중행사에 1년에 수차례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당국의 행사 외에는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김일성 사망일, 북한정권수립일, 노동당 창건일 등 당국의 행사와 각종 궤기대회에 집단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동원에 불참하면 당에 대한 충성심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비판받기 때문에 대부분 불참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학생들은 집단체조에 동원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오랜시간 동안 연습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에게는 조직생활이 강제되고 있는데, 소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을 시작으로 청년동맹, 직맹, 여맹 등 당국이 허용하는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조직의 가입과

해제의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사에 따른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의무적으로 가입된 조직에서는 지원물품 납부, 노력동원, 강연회와 학습회 참여, 생활총화 등 수행해야 할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데, 불참할 경우 비판받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지만, 일정금액의 돈을 내고 불참하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 대표는 최고인민회의와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이다. 선거는 불참할 수 없다고 하며, 실제 주민들은 선거에 불참하거나 반대투표 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거를 주민의 권리가 아닌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없이 그대로 투표함에 넣어 찬성투표 한다는 것이 일관된 진술이었으며, 반대투표 방법을 모르거나 반대투표한 경우를 들어본 경우도 없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피선거권도 제한되고 있는데, 성분, 당원 등 당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대의원 후보로 단일 추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후보로 결정되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한다.

북한은 ‘성분’ 또는 ‘토대’를 기준으로 모든 주민들을 분류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학진학, 노동당 입당, 직업선택 등 주민의 권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평양시와 지방,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가 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평양시 안에서도 중심구역과 주변구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한다. 대학입학에서도 성분이 중요하며 직장배치, 이직, 직종변경, 승진에도 성분에 따른 차별이 있으며, 뇌물, 인맥 등을 통해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비롯하여 국군포로·이산가족·재일교포 귀국자·중국 연고자 등이 받는 차별은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각각 차별의 정도는 다르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의 감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입당이나 대학진학이 어렵거나 '당일꾼'을 할 수 없는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요약 정리

북한주민들은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식량권의 경우 북한 주민들은 충분한 식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계층이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식량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평양과 지방과의 차이, 권력층 우선배급, 기업소별 배급량의 차이 등 불평등하고 충분하지 못한 배급현황도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 상황을 더하고 있다.

건강권과 관련하여서는, 예방의학의 경우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기 필수예방접종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핵과 같이 전염력이 높은 전염병은 당국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과 별도의 관리가 없다는 상반된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 의료체계의 근간인 무상치료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분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민들이 공적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사적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면서 북한주민들은 건강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민의 직장을 강제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제대군인이나 졸업생들을 집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 보수가 일정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출근만 하고 사적 경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파견노동자의 경우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하루 10시간부터 심한 경우 17시간까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보수의 경우에도 국가계획분과 회사운영비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대가는 매우 적었으며 소득의 80%를 계획분으로 내야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아울러 해외파견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북한에서와 같이 사생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12년 무상의무교육제를 도입하였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무상의무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학습에 필요한 제반 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 운영비용을 전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 또한 출신성분에 따라 대학진학에 차별이 있으며 경제력과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 격차 등 교육기회에 대한 불평등이 심각하다. 교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로연금과 노동능력상실 연금의 경우 지급액수가 너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가족 연금과 각종 보조금의 경우에도 제도와 달리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식량배급제도는 성별, 연령, 직종, 노동 강도 등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배급하는 제도로 파악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에

서도 당·군·보위부·보안성 등 핵심계층에게만은 배급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는 식량의 자력조달제 확대로 ‘기업책임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배급제도가 ‘국가배급’과 ‘기업소배급’으로 나뉘었다. 국가배급은 아동, 사회보장대상자를 비롯하여 체제보위집단과 평양시 등 일부지역에 배급되는데, 특히 체제보위집단과 평양에는 배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배급대상자라고 알려진 교원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지역과 소속된 병원에 따라 배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 배급은 기업소의 상황에 따라 배급량이 상당히 차이를 보였다. 외화벌이 기관은 대체로 배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으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양을 배급하는 기업소도 많았으며, 배급을 전혀 하지 못하는 기업소도 있었다. 북한의 식량배급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토지 경작, 가축 키우기, 장사, 밀무역 등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로 북-중 합작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연료와 전기 부족으로 광산과 탄광의 가동이 멈추기도 했으며, 휘발유 등 가격이 상승했다는 다양한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소규모 밀무역 비중이 큰 국경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예방의학제도와 무상치료제도에 의해 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은 학교나 진료소를 통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위생선전 사

업과 예방접종 등을 통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전염성이 높은 결핵과 관련하여서는 당국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과 별도의 관리가 없었다는 증언이 함께 수집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상방역법을 제정·개정하였는데, 국경을 봉쇄하고 해외입국자를 45일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방역검열에 단속될 경우 노동교양처별을 부과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북한은 호담당의사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로 위생선전사업,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호담당 의사를 만난 적도 없거나 의사들이 사적 경제활동을 하느라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 의료체계의 근간은 무상치료제이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은 대체로 무상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의료진에게 현금, 현물 등의 사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또한 병원을 이용할 때 필요한 약품, 소모품, 의료기기 가동을 위한 연료비 등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는 다수의 진술이 수집되었다. 북한의 의료장비와 시설은 매우 열악한데, 의료물품이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출신성분과 경제력에 따라 전문병원이나 고급의료서비스 등이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병원에는 일정계급 이상의 기관원과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설치된 ‘진료과’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고가의 간부용 약품과 입원 등 비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인맥이나 뇌물도 의료서

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돈만 있으면 평양의 전문병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불법적인 사적 의료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은 없다는 진술이 수집되고 있으며, 마약도 의약품 대용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수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전력 부족으로 수도물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도를 이용하거나 강이나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깨끗하지 않은 수도물로 인해 최근에는 생수를 구입하는 주민들이 증가했다는 증언도 수집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직장을 배치하고 있는데, 출신성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인맥과 뇌물을 이용하여 이직하거나 기피대상 직장에 배치되는 것을 피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점차 직장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장, 탄광과 같이 기피하는 직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적, 집단적으로 무리배치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는데 무리배치에 빠지기 위해서도 인맥과 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은 무직이나 결근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단속은 보통 거주지나 직장에 상주하는 담당안전원이 하지만, 무직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연합조직도 있다고 한다. 무직이나 결근에 단속되면 노동교양처별을 받는데, 인맥이나 뇌물을 통해 단속과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소에서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일부 노동자들은 매달 기업소에 돈을 내고 출근하지 않는 ‘8.3

노동자'로 지내며 생계를 위한 사적 경제활동을 한다고 한다. '8.3 노동자'로 편성될 경우 단속에서 제외되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수익금을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 보수는 기업소마다 상이했으나, 일부 외화벌이 기업소를 제외하고는 매우 적었으며 각종 납부금을 내고나면 실제로 지급되는 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근로시간과 휴식·휴가에 대한 보장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현장에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급 등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격대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격대는 대규모 건설을 위해 조직되는데, 무리배치나 차출 등으로 강제 배치된 경우와 입당·대학진학 등을 위해 자원한 경우로 나뉜다. 돌격대원에게 보수는 대부분 지급되지 않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작업시간이 하루 10시간을 넘기는 것은 보통이었고 영양부족 상태가 되기도 하여 도망치는 돌격대원이 많다고 한다. 돌격대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돌격대에 자원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강제동원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돌격대를 기피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사례비를 주고 대리 입대시키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해외파견노동자는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에 파견되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돌격대와 달리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지원한 사람들이 대다수로 출신성분을 비롯하여 가족관계, 평판 등을 조회하고 수차례 간부 면담을 통해 선발하

는데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바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근로 환경은 노동자의 기대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지급은 기업소마다 달랐으나, 대체로 매달 지급되지 않고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파견 종료 후 북한으로 돌아갈 때 일괄 지급한다고 한다. 해외파견노동자들은 국가계획분·당비·회사운영비 등을 바쳐야 하는데 파견된 나라에 따라서는 대사관 운영비까지 보수에서 차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는 매우 적었으며 소득의 80%를 계획분으로 내야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해외파견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부터 심한 경우 17시간까지 휴일 없이 장시간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안에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는 등 생활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와 같이 사생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함께 파견된 보위원은 노동자 중에서 정보원을 두고 노동자들의 동향을 세부적으로 보고받고 감시했다고 한다. 외부정보 접촉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는 금지되며,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스마트폰은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보위원들은 스마트폰 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을 수시로 검열했는데, 스마트폰 소지로 단속 될 경우 대부분 벌금을 내고 무마되었으나 한국 영상물 시청이 단속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사례도 있었다. 생활총화도 매주 실시되고 있는데,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그 시간에 노동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보통교육법에서 초·중등교육에 대한 12년 무상의무교육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명목의 교육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는 ‘교과서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과서가 모든 학생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학년을 마치면 다음 학년에 교과서를 물려주어야 했다는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다. 소학교부터 학교운영비, 꼬마계획 등의 비용을 내야했다는 진술이 꾸준히 수집되고 있는데, 학교시설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학교꾸리기 비용이 증가했다고 한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돈이나 물품은 교원에 의해 사실상 강제되고 있었는데, 비용을 내지 못하는 경우 동급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비판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교육환경의 차이가 크며 대학입학에서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이 있고, 교육기회의 제공에도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분·지역·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도 열악한데, 학교시설의 현대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양호실, 도서관, 위생시설이 없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잘사는 학부모의 원조를 받거나 자신의 텃밭에 학생을 동원시키고 있어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교육보다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고 있으며 교과과정에 실탄사격을 하는 군사훈련을 편성하여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로는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 연금, 유가족 연금 등 생계가 결핍된 경우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가 있으며, 사회보험금의 성격을 지닌 보조금 제도가 있다. 연로

연금은 근속노동연한을 채운 자 중 일정연령이 지난 경우 지급되는데,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한다. 노동능력상실 연금은 산업재해 등으로 6개월 이상 노동능력을 잃은 경우 지급되는데 뇌물을 주고 사회보장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으며 대상이 되어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매우 적었다고 한다. 근로자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가족 연금의 경우에도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각종 보조금의 경우에도 제도와 달리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은 노인보호 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로원 등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부양자가 있어도 입소할 수 있으며 자녀들이 부양을 회피하기 위해 인맥이나 뇌물을 통해 부모를 시설에 입소시켰다는 사례도 수집되었다.

3. 취약계층

요약 정리

취약계층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부장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은 가정, 학교, 군대, 구금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탈북여성의 인권 침해 상황도 심각한데 특히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하게 된다.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구금시설에서 나체·체강검사, 성폭력, 강제낙태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아동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지만 북한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아동이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처형되기도 하며, 한국 영상물 시청 등 각종 사유로 17세 미만 아동들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 또한 북한의 아동들은 가정과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북한 당국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학교에 의한 각종 노동에 동원

되고 있으며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도 여러 노동현장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그 존재 자체를 불명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부정적이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장애인의 거주지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남성을 여성보다 우선시하는 인식이 남아있으며, 실제로 가정이나 사회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으며, 신고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가정, 학교, 군대, 구금시설, 돌격대 등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으며 신고하더라도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분위기로 인해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무상치료원칙에 따라 출산이 무료이며, 산모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당국의 제도적 노력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산전검진 등 의료지원이나 출산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

한은 산전산후 휴가보장, 다자녀 어머니의 노동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출산 전후기간 동안 휴가나 보조금을 규정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벌기위해 탈북한 많은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브로커에 의해 인신매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신매매되는지 모르고 탈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신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탈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신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해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였으며, 주로 중국남성과 매매혼을 당하였고 유흥업소 등에 매매되기도 하였다. 탈북 후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에는 이송과정에서 나체·체강검사,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인신매매된 피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로서 보호조치를 받거나 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제송환된 여성들은 '국경비법출입죄'로 노동교화형 등 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처벌받은 후에는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특별한 보호대상이며 폭력이나 노동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아동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아동을 공개처형했다는 사례가 수집되고 있으며, 아동을 체포·구금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구금 중 성인과의 분리수용 없이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아동이 폭력을 당한 사례도 꾸준히 수집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을 훈육으로 보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과 지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 내에서 교사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받았다는 사례도 다수 있었는데 노력동원을 나간 학생이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꼬마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벌당한 경우도 있었다. 아동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관계자들로부터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탈북과정에서 미성년에 대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학생들은 소학교부터 고급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방과 후 노동에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주로 농사철인 봄, 가을에 오전수업만 받고 오후부터 해질 때까지 인근 농장의 농사일에 빈번하게 동원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원횟수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 강도도 강해진다고 한다. 고급중학교 때에는 교과과정 내에 '농촌지원 활동'이 있는데, 학교마다 동원기간이나 횟수는 상이하나 몇 주 동안 농장원들 집에서 숙식하며 하루 8시간 이상 농사일에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또는 교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부업지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이 돌격대에 차출된 경우도 있는데, 북한 당국의 아동노동에 대한 단속이나 보호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해 육아원, 애육원 등 아동보호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퇴소한 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취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집된 증언에서도 애육원이 신축되거나 현대식으

로 정비되는 등 아동보호시설의 양육환경은 전보다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졸업생의 상당수가 돌격대나 공장노동자로 강제배치되고 있다는 진술이 수집되고 있어 대학에 진학하거나 희망에 따라 직장배치 된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아동(꽃제비)과 관련하여서는, ‘꽃제비 상무’라는 단속기관에 단속된 꽃제비들이 수용시설에 보내지는데 수용시설이 열악하고 강제노동에 동원되기도 하여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진술이 수집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은 사람들로 부터 회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들이 거주·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의 결혼이나 출산을 제한하고 ‘난쟁이 마을’ 등을 만들어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곳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양에서는 장애인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강제이주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평양에서도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치료, 교육, 근로 등의 권리는 북한의 주장만큼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하며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도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위한 시설은 없었다고 한다. 장애인의 치료나 재활을 돕는 교정기구가 생산되는 공장이 있지만 당국이 무상으로 치료나 재활, 의료기기를 지원한 것은 없으며 돈을 지불하고 교정기구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농아학교’, ‘맹인학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반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육이 제공된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특수직장을 별도로 구성하여 ‘경로동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이 일반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들도 수집되었다. 북한에서는 일반 장애인에 비해 영예군인 장애인들은 당국의 지원이나 사회보장에서 우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예군인은 특류,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는데 ‘특류’ 영예군인의 경우에는 식량이나 생필품 등이 부족함 없이 지원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으나, ‘특류’ 영예군인 이외의 영예군인들은 지원받은 내용이 생활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4. 특별사안

요약 정리

정치범수용소의 수용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되었다. 정치범수용소는 시설마다 다르지만 수용민의 처우가 열악하며,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에 정치범수용소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직접 목격한 사례가 드물어 수용소의 현황과 수용자 처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국군포로·납북자의 경우에도 수집 사례가 특히 적어 상세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북한에는 정치범을 따로 수용하는 곳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되었다. 수용소는 대체로 일반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수용민의 도주가 쉽지 않은 깊은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리'나 '노동자구'를 합쳐놓은 크기로 규모

가 큰 것으로 보인다. 수용 사유는 성분 문제, 말반동 등 김일성·김정일 권위훼손과 관련된 문제, 간첩행위, 종교활동, 북한 내 권력다툼이나 기관원의 횡령 등 비위와 관련된 문제,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거나 본인의 한국행 시도, 인신매매나 한국거주자 통화 등 한국관련 문제 등이라 하며, 대개 가족까지 동반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범을 수용할 때에는 대체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보위부에 의해 체포·실종되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음을 짐작하거나 기관원에 의해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수용자 처우는 수용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수용자 처형과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중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경우 공개재판을 거쳐 처형을 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수용소 주민을 처형장에 동원한 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도 하였지만, 비공개 처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정치범수용소의 수용민은 대부분 광산에 배치되어 강도 높은 노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면되어 해제민이 되어야 갱안에 들어가지 않고 비교적 노동 강도가 약한 작업반장이나 발파공 등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용소에서는 보통 하모니카집이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주택은 비좁고 노후화가 심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가족과의 동거는 수용소 내에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남녀의 교제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다만 일반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하였다는 진술도 함께 수집되어, 수용소별로 생활통제를 다르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나 교육도 수용민과 기

관원 및 가족에 대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수용민에게 공급하는 의약품의 양이 매우 부족하였고,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수용민과 기관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다르고, 일부 교육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정치적,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출신 등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국군포로를 북한에서 목격하거나 이들의 생활에 대해 특문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감시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군포로는 탄광이나 농장에 무리배치 되어 일하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경북도 무산군과 함경남도 단천시에는 수십 명의 국군포로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북한은 국군포로를 '43호' 대상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까지도 감시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대학진학, 직장배치와 승진, 입당, 군 입대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군포로는 허가를 받고 이동하더라도 담당보위원 등에 별도로 보고를 하여야 할 정도로 감시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대학입학, 군입대, 노동당 입당 등이 불가능하였고, 탄광이나 농장에 집단으로 배치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납북자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납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용군으로 납북되어 차별과 감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전시동원납북자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였지만, 많은 수가 광산에 무리배치 되어 노동자 등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인민반

등을 통해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납북자에 대한 수집 사례는 특히 적어 상세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이산가족 실태는 월남자 가족에 대한 실태와 월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월남자 가족과 월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이 일률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며 차별의 정도를 달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남자 가족은 '당일꾼', '법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진술과 '행정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가능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군관학교나 보위대학 등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가족·친척 중 월남자가 있어 진학할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월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당일꾼', 군 관련 직장 근무, 특정 대학 입학 등이 어려웠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남한의 가족과 만나고 난 뒤 자녀들까지 감시와 차별이 생겼다는 사례들도 수집되었다.

Ⅲ

시민적·정치적 권리

1. 생명권

생명권은 모든 인권의 기본이며 이에 대한 보장은 다른 모든 권리 보장의 전제가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다른 실체적 권리 규정에 앞서 제3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도 제6조에서 생명권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 이하에서는 사형의 선고 및 집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2019)에는 검찰소와 재판소의 임무 중 하나로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¹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11조에서는 “아동은 생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38조에서는 “여성은 건강과 생명의 불가침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회주의헌법(2019)」 제156조, 제162조.

가. 자의적 생명박탈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해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의적 생명박탈의 금지’에 관하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의적’이라는 개념은 정당성, 적법절차, 비례성 등의 요인을 결여한 것으로 ‘불법적’이라는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였다.² 이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초법적 처형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국내법 하에서 허용되는 생명박탈의 경우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자유권규약상의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의적 생명박탈에 해당할 수 있다.

2014년에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를 통해 자유권규약 제6조에 규정된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확인하며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주장하였다.³ 또한, 북한은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에서는 생명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⁴ 2019년에 제출한 제3차 UPR 보고서에서 북한은 “생명권은 사회주의헌법,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검찰, 사법 및 공안기관에 의해 보호된다.”고 기술한 바 있다.⁵

2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6, Article 6: right to life, paras. 11-12.

3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201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인권향유실태 2) 공민적 권리 (1) 생명에 대한 권리.

4 UN Doc. A/HRC/WG.6/6/PRK/1 (2009), para. 33; UN Doc. A/HRC/WG.6/19/PRK/1 (2014), para. 30.

5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20.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이 북한 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지역에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즉결처형’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는데, 국경경비대원이 탈북하는 주민을 사살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와 사살한 국경경비대원으로부터 이에 대해 직접 들은 경우였다. 사살한 국경경비대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서라고 3번 경고한 후에도 서지 않으면 사살하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 2019년에는 북-중 국경지역에서 밀수현장에 동원된 씨비꾼(짐꾼)이 절도를 하다가 밀수행위에 연계되어 있던 보위원에게 발각되어 경비초소에 억류되었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중국으로 월북을 시도하다 이를 본 보위원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되었다고 한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봉쇄지역에 출입하는 자에게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사살한다’는 북한 당국의 방침이 주민들과 국경경비대원들에게 내려왔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봉쇄지역에 출입한 사람이 국경경비대원에 의해 실제로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도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형집행시설인 교화소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형자가 교화소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다. 함흥교화소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연이어 도주 중 검거된 수형자에 대한 처형이 있었다. 전거리교화소 등 그 밖의 교화소에서도 도주하다 검거된 수형자에 대한 처형 사례가 여러 차례 수집되었다. 공통된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처형은 교화소 소장의 주도하에 총살의 방식으로 집행

되었고, 처형 전에 재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교화소 도주죄를 이유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낭독이 있었다고 한다. 교화소 소장이 수형자 전원을 교화소 앞마당에 집합시켜 ‘도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처형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하였다.

“총살 당일 남녀 수감자 모두를 교화소 마당에 모이게 하였는데, 나가보니 정문 꼭대기에 사람 목에 밧줄을 묶어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폭행이 심했는데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고...수감자들이 모두 모이자 정문에 매단 수감자에게 총을 3발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땅에 내려놓고 교화생들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돌무지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시체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수감자가 하나씩 던진 돌이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피구금자에 대한 ‘비밀처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위부가 관리하는 ‘구금소’가 있는데 여기에 구금되면 대다수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거나 비밀리에 처형되고, 교화소로 이송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구금소 소장에게 직접 들은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구금소에서 2014년에는 동성애를 이유로 남성 피구금자가, 2013년에는 성매매를 이유로 여성 피구금자가 비밀 처형되었다고 한다.

구금시설에서 태어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했다는 증언들도 일부 수집되었다. 이러한 영아살해 사례들은 모두 중국에서 임신한 채로 강제송환되어 온 피구금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4년에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이 임신 8개월 상태로 구금되었는데, 기관원이 중국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분만유도제를 통해 출산하게 한 후,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고 한다. 또 다른 증언은 2011년 강제송환되어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수용실에서 영아살해를 목

격한 경우였다. 동료 수감자 중 1명이 강제송환된 만삭의 임신부였는데, 수용실에서 아기를 출산하자 집결소 소장이 중국 아이라는 이유로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고 지시하여 계호원이 아기를 질식사시켜 죽였다고 한다.

나. 광범위한 사형적용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당사국의 경우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과 자유권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원수 모독 등 그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 자체가 자유권규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형이 부과될 수 없다고 하였다.⁶ 또한 사형이 아주 예외적인 조치일 수 있도록 ‘가장 중한 범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마약 관련 범죄, 경제범죄, 재산범죄, 정치범죄 등은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⁷

북한은 형법에서 기본 형벌의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점차 늘려왔다.⁸ 2012년 형법에는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로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로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5조),

6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6, Article 6: right to life, para. 36.

7 *Ibid.*, para. 35.

8 북한은 1990년 12월 15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형법을 채택한 이후, 2022년 5월 17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67호로 형법을 수정보충하기까지 서른 번이 넘는 수정보충(개정)을 하였다.

민족반역죄(제68조), 마약밀수·거래죄(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제266조) 총 7개가 있었는데, 이후의 형법개정을 통해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가 추가되면서 2015년 형법에는 총 8개의 범죄로 늘어났다. 2022년 5월 17일에 개정된 현행 형법(이하 ‘형법(2022)’)에는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가 분리되어 각각 규정되어 있고, ‘공화국의 존엄모독죄’가 추가되었으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에 사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는 총 11개로 늘었다.⁹ 그 중에서 형법(2022)의 조국반역죄(제63조), 공화국의 존엄모독죄(제64조), 민족반역죄(제70조), 아편비법채취죄(제234조), 마약비법제조죄(제235조), 마약 밀수·거래죄(제237조) 등은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중한 범죄로 볼 수 없어 사형을 부과할 수 없으나, 북한의 형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형법부칙(일반범죄)(2010)’에서 형법의 일부 일반범죄에 대하여 ‘극히 무거운’, ‘특히 무거운’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북한은 형법부칙(일반범죄) 제11조에서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없는 경우’에도 사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형을 광범위하게 적

9 「형법(2022)」 제35조, 제36조.

10 2010년에 개정된 「형법부칙(일반범죄)」에서의 사형대상 범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무기·탄약·전투기술기재·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취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유색금속 밀수·밀매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용할 수 있다.¹¹

북한은 특별법을 통해서도 일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 비상방역법을 제정하여 비상방역기간을 전시로 간주하고(제8조), 비상방역사업 관련 명령·지시 등의 집행을 어겼거나(제65조), 국경·해상 등의 봉쇄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제68조)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에는 비상방역법을 개정하여 봉쇄구역에 불법적으로 출입하거나 검열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비상방역사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¹² 자유권규약 제4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무력분쟁 등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당해 사태의 긴급성을 이유로 동 규약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생명권은 공공의 비상사태 등 국민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최고의 권리라고 하였다.¹³

이 외에도 북한은 2021년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여 마약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압수·몰수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자가 마약을 사용, 보관한 경우에는 형법의 마약비법사용죄, 마약비법보관죄를 병

.....

11 「형법부칙(일반범죄)(2010)」 제11조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12 「비상방역법(2021)」 제73조 (비상방역사업방해죄)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정당한 요구에 반항하면서 구타, 폭행하였거나 검열, 감독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격폐된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였거나 격리된 대상을 밖으로 불러내었거나 격리된 대상이 격리장소로 사람을 불러들였거나 비법적으로 사냥을 하였거나 국가적인 봉쇄구역에 비법출입하는 것 등을 비롯하여 비상방역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하였거나 승인없이 수입물자를 끌어 들였거나 밀수행위를 하였거나 밀수품을 유포시켰거나 비상방역사업방해행위를 목인조장, 조직한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비상방역사업방해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13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6, Article 6: right to life, para. 67.

합하여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¹⁴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경우에는 아직 전체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사형의 집행은 모든 상소 절차를 활용할 기회가 사형수에게 제공된 이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⁵ 북한은 형사소송법(2021) 제47조와 제49조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 사건은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9조에서 피고인의 권리로 상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형판결의 집행은 중앙재판소가 발급한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검사의 참가 밑에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⁶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 보고서에서 사형은 극악 범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매우 심각한 사건일 경우에만 사형에 처하며, 사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다고 보고하였다.¹⁷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제로 광범위하게

.....

14 2021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38호로 채택된 「마약범죄방지법」 제39조는 “마약범죄와 관련이 있는 압수, 몰수재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한 자는 형법의 국가재산횡령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되 마약을 밀수, 거래하였거나 사용, 보관한 경우에는 마약밀수, 거래죄 또는 마약비법사용죄, 마약비법보관죄를 병합하여 노동단련형 또는 유기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6, Article 6: right to life, para. 46.
16 「형사소송법(2021)」 제417조, 제418조; 「판결판정집행법(2005)」 제32조.
17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21.

사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종교·미신행위, 마약밀수·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음란물 유포, 성매매 등 자유권규약상 사형이 적용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부과되었다. 사형은 대부분 사형수에게 상소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총살의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종교 및 미신행위를 이유로 사형을 부과한 사례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성경 소지 등 종교행위를 이유로 한 사형 사례가 수집되었는데,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에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열린 18명에 대한 공개재판에서 그 중 1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9년에 평양시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한 단체가 일망타진되어 운영자 5명이 공개 처형되고 나머지 단원들은 관리소나 교화소로 보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신행위를 하는 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미신행위를 보는 자도 처벌하며, 그 행위가 엄중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나 방침이 공공기관, 기업소 등을 통해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그루빠’¹⁸가 결성되어 미신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2019년에도 평안북도를 시작으로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서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었다고 한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2019년 함경북도에서 미신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한 단체가 체포되어 공개재판을 받았는데,

.....

¹⁸ ‘그루빠’는 ‘상무’, ‘연합지휘부’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북한 당국이 중앙당,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5개 기관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그룹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검열·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1, 381-384쪽)

그 단체를 사이비종교 단체라고 칭하면서 교주로 밝혀진 자를 미신행위를 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고 낭독하고는 곧바로 공개처형했다고 한다.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사례들도 수집되었다. 공개처형을 목격한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에 양강도에 있는 비행장에서 남성 1명이 마약을 밀수하고 거래한 혐의로 총살되었다고 한다.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행위로 사형된 사례들도 수집되었는데, 한 북한이탈주민은 강연회에서 주민들을 교양하기 위해 틀어준 영상물에서 공개처형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2020년에 양강도에서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여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총살되었고, 2018년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시장 뒷골목에서 하이힐,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몰래 팔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되었다고 한다.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양강도에서 있었던 공개재판에서 한 남성이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음란물 유포행위로 사형을 당한 사례도 있었는데,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에 황해남도 협동농장 공터에서 남성 1명이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공개처형 되었다고 한다. 성매매를 이유로 7명을 사형 집행한 사례도 수집되었다. 진술에 따르면 2017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여성 7명이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이유로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여자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농촌출신 18세~25세 여성들, 사리원시에 사는 생계유지하기 힘든 여성들을 모집하였고, 주차장에서 말뚝

(브로커)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대기숙박 할 사람을 모집해서 데려가서 처음에는 술상을 봐주고, 원하는 여자 나이를 말하면 그 여자를 연결시켜 주어 성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공개처형에 앞서 공개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에서 성매매를 조성한 죄 등으로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16명의 계호원들이 나와서 계호원 1명당 3발씩 총을 쏘서 다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죽었습니다.”

다. 아동·임신부에 대한 사형

자유권규약 제6조 제5항은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따르면 ‘18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범죄가 일어난 시점 당시를 말한다. 북한도 형법(2022) 제 37조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 보고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¹⁹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에서는 18세 미만의 피의자가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되었으며, 임신부에게도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2018년에 청진시에 있는 강변에서

¹⁹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21.

미신 및 종교행위로 주민 2명이 공개처형되었는데, 처형된 사람 중 1명이 18세 미만이었다고 한다. 2015년에도 아동에 대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경기장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아동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되었다고 한다. 임신부에 대한 사형 사례도 수집되었다.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 시중에 유포되었는데, 영상에서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되어 사상적으로 불온하다는 이유로 그 여성을 공개처형했다고 한다. 처형 당시 여성은 임신 6개월이었다고 한다.

라. 구금시설에서의 사망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생명권을 좁게 해석할 수 없는 권리라고 밝히면서 당사국의 생명권 보호 의무에는 자의적인 생명박탈을 금지할 소극적 의무 이외에 입법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생명권을 실현할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²⁰ 이와 같은 당사국의 적극적 의무는 국가가 개인을 체포하고 구금하였을 때에 더욱 강하게 요구되므로 당사국이 피구금자의 생명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한다.²¹ 즉, 피구금자에게 음식이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피

²⁰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6, Article 6: right to life, paras. 3-4.

²¹ *Ibid.*, para. 25.

구금자가 사망한 경우 이와 같은 국가의 부작위도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피구금자들이 열악한 구금환경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구금자의 가족인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20년 겨울에 양강도에 있는 한 보위부 구류장에서 난방을 제공해주지 않아 피구금자가 동상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 구류장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함흥교화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증언자는 교화소에서 2017년에 결핵에 걸린 피구금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하였고, 2018년에는 교화소 내 부실한 급식 제공으로 피구금자가 영양실조에 걸려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는 개개인의 존엄성과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자유권규약 제7조도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7조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한 동 규약 제10조 제1항(피구금자의 권리)에 의해 보완된다고 하였다.²²

.....
²²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0,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ara. 2.

가. 신문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자유권규약 제7조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들 개념에 대한 정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지된 취급·형벌 사이에 명확한 구별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고, 이러한 취급 및 형벌들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고문보다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해석하였다.²³ ‘고문’은 일반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정의에 따라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자가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 협박·강요할 목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이해된다.²⁴ 따라서 고문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결여되어 고문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형태의 경우에도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따르면 독방 감금, 외부연락 두절상태의 감금 행위는 자유권규약 제7조에 위반될 수 있다.²⁵ 신문절차와 같이 자유권규약 제7조의 위반행위가 행해지기 쉬운 상황에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가 요구된다. 신문과정에서 고문이나 기타 금지된 처우를 통해 얻은 진술이나 자백이 형사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신고

.....

²³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7,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ara. 2.

²⁴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1.

²⁵ *Ibid.*, para. 2.

받은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며, 제7조 위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⁶

북한도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북한 형법(2022) 제280조는 “사람을 비법적인 방법으로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로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하였거나 부당한 형사책임을 받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 북한 형사소송법(2021)은 제6조에서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 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제37조에서는 “범죄자의 말이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경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63조는 예심원이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⁸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된 구타행위방지법 제22조는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 감독통제기관의 일꾼이 구타행위를 단속처리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받고도 조사처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직무집행과정에서 구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최고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북한은 UPR 보고서에서 줄곧 형사사건을 취급함에 있

.....

²⁶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0,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aras. 11-14.

²⁷ 북한 「형법」에 규정된 ‘심문’은 우리 법의 ‘신문’에 해당한다.

²⁸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심자’는 우리 법의 ‘피의자’에 해당한다.

²⁹ 북한은 2021년에 채택한 「구타행위방지법」 제15조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구타행위를 한 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경우에는 구타행위를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어 과학적 정확성, 객관성 등을 보장하며 인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해 왔다.³⁰ 또한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인 처우와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기관이 수사·예심·재판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를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다.³¹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신문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백을 강요받은 경우가 다수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방식의 하나로 구타 또는 기타 형태의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에 탈북을 시도하다 단속되어 보위부에 구금되었을 때 신문과정에서 보위원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했던 것을 시인하라고 강요했는데, 시인하지 않자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9년에 109연합지휘부³²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도원이 가족이 제공해준 면식을³³ 받아주지 않고 굶도록 했다고 한다. 증언자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지도원에게 죄를 인정하겠으니 면식을 받아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문과정에서 구타행위 이외에 다른 형태의 고문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7년에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자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도원이 고문을 가

.....

있다. 신문절차와 같이 자유권규약 제7조의 위반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동 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30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27; UN Doc. A/HRC/WG.6/19/PRK/1 (2014), para. 38; UN Doc. A/HRC/WG.6/6/PRK/1 (2009), para. 37.

31 UN Doc. A/HRC/WG.6/6/PRK/1 (2009), para. 37.

32 '109연합지휘부'는 '109상무', '109그루뽀'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민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중앙당,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5개 기관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만든 비상설 단속 조직을 말한다.

33 '면식'은 북한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이 가족 등을 통해 받은 외부 음식을 말한다.

했다고 한다.

“저를 각자로 때렸는데, 제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찬 상태로 손을 들어 각자를 막자, 지도원이 저를 수갑을 뒤로 채운 다음 팔을 의자 등받이에 묶은 후 각자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와 같은 폭행이 조사 초반 5일 내내 있었습니다. 비행기고문도 당했는데, 비행기고문은 벽을 마주보고 선 다음 허리를 숙여 뒤통수를 벽에 붙이고 그 상태에서 양 팔을 올려 손등을 벽에 붙이도록 하는 고문입니다. 비행기고문 중 움직이면 각자로 사정없이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비행기고문 자세로 2시간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종아리 뒤에 각목을 끼우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양 다리 사이를 통과하는 각목을 발로 누르는 고문도 당했습니다.”

한편 구금시설에서 구타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증언이 일부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2018년에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구타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구금자들을 때리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보위부에서 잘 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조치는 형식적이며 구타행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보위부에서 신문을 받았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신문과정에서 인권 침해 당했는지 여부를 조사받을 때 옆 조사실에서 수감자를 폭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신문과정에서 받은 구타행위에 대하여 신소하여 피해를 구제받거나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증언도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검사가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가끔 힘 있는 사람들이 중앙당에 신소를 합니다. 그러나 중앙당에서도 신소를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 공개처형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자유권규약 제7조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있다.³⁴ 따라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하여 권한 있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었다고 해도 그 집행을 공개하는 것은 사형수에게 자유권규약 제7조에서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 없이 처형하는 이른바 ‘즉결처형’의 경우에도 처형 집행을 공개한다면 이는 생명권에 대해 규정하는 자유권규약 제6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자유권규약 제7조의 위반이기도 하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자유권규약 제7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³⁵ 따라서 공개처형을 목격하는 입장에서도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취급을 당한 것으로, 이는 자유권규약 제7조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형사소송법(2021)과 판결·판정집행법(2005)에서 사형 집행 절차와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집행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은 2019년 5월 9일에 열린 UPR 실무그룹 제33회기 제8차 회의에서 “사형은 희생자의 유가족과 다른 관련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집행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답변하며 공개처형이 실시되

³⁴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0,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ara. 6.

³⁵ *Ibid.*, para. 5.

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³⁶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증언은 2020년까지 매년 수집되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장마당, 강변, 운동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고 한다. 그로 인해 그 곳을 지나가다 우연히 공개처형을 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학교, 기업소, 인민반 등 소속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집단 동원되는 형태로 실시된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2018년에 공개처형을 직접 보았는데, 당시 참관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고, 대부분이 공장, 기업소 등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으며 본인도 인민반에서³⁷ 동원되었다고 한다. 동원은 인민반 등에서 공개처형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며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동원 강요에 대해 구실을 만들어 응하지 않았다는 증언들도 수집되었다. 처음으로 공개처형에 동원되어 처형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증언자는 그 이후에는 인민반에서 공개처형에 참여하라고 할 때마다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동원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개처형은 살인죄 이외에도 마약거래, 미신·종교행위,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등 광범위한 사유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2018년에 양강도에 있는 비행장에서 마약거래 혐의로 남성이 공개처형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8년에 평성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성경을 유포한 사람과 분묘를 도굴한 사

³⁶ UN Doc. A/HRC/42/10 (2019), para. 75.

³⁷ ‘인민반’은 북한의 최말단 행정단위이자 주민감시 조직을 말하는데, 내각이 정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인민위원회에 의해 조직되고(주민행정법 제9조), 미거주자, 직장이탈자를 비롯하여 의심되는 자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군중신고법 제10조)

람이 공개처형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2020년에 양강도에서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유포한 남성이 공개처형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공개처형은 사회안전기관에서 주관하며, 처형대상자의 신상과 죄명을 공개한 후 총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공개처형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증언자들도 있었는데, 진술을 종합해 보면 총살은 처형대상자를 기둥에 묶은 후 머리, 가슴, 다리 부분에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2018년에 평안남도 안전국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공개처형에서 당시 사격수 3명이 처형대상자 1명당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총살 후 안전원이 처형대상자가 사망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처형대상자 중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안전원이 다시 총을 쏘 확인 사살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8년에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 강변에서 심지어 기관총을 연사하는 방식으로 공개처형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사격수 5명이 각각 기관총으로 쏘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다른 사격수 5명이 또 각각 기관총을 앞서와 같이 이미 사망한 시신에 조준 연사를 했습니다. 공개처형을 목격한 것은 인민반에서 무조건 참석하도록 공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참석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의 규모는 매우 많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처형이 끝난 후 장소를 빠져 나오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공개처형을 목격한 증언자들 대다수가 처형 장면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 증언자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며칠 동안 식

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증언자는 총을 맞고 쓰러지는 처형대상자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고,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나서 괴롭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다. 생체실험

자유권규약은 제7조 후문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따르면 유효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이거나 과학적 실험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³⁸ 북한은 보건부문에서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인민보건법 등의 법률을 두고 있지만, 우리 약사법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과 같이 의학실험이나 의약품 임상시험과 같은 분야를 규제하는 법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실험 등의 생체실험이 실험대상자의 동의 없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실험은 주로 83호 병원 또는 83호 관리소(이하 ‘83호’)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83호에 수용되는 실험대상자는 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거나 지적장애인으로 생체실험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였다. 83호에 수용

.....
³⁸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0,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ara. 7.

될 때에도 실험대상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진술에 따르면 83호 수용처분은 사회안전성의 재가를 받아 실험대상자의 거주지 안전부 감찰과에서 집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험대상자 가족의 동의를 받는다고 한다. ‘83호 수용처분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겠다’는 안전원의 협박을 받고 가족의 83호 수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83호 처분 대상자가 되면 안전원들이 대상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로 데려간다고 한다. 2019년에 함경북도에 있는 49호 병원에 수용되어 있던 환자가 김정은에 대해 욕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병원 측에 의해 83호로 이송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이처럼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수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가족에 의해 83호에 수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진술에 따르면 실험대상자 직계가족이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자이며, 치료될 가능성도 없다’는 식의 진술과 서명을 하면 83호 처분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4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를 금지한다”고 하였다.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에서도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되며,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요구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2015)에서 공장, 기업소의 생산 노동력을 당국의 승인 없이 다른 일에 동원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농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농장원의 동원을 금지하고 있다.³⁹ 또한 아동권리보장법(2014)에서는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⁴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자발적 국가보고서(이하 2021년 VNR 보고서)에서도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⁴¹

.....

39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35조.
 40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19조(아동노동 금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동노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공민은 아동에게 노동을 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2021, 4.8. 목표 8. 자력갱생·지식기반 경제건설 및 모두를 위한 일자리 보장 4.8.1 성과 및 도전과제 “...세계에서 흔한 문제인 청년실업,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으며, SDGs 세부목표 8.7은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가. 법적 제재에 의한 노동부과

(1) 형집행시설(교화소와 노동단련대)에서의 노동 부과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중노동 부과는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⁴² 구체적으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이하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⁴³

북한은 형법(2022)에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형벌로써 ‘무기노동 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두고 있다.⁴⁴ 북한의 형 집행시설인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에 대한 노동부과는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 수형자에게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42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8(3)(c)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43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97 ② 수형자는 노예상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Rule 102 ①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 Rule 103 ①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44 「형법(2022)」 제38조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중간생략) 유기노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이다. 제39조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노동단련대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중간생략) 노동단련형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이다. 제3차 UPR 실무그룹 보고서의 북한과의 대화와 답변 (A/HRC/42/10, para73) : 교화시설과 관련하여, 최종 판결에 따라 수감자가 수행한 노동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았다. 수감자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벨스 만델라 규칙)에 준거하여 처리되었다. 교화시설에 대한 감시는 해당지역의 검찰에서 맡았다.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서 수감자에게 부여되는 작업시간은 12시간 이상인 경우가 보통이었다. 작업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할당량을 완수해야하는 작업형태가 많았다. 매일 정해진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수형자에게는 기관원의 폭행이 있거나 벌을 부과하고 있었다.

교화소는 수감자를 수감 횟수, 형량 등에 따라 신입반, 만기반, 재범반, 무기반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농산·화목·피복·재화·가발반 등으로 나누기도 하며, 이외 광산이나 탄광 등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개 작업은 수감 후 1개월 후부터 배치되어 출소 전까지 하게 되는데, 소속된 반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교화소의 부업지에서 농사짓기, 가축 키우기, 땀감 마련하기, 군복이나 군화 제작, 속눈썹·가발·모자 제작, 탄광·광산의 갱 안에서의 작업, 건설이나 목공 등으로 다양하였다. 작업은 오전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였으며, 매일 있는 작업 평가는 노동력을 투입한 시간이 아니라 작업 할당량이 기준이었는데, 하루 할당량은 수감자가 처리하기에 과도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취침 시간을 줄여서라도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수감자가 고열이 나거나, 작업 중 다치더라도 계획량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며, 계획량 미달성자는 기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면회를 제한하고 면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가공물품 생산 작업은 1일 노동 할당량이 과도하여 수감자들은 농산반, 축산반, 식사준비 등 휴식이 가능한 작업을 선호하기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8년까지 함흥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금속 고리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식사시간과 일일 총화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에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겨울에는 오전6시~밤9시까지, 여름에는 오전 5시부터 밤10시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매일 오후 5시에 일 종화를 하였으며 그날 일을 잘 못한 사람들은 교화소 담당기관원이 죄수들의 신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노동단련대 수감자도 비슷한 형태로 과도한 노동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매일 ‘실적총화’를 통해 수감자 개별 작업이 평가되고, 매일 실적을 올리도록 강요당한 사례가 있었다. 노동단련대가 따로 운영하는 경작지인 부업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 겨울철 작업시간이 짧아 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작업을 더 부과받기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교화소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비판, 폭행, 처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행정처벌법에 의한 노동 부과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b)에 의하면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노동형 부과에 대한 법을 근거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은 행정처벌법(2021)에서 처벌의 종류로 무보수노동처벌과 노동교양처벌을 두고 있어 법원의 선고가 아닌 행정기관 등의 노동처벌을 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⁵

북한의 행정기관 결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 노동부과형 처벌은 ‘무보수노동처벌’, ‘노동교양처벌’이 있다.⁴⁶ 무보수노동처벌은 직무

⁴⁵ 「행정처벌법(2021)」 제344조(행정처벌기관) 행정처벌은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기관, 재판기관, 인민보안기관, 중재기관,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이 준다.(이하 생략)

⁴⁶ 「행정처벌법(2021)」 제15조.

수행 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법적 제재로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고, 노동교양처벌은 위법행위를 한 ‘공민’에 대한 행정법적 제재로 5일 이상 6개월 이하이다.⁴⁷ 북한은 2016년 행정처벌법 개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을 195개에서 296개 행위로 대폭 확대하였고, 2020년 개정시에는 307개 행위로 확대하였다. 노동교양처벌 결정이 가능한 기관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내각, 검찰기관, 재판기관, 인민보안기관, 중재기관, 검열감독기관 등으로 보인다. 행정처벌법에 근거하여 노동교양처벌을 받은 사례로는 탈북 후 강제송환되어 ‘국경비법출입행위(제285조)’가 적용된 경우, 외부정보 접촉·보관·유포 등으로 단속된 경우,⁴⁸ 무직·결근으로 단속된 경우, 비법국제통화를 하여 단속된 경우, 주소지 미거주자로 단속된 경우 등이 있었다. 노동교양처벌이 집행되는 시설은 ‘노동교양대’⁴⁹이지만 처벌을 집행소에 구금된 상태로 받았다는 사례를 볼 때 집행 장소를 노동교양대로만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교양대에서 수감자에게 부과하는 노동은 인근지역의 기업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건설현장 동원, 협동농장이나 부업지에서 농사짓기, 벽돌 만들기, 팥감 하기, 교양대 주방일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

⁴⁷ 「행정처벌법(2021)」 제17조, 제18조.

⁴⁸ 2020년의 「행정처벌법」 개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외부정보 접촉, 소지, 유포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처벌 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⁴⁹ 「행정처벌법(2021)」 제18조는 “노동교양처벌은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공민을 노동교양대로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행정법적 제재이다.”라고 규정하며, 집행기관을 ‘노동교양대’로 적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해석」 제18조는 “노동교양처벌은 시(구역), 군단위로 조직된 노동교양대에 보내어 어렵고, 힘든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하였지만,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노동교양대와 노동단련대를 구분하지 않고 ‘노동단련대’라고 칭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을 하다가 단속되어 노동교양처별 6개월을 받고 거주지 노동교양대에서 목장을 건설하는 일에 동원되었다는 사례와 탈북 후 강제송환으로 노동교양처별이 결정되어 지역의 재판소 건설작업과 가축 사육 등에 동원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동원되는 작업시간은 정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기상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식사시간 이외에는 노동을 해야 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휴일은 없었으며, 처벌기간 중 매일 12~13시간 이상 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사는 반찬없이 옥수수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부과된 노동을 버티는 것이 어려웠다는 진술이 있었다. 높은 강도의 노동과 열악한 구금환경 때문에 출소를 앞당기거나 쉬운 일에 배치받기 위해 기관원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노동교양처별로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자재운반을 하는 일을 하다가 노동교양대 담당안전원에게 뇌물을 주고 노동교양대 청사 안에서 잡일을 하였다는 사례와 노동교양대의 대장에게 뇌물을 주고 구금된 지 며칠 만에 풀려난 경우도 있었다.

“2017년 헤산시 노동교양대에서 아침 5~6시에 일어나서 식전 작업을 하고 7시에 밥 먹고 7시 반부터 일을 나가서 13시부터 13시 30분 정도까지 먹고 중간에 저녁을 잠깐 먹고 21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일은 역 앞에서 시멘트 상하차를 하거나 다른 지역의 건설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노동교양대 지도원 1명이 30명 정도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키는데 일을 대충하는 것을 감시했습니다. 현장에서 피를 쓰는 수감자에 대해 따로 체벌을 주거나 구타를 합니다.”

(3) 임시수용시설에서의 노동 부과

자유권규약 제10조 제2항에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은 피고

인은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의 피구금자 최저 기준규칙에서는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⁰ 이는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해 범죄에 대한 형벌로써 노동을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검찰감시법(2012)에서 형사소송절차 중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사건 관련자를 억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⁵¹ 인민보안단속법(2007)에서는 법질서 위반자 또한 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² 북한주민은 일반적으로 거주 지역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거나 여행할 때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여행증 없이 이동하다가 단속되어 여행자집결소에 억류되는 경우가 있었고, 강제송환자는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 거주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에 구금되고, 인민보안단속법(2007)과 행정처벌법(2020)을 근거로 단속되었을 때에도 억류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시수용시설은 ‘대기실’⁵³, ‘여행자·비법월경자 집결소’⁵⁴, ‘연합지휘부 사무실’⁵⁵ 등이 있다. 임시수용시설 중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뤄지는 연합지휘부 사무실 등에서는 억류자에 대

50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116.

51 「검찰감시법(2012)」 제32조 범죄사건관련자의 구인, 억류.

52 「인민보안단속법(2007)」 제47조-제50조 억류대상, 법질서위반자 및 운수수단 억류절차, 억류된 자에 대한 통보, 억류기간.

53 ‘대기실’은 시군의 안전부에 설치되어 구류구속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억류하는 장소로 억류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인다.

54 ‘집결소’는 거주지 이외에서 위법행위자를 임시 구금하는 시설로 탈북 후 강제송환된 경우(비법월경자집결소),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증명서 미소지 등으로 단속된 경우(여행자집결소) 구금하는 시설로 파악되었다.

55 ‘연합지휘부 사무실’은 보위부·안전부·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검찰소 등의 기관원들로 구성된 조직의 사무 공간을 말한다. 연합지휘부는 단속된 범죄 행위자를 안전부에 이관하여 형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노동교양처별 등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억류기간은 며칠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노동력 동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행질서 위반으로 여행자집결소에 억류되었거나, 탈북 후 강제송환되어 거주지로 이송되기 전 비법월경자집결소에 구금된 사람에 대한 노동력 동원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강제송환된 탈북민의 거주지 이송과정 중 비법월경자집결소에서는 집결소 내외부에서의 작업에 수감자를 동원하는 일이 많았다. 집결소 건물의 증축 등 내부 공사에 수용자를 동원하기도 하였으며, 인근 건설 현장이나 개인 주택 건설, 홍수 후 도로 정비, 시멘트 상하차 등의 작업에 동원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집결소에서 운영하는 부업지나 인근의 협동농장에서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와 같은 일을 한 사례도 많았으며, 작업의 종류나 작업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업 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오전 일찍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이상이었고, 구금 기간 중 휴일에도 일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겨울철 필요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집결소 대기 기간은 짧아지고, 농번기 등에는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비법월경자집결소에서 수용자의 거주지 이송 요청 통보를 일부러 늦게 하기도 한다는 진술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에 참여한 수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진술은 없었으며, 비법월경자집결소의 수용자에 대한 노동부과는 집결소의 수익 때문이라는 진술도 있었다.

“2017년 강제복송되어 5일 동안 청진에 있는 비법월경자집결소에서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곳에서 시멘트를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시멘트 화학 성분 때문에 눈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석탄을 나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리원들이 일을 빨리하지 않는다고 재촉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나. 사회조직을 통한 노동력 동원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사회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작업이나 역무 중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사회의 존립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 요구되는 역무와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직장과 사회조직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 주민을 동원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동원 대상, 기간, 참여의 강제성 등의 측면에서 대부분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인민반이나 직장 등의 조직을 통해 주민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주지의 인민반, 전업주부로 구성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하 여맹), 각급 학교의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직장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결혼한 여성들의 조직인 여맹을 통한 노력동원의 빈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진술이 많았다. 자강도 지역에서는 여맹원에 대한 의무적 노력동원이 많아졌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역의 건설현장, 농촌동원 등 무보수 동원이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매번 8시간 이상씩 동원되었다고 한다. 동원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남편의 직장에 통보는 물론 공개적 비판, 명절에 제공되는 물자를 지급하지 않기도 하였다는 진술이었다. 여맹 동원 횟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에 5회 이상, 거의 매일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수일씩 숙박하면서 동원되기도

하여 ‘여맹돌격대’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여맹돌격대는 인민반의 각 세대 전업주부가 대상이지만, 50대 이상 여성, 군관의 가족 등은 제외되며 보통 10명 내외의 인원이 동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강도 삼지연시 건설과 각 지역의 도시 정비 등 대규모 건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동원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맹원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을 ‘여맹 수익금조’라고 부르고 있었다.

“2019년까지 여맹위원회에서 지시하는 때마다 노력동원이 있었습니다. 내부동원은 집에서 잠깐 다니는 동원이고 외부동원은 식량을 싸서 외부로 나가서 며칠씩 동원되는 경우인데, 이것을 여맹돌격대라고 합니다. 철도, 도로 등 건설에 모두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인데, 동원이 일주일에 5번 정도 거의 매일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동원은 개인별 사정은 봐주지도 않고 건강이 나빠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도 동원을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고급중학교, 기능공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원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 중 고급중학교 학생은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농촌동원 외에도 수시로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경지역의 학교 신축을 위해 관할 중학교의 학생들을 건설현장에서 순번으로 동원해 노동하도록 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건설에서 전문적인 작업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였지만, 흙·돌 나르기, 미장작업 조력 등은 학생들에게 맡겨졌고, 성인이 해야 할 작업은 교직원들이 맡았다고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원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불참을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학교·기능공학교·대학교의 재학생에게도 노력동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 동원된 경우였는데, 김일성·김정일 동상건설, 철도 정비, 도시 정비를 위한 아파트 건설, 식료품 공장 신축 등이었다. 특히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삼지연시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인근 지역의 대학생들을 차출하여 동원하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대학생 돌격대’라고 불렸다는 진술이 있었다. 기능공학교에 다닌 경우는 지역의 농촌동원이나 건설현장에 동원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노력동원을 주요일정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 정비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지역의 기관에서 일부를 맡도록 하고 있어 미장, 타일, 창틀 등 구체적인 공사를 기관의 직원이나 학생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기능공학교 재학 중 3개월 정도 건설 현장에 동원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골조와 시멘트 작업이 끝난 곳에서 미장, 온돌 놓기, 타일 붙이기, 창문 달기, 수도관 연결하기 등은 모두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작업을 하였고, 간혹 제대군인 출신 남학생들이 야간작업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에 대가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동원을 가지 않으면 졸업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도시 재정비를 대규모로 한 지역에서는 철거된 주택의 주민들이 공급받게 될 주택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의무적이었다고 하며, 이들을 ‘가족돌격대’라고 부르고 있었다. 입주 예정 세대에서 한명씩은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작업에 참여한 노동력을 매일 평가하여 세대별로 입주할 아파트의 층수를 결정하기도 하

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입주 가능 여부가 건설현장 참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철거주민의 건설현장 동원도 의무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도 참여가 어려운 세대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신체의 자유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며, 신체의 안전은 심신에 대한 훼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9조 역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체포 또는 억류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고, 제2항부터 제5항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9조에서 국민의 인신 불가침 권리를 규정하고, 법적 근거 없이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2022) 제279조는 사람을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 구인할 경우에는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자의적·불법적 체포·억류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억류되지 아니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에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을 이유로 체포·억류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⁵⁶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에 대한 처벌로써 체포·구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신행위, 한국 영상물 소지 등 북한에서 비사회주의 내지 반사회주의로 간주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체포·구금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2019년에 전국적으로 미신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 평양에서만 미신행위를 이유로 50여명이 체포되어 공개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9년에 자택에서 실시된 109연합지휘부의 외부정보 단속에서 한국드라마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가 발견되어 체포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범죄 혐의자의 가족을 피의 사실 없이 구금조사한 악의적인 자의적 체포·구금사례도 있었다.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아들의 탈북을 이유로 보위부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을 때 아들의 탈북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씌우고 이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자의적 체포·구금 이외에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후문은 법률

⁵⁶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para. 17.

로 정한 이유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불법적인 체포·구금도 금지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당사국의 형사소송법상의 체포·구금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적인 체포·구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⁵⁷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에 따르면 형사소송절차는 범죄혐의자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와 피의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예심’의 단계로 구분된다.⁵⁸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은 예심 단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⁵⁹ 수사 단계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승인, 즉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⁶⁰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으며, 구금할 경우 법집행자의 신분증과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⁶¹ 강제처분을 체포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법의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⁶²

북한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체포·구금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다. 수집된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

⁵⁷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paras. 22–23.
⁵⁸ 「형사소송법(2021)」 제130조 및 제144조.
⁵⁹ 「형사소송법(2021)」 제172조 및 제174조.
⁶⁰ 북한 「형사소송법(2021)」 제177조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급하며, 체포영장의 발급을 검사의 승인으로 본다.
⁶¹ 「형사소송법(2021)」 제176 및 제178조.
⁶² 「형사소송법(2021)」 제139조 (검사의 승인없이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장 없이 체포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한 증언자는 2019년에 자택으로 안전원이 찾아와 ‘조사할 것이 있으니 따라와라’는 말만 듣고 체포 영장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분주소로⁶³ 연행되어 구금된 채로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9년에 직장 사무실에서 납치되어 보위부에서 구금된 채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직장 사무실 앞에서 보위지도원을 만났습니다. 보위지도원은 웃으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보위지도원은 나오지 않았고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체포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2명의 사람이 내렸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이 사람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체포하자마자 바지 혁대를 뽑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태웠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행되어 도착한 곳이 보위부 사무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구금되었습니다.”

나. 절차적 보장 미흡

(1) 체포이유·피의사실 미통고

자유권규약 제9조 제2항은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을 신속히 통고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

63 ‘분주소’는 동·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말단인민보안기관인 ‘인민보안소’의 또 다른 명칭이다.(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2권, 2017, 866쪽 참고)

한 형사소송법(2021) 제179조는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된 사례 중에 체포 당시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을 통고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대다수였다. 한 증언자는 2017년에 학교로 찾아온 안전원이 ‘조사할 게 있으니 가자’는 말만하고 자신을 연행해서 체포 당시에는 자신의 체포이유를 몰랐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8년에 보위원이 자택으로 찾아와 어떤 사람에 대해 아는지 물었는데, 안다고 대답하자 체포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바로 체포하여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했다고 한다. 2019년에 자택에서 체포될 때, 체포이유를 몰랐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를 한 것이 체포이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보위원이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협박하며 강제로 연행한 사례도 수집되었다.

“담당 보위지도원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전화할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손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주자 어디로 전화를 했고 5분 안에 보위부 오토바이 3대가 왔습니다. 저에게 알아볼 것이 있으니 오토바이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 중 한 대에 태워져 시보위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오토바이 타지 않으려고 하자 제게 욕설을 하며 ‘곱게 대할 때 빨리 타라’고 했습니다.”

구속된 후에 구속 사유와 구속 장소를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통보 해주지 않았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2017년에

보위부에 탈북기도 혐의로 구금되었을 때 보위부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구금 사유와 구금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2019년에 보위부에 구금된 적이 있다는 증언자도 보위부에서 자신의 구금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진술에 따르면 보위부에서는 원래 체포사실이나 구금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

(2) 과도한 재판 전 구금기간

자유권규약 제9조 제3항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형사피의자는 법관이나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지며,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관헌’은 공평성, 독립성, 객관성을 특성으로 하는데, 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⁶⁴ 북한에는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고, 수사원과 예심원이 체포, 구속처분을 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⁶⁵ 형사소송법(2021)에 따르면 수사단계에서는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할 경우 구금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구금한 날부터 10일 내 조사하여 예심에 넘기도록 되어 있다.⁶⁶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구금한 날부터 10일 내

64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para. 32.

65 「형사소송법(2021)」 제173조.

66 「형사소송법(2021)」 제140조.

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⁶⁷ 예심단계에서는 구금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하되, 연장 시 가장 5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⁸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예심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와 예심단계에서 법정 최대 구금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어 있었다는 증언들도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2017년에 숙박검열 과정에서 체포된 후 안전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75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9년에 중국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사용한 혐의로 안전부에서 예심을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구류장에서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탈북브로커라는 혐의를 받고 보위부 구류장에 9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3) 기타 절차적 보장 미흡

자유권규약 제9조 제4항은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체포·구속 이후 그 정당성을 재검토 할 수 있는 체포·구속적부심사와 같은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5항은 불법적인 체포나 억류의 피해자는 누

67 「형사소송법(2021)」 제140조.

68 「형사소송법(2021)」 제183조 및 제184조.

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2000년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이행보고서와 2016년에 유엔에 제출한 공통핵심문서에서 ‘형사보상규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⁶⁹ 형사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 법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불법적 체포 또는 구금에 대한 피해 보상 사례 역시 수집되지 않았다.

다. 강제실종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따르면 ‘강제실종’은 당사국의 요원 또는 당국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구금, 납치, 기타 모든 형태의 자유 박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이 이러한 자유박탈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을 은폐하여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까지 포함한다.⁷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강제실종’이 자유권규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는 악질적인 자의적 억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⁷¹

북한에서는 여전히 강제실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이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소식도 없이 실종 또는 행방불

명된 경우를 보거나 이에 대해 들었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수집된 진술에 따르면 종교행위, 체제 비판 등 말반동 행위, 간첩행위, 인신매매, 한국으로의 탈북 시도 등의 사유로 체포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한 증언자는 마을 주민이 2017년에 한국의 기독교단체에서 보내준 돈을 받고, 주민선교를 했다는 혐의로 도보위국에 의해 체포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진술했다.

강제실종된 사례의 대다수는 생사를 알 수 없었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였다. 2017년에 중국 휴대전화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통화한 사실이 보위부의 통신감청에 적발되어 체포된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체포된 날짜를 사망일로 정하고 추모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8년에 자신의 마을에서 한 노부부가 키우던 염소를 훔쳐간 군인들을 향해 ‘남한의 괴뢰군 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관리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실종된 사람의 가족도 함께 사라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8년에 도당 간부가 사적인 자리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주변인들이 이를 신고하여 가족과 함께 체포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69 UN Doc. CCPR/C/PRK/2000/2 (2000), para. 17(d); UN Doc. HRI/CORE/PRK/2016 (2016), para. 52.

70 2006년 제61차 UN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 제2조.

71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para. 17.

5. 피구금자의 권리

피구금자의 권리는 법과 권력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9호에서 동 조항이 교도소뿐만 아니라 병원, 수용소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사람이 구금된 모든 기관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지만,⁷² 여기서는 수감시설로 제한하고자 한다.

가. 구금시설

북한에서 일반구금시설은 형사소송절차 등에 의해 구류구속 또는 억류되는 시설과 형벌 또는 행정처벌 집행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구류구속 및 억류 시설에는 대기실, 구류장, 집결소, 구금소 등이 있으며, 형벌 및 행정처벌 집행시설로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노

72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9, Article 10: 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para.1.

동교양대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사회안전성이나 국가보위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안전성 산하 시설은 대기실, 구류장, 여행자집결소, 비법월경자집결소, 교화소와 노동단련대 등이다. 국가보위성 산하의 시설은 집결소(구류장), 구금소 등이다. 각 지역의 노동교양대는 인민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진술이 있었고, 연합지휘부(상무)는 운영기관이 명확하지 않았다.

사회안전성⁷³ 산하 각 지역의 사회안전부에 설치된 ‘대기실’은 구류구속 여부가 확정되기 전 구금하는 장소이다. ‘구류장’은 각 도의 사회안전국과 시군의 사회안전부에 설치된 시설로 구류구속 상태로 수사·예심·재판을 진행할 때 범의자(혐의자)를 구금하는 장소이다. ‘집결소’는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단속 또는 체포되거나 탈북 후 강제송환된 사람들이 수사, 예심, 처벌 등을 위해 거주지 관할로 이송되기 전 대기하는 장소이다. 진술에 따르면 ‘여행자집결소’와 ‘비법월경자집결소’가 있는데, 여행자집결소는 북한 내에서 허가 없이 이동시 단속된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비법월경자집결소는 주로 국경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 또는 강제송환된 경우에 구금하는 시설로 보인다.

국가보위성 산하의 각 도의 보위국 및 시군의 보위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류장을 주민들은 ‘집결소’로 부르고 있었는데, 여행자집결소 또는 비법월경자집결소와는 다른 시설로 파악되었다. 구류장과 마찬가지로 수사·예심·재판을 진행할 때 혐의자를 구금하는 장

73 북한의 현재 치안유지기관인 사회안전성은 변경 및 개칭을 거쳤는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사회안전성(1951년)→사회안전부(1972년)→사회안전성(1998년)→인민보안성(2000년)→인민보안부(2010년)→인민보안성(2016년)→사회안전성(2020년) 출처 : 북한정보포털.
이러한 이유로 진술시 현재 사회안전성 산하 기관이나 기관원을 일컬을 때, 보안국(안전국), 보안서(안전부), 보안원(안전원) 등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이다. ‘구금소’는 각 도의 보위국 이상에서만 운영하는 시설로, 주로 정치범(한국 관련)과 연관된 범죄 혐의자를 구금하는 곳으로 보인다. 보위부의 예심으로 이관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구금되는 곳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형집행시설인 교화소와 노동단련대는 사회안전성에서 운영하는 데, ‘교화소’는 형법에 명시된 형집행 시설로 수사-예심-재판의 형사소송절차를 거쳐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노동단련대’는 재판으로 노동단련형이 확정된 자를 구금하는 시설이다. 북한 형법에서도 노동단련형의 형집행 장소를 노동단련대로 명시하고 있으며,⁷⁴ 교화소에서 부속시설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교양대’는 북한 행정처벌법(2020)에 규정된 ‘노동교양처벌’을 집행하는 시설이다.⁷⁵ 노동교양대는 지역은 물론 비교적 규모가 큰 직장이나 농장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주민들은 노동교양대와 노동단련대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각종 단속을 위해 안전부, 보위부, 검찰소, 청년동맹 등이 연합하여 조직한 일명 ‘연합지휘부’의 시설에 구금되는 사례도 상당수 수집되었다. 이 경우 구금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조직의 사무공간 등 임의의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민보안단속법(2007)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에 감금하는 것을 ‘억류’라고 지칭하고 있다.⁷⁶

74 「형법(2022)」 제39조(노동단련형)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노동단련대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75 「행정처벌법(2021)」 제18조 노동교양처벌은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공민을 노동교양대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행정법적 제재이다.(이하 생략)

76 「인민보안단속법(2007)」 제47조(억류대상)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기고 도주하거나 또는 공모하여 법

나. 피구금자 처우

자유권규약은 당사국에 자유를 박탈당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여 취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에 따라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자유의 박탈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 이외의 다른 어떠한 곤경이나 압력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⁷⁷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피구금자의 처우와 형집행시설의 운영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성별, 연령, 범죄경력 등에 따른 피구금자의 분리, 취침공간과 위생설비 등 거주설비, 건강과 청결유지 등의 개인 위생, 피구금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은 물론 제한, 구울과 징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⁷⁸

북한은 형사소송법(2021) 제6조에서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

.....
질서를 어겼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 방랑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자를 억류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 50조 (억류기간) 법질서를 어긴 자의 억류기간은 인민보안소는 3일, 시(구역) 군인민보안서는 10일까지이다.(이하 생략)

77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1, Article 10: 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para. 3.

78 피구금자의 처우에 적용되는 관련 유엔 기준에는 ①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벨슨만델라규칙) : 1957년에 승인되었다가 2015년 유엔 총회 결의로 전면 개정되었음 ②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1998) ③법집행관을 위한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8) ④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 재소자 및 피구금자의 보호 차원에서 의료진, 특히 내과의의 역할과 관련된 의료 윤리원칙(the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2) 등이 있다.(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1, Article 10: 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para. 5.)

보안단속법(2007) 제6조에서도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법령에는 구금 및 형벌 집행과정에서의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열악한 구금환경

구금 공간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구금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개인별 적절한 크기의 취침공간에 대하여 피구금자마다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하며,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는 서로 ‘원만히’ 지낼 수 있는 수의 피구금자를 한 곳에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⁷⁹

북한에서 수감자의 구금 공간은 기관에 따라 수용인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부분 공동침실 형태였다. 한 공간에 수용되는 인원이 비교적 적은 곳이라 해도 대부분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한 유엔 최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금 공간의 차이는 구금된 시기나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하였다. 강제송환 후 수감되었던 곳에 다른 수감자가 없어 구금 공간에 혼자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구금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같은 수용실에 30명 정도가 구금되기도 하였으며, 대기실 1개의 칸에 50명까지도 구금되어 잠을 잘 때 제대로

79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12. ①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누울 수 없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바닥은 장관 등이 깔리지 않은 시멘트 맨바닥이었다는 진술이 많았는데, 난방이 되지 않아 여름철에는 습기가 차고, 겨울철에는 더 추웠다고 한다. 게다가 이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취침시 시멘트 바닥에 방석을 깔고 작은 담요를 덮어야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노동교양대 등의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난방이 잘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급식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피구금자에게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과 식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하였지만,⁸⁰ 북한 구금시설에서는 충분한 음식과 식수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구금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지역이나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구금시설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식사는 하루 3번씩 제공되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식은 옥수수로 ‘강냉이밥’, ‘작살밥’ 등으로 부르며, 옥수수 알갱이를 통째로, 또는 잘게 부순 후 찌서 제공하였다고 한다. 반찬으로 염장한 무를 소량 주기도 하지만, 배추, 소금 등을 넣은 시래깃국만 제공된 경우가 많았다. 수감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진술이 있는 기관에서 옥수수에 두부콩이나 쌀 등을 섞어 조리된 주식이 제공되기도 하였지만, 추가되는 곡식은 옥수수였다. 2019년 시군단위 보위부에서 관할하는 구

80 Ibid., Rule 22. ①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금시설에서 백미밥, 콩나물, 인조고기 반찬 등이 제공되었다는 진술과 교화소에서 영양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자가 늘어나자 영양이 부족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콩, 영양죽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수감시설 대부분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양과 질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면식’이라고 불리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음식 없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수감자의 식수는 수용실의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그러나 수도물이 제한적으로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시설도 많았으며, 이런 경우 매일 수용실마다 공급되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양강도 도보위부 집결소에서 식사는 매끼 통강냉이 삶은 것 700~800알에 시래깃국을 주었고, 양강도 도보위부 구금소에서는 매끼 강냉이와 콩이 반반 섞인 밥 200g과 시래깃국, 염장배추를 줍니다. 한 달에 1번 몸무게를 재서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속도전가루, 기름 1숟가락, 사탕가루 1숟가락을 물에 버무려서 주는 것을 공급해줬습니다.”

위생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피구금자에게 신체를 청결히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과 세면용품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⁸¹ 특히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 및 여성범죄자 비구금 처우 규칙은 월경 중인 여성에

⁸¹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18.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 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해 필요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²

세면이나 목욕은 구류장 등 수감시설 내에서 수 일 동안 생활해야 하는 수감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물이나 세면용품 제공이 충분하거나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사용한 물은 빨래를 하거나 변기를 내리는 용도로 재 활용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세면할 수 있는 물조차 공급되지 않은 시설도 있어 구금기간 중 씻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세면용품은 일부기관에서만 약간씩 제공되었는데, 비누 정도만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제공된 용품도 같은 공간의 수감자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대기실이나 안전부 구류장은 외부물품 반입이 가능하여 생활용품을 가족에게 받아서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많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의 수감자는 씻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많았다.

반면 주1회 단체 목욕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비누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수감자가 자주 씻도록 하였다거나, 이불이나 옷을 햇빛에 말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교화소와 같은 수감자를 오랫동안 구금하는 곳은 단기간 구금하는 시설보다 상황이 좀 나았는데, 목욕은 일주일에 한번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었고, 화장지는 지급이 되었으며, 비누와 치약 등은 면회 없는 수감자에게만 지급하였다고 한다. 여성수감자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것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한 경우 계호원에게 요청하면 지급하였

⁸²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the Bangkok Rules), Rule 5. 여성수감자 수용시설에는 여성의 특정한 위생상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요리에 관여하는 여성과 임신, 모유 수유, 월경중인 여성, 특히 어린이와 여성의 개인적인 보살핌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위생수건과 정기적인 물 공급을 포함한다.

다고 한다. 하지만 지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화장지나 천을 대신 사용하였다는 경우도 있었다.

구류장, 대기실 등 비교적 짧은 기간 구금되는 시설은 취침공간에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원활하지 않은 급수 때문에 악취가 심하였다는 진술이 많았다. 기관에 따라서는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욕이 가능하지 않아 빈대나 머릿니 등 해충이 있었다고 한다. 수감자가 생활하는 시설의 열악한 청결상태에 대한 유사한 진술이 많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개선된 사례가 수집되기도 하였다. 시설 개선이 있었던 곳에서는 위생환경이 양호했고,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교화소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고, 개선 이후 악취가 감소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생리를 하는 기간에는 손을 들고 계호원에게 생리대를 요청하면 생리대를 하나씩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리주기가 모두 비슷해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생리대를 요청하자 귀찮았는지 없다고 하면서 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약 6m×4m정도 크기의 방안에 30명이 함께 생활해서 매우 비좁았습니다. 방안에는 변기가 있었고, 잘 때 매우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건 의료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⁸³

구금시설에서는 영양부족으로 몸이 허약해지거나, 가혹행위로 인해 외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지만,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형집행시설 이외의 수감시설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거나, 의료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진술은 드물었고, 수감자가 작업중 다치거나 기관원의 폭행 등으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형집행시설에는 의료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결핵 등의 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수감자 중 질환자에 대해 형사소송 중지 및 형집행 중지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동교양처벌을 받은 경우 진단서 발급과 뇌물을 이용하여 실제 구금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교화소 수감 전 처리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구금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형집행시설과 이외 구금시설에서의 처리가 다르게 나타났다. 교화소에서는 대체로 수감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망자의 가족이 면회를 왔을 때에서야 알렸다고 하였다.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시설 인근에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거리 교화소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남성수감자

83 이외에도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25. ②보건의료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충분한 수의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즉, 여러 전문영역에 걸친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들이 시체를 인근의 ‘불망산’이라는 곳에 가서 태웠고,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아 면회를 와서야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반면 노동교양처별 이행기관인 노동교양대의 경우 수감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자 가족에게 알리고 시신을 인도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시보위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수감자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만 노동교양대에서 동료 수감자에 의해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는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2017, 2018년 함흥교화소에서 사망자를 2번 보았습니다. 2017년은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였고, 2018년은 허약 때문에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폐결핵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은 후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 계속 아파했는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만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해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원인을 알아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사망자의 시신은 교화소 내에서 화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에 사망한 수감자의 아들이 3월 말경 면회를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2) 수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⁸⁴ 또한 피구금자의 규율위반 행위 및 징벌의 종류 등에 대한

⁸⁴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1.

사항은 법률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야 하며,⁸⁵ 규율에 따른 징벌일지라도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⁸⁶

북한 형법(2022) 제280조에서는 “사람을 비법적인 방법으로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로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하였거나 부당한 형사책임을 받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신문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 구타행위방지법 제정으로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 감독통제기관 소속 기관원이 직무집행과정에서 구타행위를 한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처벌을 할 수 있고, 사안이 무거운 때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⁷

북한에서는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수감자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관원이 폭행을 가한다는 다수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다. 송금브로커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구금자가 보위부 조사에서 솔직하게 진술하지

⁸⁵ *Ibid.*, Rule 37. 다음 각 호는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b)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c) 그 징벌권을 갖는 기관 (d) 동방격리수용, 격리, 분리, 특수 관리시설, 구금시설 등 다른 피구금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 구금하는 형식. 이러한 방식이 규율에 따른 징벌로 행해지거나 질서 유지 및 보안을 위해 행해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든 강제적 분리구금 형식의 이용, 검토, 도입 및 폐지를 위한 지침제정 및 절차를 포함한다. Rule. 39. ① 어떠한 피구금자도 제37조에서 언급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구금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따라야 한다. 피구금자는 동일한 행동 또는 규율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 받지 않아야 한다.(이하 생략)

⁸⁶ *Ibid.*, Rule 43. ① 제한 또는 규율에 따른 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과 다름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이하 생략)

⁸⁷ 「구타행위방지법(2021)」 제22조.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불법적 장사를 하던 주민이 신고로 체포되어 대기실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안전원이 가지고 있던 허리띠로 다리 등을 폭행하여 심하게 피멍이 들었던 사례도 있었다. 안전부에서 예심을 받는 동안 자백을 강요하면서 구둣발로 복부를 가격하거나 각목으로 다리를 가격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조사시 폭행 이외에도 수용실에 구금된 수감자가 몸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고, 나무뿔등이로 얼굴을 내리쳐 치아가 빠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수감자 간에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호원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여행자집결소, 노동교양대 등에서는 도망하려 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폭행이 가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도주자 발생을 막기 위해 수감자 중 반장 등을 뽑아 감시하거나 폭행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노동단련대, 교화소는 매일 계획된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감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일 오후 5시에 하루 작업을 ‘총화’하였고, 일을 다 하지 못한 수감자의 얼굴을 신발로 수차례 가격하기도 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구금시설의 수용실 안에서 일과 중에는 ‘고정자세’ 또는 ‘올방자세’라고 불리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두 손은 양 무릎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못하며, 동료 수감자와 대화는 금지된다고 한다. 약간의 움직임만 있더라도 계호원은 수감자를 폭행하거나 수감자 전체에 벌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보위부의 수용실에서 고정자세를 취하다가 움직였다는 이유로 계호원이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기도 하였으며, 양강도 도보위국 구금소에서 고정자세로 있다가 움직이

면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기, 팔굽혀펴기 등의 벌을 받았다고 하였다. 고정자세는 한 시간 정도 지속하다가 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취침 전까지 하루종일 해야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용실에서 용변을 볼 때 계호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였는데, 계호원에 따라 허락을 해주지 않거나 비난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조사를 받기 위해 수용실에서 이동 할 때는 자세가 정해져 있었는데, 허리를 숙인 상태로 뒷걸음질로 문을 나와야 했으며,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인 상태로 이동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2019년 양강도 도보위부집결소에서는 실내화를 벗어 팔뚝을 때리거나 구둣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때려도 걸으려는 맞은 표시가 나지 않게 때립니다. 주먹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습니다. 도보위부집결소에서 조사 중에 맞은 것 보다는 집결소구류장에서 계호들에게 더 많이 맞았습니다. 집결소구류장에서는 하루 종일 고정자세로 앉아 양 손을 무릎에 올리고 있어야 하고 움직일 수 없으며 옆 사람과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구류장 쇠창살 앞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머리나 몸통을 때리거나 쇠창살에 머리를 박게 했습니다. 계호들은 자기들 기분에 따라 때렸고 정해진 이유도 없이 때렸습니다.”

(3) 면회와 서신 제한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구금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일정 기간마다 ‘서신 또는 이용 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과 접견’을 통해서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⁸⁸

88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58. ①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다

수감중 면회 및 서신교환의 가능 여부는 수감된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보위부는 면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비법월경자집결소는 면회가 가능하다고는 하였지만, 타지역의 주민으로 강제송환된 사람을 거주지로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족 등이 강제송환과 구금 사실을 알기 어려워 면회나 외부 물품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부의 대기실은 대부분 면회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음식이나 물품은 외부에서 들여왔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면회가 가능하였다는 사례도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 또는 뇌물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루빠, 상무 등으로 불리는 연합조직에 억류된 경우에도 대기실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식사나 물품은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사회안전부의 구류장이나 보위부의 구류장(또는 집결소)에 구금된 수감자는 면회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전부의 구류장에 구금된 상태로 예심과 재판받는 4개월 동안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례와 여동생이 안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면회는 불가능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도보위국의 구금소에서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진술과 보위부에 구금중에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

.....

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이용 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b) 접견.

나 두 기관에서 모두 물품반입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심과 재판을 구금된 상태로 받는 경우는 구금기간이 수 개월로 길어지기 때문에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반입 물품은 주로 ‘면식’이라고 불리는 음식이었다. 안전부 구류장에서 매일 오전에 당일 면식을 반입할 수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고, 도보위국에서 면식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노동교양대는 구금자에 대한 면회와 물품 반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이 구금되었을 때 면회를 갔었다는 사례가 있었고, 수감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으로 가서 면회를 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교화소는 3개월에 한 번 면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담당 기관원에게 뇌물을 주면 한 달에 두 번도 가능하다는 진술도 있었다. 반입 물품은 ‘속도전 가루’라고 불리는 옥수수 가루, 기름, 엿, 된장 등으로 보이지만 교화소에 따라 달랐다. 생필품은 반입이 허용되었지만, 물품을 기관원이 일부 가져간다는 진술이 있었다. 노동단련대의 면회도 교화소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 여동생은 비법국경출입죄로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된 상태로 예심과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에게 면식은 일주일 1번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심과 계호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야 가능했습니다. 뇌물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 계호원이 요구하는 대로 줘야 했습니다. 면회는 허락해 주지 않아 한 번도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4) 분리 수용

자유권규약에서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결수와 격리되어야 함을 명시하였고,⁸⁹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성인과의 미분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과 격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⁹⁰ 이외에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남성과 여성, 민사와 형사피구금자는 분리되어 수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⁹¹

사회안전성 구류장의 분리 수감 기준은 성별, 공범여부, 재판종료 등이고, 이외 다른 기준은 없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기준은 기관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에 따른 구분은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9년 노동교양대에서 취침 장소의 남녀구분이 되지 않아 같은 공간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미결수와 기결수는 구류장내에서 분리 수용된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실제 지켜지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 중 잔여 형기가 짧은 경우 구류장에서 미결수와 함께 구금되어 있다가 출소했다는 사례가 있었고, 교화소로 이송되기 전의 기결수를 미결수와 함께 구류장에 수용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미성년의 분리는 여러 시설에서의 진술이 있었는데, 성인과의 분

⁸⁹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0(2)(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Article. 10(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⁹⁰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37(c).

⁹¹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11.

리가 비교적 잘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양강도 도보위국에서 구금된 여성의 자녀가 영유아였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다른 수감자와 분리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성인과 분리가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지만, 동일한 공간에 수용되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강제송환된 14세 이하 아동이 구금되지 않고 당일 풀려나거나, 거주지 이송 전까지 구류장 이외 창고 등의 장소에 억류된 것을 목격한 사례가 있었다. 반면 15세부터는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구금되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이외에 미성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집행시설이 존재한다는 진술은 있었지만, 시설을 목격하거나 구금을 경험한 사례는 수집되지 않아 상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여동생은 복송 당시 15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비법국경출입죄로 노동교화형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동생이 교화소 출소하고 나서 제게 구금시설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는데, (예심 중 군보안서 구류장에서는) 당시 성인과 같은 감방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화소에서는) 성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여성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28호에서 피구금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한 조건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의 경우 여성교도관에 의해서만 감시되는지 여

부를 보고해야한다고 하였다.⁹² 또 유엔의 최저기준규칙 제81조에도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 직원에 의해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고 적시할 뿐만 아니라 2010년 ‘여성수용자 처우 및 여성범죄자 비구금 처우규칙’(이하 방콕규칙)을 두고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에 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⁹³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에서는 여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여성을 입회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⁹⁴, 여성 피구금자와 관련하여 임신한 피심자에 대한 구류구속 처분 금지와 형벌집행의 중지 등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다.⁹⁵

(1) 나체(알몸)검사와 체강검사

나체검사나 체강검사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며,⁹⁶ 체강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⁹⁷ 전

92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8, Article 3: The equality of rights between men and women, para. 15.

93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the Bangkok Rules)은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을 보완하여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수용자의 △건강(위생, 신체건강, 전염병 예방 등) 관리 △임신한 여성·수유중인 여성·자녀동반 여성 수용자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94 「형사소송법(2021)」 제217조.

95 「형사소송법(2021)」 제175조(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

96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52. ① 알몸수색과 체강검사와 같은 침해적 검사(intrusive searches)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교정당국은 침해적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개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침해적 검사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을 받은 동성(同姓)의 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강검사는 피구금자의 보건의로 주책임자가 아닌 자로서 자격을 갖춘 보건전문가 또는 적어도 의료전문가로부터 위생, 보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직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97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the Bangkok Rules) Rule 20. 침습적 신체검사(invasive searches)의 해로운 심

신탈이나 체강검사를 실시한다면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교육을 받은 동성의 직원이 하여야 한다. 체강검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보건전문가 또는 의료전문가로부터 위생, 보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자로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⁹⁸

북한 구금시설에서는 수감자를 상대로 시설 입소 시 ‘검신’이라는 신체 및 소지품 검사(일명 ‘알몸검사’)⁹⁹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탈북 후 송환된 여성에게는 ‘자궁검사’¹⁰⁰라고 불리는 체강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검사는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나체검사는 소지품 검사와 함께 의복 등에 있을 수 있는 위해 도구를 찾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궁검사라고 불리는 체강검사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강제송환 경험자의 진술에 의하면 송환된 여성이 지니고 있을 금품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반 범죄로 구금된 경우에는 구금기관에 관계없이 나체검사 정도만 여성 기관원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관원은 수감자가 탈의한 의류에 있는 쇠붙이, 끈 종류는 모두 떼어 내고, 소지품 검사로 흥기 등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압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제송환으로 구금된 경우, 구금된 기관에 따라 검사의 범

리적 영향과 가능한 신체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스트립 검색과 침습적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스캔과 같은 대체 선별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98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52. ② 체강검사는 피구금자의 보건의로 주책임자가 아닌 자로서 자격을 갖춘 보건전문가 또는 적어도 의료전문가로부터 위생, 보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직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99 ‘알몸검사’는 피구금자들의 소지품 및 옷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탈의 후 행해진다고 한다.

100 북한이탈주민 진술에 의하면 ‘자궁검사’는 대개 탈북 후 강제송환되어 구금되는 경우 실시되는데, 구금되기 전 소지품 검사와 동반된다고 한다. 송환되는 여성들이 항문이나 질 안쪽에 숨긴 돈 등을 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 담당기관원의 성별, 개별적 실시 여부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알몸검사 등이 이뤄지는 방법은 옷가지 등을 검사한 후, 기관원이 육안으로 여성의 질 내부를 살피거나 손으로 숨긴 것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알몸 상태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수회에서 수십 회 반복하도록 하는 일명 ‘뽀뽀’를 하도록 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나체·체강 검사는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실시되었으며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여러 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안전국 비법월경자 집결소에서 강제송환된 여성 여러 명을 한 공간에 있게 한 후 알몸검사와 자궁검사를 한꺼번에 실시하였으며, 자궁검사는 직원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여러 명을 검사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구금시설의 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 위생, 보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동성의 직원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보위부에 들어갈 때 알몸검사는 보위부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도안전국의 비법월경자 집결소에서 남성 계호원에게 여성수감자의 자궁검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변화된 사항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체강검사시 산부인과 내진 기구를 사용한 사례, 소지품 검사와 혈액·전염병 검사만 실시한 사례 등이 수집되었다.

“2017년 청진시에 있는 집결소로 이송되었을 때 집결소 방에 들어가라고 하여 20명이 들어가자 남자 하전사 2명이 수감자들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100회를 시킨 뒤 모두 엎드리라고 한 후에 엎드린 수감자들의 뒤에서 항문과 질 내에 손가락으로 쑤셔 돈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2) 성폭력

구금시설에서의 성폭력은 도안전국, 비법월경자 집결소, 시안전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발생하였으며, 가해자 역시 구류장 등을 지키는 계호원, 기관원, 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또한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도 다양하였는데, 구류장 내에 있는 수감여성을 구류장 밖에서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병원에 입원한 수감자를 병원 내에서 성추행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비법월경자 집결소의 간부가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늦은 밤 수감자를 따로 불러 성폭행을 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 경우는 동일인이 동일기관에서 여러 수감자에 대하여 가해를 한 사례였다.

구금시설의 계호원이나 기관원에 의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경험 진술도 있었는데, 가해한 기관원은 구금기간 중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가해를 하였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감자를 성폭행하였다. 피해여성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항의할 경우, 구금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우려하여 수감시설에 알릴 수 없었다고 하였다.

“2016년 양강도에 있는 집결소에서 계호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제가 구류장에 있는데 저녁에 저에게 나오라고 한 다음 강냉이 송치를 쌓아둔 창고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했습니다. 반항을 하면 때리고 행기를 늘린다고 위협했습니다.”

(3) 강제낙태

구금시설에 임신한 상태로 수감된 여성이 강제적으로 낙태를 당하였다는 경험과 이를 목격한 사례는 수집되었지만 드물었다. 강제

낙태를 당한 수감자는 대부분 탈북 후 강제송환된 여성이었고,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였다.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강제송환되는 여성은 송환 직후 낙태를 실시한 뒤, 등록된 거주지로 이송해야 하는 것이 규정으로 임신 개월 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기관 근무경험자의 진술이었다. 탈북과 강제송환이 증가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 강제적으로 낙태를 한 후 처벌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강제낙태는 강제송환 과정 중 비법월경자집결소인 국경지역 도안 전국이나 보위부 조사단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가 이뤄지는 곳은 대부분 구금시설 인근의 병원이며, 집결소 등에 소속된 군의(軍醫)가 동행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신 3개월인 상태로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된 여성이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병원으로 나간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임신 8개월 정도의 상태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을 비법월경자집결소의 군의가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낙태수술을 받게 한 후 돌아온 것을 보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흔하지 않지만 등록거주지까지 임신한 상태로 이송되어 거주지에서 낙태 당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함께 복송되어 온 임신 3개월 차의 임신부가 강제낙태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양강도 출신 탈북한지 1년이 안된 시기에 복송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임신 3개월 차였습니다. 외부병원에서 낙태를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석방된 이후 그 여성을 만나 당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4) 임신부 체포와 구금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 및 여성범죄자 비구금 처우규칙에서 임신부와 부양할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비구금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¹⁰¹

북한은 형사소송법에서 임신한 여성에 대해 산전 3개월에서 산후 7개월까지는 체포 및 구류구속을 금지하고¹⁰², 형벌집행을 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¹⁰³

임산부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체포 및 구류구속 금지, 형집행 정지에 대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임신부가 목격된 장소는 안전부 구류장, 연합지휘부 대기실, 보위부 집결소 등이었다. 안전부 구류장에 수감된 임신부는 임신 7개월 이전에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로 수사와 예심을 받고 있다가, 구류구속 금지사유인 임신 7개월이 되자 석방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임신한 상태로 인신매매 혐의가 있어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출소한 뒤 아이를 낳고 7개월이 지나 다시 구류구속된 것을 목격한 사례도 있었다. 보위부의 구류장에 체포되었지만, 출산이 가까워져 석방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임신한 여성 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임신 7개월 이상이라는 사유로 구류구속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출산하고 난 직후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갔지만, 구류구속은 물론 피의자를 안전부로 부르는 것도 불가

101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the Bangkok Rules), Rule 64. 임신한 여성과 부양할 자녀가 있는 여성.

102 「형사소송법(2021)」 제175조.

103 「형사소송법(2021)」 제427조.

능하여 예심을 피의자의 집에서 하었다고 한다. 또한 예심 후 재판은 재판소에서 받았고, 노동단련형 6개월이 확정되었지만, 출산 후 7개월이 지나지 않아 형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한다.

반면 임신한 여성에 대한 구류구속 금지와 형벌집행 정지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강제송환될 당시 임신된 상태로 체포되어 구금된 경우가 있었으며, 도보위국에서 임신 4개월 된 여성을 체포한 후 구류구속하였고, 임신 7개월 정도가 되었을 무렵 가족은 담당 보위원으로부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북한에서 중국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도강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도보위부 집결소에서 보위지도원들로 보이는 사람 5명이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아내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보위부 집결소장과 보위지도원 4명이 아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온 뒤에 수색영장 같은 것도 없이 저희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색을 마치고 집결소장이 저에게 “아내가 임신을 했느냐?”고 물었고, 당시 아내가 임신 4개월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임신 중이 맞다.”라고 대답하였더니 “알았다.”고 하고 다시 아내를 태우고 집결소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군보위부 지도원이 저희 집에 와서 알려주기를 아내가 관리소에 끌려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 피구금자의 처우 개선

구금시설에서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구금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의 공통된 진술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

례에서는 피구금자 처우 등이 개선되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일반 범죄로 형사소송 절차 중이거나, 강제송환으로 수감된 사람에 대해 폭행과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다. 반면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류구속 처분된 사람은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인채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구류장 등에서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었는데, 2017년 전후로는 수감자에게 머리만 살짝 숙이고 이동하도록 하였고, 조사중 ‘족쇄(수갑)’도 채우지 않도록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일과 중 감방 안에서는 앉은 채로 움직이거나 수감자간 대화를 금지하며, 화장실 출입도 허락을 받은 후 가능한 것이 보통이었고, 지켜지지 않는 수감자에 대해서는 폭행이 가해졌는데, 이러한 폭행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며, 이전보다 개선이 되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유사한 사례가 교화소에서도 수집되었는데, 2017년 즈음 ‘인권유린을 없앨 데에 대한 방침’이 자주 하달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달된 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교화소 사망자와 허약자를 없애라, 과제나 계획을 못해도 처벌하지 말라, 구타·몰아주기(왕따)를 하지 말라’ 등이었다고 한다. 방침 하달 이후 교화소 내에서 영양이 부족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죽, 콩비지, 부식 등이 따로 지급되기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시보위부에서는 조사 종료 전 ‘조사기간 중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피구금자 처우 변화에 대해 안전부나 보위부에서 조사할 때 폭행하지 말라는 지시

가 있었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시군의 보위부에서 근무한 경험자도 기관 내에서 조사대상에 대한 인권 유린 여부에 유의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구류장 내부에서 말을 하거나 고정자세를 취하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 처벌을 하게 되는데 무릎꿇고 세워놓게 합니다. 2015년에 구류장 내부에서 죄수들을 폭행한 계호원들이 계급이 강등되는 ‘군사 칭호 감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폭행이 많이 줄었습니다. 방침이 한 달에 한두 번 내려 올 때마다 예심과의 과장이나 당비서가 계호원을 불러놓고 교양을 하는데, 교양 내용이 ‘인권유린을 하지마라’, ‘비계급적인 행위를 하지마라’, ‘면식이나 면회를 몰래 허용해 주지마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가해 기관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파악되었다. 노동교양대 내에서 기관원을 조력하던 반장이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노동교양대 대장이 직위 해제되고 대기실에 구금된 사례가 있었다. 안전부 대기실에 억류된 상태로 조사를 받던 주민이 안전원에게 폭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제기하여 가해 안전원이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 구역의 보위부에서 면담 중 폭행을 당한 주민이 ‘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검열을 하고 상급기관에서 피해자를 위로한 사례도 파악되었다.

구금환경이 개선된 사항에 대한 진술도 있었는데, 구류장에서 겨울철 모포, 생리대, 가루비누, 세면비누, 치약 등이 지급되었다고 하였다. 도보위국 구류장(집결소)에 구금된 여성과 7개월 영아를 구류장에 구금하지 않고 사무실에 따로 머물도록 하고, 이들에게 제공된 식사도 일반수감자와는 다르게 백미밥 등이었던 것을 목격한 사례도 있었다.

6.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자유’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로,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3조에서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12조에서도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에서는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 퇴거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5조에서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여행허가제도 등을 통해 실제로는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가. 이동의 제한

자유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규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정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이동을 금지하거나 그러한 허가 신청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¹⁰⁴

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4년에 열린 UPR 실무그룹 제19차 회기 제8차 회의에서 “이동의 자유는 헌법과 법에 의해 전적으로 보장되고, 인민들은 허가가 필요한 최전선과 군사시설을 제외한 국내이동이 자유롭다”고 언급한 바 있다.¹⁰⁵ 그러나 북한은 여행 허가제도와 숙박등록제도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북한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별법규를 통해 여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104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7, Article 12: Freedom of movement, para. 17.

105 UN Doc. A/HRC/27/10 (2014), para. 62.

(1) 여행허가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시·도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공민증이라 불리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거주하는 시·도의 경계를 벗어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발급한 여행증명서(이하 ‘여행증’)를 소지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단속과 처벌을 받는데, 인민보안단속법(2007) 제30조와 행정처벌법(2021) 제299조에 따라 인민보안기관이 여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하고, 여행질서를 어긴 사람에게 벌금을 주거나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¹⁰⁶

여행증 발급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여행증은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 또는 보안서의 ‘2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 근무자의 경우, 신청자가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리원에게 제출하면, 이를 확인·수표하고, 기업소 행정책임자와 기업소 담당 안전원 및 보위원을 거쳐 2부에서 여행증을 발급한다고 한다.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인민반장, 동사무소, 담당 보위원, 안전부를 거쳐 2부에서 여행증을 발급한다고 한다.

여행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다양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여행증 발급까지 10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돈이나 담배 등 뇌물을 써서 여행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빠르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주민들은 뇌물을 주고 여

106 「행정처벌법(2021)」 제299조.

행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공식절차를 통해 여행증을 발급받으면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급받는데 오래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하고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 당연시 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인해 2부 안전원들에게 제공되는 뇌물이 많다고 한다. 여행증을 발급 받을 때 뇌물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 이를 합법적인 비용인줄 알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5년에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안전부 2부에 가서 여행증을 발급받았는데, 평양시의 경우 100위안을 지급하면 즉시 발급되고, 50위안을 지급하면 며칠 걸린다고 한다. 평양 이외의 지역은 10~20위안을 지불해야 하며, 북한에서 여행증 명서 발급이 가장 어려운 곳은 나진선봉 지역인데 그 이유가 증명서 발급을 2부가 아닌 보위부에서 발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여행증 발급 시 평양시, 나선시, 국경지역 등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번호가 부여된 여행증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줄이 그어져 있고, 국가보위성 암호 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일반 여행증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제한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2부 과장 책임으로 여행증 발급이 가능하나, 평양시, 금호지구 등 제한구역으로 가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부장의 결재를 받아 제한구역 시·군에 문건을 보낸 후, 승인번호가 떨어져야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군내 이동은 공민증만 있으면 되는데, 국경지역에서는 공민증 이외에 '외출확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술에 따르면 국경지역에서 같은 군내를 이동할 경우에는 외출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외출확인증에는 인민반장의 확인도장과

동사무소장의 확인도장이 있어야 하고 방문하는 장소와 날짜, 용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여행증 검사는 이동하는 동안 각 지역의 구간별로 존재하는 초소나 열차 등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수의 주민이 단속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행증 없이 지역 간 이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증이 없었던 이유는 주로 복잡한 발급절차와 비용 문제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여행증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여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였다.

여행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이를 빌미로 몸수색, 소지품 검사 등을 하여 다른 위법행위를 밝히는 기회로 이용하고 그 결과 자의적 체포나 구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여행증 없이 이동하다 단속되었는데 집 검사를 하던 중 수첩에 적힌 어머니의 한국 주소가 발각되어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결과 여행증 미소지가 아니라 비법국경출입 시도를 이유로 체포·구금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여행증명서 단속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한편 여행증 미소지를 이유로 단속을 당하더라도 여행증 발급의 경우처럼 뇌물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이동하다가 단속되더라도 대부분은 뇌물로 현장에서 처벌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행증 미소지로 단속을 당했을 때, 북한돈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뇌물 또는 벌금을 내고 해결한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2019년에 역전 안전원에게 단속되어 벌금 5천 원 처벌을 받고, 보증조로 아내의 공민증을 압수당했다는 증언이 있

었다. 한 증언자는 2017년에 여행증 없이 이동하다가 마지막 초소에서 단속되어 초소검열관에게 북한 돈 10만원을 주고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행증이 없는 경우 초소를 우회해 산길을 수 시간 걸어 다시 버스를 타고 가거나 씨비차¹⁰⁷를 이용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씨비차 운전수와 단속원이 사전에 연계되어 있어서 여행증이 없어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요즘 북한에서 타 시도로 이동하기 위해 씨비차를 타면 차장이 초소에 사전에 뇌물을 고이기에 여행증을 보이지 않고 초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행증을 발급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뇌물을 제공해야 해 번거로워서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행증 단속으로 행정처벌인 노동교양처벌을 받은 사례도 수집되었다.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에 이동하던 기차 안에서 여행증 단속을 받고 여행질서 위반행위로 노동교양처벌 6개월을 받았다고 한다.

(2) 숙박등록제도

북한 주민행정법(2010) 제32조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숙박시키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타인을 숙박시킬 집 주인이 인민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숙박등록부에 기재하면, 인민반장이 같은 내용을 분주소에 비치된 숙박등록부에 다시

등록한다고 한다.

군중신고법(2019) 제10조에 따르면 숙박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숙박자는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신고대상이 되며, 인민반은 이러한 위법한 숙박자를 사회안전기관 등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¹⁰⁸ 또한 인민보안기관은 숙박등록을 어기는 행위를 단속하며(인민보안단속법 제33조), 숙박등록질서를 어긴 자에게 벌금 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줄 수 있다(행정처벌법 제248조). 이런 방식으로 북한 주민의 이동에 대한 통제는 출발할 때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 도착했을 때에도 지속된다. 여행증을 발급 받고 해당 지역에 들어왔다고 해도 숙박등록의 대상이 되며, 미등록 시 숙박검열을 통해 단속을 받게 된다. 한 증언자는 설사 여행증 없이 해당지역에 들어왔다고 해도 인민반의 감시 및 신고와 안전원의 단속을 통해 언제든지 체포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숙박검열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숙박검열은 담당안전원이 인민반장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하여 집안에 숙박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미등록자가 있는지를 검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방문검열 방식으로 인해 숙박검열을 할 때 외부인의 무허가 숙박뿐만 아니라 불순녹화물 시청, 무허가 전자제품 사용, 매춘 등 다른 위법행위도 단속한다고 한다. 이처럼 숙박검열은 북한주민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넘어 다양한 차원의 통제를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숙박검열에서 미등록 숙박으로 단속되었을 때 뇌물을 주고 처벌을 무마한 경우도

108 「군중신고법(2019)」 제10조(인민반신고체계의 확립) 인민반을 통하여 빠짐없이 신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은 새로 이사를 왔거나 간 주민, 미거주자, 비법적인 숙박자, 직장리탈자, 범죄요소를 비롯하여 의심되는자들을 제때에 장악하여 신고접수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07 '씨비차'는 '별이버스'라고도 불리는데, 기관·기업소의 이름을 빌려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버스를 말한다.

있었다. 2017년에 할머니 댁에서 숙박하던 중 숙박검열에 걸려 벌금으로 북한돈 5천원을 내고 처벌을 무마했다고 한다. 2019년에 탈북한 증언자에 따르면 국경지역에서는 숙박검열이 비법월경자 단속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제가 사는 곳이 국경지역이라 비법월경자 단속을 위한 검열이 1년에 4번 정도 시행되었고, 특별경비주간(설 전, 애도 기간 등)과 밀수철인 여름에는 검열이 강화되어 그 빈도가 늘었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1) 거주이전의 제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지 자유에는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한 장소에 거주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¹⁰⁹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려면 ‘퇴거등록’과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퇴거·거주등록을 위해서는 ‘퇴거등록신청서’와 ‘거주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민보안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¹¹⁰ 신청서는 인민보안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퇴거·거주등록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담당 안전원과 담당보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선택한 거주지로 이

¹⁰⁹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7, Article 12: Freedom of movement, paras. 4-7.

¹¹⁰ 「공민등록법(2015)」 제4조, 제14조.

전할 때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며, 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받는 등 거주이전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양강도 혜산시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적이 있다는 증언자는 북한에서는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담당자들을 찾아 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거주이전 절차는 우선 보안소로 가서 ‘거주 퇴거 신청서’를 구입합니다. 장당 북한 돈으로 500원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민반장에게 찾아가 ‘다른 동으로 가겠다’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인민반장이 도장을 찍어주고, 동사무소를 가서 ‘동사무소 공인명판’을 받고, 그 후 다시 보안소 내 담당 보안원 사무실로 찾아가 보안원에게 신고하고 보안원의 보장을 받은 후 담당 보위지도원을 찾아가 신고하고 보위지도원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 후 이전할 곳의 보안소로 가서 도장들이 찍힌 신청서를 담당 보안원에게 제출합니다. 그 보안원이 신청서를 보관하고 주민등록 대장에 ‘아무개가 여기로 이전하러 왔다’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보위지도원을 찾아가 ‘제가 지금 왔습니다’라고 신고합니다. 인민반장이나 보안원, 보위원을 찾아 갔을 때 없는 경우가 있어 다시 찾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거주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성 비용이 필요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진술에 따르면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해당기관에서 거주등록이나 퇴거등록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2017년 경에 ‘뇌물을 받지 말고 웬만하면 다 거주등록을 해 주라’는 방침이 있어 거주이전을 승인받기가 조금 수월해졌다고 한다.

한편 다른 시·도로 이전하거나, 특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이전하기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특별 지역으로 이사할 때 해당기관의 승인거부로 거주등록에만 6개월 이상 걸렸다고 한다.

“2017년 이사를 하면서 거주등록을 하려고 하였지만, 보안서에서 해주지 않아 고생을 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탈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 오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보안서에서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같이 보안서로 가서 거주등록을 부탁하였지만, 6개월 동안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안서에 담배 1막대기(1보루)와 북한돈 10만원을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감자가루 공장이 있고, 김정은이 자주 현지지도를 오다보니 그렇습니다.”

평양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평양시 거주대상인지 여부와 중심구역 거주가 가능한지, 그리고 1선도로 주변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평양시에서 입사증을 취득할 때 많게는 13개의 확인 도장이 필요하다는 증언도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평양시민인 남성과 결혼하면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평양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증언도 있었다.

“평양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돈이 많으면 됩니다. 건설권은 중앙당 8부와 인민보안성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200제곱미터 등을 30만 달러 정도에 파는데, 그것을 사면 평양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 돈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평양시 거주가 됩니다. 또 여성이 결혼을 하여 거주할 수 있고, 운동을 잘하는 경우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에 들어가는 경우 평양에 살 수 있습니다.”

(2) 강제이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에 강제이주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았다.¹¹¹ 강제이주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하며, 북한에서는 이를 ‘추방’이라고 한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강제추방은 거주 제한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강제이주조치는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이주는 한국 정보 접촉, 마약 밀매, 탈북 및 정치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졌다. 강제이주는 해당기관이 현재 거주지의 살림집 이용허가를 취소·박탈하고 강제이주하려는 지역에 주거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추방되는 대상의 가족 전체가 함께 강제이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한 증언자는 2017년에 친구의 아버지가 장성택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친구가 대학에서 강제퇴학 당하고 가족과 함께 강제추방되었다고 진술했다. 2018년에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다가 109연합지휘부에 발각되어 노동교화형 3년을 받고 교화소로 수감된 마을 주민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농촌지역으로 강제추방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추방되는 지역의 대부분이 탄광지역이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추방자 자녀들의 경우 추방지에서 부모와 동일한 직장과 거주지를 대물림하여 배정받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법질서 위반 책임을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부과하는 연좌제라는 또 다른 권리침해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¹¹¹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7, Article 12: Freedom of movement, para. 7.

“아버님이 17세 때 평양에서 신양군으로 추방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노동신문 창고장으로 일하시다가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추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추방된 이후 산골에서 차별과 냉대 등을 받아서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힘들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아버님으로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이주지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집은 없었고 제가 소학교(7살)때 아버지가 부지를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주된 곳에서 농장에 배치 받았습니다.”

다. 출국의 제한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기 위해서는 여권과 같은 출입국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의 권리는 여행에 필수적인 문서를 발급받을 권리를 포함한다.¹¹² 자국을 떠나 여행하는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올 때도 여권 발급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출국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로 ‘여행서류 발급에 있어서 행선국 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초청 요구’, ‘여행서류 발급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지연’, ‘행정서비스 비용을 상당히 초과하는 고비용 요구’,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여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 등을 지적하였다.¹¹³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은 북한 주민에 대한 여권의 발급, 기간 연장 등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북한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았을 때, 여권 발급을

¹¹² *Ibid.*, para. 9.

¹¹³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7, Article 12: Freedom of movement, para. 17.

위한 준비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발급과정에서 뇌물이 필요하며 발급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중국 친척 방문 목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수표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거주지의 인민반장·담당안전원·담당보위원, 기업소의 지배인·당비서·담당안전원, 그리고 시당 조직부 지도원, 시안전부 담당안전원, 시보위부장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중국 친척방문 목적으로 여권을 받은 후 조국(북한)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양강도의 경우에는 중국 친척 방문 신청자에게 여권 발급이 제한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여권을 발급하는데 나이 제한 등 제한사유가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여권 발급 기준은 성별 제한은 없는데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선(북한)에 가족이 있어야 하고 결혼해 자식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나이도 해당되지 않았지만 돈을 많이 써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였고 돈을 써 발급받았습니다. 인민반장 등의 보증 수표를 받을 때마다 미화 50달러를 지급하였고, 시보위부 외사지도원에게 300달러, 도보위부 외사지도원에게는 7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013년에 출입국법을 수정보완하면서 국경통과지점에 통행검사기관을 설치하고 출입국증명서 소지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주민에 대해서는 형법(2022) 제260조의 국경비법출입죄를 적용하여 단속·처벌하고 있다.¹¹⁴ 그러나 출입국증명서 발급을 어렵게 하면서 이를 소지하

¹¹⁴ 「형법(2022)」 제260조(국경비법출입죄)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경을 비

지 않고 국외로 이동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출국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강제송환되거나 자진 귀북한 주민들을 보위부 등 조사기관에서 탈북경위, 탈북목적, 탈북 후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벌하는데, 처벌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처벌 없이 석방된 경우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탈북한 경우로 조사 과정에서 배고픔 등 단순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탈북이나, 탈북기간이 짧은 경우, 뇌물을 제공한 경우로 처벌 없이 풀려났다고 한다. 행정처벌을 받은 사례로는 중국 체류 기간이 짧고, 돈을 벌기 위해 단순 비법월경했던 경우였으며, 6개월 이하 노동교양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체류 기간이 긴 경우에는 ‘국경비법출입죄’로 노동교화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도 수집되었다.

“중국에 돈을 벌기 위해 2012년 양강도 인근 산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여 2016년 중국 길림성 일하던 식당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2016년 함경북도 군보위부로 강제송환 되었고, 재판 결과 비법월경죄로 노동교화형 1년8개월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출입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인권보호의 핵심요소로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수호하는 절차적 수단(procedural means)으로 기능한다. 자유권규약 제14조는 당사국에게 사법제도를 통해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은 재판결과의 실질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의한 재판, 법원의 독립, 공정한 공개심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형사소송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에 제출한 제3차 UPR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회주의헌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고하였다.¹¹⁵

¹¹⁵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s. 24–29.

가. 법원에 의한 재판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할 때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원이 아닌 곳에서 형사상의 죄를 결정 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형식상 죄의 결정’의 의미는 자유권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규약상 형사적인 성격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법상의 기준과 관계없이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권규약 제14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¹¹⁶ 따라서 어떤 처벌이 북한 국내 법상 행정적 성격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따라 형사적인 성격의 제재로 볼 수 있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은 행정처벌법에서 행정처벌의 한 유형으로 ‘노동교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¹¹⁷ 행정처벌법(2021) 제344조에 따르면 노동교양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사회안전기관 등 행정기관에서도 줄 수 있으며, 기업소와 단체도 줄 수 있다. 행정기관에 의한 노동교양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수집되었는데, 증언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교양처벌은 실질적으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으로 징역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형사적인 성격의 제재를 (재판 없이) 행정기관이 부과하여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에 여행증

¹¹⁶ Arkadyevich v. Russia, Communication No.2141/2012 (2015), para. 7.6.

¹¹⁷ 「행정처벌법(2021)」 제18조.

명서 없이 평양시에 갔다가 안전원에게 단속되어 평양시 비법출입을 이유로 노동교양처벌 6개월을 받아 노동교양대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노동교양대에서 건설작업에 동원되었는데, 노동교양대 인근 산 중턱을 깎아서 목장을 만드는 건설 작업을 매일 12~13시간 이상 했다고 한다. 주어진 할당량을 미달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형사소송법(2021)에 따르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사건의 수사과 예심은 보위기관이 관할하고,¹¹⁸ 그와 관련된 재판은 도(직할시)재판소가 제1심 관할로 되어 있다.¹¹⁹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의 혐의로 형사재판 없이 보위기관에서 수사와 처벌을 받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2019년에 비법국제통신행위를 이유로 간첩으로 의심받아 구금된 사람이 보위기관에서 수사에서부터 처벌까지 받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나. 법원의 독립성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에서의 ‘법원’은 명칭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설치되고,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말한다.

¹¹⁸ 「형사소송법」(2021) 제50조.

¹¹⁹ 「형사소송법」(2021) 제47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거나 지시한다면 독립성 있는 법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¹²⁰ 법원의 독립성은 판사 임명 절차 및 자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판사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판사의 임기, 보수 등 판사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¹²¹

북한에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있으며, 특별재판소에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가 있다.¹²² 북한 사회주의헌법(2019)에 따르면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는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인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¹²³ 또한 사회주의헌법(2019)과 형사소송법(2021)에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⁴ 그런데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모든 국가기관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운영되며, 조선노동당

120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a fair trial, para. 19.

121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a fair trial, para. 19.

122 「재판소구성법(2011)」 제3조(재판소 조직)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군인민재판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헌법(2019)」 제159조는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최고재판소에서 중앙재판소로 용어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

123 「사회주의헌법(2019)」 제167조, 제168조.

124 「사회주의헌법(2019)」 제166조; 「형사소송법(2021)」 제268조.

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이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⁵ 이 같은 헌법상의 당 우위 및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재판소의 상급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¹²⁶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중앙재판소 등 북한의 사법기관 역시 노동당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는 북한에서 법은 정치에 복무하고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제정뿐만 아니라 법집행과 법해석도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당의 영도 밑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설명을 통해 확실해진다.¹²⁷ 재판기관은 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과 함께 당과 국가의 안정을 보위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관이라고 강조되고 있다.¹²⁸ 이는 재판소의 임무로 재판활동을 통해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고 계급적 원수들과 적극 투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서도 드러난다.¹²⁹

북한의 판사는 인민회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고, 그 외 중앙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며,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¹³⁰ 판사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고, 자신을 선거한 인민회의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된다.¹³¹ 그런데 북한은 인민참심원제도를 채택하

125 「사회주의헌법(2019)」 제5조, 제11조.

126 「사회주의헌법(2019)」 제 87조.

127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2009, 320-321쪽.

128 북한 인민보안성출판사,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2009, 25쪽.

129 「사회주의헌법(2019)」 제162조.

130 「사회주의헌법(2019)」 제91조, 제140조; 「재판소구성법(2011)」 제4조; 「지방주권기관법(2011)」 제10조.

131 「사회주의헌법(2019)」 제60조; 「재판소구성법(2011)」 제7조, 제8조, 제91조 및 제140조.

고 있어 1심 재판에서 판사는 인민참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통제받는다. 북한에서는 1심 재판을 구성하는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의 다수가결로 판결이 채택되기 때문이다.¹³² 인민참심원은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해결하는데 참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대표자로 1심 재판에만 참가하며, 판사와 함께 사실인정에서 판결 채택까지 재판심리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관여한다.¹³³ 인민참심원은 판사와 마찬가지로 각급 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는데, 그 자격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민참심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없었으며, 설사 있다고 하여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당성이 강한 자들만이 인민참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선출된 인민참심원은 당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한편 북한에서는 검사가 재판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⁴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검사의 재판에 대한 감시 역시 재판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검찰감시법(2012)에 따르면 검사는 국가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국가기관의 결정·명령·지시 등의 충실한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¹³⁵ 또한, 검찰소와 검사를 재판소와 판사와 함께

¹³² 「사회주의헌법(2019)」 제163조; 「형사소송법(2021)」 제270조, 제339조; 「재판소구성법(2011)」 제9조, 제17조.

¹³³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2009, 603쪽.

¹³⁴ 「형사소송법(2021)」 제14조; 「검찰감시법」 제11조.

¹³⁵ 「검찰감시법(2012)」 제7조, 제14조.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서열에서 검찰소를 재판소보다 앞세우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의 규정 방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판사보다는 검사가 재판을 주도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소가 재판소를 감시하기 때문에 재판소에 큰 권력이 없습니다. 뇌물도 검사가 거의 다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검사가 고기를 뜯어먹고, 예심검사가 뼈에 붙은 살을 발라먹고, 재판소 판사가 뼈를 우려먹습니다.”

다. 재판의 공개

(1) 공개심리 및 판결 공개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은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는 모든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재판원칙은 소송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개인과 더 나아가 사회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형사재판에서 강조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공개심리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이며, 심리를 공개할 의무에는 공판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¹³⁶ 그러나 공개

¹³⁶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a fair trial, para. 28.

심리를 받을 권리는 일정한 예외적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은 공개가 제한되는 예외사유로 도덕, 공공질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¹³⁷ 북한은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형사사건을 군중 앞에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회주의 재판의 인민적 성격에 기초한 헌법적 원칙이라고 설명한다.¹³⁸ 다만,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³⁹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¹⁴⁰

한편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판결의 비공개 사유를 더욱 제한하며 심리의 공개보다 판결의 공개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판결의 공개는 판결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거나 판결문 열람이 특정한 이익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면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3차 UPR 보고서에서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¹ 그러나 북한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공개재판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137 「사회주의헌법(2019)」 제164조.

138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2009, 612쪽.

139 「사회주의헌법(2019)」 제164조.

140 「형사소송법(2021)」 제267조.

141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28.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공개재판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심리뿐만 아니라 판결의 선고도 비공개로 한다고 한다. 2019년 인민재판소에서 비법국제통신죄로 재판 받을 때,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변호사 등 재판관계자만 참석할 수 있도록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가족들이 참관할 수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진술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

(2) 현지공개재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공개재판제도를 주민교양을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제도 중의 하나로 ‘현지공개재판’¹⁴²이 있는데, 이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현지에서 조직하는 재판으로 순수한 재판제도라기보다는 피고인과 일반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지공개재판은 범죄발생지나 당사자의 거주지에서 조직되어, 그 지역 주민들을 재판에 동원하여 그들 앞에 사건을 낱알이 폭로하고 범죄자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 형사소송법(2021) 제282조의 규정대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하며 규탄한 경우도 있었다.¹⁴³ 특히, 재판소의 주도로

142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2009, 614쪽. 범죄발생지나 당사자들의 거주지 군중들 앞에서 하는 재판.

143 「형사소송법(2021)」 제282조(현지공개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와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

현지공개재판을 받고 곧바로 공개처형이 집행되는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2016년에 김정은을 비방하는 낙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여성 3명에 대한 현지공개재판을 직접 보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시안전부 부장 등이 참석했고,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사형대상자들은 선고 후 곧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처형 되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1년에 4명의 북한주민들이 살인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재판은 재판소에서 조직한 현지공개재판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도안전국의 주도로 공개총살 되었다고 한다.

라.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무죄추정은 공정한 재판 및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원칙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이전인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며, 유죄의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부과하여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될 때까지 어떠한 범죄혐의도 추정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이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판사는 재판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되며, 혐의가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¹⁴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예단배제 의무는

.....
¹⁴⁴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a fair trial, para. 30.

모든 국가기관에도 인정되며, 국가기관은 피고인의 유죄를 단언하는 공식 발표를 삼가는 등 재판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¹⁴⁵

북한에서는 피의자의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2019년에 안전부 구류장에 비법국제통신죄로 구금되어 있을 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유죄판결을 받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부에서 교화형 대상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형사재판 전에 피의자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 놓고 그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소위 ‘공개폭로모임’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폭로모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법령에서 찾을 수 없었다. 개인의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인민보안기관이 주관하고, 행정경제사업과 관련 있는 일반범죄는 검찰소에서 주관한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2017년에 양강도에 있는 한 인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영화관 앞에서 공개폭로모임에 세워졌다고 한다. 공개폭로모임은 안전부에서 주관했는데, 안전원들이 피구금자 10여명을 영화관 앞 마당에 세워 놓고 안전부장이 방송 차 안에 앉아서 마이크로 피구금자들의 이름과 죄명을 낭독하며 이들을 비판했다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서는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기타 범죄자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공판절차에 출석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 형사소송법(2021) 제278조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
¹⁴⁵ *Ibid.*, para. 30.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⁶ 또한, 재판을 받는 내내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도록 했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재판을 받는 동안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던 사례들도 수집되었다.

마. 형사재판상 피고인의 권리

(1) 변호권

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을 변호할 권리(변호권)를 가진다. 변호권은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이 선택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이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무료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에 관한 권리를 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국가는 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한다. 실질적인 변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서로 연락할 권리인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164조에서 피소자(우리법상 ‘피고인’에 해당)의 변호권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2021)도 피심자(우리법상 ‘피의자’에 해당)와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¹⁴⁶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부분 참고.

규정하고 있다.¹⁴⁷ 피심자, 피소자, 그 가족 등은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¹⁴⁸ 피심자가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심원이 변호사위원회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여 ‘공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⁹ 공선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이 된다고 규정하여 ‘사선변호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¹⁵⁰ 변호사법(1993)에서도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¹⁵¹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례가 일부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공선변호인보다 사선변호인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기 때문에 형량을 감축하기 위해 돈을 주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의 경찰 신문 단계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피의자는 체포된 즉시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채로 구금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았던 경우는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변호를 준비할 권리’를 침해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¹⁵² 북한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예심에서 형사책임추궁 결정을 한 후 48시간 이내에 피심자에게 통보되며,¹⁵³ 변호인 선정은 예심에서 형사책임추궁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¹⁴⁷ 「형사소송법(2021)」 제54조.

¹⁴⁸ 「형사소송법(2021)」 제56조.

¹⁴⁹ 「형사소송법(2021)」 제59조, 제61조.

¹⁵⁰ 「형사소송법(2021)」 제64조.

¹⁵¹ 「변호사법(1993)」 제4조.

¹⁵² Gridin v. Russian Federation, Communication No. 770/1997 (2000), para. 8.5.

¹⁵³ 「형사소송법(2021)」 제158조.

할 수 있다.¹⁵⁴ 증언에 따르면 수사와 예심단계에서 피의자는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채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변호인 선임 및 조력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재판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7년에 한국 영상물 시청을 이유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변호인 선임권 및 조력권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재판 심리 당일에 재판소에서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변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은 형사소송법(2021)과 변호사법(1993)에서 선정된 변호인이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고,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예심원과 판사는 이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⁵ 증언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권은 수사와 예심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예심이 종결되고 검사가 기소장을 작성한 이후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소 이후에 변호인을 접견하였지만 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한 증언자는 변호인이 재판심리 전에 찾아와 사건 기록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검사의 신문과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북한 주민들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대부분 변호인이 재판에 배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변호인이 재판과정에 배석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지 않

154 「형사소송법(2021)」 제58조.

155 「형사소송법(2021)」 제66조; 「변호사법(1993)」 제9조.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증언자는 재판 당시 재판소에서 선정해 준 변호인이 있었지만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2019년에 밀수행위를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는 증언자는 예심원이 변호인 선임 및 조력권에 대해서 고지는 해주었지만 재판심리 전에 변호인을 만난 적은 없었고, 재판정에서만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재판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변호사법(1993)에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¹⁵⁶ 법과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며 형사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힐 것도 변호사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¹⁵⁷ 변호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 북한이탈주민은 변호인이 재판에서 피고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범죄행위를 실토하게 하는 검사와 다름없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증언도 있었다.

(2) 증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권리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도록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키고 신문받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는 규정만 있을

156 「변호사법(1993)」 제12조.

157 「형사소송법(2021)」 제55조; 「변호사법(1993)」 제10조.

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변론에 유리한 증인을 소환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¹⁵⁸ 북한의 변호사법(1993)에도 “변호인에게 증인과 담화할 권리를 보장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증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법원에서 승인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법원에서 증언할 수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반대 신문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자신의 변론에 유리한 증인을 재판에 불러 신문할 수 없었다. 한 증언자는 피고인으로서 직접 법원에 자신의 변론에 유리한 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장인 판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유리한 증인을 소환할 수 없었다고 한다. 증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3) 진술거부권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 제g호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이는 수사당국이 범죄 자백을 획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리적인 압박이나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백 획득을 목적으로 자유권규약 제7조에서 금지하는 고문 및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대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권규약위원회

158 「형사소송법(2021)」 제309조.

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내법에 자유권규약 제7조에 반하여 획득한 진술과 자백이 증거에서 배제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피고인의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책임은 당사국에게 있다.¹⁵⁹

북한은 형사소송법(2021) 제37조에서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범죄자의 말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범죄자의 말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2021) 제163조에서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자’와 ‘피소자’를 위한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 조항은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에서의 규정과는 달리 예심을 받을 때 예심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그 진술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형사소추 경험이 있는 증언자들 중에서 수사 및 예심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당한 경우가 다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9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a fair trial, para. 41.

바. 상소권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북한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2021)에 따르면 형사판결에 대한 상소가 가능하다.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 관할에 속하지 않은 일반 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¹⁶⁰ 제1심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소자, 변호사,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인 도(직할시)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¹⁶¹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받은 대다수가 재판 후 상소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으나 상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소하지 않은 이유로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를 제기할 경우 과심죄로 가중 처벌될 것이 두려워 상소하지 않았던 경우였다. 한 증언자는 2015년에 인민재판소에서 국경비법출입죄 및 밀수죄로 노동교화형 2년 1개월을 선고받을 때, 판사로부터 10일 안에 상소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으나 상소해도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았기에 상소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4년에 재판에서 형기를 선고받고 구류장으로 돌아왔을 때, 계호책임자가 상소권에 대해 고지하면서 상소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해서 상소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2019년에 재판을 받았다는 증언자도 재판소에서 비법국제통신죄로 노동교

¹⁶⁰ 「형사소송법(2021)」 제46조.

¹⁶¹ 「형사소송법(2021)」 제354조.

화형 4년 3개월을 선고받을 때, 판사가 상소권에 대해 고지했으나 상소하면 과심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들어서 겁이나 상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소를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상소하지 않았습니다. 상소하는 사람은 보통 상소하는 동안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형을 감경 받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괜히 상소를 했다가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한편 현지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 즉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상소권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상소권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해 상소하지 않았던 사례도 수집되었다. 2019년에 함경북도에 있는 한 인민재판소에서 국경비법출입죄로 재판 받을 때, 상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해 상소권 존재 자체를 몰라 상소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소기간은 노동교화형의 경우 10일, 노동단련형의 경우 3일로 주어지는데¹⁶² 상소기간에 상소권을 행사했지만 상급재판소에서 상소를 허락하지 않아 2심 재판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수집되었다. 2019년에 인민재판소에서 비법국제통신죄로 노동교화형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도재판소에 상소 신청했으나, 도재판소에서 허락하지 않아 2심 재판 없이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상소기간에 상소하여 감형된 사례도 일부 수집되었으나, 이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례로 확인되었다. 한 증

¹⁶² 「형사소송법(2021)」 제357조.

언자는 2005년에 인민재판소에서 한국영화를 시청한 죄로 노동교화형 2년을 선고받고 상소기간에 상소했는데 2심에서 뇌물을 통해 유리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형량이 감형되었다고 한다. 2011년에 인민재판소에서 조카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상소기간에 변호사가 상소장을 접수하여 상소결과 2심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사. 형사보상청구권

자유권규약 제14조 제6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었음이 입증되어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유죄판결로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이행보고서와 2016년에 유엔에 제출한 공통핵심문서에서 북한에도 무고하게 체포, 구금되거나 처벌을 받은 개인에게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규정’이 있다고 언급하였다.¹⁶³

하지만 오심에 대한 형사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 법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살다가 오심이 입증되어 사면된 사례는 수집되었으나, 오심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없었다고 한다. 진술에 따르면 2002년에 배

.....
¹⁶³ UN Doc. CCPR/C/PRK/2000/2 (2000), para. 17(d); UN Doc. HRI/CORE/PRK/2016 (2016), para. 52.

우자가 미성년자를 다치게 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화소에 수감되었는데, 4년 후 진범이 체포되어 석방되었으나 오심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고 한다.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란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¹⁶⁴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17조에서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7조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생활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 있으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만 법률 및 규칙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간섭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¹⁶⁵ 이는 당사국의 법체계 안에서 법률에 따라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간섭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164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연관되는 권리로 ‘프라이버시권’이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①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②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③자기 정보 관리·통제 등을 프라이버시권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165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16, Article 17: Right to privacy, para. 7.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9조에서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행정법(2010)¹⁶⁶, 인민보안단속법(2007)¹⁶⁷, 행정처벌법(2021)¹⁶⁸ 등에서는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가택수색’, ‘숙박검열’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교양보장법(2021)을 채택하여 청년들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교양보장법(2021)에서는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과 청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신고·통보의무를 주민들에게 부과하였다. 그리고 법을 어길 경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청년들의 사생활 규제를 법제화하였다.¹⁶⁹

가. 감시 및 통제

북한 주민은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소학교부터 가입된 사회단체에서 벗어날 때까지 당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회조직에 소속되어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당국에 의한 감시와 통제는 거주지 단위

166 「주민행정법(2010)」 제9조, 제10조, 제32조.

167 「인민보안단속법(2007)」 제8조-제53조.

168 「행정처벌법(2021)」 제248조.

169 「청년교양보장법(2021)」 제41조-제45조.

의 인민반 제도, 소속된 조직에서의 생활총화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감시와 통제의 범위에는 공적 생활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생활영역까지 포함된다.

(1) 인민반 제도

북한의 주민행정법(2010)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일정 수의 세대를 망라하여 인민반을 조직하고, 인민반에 반장·부반장을 두며, 인민반장은 리·읍·노동자구·동 등의 해당 사무소의 지도 밑에서 사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⁰ 인민반은 북한 당국이 주민을 감시하는 가장 하부의 조직이며 소속 주민들의 생활지도, 사상동향 파악,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을 수행한다. 북한 당국은 인민반에 인민반장·부반장, 세대주 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안전원 또는 보위원 등 담당 지도원을 두고 관할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주변 이웃들에게 탐문하여 생활의 전반을 직접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수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인민반원 가운데 일부 인원이 보위부 또는 안전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감시를 수행하고, 지시받은 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보위부나 안전부로부터 정보원, 통보원 등의 자격을 부여받아 지시받은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정보원의 경우 비밀정보원으로서 교육을 받고, 서약서를 작성한 뒤 15일에 한 번씩 인민반 주민들이 발언한 내용과 경제수준 등의 동향을 감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위부에

170 「주민행정법(2010)」 제9조, 제10조.

제출한다고 한다. 통보원의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번씩 과제를 부여 받고 탈북민 가족의 동태, 수입대비 지출, 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교화소 출소자들의 동향, 밀수품 판매 가정, 장사 품목, 간부 가정의 생활 형편과 동향, 마약 매매, 외래자 숙박 현황 등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 1회 보위부 또는 안전부 지도원에게 보고한다고 한다.¹⁷¹

“통보원은 외래자 숙박현황, 장사꾼 상품 현황, 주민들 유언비어, 몰래 이사 가려고 준비하는 집, 수입 대비 지출이 맞지 않는 집, 남한 알판¹⁷²과 노래를 보는 집, 개인 소를 가지고 있는 집, 밀수품을 파는 집, 약을 파는 집, 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 농촌동원 등 참여율, 경제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집, 미거주자와 무직자 현황, 근친 결혼, 조혼, 마약매매 등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파악하여 구역 담당 보안원에게 보고합니다. 통보원은 명예직입니다. 보안원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의 가족들은 탈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더욱 엄격한 감시 대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 적발되어 보위부의 수사를 받은 이후 인민반장과 통보원, 이웃주민들로부터 감시를 받은 사례가 수집되었다. 또한 가족의 일부가 탈북한 이후 남아있는 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보위부·안전부의 지시를 받은 인민반장과 감시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집으로 찾아와 가족의 부재를 파악했다는 증언들이 있었고, 강제송환된 이후 보위부·안전부로부터 더욱 감시를 당

171 「주민행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주민은 위법행위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72 CD(Compact Disk) 형태의 DVD 등을 의미한다.

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

“딸이 탈북한 2017년 이후 이웃으로부터 감시를 받았습니다. 옆 집 할머니는 저희 집에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 저희 집 창고 문짝에 귀를 대고 듣다가 들킨 적이 세 번 있습니다. 인민반장은 며칠에 한 번씩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희 가족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2018년 어느 날에는 아들만 집에 남겨놓고 저희 부부가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저희 부부가 중국으로 도망쳤다고 누군가 신고를 해 동 담당보위지도원이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0년 이전 자녀들이 탈북한 당시에는 감시가 없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에 대한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보위부 통보원, 보위부 스파이, 인민반장, 주변 이웃들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은 외출 시 반드시 인민반장에게 보고하고 친척들이 집에 찾아온 경우에도 인민반장에게 보고해야 했다는 것이다.

탈북관련자 이외에도 국군포로, 북송재일교포 및 남한출신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끊임없이 당국에 동향이 보고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남한출신 부모님이 일본에서 살다가 1960년경 귀북했는데 부모님의 출신을 이유로 2017년까지 가족 전체가 동향파악 대상이 되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과 2016년경에도 국군포로와 그의 가족들은 보위부로부터 항상 감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군대에서도 인민반과 유사하게 동료 군인끼리 상호 감시하는 방식으로 사생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군사복무 중 동료 군인을 감시하는 ‘공작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다는 진술

이 수집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부대 내의 보위원이 공작원을 정하고 공작원을 통해서 부대원들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2) 생활총화

생활총화는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소속된 당이나 기관, 근로단체에서 매주·매월·매분기·연별로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말한다.¹⁷³ 북한 당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직들은 소속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생활총화를 실시한다. 생활총화는 보통 매주 토요일 주 1회 실시되며 주민들은 자신이 소속된 학급, 직장, 군대 내 분대, 인민반, 여맹, 청년동맹 등 조직의 총화에 참여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조직에 소속된 조직원들 모두는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노동자나 유학생도 현지에서 진행되는 생활총화에 참석해야 한다고 한다.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마다 직장의 책임자, 세포비서 등이 주도하는 생활총화를 실시했고, 외부에서 청부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참석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해외유학 경험자들은 주 1회 실시되는 생활총화에 무조건 참석해야 했으며, 청년동맹 비서는 보위원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생활총화는 주 1회 참석했고, 학습회, 강연회는 2주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에 모여 인원점검을 하면서 방침,

173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2, 492쪽.

교시 전달 같은 것이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동맹 비서가 생활총화를 주관하고 보위원에게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비유학생은 무조건 가야했습니다. 아파도 무조건 참석해야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한 조직 내에서 지위를 구분하여 생활총화를 진행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대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는 생활총화와 청년동맹원이나 제대군인 출신 등의 당원이 참여하는 생활총화를 구분하여 따로 진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진술인은 군사 복무 중 청년동맹원들과 당원들은 조직별로 생활총화를 실시했고, 일반사병을 포함한 나머지 군인들은 따로 생활총화를 실시했다고 진술하였다.

최근에는 사적 경제활동 등으로 실제 직장에 출근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생활총화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사를 하는 여맹원들이 많아지면서 조직원들을 같은 시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생활총화를 개최하기 어려워지자 수첩에 생활총화를 실시했다고 허위로 기록하도록 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생활총화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검열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이 생활노트와 학습노트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소지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익금을 내고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노동자들은 생활총화에 참여하지 않고 주로 간부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최근에 생활총화는 거의 없습니다. 위에서는 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검열을 위하여 생활총화를 한 것처럼 각 개인이 작성하는 생활노트와 학습노트를 형식적으로 작성해놓습니다. 시여맹위원장, 동여맹위원장, 사상부위원장, 조직부위

원장 등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주민을 초급단체로 불러 면담을 하기도 하고 생활노트를 검사하는 식으로 검열합니다. 여맹에서는 생활총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해외파견노동자의 경우에도 생활총화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작업량이 많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워서 바쁠 때에는 개인 노트에 총화내용을 기재하고 책임자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생활총화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다수의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을 금지하면서 생활총화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나. 불법 가택수색

주거지는 개인의 사적인 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주거지에서의 사생활은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2019) 제79조에 따르면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을 보장받으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보안단속법(2007) 제42조에는 가택수색 등 단속을 실시할 때 단속자의 신분을 밝히고 단속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2021) 제213조에 따라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색·압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¹⁷⁴

¹⁷⁴ 예외적으로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자를 체포·수색·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를 형사소송법(2021) 제139조에서 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면서 단속을 실시하는 자가 신분증이나 수색결정서·압수결정서 등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택수색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인민반장과 기관원이 함께 수색결정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공통된 증언이 수집되었다. 그러나 인민반장 없이 수색결정서를 제시하지 않고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정지역에서는 밀수, 외부인 숙박 등을 단속하기 위하여 불시 가택수색이 자주 실시되는데 보통 수색결정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한다.

가택수색을 주로 실시하는 조직으로는 외부정보 접촉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조직된 109연합지휘부가 있다. 외부정보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단속하는 109연합지휘부에 의해 가택수색이 자주 실시되는데 109연합지휘부는 특히 수색결정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영화를 시청하던 중 109연합지휘부로부터 가택수색을 당했을 때 수색결정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외부정보를 단속하기 위한 가택수색을 여러 번 당했던 경험자는 수색할 때마다 수색결정서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한국 영화를 공유한 것이 적발되면서 109연합지휘부로부터 가택수색을 받은 경우에도 수색결정서나 압수결정서 없이 가택수색을 받았고, 수색에서 나온 노트텔, USB, MP3 등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109연합지휘부의 외부정보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현의

.....

「형사소송법(2021)」 제139조(검사의 승인없이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하거나 뒤쫓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 기술한다.

“2017년 12월경 양강도 혜산시 친구의 집에서 다른 친구와 함께 남한영화를 보던 중 집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고 했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109상무 3명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그 상황에 놀라서 메모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밟았는데 상무가 그 메모리를 발견하면서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영장은 없었습니다. 원래 109상무가 가택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하고 인민반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장 없이, 그리고 인민반장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택수색을 실시할 때 수색결정서가 제시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수색결정서가 제시된 경우는 비법손전화기 사용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체포된 자의 진술로 범죄혐의가 명백해진 경우였다. 한편 숙박검열을 가장한 가택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숙박검열은 등록하지 않은 외부인이 있는지 검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숙박검열을 명분으로 수색결정서 없이 가택수색을 한다는 것이다.

숙박검열을 실시할 때에는 항상 가택수색을 당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0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밤늦게 보위원, 사무장, 인민반장이 숙박검열을 하면서 불순녹화물 CD 또는 전기밥솥이나 전기난로와 같은 전자제품 등이 집 안에 있는지 수색했다고 한다. 2013년 보통 숙박검열을 하는 시간보다 늦은 오전 1시에 인민반장, 안전원, 규찰대원 2명이 찾아와 숙박검열을 가장한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집안에 쌓여있던 비료를 압수해간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5년 평양시에서는 한 달에 평균 1~2회 정도 109연합지휘부나 안전원에 의해 숙

박검열을 받았는데 외부인에 대한 검열뿐만 아니라 한국영화나 노래 등의 외부정보를 접촉하는지 여부를 수색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다. 통신 검열

북한의 체신법(2021) 제1조에서는 ‘체신활동’에 전기통신과 우편통신이 포함되며, 제8조에서는 체신활동의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제54조에는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신활동의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1) 휴대전화 검열

북한은 이동통신법(2020) 제5조에서 “국가는 이동통신봉사와 이용에서 신속성, 정확성, 봉사성, 안전성, 문화성, 비밀보장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에 의해 수시로 ‘손전화기’ 검열을 받았다는 다수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비사회주의 ‘그루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손전화기에 불순녹화물이 저장되어있는지, 비사회주의 문자 내용은 없는지 단속하기 위하여 수시로 휴대전화 검열을 실시했다고 한다. 2017년 양강도에서는 길거리에서 통화를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동맹 지도원이 불시에 단속하여 손전화기를 검열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9년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당위원회·청년동맹 등에서 한국 노래·영화·음란물 등의 불순녹화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손전화기를

검열하였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 10월경 길거리에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기만 해도 보안원이 다가와 수시로 검열을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경 어느 길거리에서 보안원이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 동영상이나 노래가 있는지 검열을 하였습니다. 검열에서 외국 동영상 등으로 걸리면 조사도 며칠을 받아야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뇌물을 줘야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검열에 걸릴 만한 것들을 휴대전화에 두지 않았습니다.”

해외유학생이나 해외파견노동자들도 담당 보위원 등 관리자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받는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 전화 통화만 가능한 2G핸드폰만 소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사용 금지규칙을 어겨서 기기를 압수당하고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 감청

북한은 체신법(2021) 제8조에서 전기통신의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전파탐지기, 감청기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통화 내용에 대한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¹⁷⁵ 통화 내용 감청은 주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중국 또는 한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단속

175 「형법(2022)」 제261조에서는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국가보위성에서 감청기계가 달린 커다란 차를 타고 다니며 감청을 실시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5년 이후 비법국제통화에 대한 감청이 강화되었고 포고를 통해 집중 감청을 실시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집중 감청 기간에는 감청차량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감청을 실시했고, 평상시에는 감청기계를 소지한 감청전문 기관원이 담당구역을 돌아다니며 감청을 실시했다고 한다. 2016년 중국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과 통화를 하다가 보위부 감청조에 적발되어 즉시 체포되었다는 다수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8년에는 도보위국이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송금 브로커들을 감청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8년 자택에서 국가보위성 15국 무선반탐국 소속 2명에게 단속되었습니다. 15국 무선반탐국은 전파감지 설비를 통해 국경지역에서의 비법 통화를 단속합니다. 중국의 휴대전화 전파를 감지해 이용자의 위치를 추적해 체포합니다. 저를 단속하러 저희 집에 왔을 때 15국 성원들이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내용을 모두 인쇄해 왔습니다. 제게 그 자료와 수색결정서를 보여주면서 중국손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저와 엄마가 나눴던 메시지 내용과 통화 일시, 통화 시간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감청으로 단속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뇌물로 사건을 무마할 수 있어 실제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다수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감청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원들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국 손전화로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하고 문자한 것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뒤따라 나와 15국 성

원 2명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중국돈 1000~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위지도원에게도 뇌물로 중국돈 1000원 가량을 제공했기 때문에 처벌 없이 경고처리 되었습니다. 15국에게 단속이 되더라도 거의 다 뇌물을 통해 처벌을 무마합니다. 그래서 15국 성원들은 다 잘 삽니다.”

한편 당국의 감청방식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6년 국경지역인 함경북도 온성군 미산리에는 10평 정도의 단층건물에 감청이 가능한 전파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언이었다.

(3) 서신 검열

북한 체신법(2021) 제23조에서는 “체신기관, 기업소는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에 의해 주민들의 서신이 검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신소에서 정해진 체계에 따라 보위원이 서신을 검열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체신소에 상주하는 보위원이 등기·군사·국제우편물 등을 검열하는 것을 본 목격자는 이러한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내용 검열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우편물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저는 우편반에서 구분원으로 일했습니다. 통신원들과 체송원들이 수거해 온 우편물을 지역별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체신소의 1층에 위치한 보위지도원실은 2칸으로 나뉘어 저있는데 1칸은 보위지도원이 있고 나머지 한 칸은 구분원이 이용합니다. 제가 통에다 국제우편물 뿐만 아니라 등기우편, 군사우편, 군인이 개인으로 보낸 우편을 모아 담습니다. 보위지도원이 검열 후 다시 그 통을 그 칸에 두면 제가 올라가서 가지고 나와 다시 분류합니다. 그

래서 북한에서는 등기우편이 보통우편보다 오히려 늦게 배송됩니다. 검열에서 우편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우편물을 영영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파견노동자나 유학생들은 재북 가족과 서신을 주고받을 때 항상 검열을 받았다고 한다. 해외파견노동자로 파견되었던 경험이 있는 한 진술자는 휴가차 북한에 방문했을 때 가족이 보낸 편지를 서신 검열로 인해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이 배급이 중단된 북한의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진술인에게 보냈지만 진술인은 이 편지를 받지 못했고, 이후 가족간 서신 왕래가 단절되어 서신이 검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서신 검열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우편물은 체신소를 통해 발송하지 않는다고 한다.

라. 기타 검열

북한 당국은 가택수색, 숙박검열 이외에도 초상휘장¹⁷⁶ 검열, 공장검열, 전기검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주민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1년에 3회 정도 거주지에서 초상화 검열을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초상화 검열은 조직별로 실시하는데 여

176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초상화가 담긴 배지로 북한 주민은 반드시 왼쪽가슴 위에 초상휘장을 달아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2016, 233쪽;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2권, 2017, 938쪽 참고)

맹원의 경우 여맹위원장이 집을 방문하여 초상화 관리 상태를 검사했다고 한다.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여 사상투쟁의 대상으로 비판 무대에 세웠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외에도 등록하지 않은 가전제품 사용을 불시에 단속하는 전기검열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고, 서양식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등을 금지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길거리에서 수시로 주민들의 차림을 검열했다는 증언 등이 수집되었다. 해외에서 생활을 검열 받은 사례도 수집되었는데 유학 생활 중 복장이 단정한지 여부, 초상휘장을 항상 부착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검열 받았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양식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2017년경부터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 검열도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비사회주의 현상을 없애기 위한 방침’이 지속적으로 하달되었고, 의복 등 생활양식 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특히 2021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에 의해 청년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검열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⁷⁷

“2017년부터 ‘비사회주의 현상을 없앨 데 대한 방침’이 지속적으로 내려왔고, 의복 등 생활양식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여맹규찰대도 조직되어 여맹원들이 전보다 서양식을 많이 따라 한다면 이를 하지 못하게 교양하고 단속했습니다. 외부정보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검열들도 점차 강해졌습니다. 담당보위지도원도 수시로 검열한다며 집을 찾아왔는데 다 뇌물수수 목적이었고 이런 부정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177 북한은 「청년교양보장법(2021)」 제41조 제14항에서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를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45조에서는 법을 어길 경우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이에 세계인권선언은 제18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표명하고 있고, 자유권규약도 제18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본인이 원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이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전자의 자유는 개인의 내면세계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의 하나로 국가에 의한 어떠한 제한도 허용되지 않는 반면, 후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¹⁷⁸ 즉,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사회 안전, 사회 질서 등의 이유로 최소한도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¹⁷⁹

북한은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회주의헌법(2019) 제68조에서 규정

178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2, Article 18: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para. 3.

179 *Ibid.*, para. 8.

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UPR 절차에 참여해오면서 줄곧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공인하였고, 실제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⁸⁰

가. 사상·양심의 자유

(1) 사상 강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가가 하나의 사상을 헌법, 법령 또는 실제 관행에서 공식적인 신념으로 확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국가의 공식신념만을 따르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강제하거나 국가의 공식신념을 따르지 않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한다면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2019)에는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신 사회주의헌법(2019) 제3조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북한의 지도사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당의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2021.9. 수정보충)’(이하 ‘10대 원칙’)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 외에는 어떠한 사상도 허용

180 UN Doc. A/HRC/WG.6/6/PRK/1 (2009), para. 45; UN Doc. A/HRC/27/10 (2014), para. 61; UN Doc. A/HRC/42/10 (2019), para. 65.

하지 않고 있다. 10대 원칙에서 북한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것을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우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를 곧 법으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⁸¹ 이를 통해 10대 원칙은 사회주의헌법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며, 유일적 영도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10대 원칙은 북한주민에게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자가 되기 위한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10대 원칙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 빠짐없이 참여하여야 하고,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에 적극 투쟁해야 하며,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동상·초상휘장·현지교시판 등을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며, 혁명사적지¹⁸²와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 등을 정중히 꾸리고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10대 원칙은 주민들에게 습관화 및 체화되어 있어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인 행동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상교육과 관련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 교육은 유년기부터 음악, 미술, 체육활동의 형태로 시작되어, 소학교부터 고급중학교에

.....

¹⁸¹ 「당의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2021.9. 수정보충)」 1(1).

¹⁸² 북한은 2021년에 제정된 「혁명사적사업법」 제2조에서 “혁명사적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인민들을 주체의 혁명전동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영예롭고도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르는 전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군대, 직장 등 조직생활을 통해 학습회, 강연회 형식으로 계속되고, 인민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증언자는 매일 직장에 출근하면 30분가량 당의 방침이나 신문에 게재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모범사례 등을 낭독하는 독보활동을 한 후 당에 대한 충성노래(우리의 당기, 일편단심 등 충성 맹세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한다. 금요일 저녁에는 생활총화를 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10대 원칙, 비사회주의의 근절투쟁 등에 대한 학습을 했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현지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사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사상교육을 게을리 하거나 불참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되며,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2013~2018년 러시아에 파견되었을 때, 학습강연회에서 배운 내용을 받아 적는 학습장을 한 달에 한 번 당비서가 검사했는데, 제대로 필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폭언을 했다고 한다. 일 년에 2번씩 문답식 학습경연에서 사상검열을 위한 시험도 꼭 보아야 했는데 점수가 나쁘면 재파견 시 추천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이나 지침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10대 원칙을 항상 머리에 새겨 학교에서나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나 이 원칙대로 행동하며 살라고 말입니다. 10대 원칙을 어기고 행동하면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는다고 담임 선생님이 수차례 강조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다보면 세뇌당해서 감히 10대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모든 공공시설과 가정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야 하며, 주민들은 겉옷에 이들의 초상휘장을 부착하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상화 관리는 초상화 옆에 놓인 정성함이라고 불리는 상자에서 벨벳으로 된 자수가 놓인 수건을 꺼내 아침마다 닦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초상화 검열은 단속원이 하얀 장갑을 끼고 초상화 액자를 훑은 후 먼지가 나오면 명부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초상화 관리에 대한 검열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부터 점차 줄기 시작해 2013년부터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초상휘장에 대한 검열은 최근에도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초상화 관리와 초상휘장 부착은 주민들에게 생활화 및 습관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열에서 단속되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검열에서 단속된 경우에는 명부에 이름이 적히고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평양시에서 청년동맹 규찰대가 복장 검열을 할 때, 외투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름이 적히고, 다니던 기업소에 단속사실이 통보되어 그에 대한 처벌로 갱도 작업현장에서 하루 동안 무보수노동을 해야 했다고 한다.

각급 기관, 기업소, 학교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이, 각 시·도에는 혁명사적관과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설치되어 있어 그 장소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것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소학교부터 학교에 출석하기 전에 근처 김일성·김정일 동상 청소에 참석해야 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을 보위하기 위해 순번제로 경비 근무를 서야 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총화제도 역시 북한 주민에게 사상

을 강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생활총화를 통해 이전 한 주 동안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를 기준으로 자신의 조직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 이를 공개하고, 자신을 질책한 후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다른 주민의 과오를 지적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생활총화는 북한주민의 전 생애에 걸쳐 시행된다. 생활총화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교시 및 이를 구현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것을 재어 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10대 원칙이 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활총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사상 통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신념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⁸³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2월 9일 열린 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 제16차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은 “사상과 정치적 견해는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¹⁸⁴ 그런데 북한은 조선인권연구협회가 2014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사상을 조장, 유포시키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183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2, Article 18: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para. 9.

184 UN Doc. A/HRC/WG.6/6/L.12 (2009), para. 45.

명시하였다.¹⁸⁵ 또한 북한 헌법(2022)은 제66조 (반국가선전·선동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상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10대 원칙에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시비증상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화묵과하지 말아야’ 하고, 부르주아사상, 사대주의사상 등 반혁명적 사상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¹⁸⁶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당 안에 어떤 이색적인 사상도 침습하지 못하게 하며, 전당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신념의 기둥으로 삼아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숨 쉴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에는 실제로 당국의 공식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 이외에 그 어떠한 사상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반 또는 조직 단체에 보위부 스파이를 심어 두어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몰래 파악하거나 주민들에게 서로를 감시하도록 한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에 파견되었을 때 사상교육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조별로 보위부 스파이가 있어서 스파이들이 노동자들의 사상 동태를 파악해 보위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위해 북한은 비사회주의 그루빠 등을 조직하여 반혁명적 사상이라고 여겨지는 행위를 단속·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사상검열에서 반혁명적 영상물을 시청 또는 소지한 이유로 단속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¹⁸⁵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201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인권향 유실태 1) 정치적 권리 (5) 사상과 종교의 자유.

¹⁸⁶ 「당의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2021.9. 수정보충)」.

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 종교의 자유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68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1년에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는 청년은 ‘종교와 미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5월 9일에 열린 UPR 실무그룹 제33차 회기 제8차 회의에서도 종교를 “정치체제 전복 또는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나 술책은 묵과하거나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¹⁸⁷ 종교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종교의 자유는 사회질서, 사회안전, 도덕 그리고 인간의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국가의 법으로 허용되고 보장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인식에서도 드러난다.¹⁸⁸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명문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언자의 대다수가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성경책 등 기독교 관련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는

¹⁸⁷ UN Doc. A/HRC/42/10 (2019), para. 68.

¹⁸⁸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201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인권향 유실태 1) 정치적 권리 (5) 사상과 종교의 자유.

데, 당국이 실시하는 반종교 교육을 통해 기독교를 접한 경우였다. 기독교 관련 북한당국의 반종교 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조직생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반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고 한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반동분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증언들도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5년에 계급교양관을 1달에 1번씩 참관해야 했는데, 거기서 ‘종교는 침략자들이 북한에 가져온 것으로 그들이 성경도 가져왔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종교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기독교인들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앞잡이이므로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계층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교육기관, 사회기관, 법기관에서 ‘종교는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며 선교사는 악한 자라고 세뇌가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감히 종교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하지 못했고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도 무섭다고 한다. 인민반 강연 등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반동분자라고 하면서 이들을 보면 신고하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주민들을 모아 놓고 교양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때 처음 ‘성경책 사진, 예배하는 모습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동조직이라고 교육하면서 성경에는 미신에 관한 것이 적혀있어 이것을 읽게 되면 사상이 변질되니 이런 책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반역자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재북시 저 뿐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성경책이 북한 제도에 대해 안 좋게 적어놓은 책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소지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수령 우상화 정책과 주체사상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증언자는

2017년에 함경북도에서 선교행위를 이유로 마을 주민 12명이 보위부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보내준 ‘검은돈’을 받고, 기독교 근거지를 만들어 주민을 선교를 했다는 혐의로 2명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나머지 10명은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을 받았는데, 기독교의 정체를 모르고 속아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한다.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던 기독교집단이 보위부에 발각되어 처벌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9년에 평양시에서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던 단체가 일망타진되어 5명은 공개처형되고, 7명은 관리소로 보내졌으며, 30명은 노동교화형을 받고, 가족을 포함한 관련자 50여명은 강제추방 되었다고 한다. 강제송환 되어 보위부에서 조사받을 때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독교단체와 접촉하였거나 소지품에서 성경 등이 발각되면 가중 처벌된다는 증언도 있었다. 강제송환되어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수감자 3명이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실이 발각되어 조사 후 행방불명되었고, 함께 강제송환된 그 가족 중 1명은 교회에 다녔다고 자백하지 않아 2년 넘게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북한에 있는 종교시설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선전용 종교 시설이라는 증언들도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평양시에 교회와 성당이 있기는 하나, 눈속임 시설로 외국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고, 북한 주민은 출입할 수 없는 금지된 곳이라고 진술했다. 다른 증언자는 칠골교회가 집에서 잘 보였는데,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 문이 열리거나 운영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 미신행위 단속·처벌

북한은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부르주아사상을 비롯한 온갖 외부사상이 발현된 사회주의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로서 사회주의를 파괴하고 당과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⁸⁹

미신행위도 비사회주의적 행위 중 하나로 인식하고 형법(2022)¹⁹⁰ 및 행정처벌법(2021)¹⁹¹의 사회주의 공공생활질서 부문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있기에¹⁹² 미신행위를 주체사상에 반한다는 이유로 단속 및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⁹³ 2015년 이후 형법 개정을 통해 미신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고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강화되었다. 예전에는 돈이나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경우에 노동단련형을 부과했는데 개정된 후에는 미신행위만 해도 노동단련형을 받을 수 있다.

수집된 진술을 통해서도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도 무속인과 같은 미신행위자에 대한 단속이 있었지만 법적 처벌을 받지 않거나 행정처벌로 노동교양처벌을

받는 정도였으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미신행위를 보러 간 주민들의 경우에는 단속되어도 경고만 받고 법적 처벌은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 사이에 미신행위가 성행하자 2018년부터는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 방침이 계속 내려왔고 이에 따라 그루빠가 조직되어 미신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처벌의 수위도 강화되어 미신을 보러 간 주민들도 노동교양처분 3개월을 받았고, 미신행위자들 가운데는 7년이 넘는 노동교화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미신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총살까지 할 수 있다.’는 포고령까지 내려왔고, 이에 따라 실제로 미신행위자들이 처형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2019년에 619연합지휘부가 실시한 미신행위 단속에서 50명가량이 체포되어 평양시에 있는 한 호텔 앞에서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한 점쟁이는 노동교화형 5년을 받았고, 자체로 약을 제조하여 사람들에게 먹인 무당은 형이 가중되어 노동교화형 7년을 받았다고 한다. 죽은 시신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 사이비집단 교주와 성경을 소지하고 기도생활을 한 사람은 사형을 받았다고 한다.

“미신행위로 이렇게 총살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는데, 본보기로 총살까지 한 것 같습니다. 2018년 여름경 지인 중에 도검찰소 검사가 있었는데, 검사 1명당 미신행위자 3명을 과제로 받았다고 말하며, 주변에 미신행위자가 있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189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2권, 2017. 962쪽 참고.

190 「형법(2022)」 제291조(미신행위죄) 미신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행위를 하였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91 「행정처벌법(2021)」 제305조(미신행위) 미신행위를 한 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192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2권, 2017. 1137-1138쪽.

19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법률연구』 2019, 12-14쪽.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공공질서를 저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9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구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타인의 권리 존중·국가안보, 공공질서 등 필요한 경우에만 그러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완전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모든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장은 각 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공고화하며, 인권의 증진 및 보호라는 선(善)순환적 결과를 가져온다.¹⁹⁴

¹⁹⁴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paras. 2-3. 참고.

가. 의견 표명의 자유 제한

(1)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타인의 권리·신용의 존중이나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¹⁹⁵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34호에서 ‘검열 및 제약을 받지 않는 언론이나 기타 매체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67조에서 “공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출판법(1999) 제2조에서는 공민의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의 목적을 “혁명적출판전통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데 복무”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동법 제47조에서는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이용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제48조에서는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을 중지시키고 회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내각 소속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하에 방송을 운영하며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대내외에 선전·보도한다고 한

¹⁹⁵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9(3).

다.¹⁹⁶ 북한에서 언론과 출판 관련 업무를 경험했던 진술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언론과 출판 내용이 정해진다고 증언하였다. 도방송위원회에 소속된 기자들이 주민의 생활상을 취재하면, 방송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편집한 뒤 방송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판지도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자는 불순도서를 회수하여 평양으로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증언하였다.

“양강도 도방송위원회에는 시 군 방송위원회에 내려가 있는 기자들까지 합하여 80여명 정도 있었는데 이 기자들이 양강도에서 개최된 중요한 행사나 양강도 주민들의 생활상 등을 취재하여 방송위원회로 보내면 취재집필담당 부위원장 산하에서 기사를 검토한 후, 편집담당 부위원장 산하에서 기사를 편집합니다. 기자들은 모두 보도 지침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북한정권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민들이 풍요롭게 생활하는 모습들만을 기사로 작성하였습니다.”

(2) '말반동' 단속 및 처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의견 표명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말반동'이다. 말반동이란 최고지도자나 조선노동당 및 북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말 또는 행동으로 비난하는 행위 또는 비난을 표현한 사람을 의미한다.¹⁹⁷

북한 주민들은 말반동을 감시하는 당국에 의해 일상적인 발언까지 통제받고 있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¹⁹⁶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 업무 일체를 계획·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방송 기능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한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2 북한이해』, 312쪽)

¹⁹⁷ 국가인권위원회,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2016, 145쪽 참고.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북한 체제를 한국과 비교하거나, 북한 당국을 원망하는 발언까지도 말반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경 도당 간부가 사적인 자리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를 했고, 주변인들이 이를 신고하여 발언을 한 도당 간부는 가족과 함께 체포된 후 행방불명되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같은 시기 함경남도에서는 군인들이 노부부가 기르던 염소 한 마리를 훔쳐가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화가 난 할머니가 염소를 훔쳐간 군인들에 대하여 '남한의 괴뢰군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주변사람들이 이를 신고했고, 노부부는 다음날 체포되어 정치범으로서 관리소로 보내졌으며, 가축을 비롯한 재산은 압수당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양강도의 국경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사람이 밭에 나무를 심었다는 이유로 양강도 소속 농장으로부터 밭을 모두 빼앗겼고, 밭을 빼앗긴 사람은 '국가에서 배급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따졌으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처벌받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주민들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2018년 5월경 양강도 혜산시 집에서 국수를 만들어 팔던 여성이 도인민위원회 간부에게 '집에서 만들어 파는 것도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반동으로 노동단련대 1개월을 갖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 외부정보 통제

자유권규약 제19조에 2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일한 정보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받으며 여기에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¹⁹⁸ 그리고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외부정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강화를 통해 정보 독점을 유지한다고 지적하였다.¹⁹⁹

이에 대하여 북한은 2014년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에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정보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수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자기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⁰⁰ 그리고 2019년 제출한 제3차 UPR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사회주의 헌법, 고소 및 청원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
¹⁹⁸ UNHRC,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A/HRC/25/63), 2014, para. 29.

¹⁹⁹ UN Doc. A/HRC/25/63, 2014, para. 30.

²⁰⁰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201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인권향 유실태 1) 정치적 권리 (2) 언론·출판의 자유.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 전자인증법, 통신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²⁰¹

과학기술의 발달로 저장 매체 및 공유 방법이 다양해지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과거에 비하여 외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도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하여 외부정보에 대한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 외부정보 접촉

북한 주민들은 외부정보를 영화, 드라마, 음악, 도서, 삐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정보는 주로 해외를 오가는 유학생, 해외노동자, 밀무역을 하는 장사꾼 등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고, 지인들을 통해 전파되었다고 한다. 해외에 자주 오가는 사람들은 세관에서 검열을 받기는 하지만 세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외부정보를 들여올 수 있었고, 고위층을 통해서도 외부정보가 유입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8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노트텔로 한국영화를 보았다는 진술이 수 집되었는데 한국 영화는 북한 영화와는 달리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 재미있었다고 한다. 2019년에도 주변인들을 통해 한국 드라

.....
²⁰¹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30.

마, 영화, 음악 파일을 USB로 공유 받아 노트북, 컴퓨터로 재생하여 외부정보를 접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 2020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도 주변인에게 한국 드라마를 공유 받아 보았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외부정보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젊은 세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통신 기기 조작에 능숙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외부정보의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중학교에 재학 중 학교 친구들과로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공유 받아 시청한 경험이 있다는 다수의 진술이 수집되었다. 2019년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중국 스마트폰으로 영상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외부정보를 접했다는 증언 사례도 있었다. 같은 시기에 다수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영화·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말투나 외모꾸미기, 빗대어 말하는 것 등을 통해서 한국의 영상을 보는 사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학생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부정보에 대한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2020년 초 북한 당국은 학부모들에게 자택에서 자녀들이 불순녹화물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8년경부터 포고문이 내려올 때마다 ‘괴뢰영화’를 시청하다가 단속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단속이 강화되어 중앙에서 109상무가 무산군에 내려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학교 등교, 외부 모임 같은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니 한국드라마,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2020년 2월 말 또는 3월 초경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각서를 받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불순녹화물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2) 외부정보 단속

인민보안단속법(2007) 제22조에는 ‘인민보안기관은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 유포하거나 컴퓨터, 인쇄기 등 등록 질서를 어기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외부정보 접촉과 관련하여 북한 노래가 아닌 노래를 부르거나, 북한식이 아닌 춤을 추거나, 북한식이 아닌 옷차림·몸단장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였다.²⁰²

북한 당국은 특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외부정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정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기관 중 대표적인 것이 109연합지휘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109연합지휘부는 당,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성,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검열조직으로 주로 외국 영상물이나 출판물·라디오·DVD 등에 대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이 조직을 109상무, 109그루빠, 109연합지휘부, 109소조 등으로 부른다. 증언에 따르면 저장 매체가 소형화되어 공유 및 유포가 용이해지기 시작한 시기인 2000년대 후반부터 109연합지휘부 등에 의한 당국의 단속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109연합지휘부 이외에도 312·620·627연합지휘부 등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312연합지휘부는 영상물 등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620연합지휘부는 영화·마약·손전화 등을 단속하는 조직으로, 뇌물로도 사건무마가

202 「청년교양보장법(2021)」 제41조-제44조.

어려워 주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627연합지휘부는 한국영화 공유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109연합지휘부, 보위부, 안전부 등의 기관원들이 외부정보를 단속할 때에는 대부분 수색결정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가택수색이나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수색결정서 없이 109연합지휘부에게 가택수색과 신체수색을 당했고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메모리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또한 2019년 양강도에서는 109연합지휘부가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컴퓨터·노트텔·손전화 등을 검열했으며, 길거리 불시검문에서 손전화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2018년 양강도 헤산시 집에서 usb꽂고 조선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109상무가 집에 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usb 끝에 한국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었고 109상무에서 체포되어 도109상무 사무실로 갔습니다. 2일 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는 매일 하루 종일 2회 받았습니니다. 어머니가 뇌물을 줘서 교양처리로 나왔습니니다.”

2017년경부터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영화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북한 당국은 외부정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옷차림, 생활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단속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나팔바지’, 몸에 붙는 ‘맘보바지’, 아래로 갈수록 발목이 좁아지는 형태의 ‘뿔다바지’와 같은 ‘서양식 날라리풍 옷’ 착용을 단속하였고, ‘서양식 머리 모양’을 단속하여 검정색 이외의 염색은 할 수 없었고, 여성은 귀밑 한 뼘 정도의 머리여야 했으며, 남자는 앞머리가 눈을 덮지 않는 머리 모양으로 깎도록 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8년에는

휴대폰에 저장된 케이크 사진, 장미꽃, 외국 호텔사진, 영어가 있는 그림 등은 외국식이라는 이유로 단속 되었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한국식 표현은 단속의 대상이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7년경부터 생활 전반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원수님 방침이라고 하면서 ‘제 나라의 식대로 살아야 하는데 다른 나라식대로 살면 안된다’며 반사회주의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8년에 들어서서는 더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규찰대가 길거리 곳곳에 서서 검문을 하는데 착용하는 옷이나 머리모양 등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옷이 이상하면 다시 입지 못하도록 무릎부위 등을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머리도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한편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북한에서는 손전화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갱신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했는데 실제로는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업데이트였으며, 주민들은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업데이트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열도 있었지만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조작하여 단속을 피했다고 한다. 그리고 컴퓨터나 손전화로 파일을 재생하면 그 이력이 남아 단속되는데, 북한 당국의 파일 추적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친구들로부터 USB로 공유 받아 컴퓨터와 손전화에 설치하여 파일 재생이력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3)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

북한 내 외부정보가 널리 퍼짐에 따라 북한당국의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영화나 음악 등의 정보를 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년 북한 형법 제183조에는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로 최대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2013년 이후에는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외부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국 영화·노래 등을 접촉·보관·유포한 경우에는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영화·노래 등을 접촉·보관·유포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9년 공개폭로모임에서 한국드라마나 노래를 시청 또는 청취한 20대 남녀 15명에게 노동교화형 1~3년을 선고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수집되었고, 2018년 한국드라마 파일을 지인에게 공유해주었다가 단속되어 노동교화형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2019년 한국드라마를 지인들에게 공유해준 것이 적발되면서 노동교화형 4년이 선고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20년경부터는 외부정보를 유포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인민반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외부정보 접촉·유포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써보도록 하였다고 한다.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필요한 뇌물의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2017년 이후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 등에 대한 방침이 여러 차례 내려오면서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단속을 무마하기 위한 뇌물의 금액도 증가하였다는 공통된 진술이 수집되었다. 2014~2015년 즈음 외부정보 접촉이나 소지로 단속되면 무마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1천 위안 안팎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양강도에서 중국영화 CD를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되어 담배 1보루를 주고 무마하였다는 사례와 미국영화 1편이 단속되어 50위안, 약 8달러 정도의 뇌물로 무마한 사례가 있었고, 한국·미국 소설 파일 단속으로 800위안, 약 120달러의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5년 평안남도에서는 미국영화와 한국노래가 담긴 파일이 단속되어 100달러, 약 700위안의 뇌물로 무마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5년 함경북도에서 한국드라마 여러 편이 저장된 USB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단속원에게 1천 위안을 주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7년 즈음에는 무마에 필요한 뇌물의 액수가 상승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영상·노래 파일은 다른 국가의 파일보다 더 많은 뇌물을 써야 무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함경북도에서 미국영화를 소지한 혐의로 단속된 주민은 단속원에게 2천 위안을 주고 무마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년 양강도에서는 인도영화는 1천 위안 정도, 중국영화는 600위안 정도의 뇌물이면 무마할 수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9년 함경북도에서 미국영화 소지로 단속되면 무마하기 위하여 5천 위안 정도가 필요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영화·노래 파일 등이 단속될 경우에는 1만 위안, 약 1천 5백 달러 이상의 뇌물이 필요하였다는 진술이 많았다. 2018년 함경북도에서는 한국영화 소지로 단속된 주민에게 안전원이 4천 위안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지역에서 2019년 한국드라마 유포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안전부 서장 등에 7천 위안을 상납하고 풀려났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8년 양강도에서 한국노래의 경우 5천 위안, 한국드라마·영화 등은 1만 위안의 뇌물이 있어야 무마가 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2019년 같은 지역에서 안전원이 한국영화 소지로 단속된 아들을 노동교양처별로 처리해주겠다고 그 대가로 1만 위안의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9년 말 평양에서는 한국영상을 보다가 단속되어 1만 달러를 뇌물로 쓰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109그룹과 담당보안원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남한 관련 외부정보로 단속된 경우에는 중국돈 10,000~20,000원을 뇌물로 제공하면 처벌 없이 풀려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교화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중국, 러시아의 경우의 외부정보는 심해야 단련대 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경우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 사실이 발각되면 대부분 교양처분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들 앞에서 공개비판을 받거나 청년동맹원 자격을 박탈하는 정도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2014년 미국드라마와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던 학생이 109연합지휘부에 단속되어 청년동맹에서 강제탈퇴 되었고 군입대 불허 처분이 내려졌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7년에는 친구에게 한국드라마를 공유했다가 109연합지휘부에서 조사를 받고, 학교에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학생들 앞에서 공개비판을 받았으며, 그 결과 퇴학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외

부정보를 접한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노동교화형 이상을 선고했다는 사례도 다수 수집되었다. 2018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고급중학교 학생 두 명이 한국영화, 일본영화,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소년교화소에 수감된 사례가 있었다. 2018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미성년자가 한국드라마·영화 등을 유포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청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8년 12월에 양강도 혜산시 광장에서 공개재판이 있었습니다. 7~8명의 죄수들이 있었고 다 수감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다 한국드라마를 본 죄로 공개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1명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도 한국드라마 1편을 보고 노동교화형 1년을 받았습니다. 공개재판이 끝난 후에 학교 담당 보안원들이 와서 강연을 하면서 이 공개재판을 예로 들면서 학생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11.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²⁰³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⁰⁴ 또한 집회와 결사의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²⁰⁵ 자유권규약원회의 일반논평 25호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투표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으로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⁰⁶

북한도 사회주의헌법(2019)에서 ‘공민’은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다.²⁰⁷ 그러나 북한 형법(2022) 제245조에서는 “국가기관의 지

203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2.

204 *Ibid.*, Article 21.

205 *Ibid.*, Article 21-22.

206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5, Article 25: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the right to vote, para. 12.

207 「사회주의헌법(2019)」 제67조.

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²⁰⁸ 정치협잡행위를 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하여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²⁰⁹

가. 집회의 자유 제약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는 개인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며, 타인과의 연대 속에서 개인의 자주권 행사 능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 및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탄압의 표시에 해당한다.²¹⁰ 집회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집회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집회에 대한 불참의 권리도 포함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퍼레이드, 군중집회, 집단 체조 등에 학생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²¹¹ 특히 집단 체조는 장기간의 혹독한 환경에서 엄격한 연습을 반복해야 하므로 아동의 건강과 행복에 위협하다고 우려를 표하였다.²¹² 또한 북한주민이 집회의 참여를 강요받음으로써 권리를 제약

208 「형법(2022)」 제245조.

209 「형법(2022)」 제246조.

210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7, Article 21: on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paras. 1-2.

211 UN Doc. A/HRC/25/CRP.1 (2014), paras. 172, 175.

212 *Ibid.*, para. 175.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인 집회에 불참할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집회, 시위보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에 집회나 시위의 목적과 날짜, 시간, 장소, 조직자, 규모를 밝히는 통지서를 보낸 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²¹³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주장과는 다르게 집회·시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었다. 주민 누구든 단체행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행동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관제집회나 군중동원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양지역에는 7월 8일 김일성 사망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9월 9일 북한정권수립일 군중시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의 관제집회에 동원된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7년 평양에서 한 해 동안 노동당에 충성, 조국사랑, 제국주의 반대 등을 위해 군중집회가 10회 정도 열렸다는 진술도 있었다. 관제집회, 군중동원 행사는 학교의 특정학년, 특정 기업소를 지정하여 동원하고, 불참하면 비판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하였다고 한다. 동원 결정된 사람이 불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동원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가능하되, 다만 제외를 위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집단체조는 학생동원이 많으며, 공연에 주로 동원되는 대상은 고·급중학교 1~2학년 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아리랑 공연은 4월부터 연습을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동원되다가 6월부터는 종일 동원되고, 10월 10일이 되어야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6월 6일 ‘소년단 창립절’에 실시되는 집단제조에도 전학생이 참석해야 하며, 연습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집단제조에 참여했던 중학생 아들이 연습으로 자주 다치는가하면 육체적으로 힘들어 자주 울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집단제조에 불참하고자 하면 비용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의 학생이 동원되는 아리랑공연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100달러 정도를 납부해야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돈을 낸 학생은 학급 전체 35명 중 7명 정도였다고 하며, 제외자는 연습을 종일 하는 6월부터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과외를 받았다고 한다. 연습이 힘들어 동원에서 빠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 참여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지역의 노동자, 농민, 군인, 전업주부도 매년 6월 25일 열리는 쉼기대회에는 모두 참여해야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평양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사망일, 노동당 창건일 등 1년에 5~10회 동원된다고 하였다. 관제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의 의무이며, 견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 않다면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개인적 판단으로 동원에 불참하게 되면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불참하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김정은이 참여하는 행사를 1호행사라고 해서 9.9 공화국 창건일 등에 김일성광장 앞에서 군중시위에도 동원된 적이 있고, 태양절이나 7.8일 김일성 서거일에 태양궁전에 참배하기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나 서거일에는 동상에 가서 꽃다발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특정 학년을 지정하여 해당되는 학년 전

213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201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인권향유 실태 1) 정치적 권리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체가 동원되거나, 특정 회사가 지정되면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이 동원되는 식이었습니다. 불참할 수는 있겠지만 비판받기 때문에 불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 조직생활 강제와 결사의 자유 부재

자유권규약 제2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단체 중 사실상 국가나 조선노동당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이나 시민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²¹⁴ 또한 모든 주민은 조선노동당의 감시 아래 있는 대중조직의 활동에 가입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²¹⁵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에서 ‘공민’은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다.²¹⁶ 2009년 UPR 보고서에서는 단체의 목적과 구성원의 수, 조직구조 등을 신청서로 작성하여 내각에 보내는 것으로 사회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였다.²¹⁷ 2014년 조선인권연구협회의 보고서에서도 헌법과 법규정에 따라

²¹⁴ UN Doc. A/HRC/25/CRP.1 (2014), para. 182.

²¹⁵ *ibid.*, para. 183.

²¹⁶ 「사회주의 헌법(2019)」 제67조.

²¹⁷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4.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자유롭게 조직,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직 결성에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²¹⁸

모든 북한 주민은 만7세부터 퇴직 시까지 생애주기별로 조선소년단(이하 소년단),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하 여맹) 등 노동당의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의 조직생활은 소학교 2학년인 만7세에 소년단 가입으로 시작되는데, 소년단은 청년동맹²¹⁹이 관리하는 청소년조직으로 초급중학교 학생까지 소속된다. 고급중학교부터는 청년동맹에 가입되고, 중학교 졸업 후 직장에 배치되면 직장의 청년동맹에 만 30세까지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 가입기간 중 입당을 하게 되면 노동당원이 되어 청년동맹원에서 해제된다. 노동당에 입당하지 못한 만 30세 이상의 남성은 직맹 또는 농근맹에 가입된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직맹 또는 농근맹, 결혼 후 전업주부는 여맹에 가입된다. 이렇게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뒤 남성 60세, 여성 55세가 되면 연로보장으로 단체가입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맹원이 조직원으로 유지되는 것은 70세까지라는 진술도 있었다. 단체 가입과 해제의 모든 과정은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장에 배

²¹⁸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201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인권향유실태 1) 정치적 권리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²¹⁹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북조선민주청년동맹(1946)과 남조선민주청년동맹이 1951년 통합하여, 조선민주청년동맹(1951)→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1964)→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1996)→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2016.8)→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2021.4)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치되거나 혼인 등록을 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뤄지는데, 개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여맹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여맹원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가입절차는 따로 없고, 결혼한 여성은 자동으로 여맹원이 되기 때문에 1991년 결혼등록을 하면서 여맹원이 된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조직의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단체소속원에 대한 수행과업 부과, 통제와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원에게는 수행해야 할 의무가 몇 가지 부과되는데, 각종 지원물품 납부, 노력동원, 강연회와 학습 참여, 생활총화 등이다. 청년동맹은 학교 차원에서의 각종 납부물품이나 꼬마계획²²⁰을 맡고 있어, 학생들은 토끼가죽, 파철, 파고무, 파지, 파알루미늄 등을 제출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업주부 여성 단체인 여맹에서도 매년 토끼가죽, 작업용 장갑, 말린 산나물, 기름이 나오는 작물 등의 수행과업부과가 있었고, 필요시 현물과 현금을 추가적으로 내야했다고 한다. 단체를 통한 노력동원은 여맹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대규모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여맹원은 수일씩 건설현장에 동원된다고 하였다. 이를 ‘여맹돌격대’라고 부르고, 여맹원 중 각종 동원에 참여하는

220 꼬마계획은 소년단원들이 좋은 일하기 운동의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세운 계획을 이르는 말(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4권, 2017. 488쪽.)

것이 어려우면 ‘수익금조’로 편성되어 매달 또는 매년 1회 정해진 금액을 단체에 납부하였다고 한다. 직장에 소속된 노동자의 돌격대 동원 차출 등도 단체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무단결근, 수익금 미납에 대한 단속을 직장의 청년동맹에서 실시하고, 단속자를 돌격대에 동원시키기는 경우도 있었다. 삼지연시 건설에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구역 청년동맹에 임무를 주어 돌격대 대원을 더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직장에서 돌격대에 차출되어 1년 동안 동원된 사례도 있었다. 강연회, 학습은 매주 토요일 생활총화를 종료한 후에 하였다고 한다. 내용은 김정은의 교시, 방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3개월 단위로 모아서 강연회에서 전달하고, 조직원들은 이를 받아쓰는 형식이었다고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조직원에게 부과되는 지원물품의 납부, 노력동원, 강연회와 학습 참여에 대해 생활총화로 조직원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총화는 매주 1회의 주총화, 매월 월총화, 분기총화, 연총화 등을 실시하며,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을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생활총화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서 기술한다.

“2019년까지 직장에서 매주 토요일 생활총화가 끝나고 강연회 방식으로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로 김정은의 교시, 방침을 전달 받고 이를 받아쓰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김정은이 말한 내용과 방침을 모아 매주 강연회에서 전달합니다. 사상노트는 분기별로 검열을 받는데, 검열 시 노트 필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 해외파견 제외 등 직장생활에 있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단체소속원에 대한 통제와 불이익은 비판과 처벌이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고급중학교에서 청년동맹은 학생의 비판·처벌을 담당하는데, 학생동맹원이 위법행위, 생활 검열 등에 단속되면 사상투쟁과 책벌 등을 결정하는 것도 청년동맹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상투쟁은 전교생 앞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사상투쟁의 대상이면 청년동맹 책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책벌은 청년동맹 후보맹원으로 처벌되는 것인데 책벌 기간에는 입대와 대학진학이 되지 않고 직장배치에서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노동자에게도 소속단체에 의한 책벌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노동자에게는 금지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한국영화 등을 시청한 것이 단속되어 공개적으로 사상투쟁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어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12. 참정권

세계인권선언은 제21조에서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국민의 의사는 정부권위의 기초가 된다고 명시하였다. 자유권규약에서는 모든 시민은 어떤 차별이나 제한없이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한 정치참여의 권리를 가지며, 정치참여에 있어 차별이나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²²¹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에서는 국가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해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길지 않은 주기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법률로써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²²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선출직 출마 제한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²²³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에서 주민이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

.....
²²¹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5.

²²²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5, Article 25: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the right to vote, paras. 8-12.

²²³ *Ibid.*, para. 15.

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며,²²⁴ 주민에게 선거받을 권리 즉,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²²⁵ 또한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하였으며,²²⁶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하 대의원선거법)에서도 선거의 원칙을 일반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투표로 제시하고 있다.²²⁷ 더불어 사회주의헌법(2019)에는 주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를 위한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가. 선거 참여의 강제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5호에서는 독립된 선거기관이 선거 절차를 마련하여 감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거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²²⁸ 북한은 대의원선거법(2020)에서 선거구 확정, 선거위원회 구성, 선거자 명부 작성, 후보자 확정, 투표절차와 결과 확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선거를 ‘공민’이라면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의무’로 여겨, 북한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는 진술이 많

224 「사회주의헌법(2019)」 제4조.

225 「사회주의헌법(2019)」 제66조.

226 「사회주의헌법(2019)」 제6조.

227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2조-제5조.

228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5, Article 25: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the right to vote, para. 20.

았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 참여과정에서 불참이나 누락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은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거나, ‘꽃제비(노숙자를 가리키는 말)’까지도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선거를 권리로 생각하기 보다는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실질적 인구조사가 가능하고, 이동이나 탈북의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일반 주민에게 선거 시기는 불편한 기간일 뿐, 선거나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선거인명부는 인민반장이 배포하는 양식에 주민이 직접 세대원 명단을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었는데, 각 인민반장을 통해 세대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²⁹ 기재사항은 이름, 출생지, 직장명, 직위, ‘공민증’ 번호 등이고, 작성된 세대명단은 공민증과 함께 안전부에 제출하게 된다. 작성이 완료된 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거장소에 10일전 즈음 게시하여 누락자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3일전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간단한 약력 등이 게시된다.²³⁰ 선거 전날에는 세대별 선거자명부와 함께 안전부에 제출한 공민증을 돌려받으며, 공민증에는 선거번호를 붙여서 주거나 번호표를 따로 배부한다.

인민반장은 선거 전 주민에게 이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데, 선거인명부 작성으로 주민의 주소지 거소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선거 당일에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사유와 행선지를 선거 위원회에 알리고 ‘이동 선거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229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28조-제32조.

230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47조.

선거 증서는 거주지 선거구에서 행선지 인근의 선거구에 문서를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되고, 발급받은 주민은 선거인명부에서 제명된다.²³¹ 이동 선거증 발급자는 선거 불참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상자의 명단을 거주지 선거구에서 행선지 인근 선거구로 사전에 알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거장(투표소) 설치에 주민들로부터 지원금을 거둬 선거 10일 전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의원선거법(2020)에서 선거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한다는 법규정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³² 선거장은 일정한 공간 안에 폐쇄된 별도의 공간인 ‘투표실’을 마련한다. 투표실 안에는 한쪽 벽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걸려있고, 그 아래 책상과 투표함, 필기도구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거장에 따라서는 표어 같은 것이 걸리기도 하는데,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등이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3~5시간 정도로 대체로 오전 중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를 위한 선거장으로의 이동은 인민반별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인민반장은 해당 주민의 투표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주민이 모두 투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 시 주민이 준비하는 것은 공민증과 선거번호표로 공민증 미소지자는 안전부에서 명단 파악 후 선거당일 임시공민증을 발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의 투표는 선거위원회에서 ‘이동 선거함’을 가지고 세대

231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33조-제34조.

232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6조.

를 방문하여 투표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³³

선거장 안에서는 선거위원회 위원이 공민증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와 비교 후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투표용지를 배부 받은 주민은 투표실로 들어가 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투표는 종료된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북한은 대의원선거시 단일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선출을 결정하는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식을 하지 않는 것이 찬성의 의사표시이고, 후보자의 이름에 선을 가로로 긋는 것이 반대의 의사표시이다.²³⁴ 이런 방식 때문에 주민들은 받은 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기만 하였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2019년 3월 대의원선거에 참여하였는데, 선거는 강압적으로 모든 사람이 해야 하며, 무조건 찬성하는 표를 함에 넣는 방식입니다. 누구를 뽑는지 모르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반대한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면 ‘역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사람조차도 임시증명서를 발급받아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나. 직접·비밀 선거의 원칙 위반

자유권규약 제25조에서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5호에서는 시민에 의한 직접 참여의 방식이 정

233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67조.

234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64조.

해져 있는 경우, 어떠한 비합리적인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되며,²³⁵ 투표권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위협, 강요, 유도 또는 조작적인 간섭이 없어야 하고,²³⁶ 부재자 투표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비밀 투표의 요건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²³⁷ 또 투표권자는 어떻게 투표했는지 밝히도록 하려는 강제 또는 강압과 투표 절차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³⁸

북한도 대의원선거법(2019)에서 투표권은 17세 이상의 공민에게 누구나 한 선거에서 한 표를 직접 투표하여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⁹ 또한 투표권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 투표한 사실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으며 투표와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고 하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²⁴⁰ 세부적으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²⁴¹ 투표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고,²⁴² 투표실에는 투표하는 해당자 이외에 누구도 들어가거나 들여다 볼 수 없다고 하였다.²⁴³

한편 북한에서는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선거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할 수 있다고 하여 대리투표를 인정하

.....

²³⁵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5, Article 25: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the right to vote, para. 6.

²³⁶ *Ibid.*, para. 19.

²³⁷ *Ibid.*, para. 20.

²³⁸ *Ibid.*

²³⁹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2조~제4조.

²⁴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5조.

²⁴¹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56조.

²⁴²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64조.

²⁴³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65조.

고 있었다.²⁴⁴ 실제로 부모님이 앞을 보지 못해 선거 시 투표실에 같이 들어가 대신 투표를 하였다는 사례가 있었고, 투표 당일 거주지 이외의 곳에 있어 투표가 불가능하였는데, 거주지 ‘리사무장’이 대리투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이동 선거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동 선거함에 투표용지를 직접 넣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선 가족이 대신 투표용지를 함에 넣는다는 진술이 있었다.

대의원선거법(2019)에서 비밀투표와 관련하여 무기명투표와 투표실 내부를 외부에서 보거나 투표권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권자 식별이 투표용지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진술이 있었다. 우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만으로는 투표권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투표용지의 크기는 8cm×12cm정도이고 대의원 이름만 적혀있고, 투표권자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 투표할 때 찬성 투표용지만 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진술과 강제송환 경험이 있는 사람의 투표용지가 일반주민과 달랐다는 진술이 있었다. 투표권자가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반된 진술이 있었다. 선거장에 설치된 ‘투표실’은 천막이 쳐져 있고, 천막 안쪽에는 투표함과 필기도구가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 투표실에는 투표권자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고, 내부는 천막이나 커튼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다는 진술이

.....

²⁴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67조.

많았지만,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제대로 넣는지 볼 수 있다는 진술과 2019년 3월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실 출입구에서 인민반장이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동선거함’을 이용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에 투표권자는 이동선거함을 가지고 간 선거관리위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반대표시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투표권자가 어떻게 투표하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선거에서 찬성과 반대의사 표시를 할 때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데,²⁴⁵ 찬성은 아무런 표식을 하지 않고 반대는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로 긋는다.²⁴⁶ 투표실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북한은 선거선전에서의 반대투표, 기권, 선거파괴를 선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²⁴⁷ 중학생으로 구성된 가창대를 조직하고 선거독려운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가창대 활동이 선거 독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선거에 찬성투표’, ‘선거에 한 사람 같이 백 프로 찬성투표 합시다’ 등의 구호로 찬성투표를 강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선거구의 선거장 입구 또는 내외부에 걸어 놓는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등의 표어도 가창대의 구호와 유사하였다.

대부분의 진술에서는 반대 투표를 한 경우를 목격하거나 들어본 경우는 없었으며, 반대 투표를 행사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었다. 주민들이 반대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반대 투표를 했을

²⁴⁵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5조.

²⁴⁶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64조.

²⁴⁷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53조.

때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2019년 3월경에 대의원선거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반동으로 처분 받습니다. 인민반장은 책임진 인민반원을 선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합니다.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그냥 찬성투표하여 투표함에 넣기만 하였습니다. 반대투표나 기권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필기구는 없고 투표용지만 받아서 투표함에 넣으면 끝납니다.”

다. 피선거권의 제한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에서는 선출직 출마에 대한 제한사항은 합리적이어야 하고,²⁴⁸ 이를 법률로 정해야 하며²⁴⁹ 선출직 출마를 비합리적인 이유로 차별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²⁵⁰

북한은 대의원선거법(2019)에서 한 선거구에 등록될 대의원후보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고,²⁵¹ 당선자는 후보자들이 받은 찬성표 수가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복수의

²⁴⁸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5, Article 25: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the right to vote, paras. 15-18.

²⁴⁹ *Ibid.*, para. 15.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 거주, 또는 출신과 같은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요구조건에 의해, 또는 정치적 파벌 관계에 의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그 누구도 입후보함으로써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선출직에 출마할 권리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투표권을 가진 이들이 후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²⁵⁰ *Ibid.*, paras. 17-18.

²⁵¹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42조.

후보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²⁵² 또한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는 주민들(선거권자)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한다고 하여 후보자 추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²⁵³ 조선인권연구협회의 보고서(2014)에서도 선출직 후보자 추천은 주민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천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대의원선거법(2019)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후보자 추천, 자격심의 등록의 결정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추천은 일반 주민이나 단체 등에서 할 수 없다는 진술이 있었다. 시군당위원회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시군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로 추천하는데, 나이, 노동당 당원, 성분 등이 조건이었다고 하며, 후보로 결정이 되면 무조건 당선이 된다는 진술이 있었다.

“대의원 후보는 시당위원회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데, 당시 여성 대의원의 조건은 나이, 노동자계급, 시급기관 소속자, 당원 등의 조건을 보고 추천하여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 사업부가 시인민위원회에 있는데, 대의원의 조건을 마련하여 공표하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기업소 등에서 뽑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당원 여부이고, 직업여성 여부를 보았습니다. 대의원 후보로 추천이 되면 무조건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252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74조.

253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35조.

13. 평등권

세계인권선언 제7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어떠한 차별도 없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사람도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자유권규약 제26조에서도 모든 사람의 법 앞의 평등과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위해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고 하였다.

북한도 사회주의헌법(2019)에서 공민은 사회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²⁵⁴ 자유권 규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민을 ‘성분’라 불리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분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차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254 「사회주의헌법(2019)」 제65조.

가. 북한의 사회계층

북한은 성분과 계층을 바탕으로 주민을 구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주민들의 '성분'²⁵⁵은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성된다. 출신성분은 계급적 토대, 즉 본인이 출생하여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부모의 '사회정치생활경위'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성분은 본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업 및 사회 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²⁵⁶ 1950년대 말부터 북한당국은 개별 주민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한 분류작업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개 계층과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계층 및 성분은 기본군중, 복잡한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 3대 계층²⁵⁷과 그 밑으로 56개 부류, 그리고 별도의 25개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⁸

25개 성분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분의 기준은 과거 했던 일, 부의 축적 정도, 정체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분제도는 1957년에 도

255 성분이란 사회 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구분, 곧 사람들의 사상상 구성성분으로서 어떤 계급의 사상상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떤 계급의 사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출신과 직업, 사회생활의 경위에 의하여 사회성원을 사회적 부류로 나눈 것(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1권, 2017. 1357쪽)

256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017. 113쪽, 120쪽

257 『조선대백과사전』과 『김일성 전집』에 의하면 '기본군중(기본계급)'은 혁명운동에서 기본동력을 이루는 계급으로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되며, 혁명가, 전쟁참여자, 혁명가의 자녀(유자녀), 제대군인 등이 이 계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군중'은 가정주위 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남한출신, 귀국동포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대계급잔여분자'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청산되어 남게 되는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로 기술하고 있다.(북한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3, 11, 16, 1996;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45, 2002)

258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017. 122-123쪽.

입하고 주민재등록 사업은 1966~1967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중 노동자, 농민, 농장원, 군인, 학생, 사무원 등이 북한에서 여전히 적용하는 성분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분을 바탕으로 한 3개의 계층과 이를 세분화한 56개의 부류가 북한주민의 일상에서의 차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성분과 계층은 주민대장에 기재되는 사항이라고 하며, 일반 주민은 자신의 출신성분이나 사회성분은 인지하고 있지만, 주민대장의 기재사항인 계층과 부류에 대한 당국의 파악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대장은 시·군사회안전부의 공민등록과에서 주민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데, 북한에서 간부 등용에 토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주민대장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되는 내용은 세대주의 생년월일 등의 신상과 직장이동 상세내용, 세대주 부모의 출생과 전체 행적 등과 함께 기타내용으로 '계급적 토대' 또는 가족 중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외 세대구성원과 4촌까지에 대한 내용은 인원별로 작성하는데,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거주지, 가족관계, 학력과 직업변동이 기재되고 최근 동향 기재란에는 행정처별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민대장은 본인이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주민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당의 간부부와 보위부 그리고 주민들의 토대를 알아야 하는 주요기관의 인사담당자라고 한다. 주민이 직장이동, 거주이전, 결혼·이혼 등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분주소에 공식적으

로 요청을 하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토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데, 연 1회씩 주민대장 실사라는 검열이 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행방불명된 세대원이 있는 경우 또는 국군포로 등 출신성분이 나쁜 경우를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계급적 토대가 북한에서 간부 등용 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문서가 대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민대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토대에 의해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궁금해 할 뿐 볼 수 없습니다. 토대에 의해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자신의 대장을 수정하기 위해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차별 실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성분’은 출생부터 모든 주민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거, 직업, 식량 접근권, 의료, 교육 및 기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은 ‘성분’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²⁵⁹ 또 성분으로 군대, 대학, 조선노동당 등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성분이 나쁘면 채굴(탄광·광산)과 농사일에 배치되고, 그 자손들은 고등교육에서 배제된다고 하였다.²⁶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할 때도 성분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²⁵⁹ UN Doc. A/HRC/25/CRP.1 (2014), para. 271.

²⁶⁰ *Ibid.*, para. 277.

보이며, 성분이 나쁘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²⁶¹

(1) 거주 및 지역 차별

북한 주민은 거주지를 선택하기보다는 ‘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거주지에서 살게 된다. 이후 직장배치와 혼인 등의 비교적 큰 전환점이 되어야 거주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평양시와 지방, 도시지역과 농촌 등 도서 벽지의 거주는 성분에 의해 결정된다. 조부모나 부모의 사회성분이 출신성분이 되기 때문에 조부모나 부모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가 거주지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나 부모가 농장원으로 농촌에 거주하거나 광산노동자로 광산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자녀의 거주지도 농촌이나 광산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부모나 부모가 평양시의 기업소 등에서 일하였다면 그 자녀도 평양시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거주지가 성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후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1990년대 실시된 방침인 ‘410호’²⁶²는 노동자가 된 농장원의 자녀를 다시 농촌으로 돌려보내거나, 부모 중 1명만 농장원이어도 농촌으로 돌려보내라는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성분에 의해 거주지가 결정되는 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며, 최근까지도 농장원 출신은 농장에만 배치하도록 하는 조치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²⁶¹ UN Doc. A/HRC/25/CRP.1 (2014), para. 280.

²⁶² 진술에 따르면 ‘410호 방침’은 1995년 4월 10일 김정일이 내린 방침으로 성분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아는 파악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장원이었던 사람은 농장에 진출하여 농장일을 하라는 것인데, 부부 중 한쪽이 농장원 출신이면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모두 농장원이 되는 방침이라고 한다. 평양지역에서는 410호 대상 지역은 용성구역, 순안구역, 역포구역, 낙랑구역(일부), 사동구역 등이 해당되며, 이 구역 거주민은 직장과 거주지를 중심구역에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평양시를 이외의 다른 지역과 엄격히 구분하여 지방에서 평양으로의 이주를 제한하고, 평양시민에게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양시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국경지역 이외의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때 별도의 여행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양시민증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국경인근은 함경북도 청진시 인근까지 라고 한다. 평양시민은 이동 중 검문초소의 수시 검문에서도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기만 할 뿐, 짐이나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평양시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곳에는 ‘10호 초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의 검문이 평양시민과 지방거주민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외에도 평양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식량배급으로, 최근까지 평양시 주민에게 어느 정도의 배급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평양시 소재 ‘중앙병원’과 특수·전문병원 등 의료시설에 접근이 용이하여 의료서비스 활용면에서도 지방거주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로 인해 안전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평양시민증을 위조 발급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민증을 위조 발급받는 경우는 평양시의 중심구역이 아닌 만경대구역 등 주변구역의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데, 인민반장, 담당안전원 및 담당보위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며 단속을 피해야 한다고 한다. 평양시민증의 위조나 변조 등이 많아지면서 수도방어와 보안 등을 이유로 수년에 한 번씩 평양시민증을 교체발급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진술도 있었다.

한편 평양시 거주자에 대해서도 거주구역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

는 것으로 보이는데,²⁶³ 소위 ‘410호’ 대상이 그것이다. 평양에서의 410호 대상은 평양의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대성구역, 사동구역, 통일거리, 만경대구역 등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중심구역에 있는 직장에 배치받지 못하며, 중심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도 제한되고, 중심구역에 공급하는 물자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양에서의 해당 조치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이뤄졌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주변구역 거주자는 식량공급, 대중교통 혜택 배제 등의 차별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성분에 따른 거주차별 가운데 하나로 강제 이주가 있다. 형벌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을 도심지역이나 특정지역(평양시, 삼지연군 등)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이주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평양시 거주자가 노동교화형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 평안북도 지역으로 이미 추방조치되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양강도 삼지연시 거주자가 노동단련형을 마치고 출소하니 김정일의 고향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살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근의 지역으로 추방되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평양사람들은 ‘중심구역’과 ‘주변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장배치 및 배급 등의 차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410호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중심구역은 중·모란봉·대동강·서성구역 등이 속하고, 주변구역은 용성·형제산·대성구역 일부 등입니다. 주변구역에 산다면 중심구역의 직장에 배치받지 못하며, 중심과 주변은 공급되는 것도 조금은 다릅니다. 지방주민이 평양시민증 발급 받으려면 평양에 거주

263 「평양시관리법(2014)」 제31조(거주승인)에서 “지방에서 평양시에,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해당 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여 주변지역과 중심지역 거주 등에 대한 구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야만 가능하며, 비거주자는 절대 받지 못합니다. 지방주민이 평양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간혹 여자의 경우 평양남자와 결혼하면 평양거주가 가능하고, 지방출신으로 평양에서 군관으로 근무할 경우 그 가족들이 모두 평양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대학 진학 차별

대학진학에서의 성분에 의한 차별은 대학 입학 절차와 연관이 있다.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략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추천을 위한 시험이 실시되고, 결과에 따라 시군 단위의 시험성적으로 순위를 결정한 이후 성적과 성분에 의한 대학 추천이 이뤄진다. 추천을 받은 학생은 해당 대학에서 다시 시험에 응시한 후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대학별 추천인원은 지역마다 정해져 있으며, 성적보다는 성분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에서 치러지는 최종 시험의 응시자격은 추천을 받은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시험성적보다는 추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추천업무는 시군의 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 담당하였는데, 대학진학을 준비하다가 인민위원회 교육부의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어 대학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조부가 한국출신이기 때문에 손자 2명 모두 대학 입학을 위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군복무 후 제대하는 군인에게 대학 추천 자격을 부여하여 진학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의 시험없이 군 당국과 인민위원회의 추천

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군인에 대한 대학 입학 추천도 부모의 성분·계층·부류 등이 주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학교 졸업 직후 군에 입대하여 평양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평양소재 대학에 입학 추천을 받았지만, 농장원 자녀이기 때문에 평양소재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천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도 농장원의 자녀는 대학입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입학이 가능한 대학은 졸업 후에도 농장에 배치받는 농업전문학교와 같은 곳으로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학 입학 추천을 담당하는 인민위원회 부서와 기관원이 뇌물 등을 받고 추천해 주고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지방의 인민위원회 교육과장은 대학추천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뇌물은 기본으로 받고 있었다고 하며, 의학대학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1만 위안 이상을 뇌물로 주어야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2018년 의학대학에 진학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지원이 시작되기 전 시인민위원회의 교육과장과 면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면담에서 교육과장은 저에게 “어머니가 행방불명이라 너와 같은 아이는 대학에 가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은 교육과장의 추천이 있어야 대학에서 입시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합니다. 교육과장의 추천을 받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의학대학에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돈 15,000위안 정도를 뇌물로 주어야 했습니다.”

(3) 직장에서의 차별

북한의 사회생활에서는 성분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고, 이직이나

직종변경이 매우 어려우며, 성분·토대 때문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선택에서 남한출신자의 가족은 노동당의 간부나 보위원·안전원·검사 등 ‘법일꾼’, 행정부분의 간부를 할 수 없으며, 농장원의 자녀는 노동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일반주민은 고급중학교 졸업과 함께 성분·계층에 따라 직업과 진로가 결정된다. 우선 직장에 들어갈 것인지, 대학 진학을 할 것인지, 군입대를 할 것인지부터 성분·계층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인민위원회 노동부에서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분과 계층이라고 한다. 특히 농장원과 광산 노동자의 자녀는 다른 직종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적는데, 이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한 다른 직종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농업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결국 농장에 배치된다고 한다. 광산 노동자의 자녀도 비슷하였는데, 다른 직종으로의 이동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치대학에 입학하여 보위원이 되고 싶었지만, 조모가 남한출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농장원의 자녀가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가 소속된 농장에 다시 배치되었다는 진술이나 광산기업소 소속 노동자의 자녀가 같은 광산에 배치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농장원 자녀나 광산기업소 소속 노동자의 자녀도 돈이나 인맥을 이용하여 다른 직장에 배치될 수 있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농장원에 배치되는 것이 싫어 뇌물을 주고 전문학교에 입학한 뒤 노동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직은 직장 배치와 마찬가지로 성분 등으로 인한 차별이 있었지만, 돈이나 인맥 등 개별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진

술이었다. 아버지의 지인에게 뇌물을 써 병원으로 이직한 사례와 삼촌의 인맥을 이용하여 인민위원회 노동과 문서처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이직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당국의 방침이나 정책으로 강제로 이직되는 사례에서는 강제이직의 기준은 성분과 계층이었다. 1990년대 중반 410호 방침으로 노동자로 일하던 농장원의 자녀가 협동농장에 강제로 이직된 사례가 있었다. 2019년에는 농촌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다시 농촌으로 돌려보내라는 방침이 있었는데, 이 방침도 농장원의 자녀로 노동자가 된 사람을 농장원이 되도록 하라는 것으로 아버지가 일하는 농장에 강제로 이직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농장원도 다른 직종으로 변경을 원하면 지역의 농촌경영위원회의 노동부에 뇌물을 제공하면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농장원이 많기 때문에 이직이 어렵다는 진술도 있었다.

승진에서도 성분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일 교포 귀국자는 ‘법일꾼’이 되더라도 관리자로 승진하지 못하는 것이나, 부모가 남한출신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고 탈북민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 무산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전쟁 당시 의용군이었던 아버지가 남한출신이기 때문에 소속된 기관에서 승진을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아버지가 전쟁 당시 참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토대가 좋지 않아 농업대학을 졸업하였지만, 농장에서 간부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승진 명단에는 올라갔지만 아내의 자매가 탈북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남한 출신으로 의용군으로 북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식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예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토대에 의한 차별이 있습니다. 2018년 외삼촌이 지진관측소에 있으면서 승진을 하려고 했는데 외할아버지 토대에 걸려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4) 기타

북한이탈주민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은 ‘복잡한군중’ 또는 ‘복잡한 계층’으로 분류되는데, 북한당국은 탈북한 주민의 가족을 ‘111호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은 대학 입학 기회 박탈, 노동당 입당 배제, 직업 선택 및 군 입대 제한 등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탈북한 사람의 나머지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거주 시군의 보위부 등에서 수일씩 억류된 상태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상급학교 진학, 직장 배치와 승진, 강제제대와 군입대 불가 등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학입학시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의학대학 등 주요대학 입학 불가 등의 조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부모의 탈북으로 제대 후 직장에 배치되었지만 직장 측에서 받아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거부 이유는 연쇄 탈북 시 직장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처가의 친척이 탈북하였다는 이유로 인민위원회 소속 기관에서 승진을 제외시켰다는 진술도 수집되었다. 어머니의 탈북으로 군복무 중 가정환경제대를 당하였다는 사례와 함께 탈북민 가족은 군에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술이 있었다. 동생이 탈북하였다는 이유

로 농기구 상사의 지배인에서 도시건설사업소의 노동자로 강직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저는 농기계 작업소와 무산군에서 일을 하고 싶었으나, 탈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었고, 직장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郡 소속 사업소 소장에게 뇌물을 주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관원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자 “너 같은 탈북민 자식이 군당사업소에서 일할 수 있느냐”면서 목살하였습니다.”

재일교포 귀국자

재일교포 귀국자(이하 귀국자)는 1959년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귀국협정’에 근거한 재일교포 복송사업에 따라 해방 후 일본에 체류 중이던 동포들이 북한에 집단적으로 귀국한 사람들을 말한다.

귀국자와 그 자녀는 대학입학, 군입대, 입당 등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선택시 ‘당일꾼’이나 ‘법일꾼’으로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귀국자와 그 가족은 ‘째포’로 불리며, 총련계 간부의 가족, 일반인, 오무라 수용소 출신의 가족 등 3가지 부류로 나누어 다르게 차별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조총련 간부의 가족은 안전원이나 당일꾼을 할 수 있으나, 일반인은 입당, 대학진학, 입대는 가능하지만 당기관·안전부·보위부·검찰소 등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무라 수용소 출신은 입당도 불가능하다는 진술이 있었다. 일부 진술에서는 재일교포는 사범대에 진학이 불가능하고, 그 자녀를 ‘행정일꾼’으로 배치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출신성분으로 인해 저나 저의 형제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의 둘째누나가 선생님이 되고자 교원 대학에 진학하려 하였으나, 충분히 성적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부모님이 남한출신에 썩포라는 이유로 교원대학 진학이 거부되었습니다. 제 큰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군의대학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가지 못하고 일반 부대 위생지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제 직장에서도 출신성분으로 인해 직장장과 같은 간부 자리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연고자

중국 연고자는 해방 전 동북 3성 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한국전쟁부터 1960년 무렵까지 북한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인데, 중국에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 ‘연고자’라고 부르며, 북한의 성분제도에서 ‘복잡한군중’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연고자는 인민군 입대, 대학진학 등은 가능하였지만, 입당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 등에서 근무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살고 있는 중국 연고자는 국경출입증(국경지역 주민 발급)이나 여권을 발급받고 친척방문을 할 경우, 친척방문이 허가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방문에 대한 제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출입증과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원칙적으로 연로보장 가능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자녀가 있어야 하며,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한다. 또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중국 친척이 초청한다는 편지와 초청장, 친척의 호구증(호적증명서), 신분증 등이 있어야 한다. 초청장에는 초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북한 친척의 방문목적, 현지체류 비용부담 등이 포함되며 서명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와 제 남편은 중국 태생으로 중국 요녕성 단둥에서 살다가 1961년 북한으로 이주해 온 중국연고자입니다. 북한에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아들들 다 중국연고자가 되어서 북한에서는 입당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부터는 중국연고자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져서 큰 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중국연고자라는 신분을 주기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1. 식량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11조는 모든 사람이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개별적이거나 국제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2호에서는 국가에 따라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는 방법이나 수단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의 접근법 선택에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해방되고 가능한 신속하게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²⁶⁴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25조에서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생산 관련 정책을 농업법(2020), 농장법(2021), 양정법(2021) 등에 반영하였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에서도 식량생산 증

²⁶⁴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to adequate food, para. 21.

대 및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구축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²⁶⁵

가. 식량 상황

사회권규약에서 국가는 기아로부터 해방을 위해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⁶⁶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 보고서에서 농장법 개정과 책임경영 규정 채택 등 새로운 농장경영 방식 도입으로 곡물생산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1년 VNR 보고서에서는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을 목표로 곡물생산 증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와 약한 회복탄력성, 낮은 기계화 수준 등으로 식량생산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식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간척지 개간, 품종 개발, 토양비옥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²⁶⁷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2019년 북한 곡물생산량을 추정 발

²⁶⁵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2 북한이해』, 185쪽.

²⁶⁶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11(2).

²⁶⁷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2021 4.2 목표 2번 농업의 지속가능발전 및 식량 자급자족.

표(2021.6.14.)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생산량 약 490만 톤이 수요량에 비해 약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하여 북한은 여전히 '식량지원 필요국가'라고 하였다.²⁶⁸ 또한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의 원인은 불충분한 농업 생산과 토지, 농기계·연료 부족, 열악한 인프라이고, 한 가지 작물만 지속재배(monocropping)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²⁶⁹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도 북한을 기아 상태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구의 41.6%정도가 영양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²⁷⁰

만성적 식량부족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취한 농업개혁 조치 중 하나는 '포전담당책임제'이다.²⁷¹ 북한은 2012년 '6.28방침'으로 포전담당제를 비롯한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발표하였고, 2014년 농장법에 '포전담당책임제'를 명시하였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과 농장원에게 토지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식량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포전 구성원들이 생산한 농작물의 일정량을 협동농장에 납부하고 남은 잉여 생산

268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2 북한이해』, 185쪽.

269 OCHA,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

270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 GHI)는 기아의 정도를 세계적, 지역적, 국가별로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지수로, 기아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아일랜드 NGO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독일 NGO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 등이 2006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FAO·IFAD·unicef·WFP·WHO 『2022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table A1.1.

271 김정음이 2014년 2월 6일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 보낸 서한, "최근에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옮겨 적용하여 농업생산에서 은(성과)이 나게 하여야 합니다.", 조선중앙통신(2014.2.7.)

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한 제도이다.²⁷² 기존의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를 더 세분화하여 분조관리제 안에서 농장원들에게 포전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고 포전담당자의 노력과 생산결과에 따라 분배 몫을 계산하는 작업조직방법 및 분배방법을 말한다.²⁷³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농장원과 당국의 분배는 3:7이 원칙이고,²⁷⁴ 사전계획분을 제외한 추가 생산량은 농장원이 차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2012년 즈음부터 일부지역에서 시작되어 2~3년 경과 후에 확대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장에서 할당되는 토지는 분조 안의 조원에게 분배하는데, 실제로 세대에 토지를 할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할당된 경작지의 넓이는 세대 당 최소 수백 평에서 1천 평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양강도의 농장에서는 부부와 자녀 2명에 대하여 1,950평이 할당되었고, 1인당 1천 평~1,800평이 할당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평안남도의 농장에서는 세대에 1,800평이 할당되었다는 진술과 함경북도의 농장은 1명에게 할당된 포전이 3천 평이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포전담당책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72 포전담당제의 시범도입은 2002년 '7.1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2004년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분조가 영농방식 및 초과생산분에 대한 자율을 갖는 '포전담당제'를 시범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2003~2007년 당시 2배의 증산을 목표로 하는 '800만 톤 식량증산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국은 농민의 노동의욕 향상이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포전담당제도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중간 생략) 시범적 조치로 실시되었던 포전담당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1, 830-834쪽)

273 『농장법(2021)』 제26조.

274 2012년 소위 6.28 방침 이후 3:7제에 의한 분배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국이 세금 등의 비용으로 30%, 국가수매 40% 그리고 농민 분배 30%로 사실상 농민들은 현금과 현물로 전체 생산의 약 30%를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이다. 2014년 5.30 담화 이후에는 4:6제가 시행되어 농민들이 국가보다 많은 60%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1, 832쪽)

협동경작하는 기존의 운영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절충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운영방식을 고수하는 농장은 포전담당책임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업반마다 포전관리자를 4~5명 가량 두고 500~600평 정도 되는 보여주기 위한 포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포전관리자의 일은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절충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개인에게 지급된 포전 이외에 분조단위로 공동 경작하는 '공동포전'과 농장원 개인의 식량생산을 위한 '식량포전'을 따로 두었다는 것이었다. 분조 아래 조의 구성을 2세대 정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장도 있었으며, 이는 세대 간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는 차원이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또한 농장원에게 포전을 1인당 1천 평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평당 계획량을 정해놓은 경우도 있었는데, 평당 옥수수 2.5kg, 벼 1.5kg이었다고 한다.

곡식 종류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농장원이 포전에 심어야 하는 작물도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농사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은 원칙적으로 당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농장원이 상당 부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장원이 계획분으로 받아 경작하는 작물은 벼, 보리, 옥수수, 감자, 콩 등이었다고 한다. 경작에 필요한 비용은 계획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장원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으며, 당국에서 공급하는 비료, 농약 등은 매우 부족하였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당국에서 공급하는 것으로는 목표 수확량을 달성하기에 매우 부족하였다는 진술과, 1년에 3회 정도 1,000평을 기준으로 비료를 공급하였지만, 중간 차

복이 많아 농장원이 실제 받는 비료는 매우 적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료를 구매해야 했지만, 비료는 단속물품이었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또한 봄철 땅을 갈아 농사를 준비할 때 농장의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이외에 필요한 호미, 낫, 삽 등 농기구는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했다고 한다.

포전담당책임제 시행 초기에는 생산량이 증가하였던 농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비료나 농약 등의 부족으로 증가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장차원에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고 농장원들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가량을 공지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농장차원에서의 생산량은 포전담당책임제의 시행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생산량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분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해 목표수확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높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분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목표 수확량은 경작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봄철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정하였기 때문에 기상이변 등의 재해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쥐 피해로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공출이 많아 곡식을 팔아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할당된 포전에서 계획량을 납부하고 남은 정도의 곡식을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수확철이 되면 도둑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여러 이유로 농장원들이 한해 결산분배를 받은 식량으로는 1년을 생활하기에 부족하였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개인의 포전에 할당된 계획분이 실제

수확량보다 많아 농장의 공동포전 등에서 농장원의 몫으로 분배받은 곡식으로 보충하였다는 진술과 공출이나 각종 지원금을 분배식량으로 납부하지 못해 돼지나 닭 등의 가축을 키워 충당한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포전담당책임제하에서의 종자·비료 값을 분조장 등 중간관리자가 횡령하여 농장원의 개인부담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배분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농장원이 검찰소에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검찰소에서 농장을 조사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경부터 포전담당책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분조 밑에 조를 두어 부부가 농장원일 경우 그 부부의 가족들로 조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확량의 절반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오거나 비료사정이 좋지 않아 수확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국가에 바치기로 처음 계획한 그 양만큼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오히려 모자라면 개인적으로 사서 바쳐야 했습니다. 포전담당책임제가 도입되면서 농장원들에게 분배되는 식량이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준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면서 농장원들의 불만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개인별로 개간지나 소토지를 상당량 경작하고 있어 분배를 받지 않아도 힘들지 않았지만, 포전담당책임제의 시행으로 소토지를 농장에 편입시키거나 개별 경작을 인정하지 않아 농장원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진술이 있었다. 국가계획분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상부에 포전담당책임제의 운영이 잘 되고 있어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 농장원이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는 허위 보고 때문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이러한 허

위 보고로 인해 목표생산량을 높게 잡아 계획분도 매해 상승하게 되고, 미납된 계획분은 다음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농장원이 부담하는 납부량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협동농장의 분조장이나 작업반장 등은 포전담당제의 시행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기존의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한편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와 1995년 수해피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2008년부터 크게 감소하였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지금은 대폭 축소된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원된 식량을 배급으로 받아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의 외교성과를 알리기 위한 강연회에서 중국이 쌀과 비료를 지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재해 시 국제사회에서 지원된 내용을 기업소와 인민반을 통해 공지하여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장마당 등에 돌아다니는 쌀포대에 ‘대한민국’이나 ‘USA’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식량지원 사실을 알았거나, 지원된 쌀이 거주지의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어 알게 되었으며, 지인이 받는 것을 목격하여 지원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직접 지원식량을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2010년 이전 거주지의 배급소에서 한국이 지원한 쌀을 받았다는 진술과 2016년 남포에서 옥수수를 배급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지원된 식량은 양정성의 계획에 따라 지방의 도인

민위원회 양정국에서 인수를 받고, 양정국은 도내 시·군·구역 식량을 분배받지 못한 세대 등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군·구역 양정사업소에서 거주지의 식량공급소로 분배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원된 식량의 대부분은 인민군대, 보위부, 안전부, 군수공장 등에 공급되며 일부만 식량배급소를 통해 주민에게 공급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계획대로 분배한 후 점검단이 돌아가고 난 뒤 전량 회수하며, 일부만 다시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나 특수기관의 경우 식량 하적장인 부두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때 차량의 군번호판을 위장하고, 사복차림으로 부두에 가도록 하였다고 한다.

“국제적 지원이 있으면 국가 내각에서 양정성에 지표를 주고, 양정성 계획에 따라 내각을 통해 중앙당에 보고하고, 배분하게 됩니다. 그 배분계획상 우선 군부대에 공급이 됩니다. 군부대 공급 후 남는 것은 민간인에게 제공되는데 사회 항일투사, 전쟁노병, 과학자, 군수공업부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고 그 이후 일반주민들에게 공급됩니다. 남포항에서 물자를 실어가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군인차량 번호판을 지우고 민간복장으로 간다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통합니다.”

나. 배급제

북한은 1952년 3월 내각결정 제56호로 식량배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식량배급제를 실시해 왔다.²⁷⁵ 1990년 이후 북한의 경제

²⁷⁵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1. 310쪽.

난으로 식량배급제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1995년 말부터는 특정계층 이외의 일반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은 중단되었다. 2002년 ‘7.1조치’로 식량 적절한 가격의 배급제로 전환하고, 2004년에는 군인, 국가안전보위원 등 체제보위계층을 제외한 주요기관, 기업소에서 식량 자력조달제를 강화하였다.²⁷⁶ 2012년에는 ‘6.28방침’으로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제가 시행되고 ‘12.1경제관리개선 조치’로 공장 및 기업소의 기업책임관리제가 시행되어 식량배급제에 변화가 있었다.²⁷⁷

북한은 식량배급대상과 기준을 연령, 성별, 직종, 노동 강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식량배급 대상에서 농장원은 제외되는데, 농장의 생산물에 대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²⁷⁸ 북한이탈주민은 식량배급을 ‘국가배급’과 ‘기업소배급’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국가배급 대상은 소속직장이 없는 미성년 자녀, 전업주부, 대학생이나 퇴직하여 연로보장대상자인 경우 등이며, 기업소배급은 소속 직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배급은 1995년 이후 없어졌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었으며, 체제보위집단과 평양시 등 일

²⁷⁶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1. 312-313쪽 참고.

²⁷⁷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이전에 실시되고 있었던 독립채산제보다 기업의 독자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1: “중앙의 계획경제 방침에 따라 생산 목표량이 하달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각 기업소가 독자적인 생산 계획에 의해 필요한 만큼의 인원과 토지 설비 투자, 원부자재 확충 등을 국가에 요청하거나 자체 조달하는 기업책임관리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2019)」 제33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넓게 리용하도록 한다; 「기업소법(2020)」 제4조(기업소의 경영원칙)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실리를 내도록 한다.

²⁷⁸ 「농장법(2021)」 제48조, 제51조.

부 지역에는 국가배급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배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소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배급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배급소에 통보되어 국가배급에서 제외되고 기업소에서 자체 배급하지 않는 경우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국가배급소에서 배급을 받게 되는데 그건 기업소의 자체배급을 할 능력이 없는 기업소들이 국가배급을 선택하고, 잘사는 기업소들은 기업소 자체 배급을 선택합니다. 세대주가 직장에 다닐 경우 세대주만 직장에서 배급을 받고 가족들은 국가배급소에서 배급을 받습니다. 평양시와 자강도는 대체로 다 봤는데 다른 지역은 배급이 잘 안되고 배급제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가배급의 주기, 양, 곡물의 종류 등에서 평양시와 지방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었다. 식량배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역은 평양시로 보이는데, 2017년 어머니가 지역배급 대상자로 배급표가 나왔고, 쌀이나 옥수수, 감자 등을 받았다는 진술과 2018년 평양시의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식량배급 규정은 하루에 쌀 500g으로 정량보다 조금 부족한 양의 백미를 15일에 한 번씩 받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8년 양강도 보천군에서 감자 수확철에 세대 당 인원을 기준으로 감자를 배급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배급이 이뤄지기 전 1년 분 감자배급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가족 수를 기준으로 8개월분만 나왔고, 수량은 2톤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감자를 농장에서 운반하는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양은 500kg이 안 되었다고 한다. 2018년 양강도 김형직군은 가을에 한 번 각 세대에 감자 100kg을 배급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식량배급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양강도 운흥군에

서 2013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식량배급을 받았고, 2019년까지 식량배급은 없었다는 진술과 같은 지역에서 2019년 식량배급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다는 진술도 있었다.

체제보위집단인 노동당, 안전부, 보위부, 검찰소,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위원회, 군대, 특수기관 등과 우선지급 대상인 교원, 의료인도 국가배급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지방의 시안전부에서 안전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군량미를 지급받아 생활이 어렵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고, 2017년 지방의 시보위부에서 보위원에게 규정된 식량배급량 1일 600g보다 조금 적은 양의 쌀과 잡곡을 5:5 비율로 지급하였으며, 가족에게도 규정에 가깝게 배급하였고, 이는 검찰소나 안전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9년 군대에서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쌀밥이 제공되었고, 이외의 기간에는 쌀과 옥수수를 2:8 비율로 섞어 급식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병사 1인당 하루 식사량은 800g으로 장교와 사병의 차별이 없었고, 명절에는 떡, 돼지고기, 수산물 등이 배급되었다고 하였다. 2020년 국경지역의 부대에서도 병사들에게 매 끼니 쌀밥이 급식되었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군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영예군인에게 2019년 매달 식량이 배급되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체제보위집단이라도 배급 주기나 양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0년 함경북도 소재 군부대에서 병사들에게 제공한 급식은 규정상 옥수수가루 800g과 소금, 된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옥수수가루 100g과 국, 단무지가 제공된 것이 전부였다는 진술과 2018년 지방의 군안전부에서 아버지가 근무하였지만, 식량배급이 나오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체제보위집단 이외 우선배급 대상자라

고 알려진 교원과 의료인에 대한 식량배급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중학교 교원이었던 아버지는 국가배급을 받았지만, 규정된 양의 70% 정도만 받은 사례와 2017년 양강도의 소학교 교원에게 1년에 한번 감자 80kg과 배추 60kg를 배급하였으며, 이외에 다른 식량배급은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9년 양강도의 유치원 교양원도 1년에 한번 감자 200kg과 옥수수 50kg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식량배급도 차이가 크게 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양강도 군급 병원에서 노동자에게 밀·보리·옥수수 5개월분과 감자 7개월분 정도를 1년에 한번 수확기에 지급하였다고 한다. 배급받은 식량으로는 4개월 정도 생활이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함경북도의 인민병원에서는 매달 옥수수 6kg씩 지급하다가 2017년부터는 나오지 않았다는 진술과 2018년 간호원에게 1년에 한번 3개월분 감자배급이 지급되었지만, 농장에서 직접 가져와야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9년 양강도 종합진료소에 근무하던 의사에게 식량배급이 없었다는 사례가 있었고, 2018년 양강도 군지역에 설치된 진료소 근무자에게도 식량배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5~2016년까지 보건과 교육 분야는 우대해서 배급으로 매달 젓은 옥수수 6킬로씩을 배급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옥수수도 끊기고 배급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월급은 2015부터 2017년까지 변함없이 규정상 북한돈 2,450원인데, 여기서 각종 기금을 내야하며 병원에서 행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분담금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제하고 나면 실제로는 1,000원도 안됩니다. 그 금액이면 사탕 10개 정도 살까 말까합니다.”

한편 공장, 기업소 등에 소속된 노동자는 식량공급대상으로 등록되고 공급기준량과 곡물의 종류가 정해진다.²⁷⁹ 체제보위기관 등을 제외한 기관·기업소에서는 식량자력조달을 강화하여 노동자에 대한 식량배급은 기관·기업소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관·기업소의 상황에 따라 식량배급량, 주기, 곡식종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별이 기관 등에는 식량배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9년 평양시에서 기업소 운전원으로 일하였던 노동자는 매월 쌀·설탕·기름·야채·돼지고기 등을 배급받아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2019년 중앙당 산하의 기업소에서 매월 쌀 6kg 정도, 기름 5ℓ, 설탕 2kg, 맛내기 2봉지, 돼지고기 2kg, 닭고기 1마리 정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2019년 지방의 도당 소속기관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매월 옥수수 10kg과 쌀 10kg의 배급을 받았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는 배급으로 쌀 25kg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8년 광산에서 노동자에게 1일 잡곡 700g, 노동자 가족 중 부양 여성은 300g, 자녀는 400g을 기준으로 배급하였으며, 백미 비율은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70%, 4월부터 9월까지 30% 정도였다고 하며 배급은 현물로 지급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지방의 기업소 중 비교적 배급이 잘 되는 곳도 있었지만, 곡물의 종류는 잡곡 위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함경북도의 광산기업소는 규정대로 1일 노동자는 800g, 가족에게는 300g을 배급하였으

²⁷⁹ 「양정법(2021)」 제43조(양곡공급기준량) 노동자, 사무원의 식량은 노동의 힘든 정도와 직종, 대상에 따라 공급기준량과 곡종을 정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식량을 정해진 식량공급기준량, 곡종과 다르게 공급하거나 2종으로 공급할 수 없다. 제44조(식량공급대상의 등록) 중앙양정지도원과 지방정권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을 정기적으로 정확히 등록하고 식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량공급대상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양정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며, 배급량의 80%는 강냉이로 쌀은 명절에만 배급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기업소에서 배급표는 매월 두 차례(7~8일경 및 21~22일경 상·하순) 지급되었고, 거주지 배급소에서 식량으로 바꾸면 되었다고 한다.

식량배급이 되더라도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양을 받았던 경우도 많았다. 2019년 평양시 소재 기업소에서 매달 3~5일분 정도의 옥수수를 배급받았다는 진술과 2018년 평양시 기업소에서 1년에 한번 배급하였는데, 규정보다 적은 양의 옥수수로 제공되어 가족 4명이 2~3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하였다. 2017년 평양시 소재 기업소는 노동자에게 한번 1개월분의 식량을 배급하였으며, 1인당 2kg 정도만 지급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8년 양강도 철도노동자에게 직장노동자 700g으로 규정대로 배급표가 나왔지만, 실제 식량배급은 1년 동안 감자 150kg을 한번 받았다는 사례와 2019년 시인민위원회 기관에서 일하던 가족이 1년에 한번 감자 200kg을 배급받았지만, 운송비용 등으로 2만 원을 내야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8년 함경남도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매달 말린 옥수수 13kg 정도를 받았으며, 받은 옥수수로는 5일 정도 생활이 가능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8년 즈음 양강도의 군수공장에서는 매달 14kg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2~3회 총 150kg 정도를 받았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9년에 양강도 도인민위원회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옥수수 30~40kg 정도의 식량배급만 지급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소속 노동자들에게 식량배급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평안남도의 사업소 소속의 노동자는 약 7년

근무하는 동안 배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년 함경북도의 광산기업소가 운영이 되지 않아 노동자에 대한 배급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근무하던 곳에서 2017년 즈음부터 배급되지 않았고, 2019년 군당 소속 기관에서 일하였지만 배급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기관·기업소에서는 노동자에게 배급할 식량을 직접 생산하도록 하는 ‘112호 토지’라는 것을 운영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112호 토지는 지역 농장의 토지 일부를 기관·기업소에서 임대하여 경작하고, 생산물을 노동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대한 토지가 척박하고, 경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했으며 임대료 부담 문제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함경북도의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배급 대신 협동농장의 임대 토지를 받아 경작하였지만, 토지가 척박하고 농사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토지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많지 않아 다음해 반납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8년 철도노동자로 재직 시 식량 배급으로 1년에 감자 150킬로그램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곡물 배급기준은 일일 직장노동자 700g, 부양 400g, 자녀 300g입니다. 배급표는 기준으로 나왔으나 실제 배급은 배급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장 부서별로 배급표를 가지고 농장에 가서 식량을 구입해 와 직장에서 부서원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배급되는 식량은 매우 부족하여 한 달 정도밖에 생활할 수 없습니다.”

다. 주민들의 식량 확보 노력

북한의 식량배급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동농장에 소속된 농장원이나 농촌지역 거주자는 소토지인 텃밭이나 개간지인 패기밭을 경작하거나 염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산골지역에서는 약초나 나물을 팔아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패기밭은 텃밭이나 부엌밭 이외에 야산에서 화전 등을 일궈 경작하는 것을 말하며,²⁸⁰ 이는 단속의 대상이다.²⁸¹ 하지만 농장원의 대부분은 개간지를 경작하고, 개간한 경작지를 매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장에서 분배받는 식량으로는 생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2019년 농장주변의 산이나 벌판의 토지를 개간하여 3천 평을 개간하였다는 농장원은 오전에는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오후에 소토지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년 함경북도의 농장원은 산을 개간하여 소토지를 만들고, 곡식을 재배하여 식량으로 사용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2019년까지 기업소의 노동자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패기밭 2천 평을 개간하여 옥수수, 콩, 채소를 심고, 돼지와 닭을 사육하여 부족한 식량을 마련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2019년 무직 상태로 거주지 인근의 산에서 개간한 땅을 경작하여, 두부콩, 옥수수 등을 수확하고, 이를 식량으로 소비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²⁸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1. 264-265쪽.

²⁸¹ 「산림법(2021)」 제49조, 제53조, 제65조.

주민들의 산지 개간과 경작은 북한 당국의 산림복구 정책 강화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국토관리 총동원운동 열성자 대회’에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군의 노동당은 주민들에게 패기밭 4m간격으로 1m씩 나무를 심도록 하거나, 밭 한가운데에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전에는 주민의 개간지 경작을 단속하지 않고 세금 명목으로 1년에 1만 원 가량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한다. 산림복구정책으로 단속이 강화되자 주민들은 나무순이나, 묘목을 구해 개간지에 심었다가 뽑기를 반복하여 단속을 피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산림감독원이 개간지에 강제적으로 나무를 심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농장원들 소토지 경작을 합니다. 산이나 벌판에 소토지를 일궈서 옥수수나 콩 등을 재배합니다. 대략 1가족당 최소 300평에서 최대 1정보씩을 소토지 경작을 합니다. 농장원들이 오전에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소토지에서 경작을 하게 됩니다. 소토지 경작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5,000원~10,000원 정도를 땅세 명목으로 걷어갑니다.”

노동자 또한 식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장에서 식량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족 중 누군가는 사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남성 노동자가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개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전업주부인 여성이나 가족구성원이 장사, 밀무역, 샅벌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8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무직으로 있으면서 탄광 등에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거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을 한 증언이 있었다. 2019년 아버지가 근무하던 기업소에서 식량배급을 하지 않아,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음식장사를 하여 생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2019년 함경북도의 장마당에서 자리를 사서 각종 물품의 소매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한 전업주부 여성도 있었다. 2019년 국경 인근 산간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계절마다 두릅, 고사리, 잣 등을 채취하여 중국에 밀수를 하겠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2019년 아버지가 노동자였지만, 배급이 나오지 않아 북-중 국경지역에서 물건을 나르는 짐꾼으로 일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는 진술과 2019년 국경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공사장 등에서 막일을 하여 돈을 벌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소속된 직장에 '수익금'을 납부하며, 출근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자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도 장사, 서비스업, 샷별이, 밀무역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2019년 함경남도 기업소에 문건만 올려놓고 직매점에서 개인상점으로 옷장사를 했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2019년 장마당 입구에서 장사를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9년 양강도 소속 직장에 오토바이를 등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였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차량을 구매하여 시의 택시사업소에 등록을 한 후 사업소에 월 상납금을 바치는 조건으로 택시 일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택시사업소의 차량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행했다고 한다. 2018년 평안남도에서 소속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샷별이를 하였다는 진술과 오징어 잡이 어선에서 일을 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의료인이 수익금을 내고 환자의 집에 가서 진료를 하거나 출산을 도와주는 등의 사적 의

료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2017년 중국에서 밀무역으로 생활물품을 들여와 소매상인에게 넘기는 일을 하였던 사례와 2019년 공장 노동자로 매달 수익금을 내며 송금브로커 일을 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2006~2019년 막내시누이를 도와 밀수를 했습니다. 5월에는 두릅, 고사리를 캐고, 9월부터는 잣을 따니다. 북한에서는 밀수를 해야 장마당에 돈이 돌고, 일반 주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검사, 보위원 등 법일꾼도 밀수꾼에 빌붙어 처벌을 구실로 돈을 받아 삽니다.”

라. 대북제재의 영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2017.7.4./7.28.)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결의안 2371호(2017.8.5.)를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강화된 제재 조치가 실시되었다.²⁸² 이 결의에서의 경제협력 제한 및 금지조치는 북-중 합작회사의 설립·운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경 지역인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에는 북-중 합작회사가 다수 설립·운영되고 있었는데, 합작회사는 북한이 운영하는 공장과 기업소와 비교하여 많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속된 제재조치로 경제협력이 종료된 사업장이 늘어났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선시에서 합작으로 운영하던 호텔은 중국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재 이후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상황이

.....
²⁸²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1 S/RES/2371(2017), Financial 12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개인과의 신규합작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 또는 추가 투자를 통한 기존 합작사업의 확장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되어 임금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함경북도의 광산기업소는 중국과의 합작으로 운영하던 시기에는 임금과 기업소 배급이 끊이지 않고 나왔지만, 제재 이후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²⁸³ 원유수입량의 제한조치²⁸⁴에 따른 영향으로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연료와 전기 부족으로 광산과 탄광 등의 가동이 멈추게 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소규모 밀거래를 통해 중국에서 정제유를 들여오는 것도 어려워졌으며, 휘발유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오토바이 등으로 운송을 하던 주민에게도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국경 지역의 무역회사 폐업도 늘어 지역의 경제가 악화되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중국과의 소규모 밀무역에 주민의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었지만, 연속된 대북제재 조치의 강화와 북한 당국의 국경선 철조망 설치, 밀무역 단속 강화 조치 등으로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이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주민 경제활동의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수공업품의 위탁가공업(임가공업)이 더욱 활성화 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위탁가공 주요 생산품은 여름용 모자와 가방, 가발, 악세서리 등 소형 제품이고, 인민위원회 등이 주도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4년경 국경지역에서 위탁가공 주요 생산품은 속눈썹 정도로 국한되어 있었고, 완성한 제품의 양에 따라 노동자에게 중국 위안화로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2017

.....

²⁸³ UN Doc. S/RES/2270(2016.3.2.)포함된 제재 내역에는 석탄, 철광석이 포함되었지만, 민생목적으로 한 경우는 제외되어 석탄의 경우 제재이후 수출량이 더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S/RES/2321(2016.11.30.)는 북한의 연간 수출량 제한을 두었다가 2271호를 통해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²⁸⁴ UN Doc. S/RES/2397(2017), 4-5는 대북원유 공급 연 400만 배럴(52.5만톤)로 제한, 제재위원회에 매 90일마다 보고 의무(4항), 대북정유제품 공급을 연 200만 배럴(2375호, 2017.9.11.)에서 연 50만 배럴로 상한 축소, 제재위원회에 매 30일 보고 의무(5항).

년 이후에는 대가를 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여름용 모자인 ‘초물모자’는 창의 길이 10cm를 기준으로 쌀 2.2kg을 대가로 주었고, 1cm 줄어들 때마다 200g씩 차감 지급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9년 초물모자의 촘촘한 정도에 따라 1개당 쌀 1.5kg부터 3kg까지 지불하였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임가공업은 최근 국경 지역에서 평안남도나 황해도 지역까지로 확대되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국경지역 교역량의 감소는 물가상승과 하락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에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 품목인 수산물과 약초 등의 가격을 하락시켰고,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 등의 공산품 가격은 높게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평양시에서 식량과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였던 적이 있었고, 주민들은 물가 급등 이유를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하였다는 진술과 같은 시기 평양시에서 환율에 큰 변동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국경지역에서도 중국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8년에는 함경북도 지역 광산기업소의 운영이 중단되고, 물가가 상승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하며, 남포항과 송림항 등 중국과 교역을 활발히 했던 항만의 교역량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8년 가을에 전기와 연료 부족으로 무산광산이 중단되었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 가동이 멈췄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탈북할 때까지도 운영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광산 노동자들의 배급이 끊겼고,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들 중에 목선을 타고 오징어잡이를 하거나 산에서 버섯채취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대북제재로 무역이 막히면서 상품가격도 많이 올라 생활비가 증가했고, 폐업한 무역회사들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산군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 건강권

건강은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오타와헌장’에서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사회권규약에서는 건강권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⁸⁵ 사회권규약에 따르면 규약 당사국은 어린이의 건강, 전염병의 예방, 치료,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²⁸⁶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당사국의 구성원은 보건의료 및 의료시설·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의료시설·재화·서비스의 질이 과학적·의학적으로 양질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²⁸⁷

북한은 2019년 제출한 제3차 UPR 보고서에서 인구의 평균 수명을 높이고, 유아사망률을 낮추며, 숙련된 의료 종사자가 지원하는 출산 비율을 확대하는 등 핵심 건강지표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285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12(1).

286 *Ibid.*, Article 12(2).

287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para. 12.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21년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는 중앙에서 최하위 조직까지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각 도마다 의과대학, 간호사 양성기관 등 의료인력 훈련센터와 의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 예방의학

사회권규약 제12조는 질병의 치료와 통제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질병의 통제를 위해 전염병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개선하며 이와 관련한 면역 프로그램 및 기타 전염병 억제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²⁸⁸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56조에서 국가는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보건법(2012) 제3조에서는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의학이며,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킨다.”라고 밝히며 예방 의학을 통해 위생·영양·전염병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예방접종

북한은 인민보건법(2012) 제10조에서 ‘예방접종은 무료’라고 명

288 *Ibid.*, para. 16.

시하고 있다. 비상방역법(2021) 제44조에서는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은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진을 진행하여 의심환자를 제때에 찾아내며 주민들에 대한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영·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전염병 발병 시 일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으로 결핵, B형간염,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이 실시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무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영유아가 출생하면 진료소에 등록한 후, 접종 시기별로 진료소를 방문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받거나, 유아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진료소 의료진으로부터 접종을 받는다고 한다. 2018년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진술자들은 1~6세까지인 미취학 아동은 진료소에 방문하여 접종을 실시했고, 취학아동은 의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접종을 실시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였다. 2019년 4월에는 진료소에서 유치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한편 임신 중에도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018년 임신부가 진료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3차까지 접종을 해야 했지만 약이 없다는 이유로 1차 접종만 받을 수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각 신생아마다 예방접종 카드가 있어서 예방접종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맞을 기간이 되면 카드를 가지고 진료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고 카드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적습니다. 진료소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되고 겨울에는 땀감을 좀 가져가고 약솜을 가져가야 합니다.”

(2) 감염병 관리

북한은 인민보건법(2012)에서 전염병을 미리 막기 위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면역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하며, 검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⁸⁹ 전염병예방법(2020)에서는 위생방역기관이 정기접종과 임시접종 대상을 조사하여 전염병예방접종을 계획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 면역수준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은 보관시설과 운반수단을 갖춰야하며, 전염병예방약을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운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⁹⁰

북한 당국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위생선전 사업과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시(市) 방역소에서 교육지침에 대한 인쇄물을 각 진료소로 하달하고, 진료소에서는 하달된 자료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염병 증상 및 예방법 등을 교육하는 위생선전과 예방접종 등을 실시했다고 한다. 전염병 예방접종은 주로 구역병원, 방역소, 진료소 등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호담당의사²⁹¹가 교육기관 또는 주민 거주지를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주민이 진료소에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보통 영유아는 진료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학생은 학교를 방문한 의사 또는 학교 담당의

289 「인민보건법(2012)」 제27조.

290 「전염병예방법(2020)」 제30조-제34조.

291 의사담당구역제에 따라 호담당의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고, 직접 담당구역에 나가 위생보건·예방접종·건강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2, 598쪽 참고)

사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2015년 남포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 학교에서 대학담당 의사가 독감예방 주사를 접종해주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7년에는 양강도에서는 장티푸스가 유행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인민위원회 보건국 산하 방역소에서 공급된 약을 호담당의사들이 주민들에게 접종해주었다고 한다. 호담당의사가 개인집으로 찾아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정도 예방접종을 해주었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2017년과 2018년 장티푸스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진료소에서 각 세대를 방문하여 물을 끓여 마시도록 교육하고 모든 주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결핵·B형간염·파상풍 등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장티푸스·콜레라·파상풍 등의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에서 예방접종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1차 접종시기에 맞지 못하면 2차 접종을 실시하여 될 수 있으면 모든 주민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방접종은 일년에 1~2회 정도 실시되었습니다.”

전염병 중, 특히 전염력이 높은 결핵환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품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7년 종합결핵병원에서 결핵 치료를 받은 결핵환자는 약을 처방받고 가슴 방사선 투과 사진 촬영을 하여 상태를 확인했다고 한다. 2018년 결핵과 같은 전염병은 보건당국이 환자등록부를 만들어 관리했고, 국제사회에서 지원되는 결핵약의 90% 정도를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 결핵예방원, 결핵요양소 등 전문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를 관

리하는데 열악한 의료시설과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 등으로 인하여 결핵환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핵진단을 받고 1주일에 한 번씩 진료소를 방문하여 1주일 분씩 결핵약을 받아와서 복용했는데 약을 복용한 후 결핵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나 별도의 관리는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전염력이 강한 결핵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입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병원사정이 좋지 않아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경우 병원이나 당국 차원의 별도의 관리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군대에서 결핵을 판정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하게 되었는데 제대 이후에는 당국의 관리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결핵 이외에 간염환자에 대해서도 전문적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7년 군사복무를 하면서 군대 병원 내에 간염병동이 있는 것을 목격한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8년에는 간염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간염예방원이 설립되어 있었으며 간염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간염환자들에게 필요한 간염약은 개인이 부담하여 구입해야 했다고 한다.

한편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북한 당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입출국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당국은 2020년 8월 22일 비상방역법을 채택했고 이후 3차례 개정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은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3~4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였으며, 외출 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했고, 해외 입국자 및 접촉자는 45일간 격리와 조업이나 건축공사와 같은 단체 작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일과시간 전에는 20~30분씩 각 인민반에 설치되어 있는 경비 초소 앞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있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방역검열은 여맹규찰대, 대학생규찰대에서 실시했고, 기관이나 기업소에 대한 방역검열은 인민위원회 지도원과 군당위원회 지도원 등 6명 정도로 구성된 코로나연합지휘부에서 실시했다고 한다. 기관이나 기업소에 대한 방역검열에서 단속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7~10일 정도의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작년 3월경 텔레비전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경부터 인민반장이 주민들에게 야외에 다닐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스크는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2020년 9월경부터 진료소에서 의사들이 매일 집집마다 찾아와서 전자식 체온계로 발열을 체크하고 기록을 해줍니다. 버스를 탈 때, 상점에 들어갈 때도, 장마당 입구에서도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난 이후 입장하였습니다. 인민반장이 주민들에게 가족을 제외하고 3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였고, 결혼식·환갑 등 관혼상제의 경우에는 모이는 인원이 40명을 넘지 말며 시간도 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의사담당구역제

의사담당구역제는 ‘호담당의사제’라고도 하며,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며 주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돌보면서 예방치료 사업을 하는 주민건강 관리제도’를 말한다.²⁹² 북한은 2021년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 “의사담당구역제 운영을 통해 예방을 우선시하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호담당의사는 위생선전사업·예방접종·진단서 발급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혜산종합진료소에서는 결근을 위해 직장에 제출할 진단서를 발급해주었고, 인민반 주민들을 모아놓고 물을 끓여 마시도록 보건생활 교육을 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다른 지역의 호담당의사는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 시기를 알려주었고, 성인을 대상으로도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진술하였다. 2019년에는 호담당의사가 상급병원 의뢰서를 발급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위생건강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8년 하반기 즈음 장티푸스가 유행했었습니다. 진료소의 호담당의사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접종하였고, 물을 끓여 마시라고 하고는 집집마다 ‘물을 끓여마시자’라는 구호가 적힌 작은 종이를 나눠주고 문밖에 게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진료소 소속 호담당의사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사적 경제활동을 하느라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017년 호담당의사에게 개인적으로 현물을 주고 집으로 불러 심전도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는 진술이 수집되었다. 또한 2019년 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의사는 배급이나 급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11인승 자동차

²⁹² 북한의 동·리·구에는 진료소가 세워져 있고 이를 중심으로 의사담당구역제가 운영된다. 진료소 소속의 의사 1명이 대략 200-300명,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500명 내외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2, 598쪽 참고)

를 구입해 택시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하였다. 호담당의사를 만난 적도 없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는데, 이러한 증언을 한 진술인 중에는 호담당의사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 무상치료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2조에서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의료법(2012) 제3조에서는 북한의 의료사업은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기초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인민보건법(2012) 제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동법 제10조 1항에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제출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에서 “건강에 대한 권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제도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²⁹³

북한에서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은 대부분 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6~7년 평양시와 함경북도 무산군·온성군, 양강도 김형직군에서는 진료와 치료가 무료였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진료비와 입원비, 입원 치료비 등은 무상이었고, 감기약 등 흔한 의약품은 병원에서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같은 시기 평안남도 개천시에서는 제왕절개로 출산하였는데 입원비, 수술비, 의약품

.....
²⁹³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201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인권향유실태 4) 사회문화적 권리 (3) 건강에 대한 권리.

품 등은 모두 무상이었다고 한다. 2018년 평양시 대성구역 병원에서 수술비가 무상이었다고 하며, 2019년에도 평양에서 무상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병원에서의 진료 및 치료는 무상이었으나 의료진에 대한 사례비로 현금, 담배 등을 지불하였다는 사례들도 있었다. 2018년 평양시 대성구역 소재의 병원에서 수술비는 무상이었으나 수술 후 의사에게 사례비로 10달러를 지불했다고 하며, 2019년 평양의 보통강구역병원에서도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사례비 명목으로 5달러 정도를 의사에게 주었다고 한다. 한편 2016년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대학병원장이 돈이 없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8년 증세가 심각한 결핵환자가 결핵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60~70위안이 필요하다고 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개월 만에 사망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의료진에 대한 사례비는 점차 상례화되고 정형화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병원에서 담배를 한 보루씩 사례비로 주는 것이 관례가 되자 2015년경 북한 당국은 의사들에게 담배를 받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례비 납부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비는 담배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납부되었다고 하는데 대체로 맹장수술 300위안, 치석제거 북한돈 20,000원, 자궁근종 수술 50,000원, 출산 30위안, 제왕절개 150~200위안 정도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2012년 평양시에서는 간단한 진료나 치료에 대한 사례비로 담배를 한 보루씩 지불했다고 하며, 2019년에는 치과 진료를 받고 담배 한 보루 또는 현금 2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진료비와는 달리 병원을 이용할 때 필요한 약품, 소모품, 의료기기 가동을 위한 연료비 등의 간접비는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도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약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주민 개인이 공식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다수의 진술이 수집되었다. 주민들은 주로 공식약국, 비공식약국, 장마당에서 필요 의약품을 구매했다고 한다. 2014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약품이 병원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가 필요한 의약품을 쪽지에 기재해주면 병원 근처의 비공식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해 와서 치료에 사용했다고 한다. 2015년에는 병원이나 공식약국에는 의약품의 종류가 많지 않고 한약이나 아스피린 정도만 구비되어 있어서 주로 비공식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한다. 2016년 병원에서는 약을 판매하지 않았고 진료소에는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비공식 약품상점에서 유엔이 지원한 약을 구입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7년에는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면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2018년 건습진으로 병원에 방문하였더니 필요한 약을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처방전을 주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에도 병원에 없는 약이 많아서 공식 약국에서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공식 약국에는 품질이 좋고 고가의 약들이 많아서 일반 주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웠고, 일반 주민들은 주로 장마당의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는 진술이 수집되었다.

“고원군 병원에 약국이 있긴 하였는데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민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

하면 길을 보면 곰팡이가 있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많답니다. 언니가 페니실린 같은 것을 구해주면 제가 스스로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식이었습니다. 약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하는 것보다 개인집에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집은 필요하면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병원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편 국제기구에서 지원한 의약품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되지 않고 판매용으로 반출되어 주민들이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었던 증언이 수집되었다. 국제기구에서 지원한 의약품은 의약품관리소를 거쳐 병원으로 공급되는데, 그중 일부는 병원장의 승인 하에 빼돌려졌고 주민들은 이를 장마당 등지에서 구입하였다고 한다. 2017~18년경 유엔 보건기구에서 환자들에게 약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서 지원한 의약품의 반출은 계속되었다는 진술이 수집되었다.

다. 의료서비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14호에서 당사국의 구성원은 의료시설 및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숙련된 의료진으로부터 검증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⁹⁴

²⁹⁴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paras. 12(a), (d).

북한의 의료장비와 시설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의료기관에 의료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있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었다. 지방의 시인민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었지만 구급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며, 도인민병원에는 복부초음파기, X-ray, 위내시경, 심전도기 등 간단한 의료기기 정도만 구비되어 있을 뿐, CT, MRI 등 고가의 기기는 없었고, 구비된 의료기기는 매우 오래되어 고장이 잦았다고 한다. 의료도구와 의약품 구비 상황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소에는 약솥, 붕대, 반창고, 일회용 주사기, 청진기, 구급함 등의 간단한 응급처치 도구만 있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시에 설치된 진료소도 청진기, 혈압계 등만 구비하고 있었고, 약품은 감기약, 식염수, 소독약, 진정제, 종합비타민제 등이 있었다고 한다. 2017년 종합병원 규모인 회령시 제1인민병원에서는 의약품과 의료도구가 부족해 입원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약물, 솜 등을 스스로 준비해 와야 했고, 주사기, 거즈천, 붕대 등의 소모품은 재사용했다고 한다. 2018년 진료소에서는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한 뒤 2~3차례 재사용 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또한 열악한 전기사정으로 인하여 북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의료장비를 가동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병원에 전기가 하루 2시간 정도만 공급되어 의약품을 냉장보관하기 어려웠으며, 의료장비를 작동하기 위해 휘발유를 사용하여 발동기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입원실에서 진찰을 할 때는 태양광 충전 조명을 이용하였고, 초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보건시설·의료물품·서비스 등에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²⁹⁵ 그러나 북한에서는 의료시설, 상급의료기관의 서비스 이용, 통상적인 진료 등의 이용에 있어 성분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의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하급병원에서 ‘진단서’와 ‘파송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한다. 진단서와 파송증은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료한 해당 과의 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발급이 쉽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도인민병원이나 평양의 중앙병원, 특수·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인맥과 뇌물을 동원해야 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통상적으로는 진료소 군병원을 거쳐서 파송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오는 경우에도 뇌물을 바치면 치료해 줍니다. 의사들도 환자가 많아 뇌물을 받을 수 있기에 꺼려하지 않습니다. 도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 평양 김만유 병원·적십자 병원·평양 의학 병원 등으로 파송시키게 됩니다. 파송할 때는 치료 내역이나 진단 결과 등을 작성한 교환 병력서를 환자편으로 같이 보내게 됩니다.”

북한의 병원에는 일정계급 이상의 기관원과 그 가족들만 이용이 가능한 ‘진료과’가 병원 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료과는 보통 도인민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시인민병원에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평양 시에는 중앙당 간부와 그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인 ‘봉화진료소’가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진료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간부, 애국열사, 혁명열사, 접견자 등이라고 하며, 간부는 도

295 Ibid., para. 12(b).

의 부장·비서·부장급으로 도인민위원장, 도급 주요 기관장·당비서, 시·군당의 비서관, 시·군인민·행정위원장과 그 가족들이라고 한다. 이들이 진료과를 이용할 때는 관련 예산이 모두 지원되어 입원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무상이며, 진료과 이용자가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때에는 우선대상자로 처리된다고 한다. 또한 의약품 관리소에서 공급되는 약품 중 고가의 약품은 간부용이었다고 하며, 병원의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이용하는 것이 아닌 간부가 이동할 때 이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최근에는 인맥이나 뇌물도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는 이송증이나 진단서 발급 없이 인맥과 돈으로 가능하고, 평양의 전문병원에서의 진료 또한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진술이 다수 수집되었다.

“2019년 4월과 9월 평양의 류경안과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진료비용으로 20달러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납부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일단 응급처치는 해주지만 이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라. 사적 의료행위

북한은 의료법(2012) 제24조에서 “환자의 치료는 의료일군 자격을 가진 자만 한다. 의료일군 자격을 가진 경우라도 의료기관에서 근

무하지 않는 자는 환자치료를 비롯하여 비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직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북한의 행정처벌법(2021) 제214조는 비법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노동교양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2022) 제222조에서는 비법의료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노동단련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비법적인 의료행위’에는 의료인의 비공식적 의료행위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공식적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하는 사적 의료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들은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왕진을 자주 다니며 사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받는 사례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사들은 단골환자들에게 사적 의료행위를 하며 돈을 벌었고, 간호사들도 환자의 부탁을 받고 왕진을 가서 주사를 놔주며 돈을 벌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적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개인적으로 사적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의료사고 이후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고 사적으로 의료 활동을 지속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또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는 이른바 ‘목동의사’들이 많았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정규 의학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목동의사들의 실력이 나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다고 한다. 무속인이 점을 보면서 병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3년 양강도 보천군에서 6살 여자아이를 개인집에서 진료하던 의사가 약을 과다투여 하여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같이 사는 안면 있는 사람이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의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개인집에서 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마약을 의약품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아편이나 ‘빙두’라고 불리는 필로폰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치료용으로 사용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마약을 의약품 대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병 치료목적이거나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 가정에서 마약을 상비약으로 구비해 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마약을 감기, 염증, 기관지, 축농증, 신경통, 뇌혈전, 허리 통증, 장티푸스, 관절염, 통풍, 뇌졸중, 생식기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였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었다. 자택에서 300포기의 아편을 재배하여 가정상비약으로 구비해놓고 저혈압, 복통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시마다 사용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마약은 치료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약의 무분별한 사용은 성별,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호기심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빙두를 하면 각성효과로 인해 불면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를 공부하는데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또한 친구나 부모가 사용하다가 연기를 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중독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 식수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는 보건의료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한다고 강조하면서, ‘물’을 건강권의 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물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써, 적절한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²⁹⁶

북한은 공중위생법(2014)에서 물의 수질기준, 위생시설의 관리, 물의 소독, 물 원천의 보호 등은 관련 기관의 책임이라고 보고, 주민의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제출한 제3차 UPR 보고서에서 고품질 생수원이 발견된 지역에 생수공장이 건설되고 전국의 많은 지역에 생수 매장이 설치되어 인민들에게 양질의 생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노 기술 사용을 통한 정화 및 소독 기술의 도입으로 수돗물의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는 ‘안전한 식수와 깨끗한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한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수질개선 문제와 충분한 물 공급 문제를 도전과제로 제시하면서 안전한 식수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 비율은 60.9%이고, 지역별로는 도시 71.3%, 농촌 44.5%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²⁹⁶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para. 4; No. 15, The right to water.

북한의 주택에는 대부분 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물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열악한 전력상황으로 인하여 수도물 공급이 하루 2~3시간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2017년 수도물이 제한적으로 공급되어 보통 가정에서는 200리터 정도의 물탱크를 마련해놓고 물이 나올 때 저장해두었다가 사용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으며, 2019년 대부분의 주택에는 수도관은 설치되어 있었지만 하루에 2~4시간 정도만 전기가 공급되어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집에 수도가 없는 경우 우물, 공동수도 등에서 물을 받아오거나 강물 등을 길어 와서 식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에는 압록강 물을 길어 와서 식수로 사용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수도로 공급되는 물의 질은 깨끗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대동강구역 상류지역에 위치해있던 상수도관리국의 임흥수원지에서는 수도물을 여과하는 과정에서 약품처리를 해야 했는데, 약품이 부족하여 수질관리 마지막 단계에서 약품을 소금으로 대체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9년 함경북도에서는 하수도가 오래되어서 하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가 물이 오염되었고, 그 물을 식수로 음용한 주민들이 집단 설사병에 걸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북한에서 수도물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그 물이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도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새벽에 일찍 압록강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쓰곤 하였습니다. 수도물도 집마다 달랐는데, 수도관이 잘되어 있는 지역이면 자주 나오지만 저희 집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놔야 해서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호마다 물탱크 200리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수도물을 받아놓은 것은 식수로 이용하고 빨래 등은 압록강에 나가서 하였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수도물로 인해 최근의 북한 주민들은 생수를 구입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한다. 2016년부터 당국에서 샘물공급소를 운영하면서 식수를 구입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으며, 2017년 장티푸스가 유행한 이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돈을 주고 샘물을 사먹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판매하는 식수에는 수질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증필’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주택에 전기가 공급되는 것이 하루 2~4시간 정도였고 전기 공급되는 시간에 물을 탱크에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전기 때문에 수도물이 가지 못해 수도관 안에 고여 있으니 이물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기공급으로 인한 수도물 공급 문제 때문에 수도관에서 미생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을 꼭 끓여서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 중에는 수도물 때문에 대장염에 걸린 경우도 보았습니다.”

3. 근로권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동일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 국가는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임금과 차별 없는 동등한 보수 등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²⁹⁷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0조에서 ‘공민’의 노동에 대한 권리에 대해 모든 근로자는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명시하였다. 사회주의노동법(2015)에서는 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의 적재적소 근로자 배치,²⁹⁸ 근로시간,²⁹⁹

297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6-7.
298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30조.
299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32조.

보수지급³⁰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도 국가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에 의한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³⁰¹ 이에 대해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8호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고용에 종사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 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고용에 대한 접근권과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³⁰²

북한도 사회주의헌법(2019)과 사회주의노동법(2015)에서 근로자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³⁰³ 2021년 VNR 보고서에서도 ‘모든 시민은 개개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받고, 근로여건을 보장받으며, 학교 졸업 후 각자의 지식·능력·희망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인력을 노동행정기관에서 배치하는 방식을 따르

300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37조-제40조.
301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6.
302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8: The right to work, para. 6.
303 「사회주의헌법(2019)」 제70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5조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고,³⁰⁴ 노동인력배치를 사회주의 노동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³⁰⁵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 직업을 보장받을 데 대한 권리는 노동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각급 노동행정기관의 노력배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밝히고,³⁰⁶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원칙”으로 조절한다고 하였다.³⁰⁷

(1) 직장배치와 무리배치

북한에서 모든 사람은 17세부터 연로보장자와 전업주부인 ‘부양자’,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장에 배치되어야 한다.³⁰⁸ 의무교육과정인 고급중학교³⁰⁹ 교육을 마치면 ‘인민위원회 노동국·노동과’에서 졸업생 명단을 토대로 대학진학자와 군입대자를 제외한 나머지 졸업생을 기업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진학자와 군입대자도 졸업과 제대에 맞추어 연고지의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비슷한 형태로 직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3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노동법제도)」, 사회과학출판사, 1994, 78쪽, 85쪽.

3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노동법제도)」, 사회과학출판사, 1994, 118쪽.

3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노동법제도)」, 사회과학출판사, 1994, 77쪽.

3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노동법제도)」, 사회과학출판사, 1994, 73쪽.

308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15조, 제73조, 제74조 등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재해 및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 영구적으로 상실한 자,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 이상 연로자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동법 제31조는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사회적 노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성이 결혼 후 출산과 양육 등으로 사회활동(사회적 노동)을 하지 못하는 관습에 가까운 문화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309 북한의 학제는 2012년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개편되었는데, 학제개편 이전에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통합하여 중학교 6년 과정(1972년~2011년)으로 운영하였고, 중학교 또는 고등중학교라고 칭하였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2022)

직장 배치에는 주민의 출신성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고, 인맥과 뇌물을 이용하여 기피대상 직장에 배치되는 것을 피하거나 원하는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성분에 따라 직장 배치되었다는 경우로 어머니가 행방불명이어서 호위대에 선발되었지만 입대를 거부당해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에 배치된 경우가 있었다. 철도기능공학교를 다니면 당연히 철도와 관련된 기관에 배치되며, 다른 직장을 선택할 수 없다는 진술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자신이 가고 싶은 직장에 갈 수 없고 배치해주는 곳으로 가야해서 건설현장에 나가는 도시건설사업소에 배치되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최근에는 인맥과 뇌물로 배치된 직장보다 다른 곳을 선택하였다는 사례도 수집되었다. 고급중학교 졸업 후 무직으로 지내다가 인맥을 이용하여 도인민위원회 산하 사업소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고, 기술학교 졸업과 동시에 피복공장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교장에게 뇌물을 주고 진료소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교장에게 뇌물을 주어 인민위원회 노동과로 전달될 문서를 빼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부모님이 농장원이었기 때문에 농장에 배치될 것을 우려하여 고급중학교를 중퇴한 상태에서 집에서 지내다가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합영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진술과 무직으로 지내다가 인맥을 이용하여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병원에서 일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대학졸업자나 군제대 후 직장에 배치되는 경우도 인맥이나 뇌물로 강제배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대 후 인맥을 이용하여 탄광의 계산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치

하지만, 배치되는 곳 이외의 기관에 들어가고 싶다면 인맥이 있어야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인맥이나 뇌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노동자가 이직을 하려면 뇌물 없이는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제공하고 옮길 수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시인민위원회 무역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인민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고, 돌격대에 배치된 직후 뇌물로 문서를 빼내 무직으로 지내다가 처벌이 두려워 인맥을 이용하여 친구가 일하던 도인민위원회로 이직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무리배치는 농장이나 광산 등 힘든 분야 또는 기피지역에 노동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직장배치 대상자를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급중학교, 기능공학교, 중등학원 등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중학교 졸업생에 대한 사례는 의사와 관계없이 신설된 사업소에 무리배치한 경우인데, 당국이 필요한 시기에 집단적으로 배치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졸업생을 지역의 협동농장 청년작업반에 집단으로 배치하였다는 사례가 있었고, 졸업과 동시에 군수공장에 무리배치 되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기능공학교 수료생에 대한 무리배치 사례도 있었는데, 고급중학교 졸업 후 군에 입대하지 않는 경우 기능공학교에 자동으로 입학시키고, 1년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삼지연건설 청년돌격대에 무리배치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무연고 아동의 보호·교육시설인 중등학원 졸업생을 돌격대에 매년 수명씩 배치시키고 있

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의학대학 졸업생을 삼지연시 병원에 집단 배치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학의 당위원장이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무리배치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무리배치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이 필요한데, 인맥과 뇌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저희 고급중학교를 같이 졸업한 학생은 총 40명이었는데, 대학진학자와 군입대자를 제외한 20명이 무조건 기계공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기계공장은 군수공장이라서 나오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들어가서 일하기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다들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2) 무직, 결근 단속과 처벌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8호에서 모든 사람은 고용에 종사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노동 선택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³¹⁰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헌법(2019)과 사회주의노동법(2015)에서는 노동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³¹¹ 행정처벌법(2021)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³¹² 행정처벌법

³¹⁰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8: The right to work, para. 6.

³¹¹ 「사회주의헌법(2019)」 제83조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4조 사회주의헌법에서 공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동법 제14조에서는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노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³¹² 「행정처벌법(2021)」 제115조(무직 건달 및 무단결근행위) 무직 건달을 부렸거나 무단결근을 한자에게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인민보안단속법(2007)」 제18조(출퇴근정형을 장악하지 않거나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종업원의 출퇴근정형을 제때에 장악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노동시간

(2021)은 노동의무 불이행 행위를 ‘무직 건달’과 ‘무단결근’ 으로 나누고 있다. 무직 건달 행위(이하 ‘무직’)는 합당한 이유 없이 직장 없이 지내는 것이며, 무단결근 행위는 소속된 직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무직과 결근은 모두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다.

직장 배치에서 누락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중퇴를 한 경우, 전학을 이유로 학적을 빼내 처리하지는 않은 경우 등이다. 또한 최초 배치되어야 할 직장에 가지 않으려고, 소속을 옮길 때 필요한 문서인 ‘파견장’을 개인적으로 빼낸 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파견장은 고급중학교 졸업생이 직장에 배치될 때와 같이 소속이 바뀔 때 물리적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송 절차에서 누락되더라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교장에게 뇌물을 주고 인민위원회 노동과로 넘겨질 문서를 누락시켰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 대학졸업을 앞두고 직장에 배치를 피하기 위하여 인맥을 이용하여 대학의 간부과 지도원에게 명부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무직과 결근 단속은 보통 거주지나 직장에 상주하는 담당안전원이 주로 하지만, 무직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상무’라는 연합조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주민의 명단을 인민반장이 작성하여 지역담당안전원 등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단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직으로 단속되면 행정처벌법으로 처

.....
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벌되는데, 노동교양처벌 3개월 이하 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다.³¹³ 무직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맥과 뇌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인민반장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속 시점부터는 거주지 담당안전원이나 연합지휘부 단속원 등에 뇌물을 주고 단속을 무마하거나 처벌을 피하였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민반장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무직자명단에서 삭제하였으며, 삭제 대가로 매년 100위안 이상을 주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고급중학교 졸업 후 무직으로 지내면서 단속이 있을 때마다 안전원 등 단속자에게 50위안을 뇌물로 주어 처벌받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최근에는 무직자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돌격대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 받은 직장에 출근하지 않다가 무직으로 단속되어 삼지연건설돌격대에 강제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례가 있었고, 담당안전원에 뇌물을 주고 무직자 단속을 피하였지만, 연합지휘부의 단속으로 처벌대신 돌격대로 동원되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보천군 붉은청년근위대 야영소에 배치되어 한 달간 근무하다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니다. 무직으로 놀다가 보천군 청년동맹 단속에 걸려 삼지연건설돌격대에 강제 입대했고, 10일간 일했습니다.”

결근자는 기업소의 경리원이나 부기원이 노동자 출근현황을 파악한 후, 담당안전원에게 보고하여 무단 결근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무단결근 행위에 대한 처벌도 무직행위 처

.....
³¹³ 「행정처벌법(2021)」 제119조.

별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벌법에 의해 노동교양처벌 3개월 이하 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다.³¹⁴ 8.3노동자³¹⁵로 등록된 노동자도 2개월 이상 수익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진술이 있었고, 개인사정이 생겨 15일간 무단결근하였다가 거주지 안전부의 결근자 단속 명단에 올라가 단속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무단결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료소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집에서 쉬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무직과 무단결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달 자신이 소속된 기업의 노동지도원이나 지배인 등에게 돈을 납부하고 출근하지 않으며 장마당 등에서 부업을 하는 8.3노동자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무하던 사업소의 노동자 40여명 중 10여명 정도가 수익금을 납부하는 8.3노동자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시인민병원의 전체 의료인 중 약 30%정도가 8.3노동자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는 60%의 노동자가 수익금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의 노동자가 8.3노동자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3노동자는 소속에 따라 매달 수익금을 납부하는 곳이 기업의 지배인, 당비서, 경리, 창고장, 노동지도원 등 다양하였고, 등록절차가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무직이나 무단결근을 단속할 때, 단속 대상자인지 여부는 소속 기관·기업소에 직접 확

314 「행정처벌법(2021)」 제119조.

315 경제위기 상화에서도 기업소는 할당된 계획(금액지표)을 충당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었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장에서 노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기업소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8.3 근로자'이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1, 812쪽)

인하기 때문에 증거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최근 8.3노동자를 제한하라는 노동당의 방침이 있어 군단위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8.3노동자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기업소에 8.3노동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안전부에서 조사를 하였고, 수익금을 납부한 상세 내용과 사적 경제활동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사업소의 수익금 노동자는 지배인 당비서에게 돈을 벌어야겠으니 적을 여기에 두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합니다. 따로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매월 15만 원을 당비서에게 바치면서 사업소에 적을 두는 8.3노동자가 되었습니다.”

(3) 노동자의 사적 경제활동

북한의 노동자와 농민은 17세부터 여성은 만 55세, 남성은 만 60세까지 직장이나 농장에 소속되어 노동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적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주민들은 사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도 노동자가 직장에서 이탈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는 직장에 수익금을 내며 출근하지 않는 상태로 사적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직장에 출근하면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경제활동은 다양한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개인에 고용된 임금노동 등으로 파악되었다. 소속 직장에는 매달 30위안의 수익금을 납부하며 생활 용품을 골목 등에서 판매하는 ‘포아리’ 장사를 하였다는 사람은 장사하는 것이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나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8.3

노동자로 지내면서 오징어잡이 그물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는 사례도 있었으며, 결혼식이나 돌잔치 촬영 영상을 편집하는 일을 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소속된 직장에 출근하였지만, 일이 없는 기간에 택시운전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택시 1대당 월 1,300위안을 택시 사업소에 납부하면 운행을 할 수 있었으며, 주로 야간에 운행하면서 하루에 수백 위안을 벌 수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진료소의 의사는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사적으로 왕진 등을 하여 돈을 버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외에 국영상점의 자리를 받아서 개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위탁자’라는 일을 하였다는 사례와 고리대금업에 해당하는 ‘속도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8년 도시건설여단 소속으로 수익금을 내면 출근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수익금을 내지는 못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친척이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업품 장사를 하였고, 장사를 하면 30위안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니다.”

나. 근로조건

사회권규약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과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³¹⁶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18호는 양호한 노동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부양

³¹⁶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7.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³¹⁷

(1) 보수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고 하였다.³¹⁸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 보수는 소속 직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생활비 외에 식량배급, 주거, 교육, 보건서비스, 기타 사회복지 전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라는 명목의 보수는 노동의 대가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북한 사회주의노동법(2015)에서 생활비의 기본 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고,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를 가급금제와 상금제로 정하고 있다.³¹⁹ 북한 당국은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입각하여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다. 북한의 노동자는 노동정량법(2020)에 의해 노동의 결과를 평가받고 노동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³²⁰ 하지만 기관이나 기업소 등에 출근하였던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생활비의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규정된 금액의 생활비를 모두 받았던 경우도 많지 않았고, 규정된 생활비에서 각종 지원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외화벌이 기관, 합영회사 등에서 근무

³¹⁷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8: The right to work, para. 7.

³¹⁸ 「사회주의헌법(2019)」 제25조.

³¹⁹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39조.

³²⁰ 「노동정량법(2020)」 제2조, 제26조.

한 경우는 지급된 보수가 일반적인 기관·기업소보다 많았으며, 도급 지불제에 의해 기본생활비 이외에 보수를 따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2017년 양강도의 소학교 교원은 한달 생활비로 1,800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계란을 두 알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마저도 매달 지급된 것이 아니라 3년 근무하는 동안 3~4차례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8년 군인민병원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는 규정대로 월 1,600원을 매달 현금으로 받았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달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다고 하였으며, 2018년 철도 화물원은 1년 남짓 근무기간 중 보수를 한 번 밖에 지급받지 못했다는데, 금액은 1,500원이었다고 하였다. 2018년 도인민위원회 소속 기관에서 생활비는 1년에 한 번 2,800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보수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는데, 군인민위원회 소속 기관에서 10년이 넘게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과 2018년 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에서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2017년 광산의 후방지도원으로 일한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018년 도무역국 소속 사업소 노동자와 2019년 도시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도급지불제, 가급금제, 상금제가 이행되고 일반적인 보수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합영·합작회사, 외화별이 기관 등 운영이 잘되는 경우였으며, 보수를 달러나 위안화 또는 쌀이나 기름 등 현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2019년 평양의 외화별이 사업소에서는 보수 50달러를 월 2회로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고, 평양 외화별이 식당에서는 매

달 30달러의 생활비를 지급받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8년 평안남도의 금광산에서 노동자에게 매달 5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금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달러로 줄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9년 인민위원회 산하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는 매달 정액 생활비 2,600원과 생산량에 따른 도급생활비 1만 원 정도를 포함하여 12,000~13,000원가량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당시 작업반별로 생산노동자 중 월 17,000~18,000원 정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급된 생활비는 쌀 4kg 정도를 살 수 있어 한 달을 생활하기에 부족한 금액이었다고 하였다. 2018년 양강도의 무역사업소에서는 1년치 노동 보수와 배급을 한 번에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지급된 금액은 노동자 1명에게 1,800위안으로 약 300만원 정도였다고 하였다. 2019년 양강도의 합영회사는 노동자에게 매달 9~12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1년에 한번 쌀 25kg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2020년 합영회사에서는 보수를 성과만큼 받았다고 하는데, 숙련공은 350위안, 쌀 100kg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광산에 배치되어 일한 첫 달에는 당과 원수님의 배려로 어렵지만 생활비를 준다고 했고, 쪽지를 줍니다. 저는 감격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써있었는데, 금액이 2천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국수 한 그릇 사먹기 힘듭니다.”

(2)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북한 사회주의노동법(2015)에서는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으로 하되, 노동 강도와 조건에 따라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줄이도록 하고, 한 주에 하루씩 휴식과 연간 14일간의 정기휴가를 제공하며, 직종에 따라 7일에서 21일의 보충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³²¹

북한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소속 기업소의 가동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거리가 적은 경우는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거나, 며칠에 한 번씩만 출근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나 갭 안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1주일을 기준으로 하루씩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³²² 직장마다 휴일이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직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정대로 근무하였던 사례로는 2017년 군수품 공장에서는 주 5일 8시간을 작업하였고, 토요일은 생활총화와 정치 행사에 참여해야 했지만, 일요일은 쉬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20년 군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의 관리원은 평상시 일이 없어서 근무시간 없이 자유롭게 지냈다고 하였다.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였으며, 휴일은 매주 목요일이었지만, 출근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광산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던 사람은 24시간 운영하는 광산에서 노동자의 작업물품, 생활물품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근무하였다고

.....

321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16조 근로자들의 하루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노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22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64조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노동시킨 경우에는 일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체휴무를 주어야 한다.

진술하였다. 2019년 도시건설사업소에서는 8시간을 지켜 근무하였는데, 생활비나 배급을 지급하지 않아 초과로 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8년 인민위원회 운영 사업소의 노동자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8시간을 근무하였고, 휴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규정보다 긴 시간을 근무한 경우도 있었는데, 2019년 무역사업소의 노동자는 오전 7시30분에 출근하여 저녁 7시가 되어야 퇴근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답사생의 안내와 숙영소 청소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노동자는 2018년 오전 5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하였고, 3~4일에 한 번씩 휴식시간을 주었는데, 오후 5시~7시30분까지였다고 한다. 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소속 노동자들은 평양의 여명거리 등 건설현장에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3~4시까지 작업하는 날도 종종 있었다는 진술과 자강도의 광산에 일했던 노동자는 근무시간은 새벽 5시부터 밤 9~10시까지였으며, 일요일도 무조건 출근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북-중합영회사도 유사하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2시간 작업이 근무조건으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휴일 없이 매일 출근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가는 연간 14일을 기준으로 35일까지 직종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경제상황이 생겼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제 사용이 어려웠다는 경우와 규정만큼 사용이 가능하였다는 상반된 진술이 있었다. 2019년 도시시설사업소 노동자는 1년에 15일 휴가를 모두 써야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년 목재가공공장 노동자와 2019년 광산노동자도 1년에 1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1년에 공식적 휴일인 명절을 제외하면 휴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때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8년 군인민위원회 사업소 경리원은 휴가를 쓸 수 없어 작업반장이나 지배인 등의 허락을 받고 3~4일 정도만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는 사업소에서 생활비와 배급을 잘 주었기 때문에 규정된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을 문제 삼으면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항의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첫 해에는 규정상 휴가가 전혀 없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보름정도 휴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쓴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아프거나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어디 놀러가겠다고 휴가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3) 근로 환경-안전 및 재해

북한은 노동보호법(2021)에 안전교육은 중앙노동행정지도기관에서 그 대상과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³²³ 기관·기업소·단체는 국가의 노동보호정책과 노동안전규정, 노동안전조작법, 노동위생지식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안전시설 설치, 점검보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²⁴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³²⁵과 노동보호감독원과 노동안전원 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³²⁶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보수, 안전장비 지급, 노동안전원 등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

³²³ 「노동보호법(2021)」 제9조.

³²⁴ 「노동보호법(2021)」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³²⁵ 「노동보호법(2021)」 제27조-제34조.

³²⁶ 「노동보호법(2021)」 제51조.

데, 안전장비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장비의 지급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평양시의 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주요건축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는 안전벨트는 모두에게 제공되었지만, 안전모는 공용으로 사용하나 개수가 부족하여 모두 착용하지 못하였고, 안전화와 작업복, 장갑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7년 인민군소속 광산기업소에서는 안전모는 지급되었지만, 다른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9년 철도 직장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은 없었다고 하였다.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는데, 한국이 지원한 평양 강남지역 정미소 건설현장에서는 1일 1켈레의 장갑을 제공하도록 한국에서 물품을 지급하였지만, 일주일에 1켈레만 제공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안전교육과 당국의 지도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안전감독이 비교적 잘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외건설관리국 산하 사업소는 안전 감독을 위해 건설현장에 담당자가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고공작업을 할 때만 안전망 설치, 안전벨트와 안전모 착용여부를 감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안전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업장에서도 전문적인 교육·감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현장의 안전을 감독하는 ‘노동안전원’의 역할은 사업소의 노동자들이 돌아가면서 하였다는 진술과 2019년 양강도 합영회사에서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 감독은 기지장이라는 중간관리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교육이나 감독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외에 광산기업소나 철도 직장 등에서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

술이 있었다.

“1,400미터 정도 되는 갭도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매우 힘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은 보지 못하였으며,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 노동 3권의 제한

사회권규약 제8조는 규약당사국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결성·활동의 자유 및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필요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개별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상황에서는 노동계약이나 단체계약, 노동분쟁, 직맹 단체의 감독권과 같은 문제들이 노동법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³²⁷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또는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북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북한에서는 자본에의 종속이 사라진 것으로 선언됨에 따라 북한 당국에게 고용의 의무가 부과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법률관계는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³²⁷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노동법제도)』, 1994, 66쪽.

실제로도 주민 누구든 단체행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행동은 생 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진술이었고, 단결권, 단체교섭 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수집되지 않았다.

라. 특수 노동자

(1) 돌격대

돌격대³²⁸는 대규모 건설을 짧은 시간 내에 완결하기 위해 지역 과 기업소 등의 할당인원이 건설에 투입되는 조직을 의미하는데, 조직의 운영을 군대식으로 하여 연대-대대-중대-소대 등의 명칭을 쓰고 있었다.³²⁹ 삼지연시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216사단의 삼지연시건설돌격대는 하위에 922건설여단이 있고, 여단 아래 시(市)연대가 존재한다. 어랑천 5호 발전소 돌격대도 하위에 화성군 중대, 제강소 중대, 포항구역 중대, 송평구역 중대, 어랑군 대대 등이 있다고 하며, 중대와 대대는 인원규모에 따라서 단위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돌격대의 전체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삼지연시건설돌격대의 경우 2018~2019년경 10만 명 정도의 규모 였다고 하며, 216사단에는 삼지연건설 돌격대와 넓은철길 돌격대

³²⁸ 돌격대는 주로 건설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직된 단위로 '청년돌격대'와 '속도전돌격대' 등이 있다. 건설이나 각종 사업 수행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1. 258쪽)

³²⁹ 평상시에도 군대식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유사시에는 즉각 정규군에 편입시켜 공병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돼 있다. 정규군은 아니지만 군사조직이기 때문에 항상 제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복 왼쪽 앞가슴 김일성 배지 아래 직급표식을 달아야한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21. 259-260쪽 참고)

등이 있어 그 규모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의 도시정비의 일환으로 건설을 위해 조직된 돌격대는 150명 내외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동원 방식

돌격대 동원방식에는 자원입대와 강제동원이 있다. 자원입대는 돌격대 근무경력을 이용하여 입당, 대학진학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돌격대에 지원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 돌격대는 군 입대가 쉽지 않은 여성이 노동당 입당을 위해 자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돌격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대학 입학기회도 생겨 돌격대 입대를 선호하였다고 한다. 자원입대한 경우로는 입당을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것처럼 돌격대에 들어가는 경우였는데, 근무기간은 10년이었다고 한다. 절도 혐의로 검찰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사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요구받는 것을 피해 자원입대한 경우도 있었다. 농촌경리간부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을 배워보라는 부모의 권유로 자원하여 돌격대에 들어갔다는 진술이 있었고,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은 탈북하기 위해 국경지역의 돌격대에 자원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입당을 위해 양강도 백암군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들어간 돌격대원은 수년을 근무한 후 입당되었지만, 입당이 된 후에도 돌격대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근무한 사례가 있었다. 댐건설 현지지도를 한 김정은과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정해진 근무기간보다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그러나 돌격대 근무 후에도 대학입학, 입당 등의 혜택 주어지지 않기도 하고, 노동 강도 등 돌격대원에 대한 처우 등으로 자원하는 경우

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이 많아지면서 동원 인원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로 자원입대는 물론 단속 등에 의한 강제동원도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강제적인 동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직장 배치의 한 형태로 들어가거나 직장이나 인민반에서 순번으로 차출되는 경우가 있었고, 무직이나 여행증 단속 등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돌격대에 직장 배치된 경우는 삼지연군건설이 있었던 양강도 지역에서 있었다. 시·군의 고급중학교 졸업생 중 직장 배치 대상자를 기능공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고 수료와 함께 삼지연시건설 청년돌격대에 집단으로 배치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시설인 혜산시 중등학원 졸업생을 돌격대에 배치한 사례가 있었다. 고급중학교 졸업생을 군에 입대하는 것처럼 배치하는 지역도 있었는데, 양강도 청년돌격대에서 집으로 찾아와 돌격대에 들어간 사례였다.

직장별로 돌격대 인원이 할당되는 경우의 근무 기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인원이 적은 곳에서는 순번이 빨리 돌아오거나 대체 근무자가 없어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안전부에서 근무하던 5년 동안 총 4회, 2년 4개월 정도 돌격대에 나갔던 사례가 있었고, 다음 순번 근무자가 오지 않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10명 남짓 근무하던 기관의 돌격대 차출인원이 3명으로 내려와 동원자를 결정하기 어려웠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돌격대 순번근무는 수익금 노동자까지도 포함되어 차출 순번이 있는 달에는 돌격대 대리 근무자 고용비용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납부한 비용은 월 100 위안이었다고 하였다.

직장이나 인민반 등에서 순번으로 단기간 근무해야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인민반의 주민 등에게 부탁을 받고 사례비 정도만 받다가 최근에는 ‘씨비꾼’이라는 이름으로 입대하고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업에 나가야하는 시기에 돌격대 근무 순번이 된 어부는 ‘씨비꾼’을 구해 대리 근무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공장노동자 2명을 돌격대에 보내야했지만 갈 사람이 없어 월 300위안을 주기로 하고 대리 근무자를 보낸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대리 근무자를 돌격대에 보내는 경우 약속한 기간보다 길어지는 일이 발생하거나, 지불하기로 한 돈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돌격대 차출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미성년 아동에 대한 돌격대 동원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돌격대 차출자를 대신해 근무하는 대리 근무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 아동이 근무하는 경우와 각종 단속 후 처벌 대신 돌격대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도 미성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행증 없는 상태로 거주지 이외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청년동맹 단속원에게 단속된 만 14세 아동을 서류상에는 19세로 기재하여 돌격대에 보낸 사례가 있었고, 돌격대인원을 더 충원하라는 구역당위원회의 지시로 구역청년동맹에서 장마당의 노숙 아동을 단속하여 돌격대에 보낸 사례도 있었다.

“인민보안성에서 2014년 강원도 세포지구 건설돌격대, 2016년 함경북도 수성천 군민발전소 건설돌격대, 평양 618 건설돌격대, 2018년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건설돌격대에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돌격대는 모두 순번에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근무 시간

돌격대가 주로 하는 일은 댐, 아파트, 도로 등 건설이 주를 이루었으며, 맡은 임무는 ‘속도전’으로 짧은 시간에 완료하도록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매우 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진술에서 공사 완료를 위한 매일의 작업량이 정해져 있었으며, 매일 과도한 달성량으로 잠을 줄여 작업해야 했다고 하였다. 작업은 아침식사 전부터 시작하여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도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취침시간을 5시간 미만으로 줄여서 할당된 작업량을 마무리해야 했다고 한다. 작업시간이 10시간을 넘기는 것은 보통이었고, 하루 15시간 이상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는 새벽 5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1~2시까지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며, 취침시간은 3~4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양강도청년돌격대는 보통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작업을 하였으며, 일주일에 2~3일은 백열등을 켜고 밤샘작업을 하였다는 진술과 삼지연건설돌격대에서도 정해진 작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지만, 야간작업이 있을 때는 다음날 새벽 1시 전후까지도 일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중장비 없이 인력만으로 건설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돌격대가 하는 일은 작업 강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천발전소 돌격대에서 근무하면서 갭 안에서 밧파로 쌓인 1.5m가량 돌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매우 힘들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발전소 건설 돌격대에서의 도로정비 작업은 돌을 채취하여 도로에 깔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방식이었는데, 돌을 채취하여 작업현장까지 나르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서 했던 일은 지하오수망(하수도)을 건설하는 일 등에 동원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오전 5~6시 식전작업, 오전 8시~12시 오전작업, 오후 1시~6시 오후작업, 저녁7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잠은 1시간 정도 자는데, 작업 중간에 알아서 자야했습니다. 작업시간이 이렇게 긴 것은 도급제로 진행을 해서 대원에게 각각 작업량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당된 작업량이라는 것이 보통 20시간 이상을 해야 마칠 수 있는 정도로 많았습니다.”

보수 지급

돌격대 근무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어떻게 동원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직장이나 인민반의 순번에 의해 동원되었을 때는 돌격대 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수는 없었지만, 소속 직장에서 나오던 생활비와 각종 배급이 그대로 나온 경우가 있었고, 인민반에서 차출된 경우도 노동의 대가는 아니었지만, 인민반 주민들이 모은 돈이나 물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 순번으로 동원되었던 기간 동안 보수는 직장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받지 못하였지만, 원래 지급되던 쌀 10kg, 식용유 2kg, 세탁비누, 조미료 등을 받았다는 사례와 소속 협동농장에서 관리위원장이 돌격대에 들어갈 때 1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무직, 여행증, 방랑자 등의 단속으로 돌격대에 동원되면 노동보수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행증 없이 이동하다가 단속되어 함경남도 리원군의 학교건설에 동원되었던 사람은 노동에 대한 보수 지급은 없었다고 하였다. 직장배치 형태로 동원된 경우는 보수를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규정대로 지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돌격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던 3년 동안 보수는 한 번뿐이었으며, 금액은 1,200원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자진하여 돌격대에 들어가 근무한 경우에도 보수는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오히려 필요한 장비를 개인적으로 마련해야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안전감독과 관리

안전용품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안전모 정도만 지급되었고, 작업복과 신발 등은 소속된 곳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장비는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돌격대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종류와 양이 달랐다고 한다. 넓은철길돌격대 양강도 연대에서는 안전모만 지급되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위연살림집건설돌격대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개인이 가져오거나 각 돌격대원을 보내는 기업소에서 부담해야했다고 하였다. 어랑천발전소돌격대에서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하나도 없었고 동원될 때 입고 간 채로 작업을 하였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구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단천발전소돌격대에서는 안전모, 신발, 근무복이 지급되었다고 하였고, 삼지연군돌격대 양강도 대대에서도 안전모, 작업신발, 작업복이 지급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작업장에서 안전관리·감독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돌격대원 중 건설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 교육과 감독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넓은철길돌격대 양강도 연대에서는 ‘감독과’라는 부서에서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위연살림집건설돌격대 양강도 연대는 살림집 건설을 양강도 도당위원회의 책임 하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당위원회에서 안전 감독을 하였

다는 진술이 있었다. 안전장비를 부족하게 제공하고,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장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기중기로 돌을 들어 올리다가 떨어진 돌에 돌격대원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콘크리트 혼합물을 높은 층으로 옮기기 위해 기중기로 올리다가 줄이 끊어져 돌격대원이 사망하였다는 진술과 갱도 안에서 작업을 하던 돌격대원이 돌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근무 환경

돌격대에서의 식사와 숙소 등 근무환경은 소속된 돌격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돌격대의 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공급되는 식사가 달랐으며, 돌격대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서 돌격대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보리밥과 된장이나 소금, 미역국이 전부였다고 하며 들어간 지 1개월만 지나면 허약에 걸려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어랑천발전소 돌격대에서는 일반 돌격대원에게 매끼 강냉이밥, 감자반찬, 양배추김치 등의 식사를 배부를 정도로 배식하였다고 하여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차이가 있었다. 같은 돌격대 내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삼지연시건설돌격대의 도단위에서 동원된 대대는 쌀밥과 국, 고기, 나물 등이 매일 제공되었다고 하였지만, 군단위 동원 대대는 강냉이밥, 산나물, 미역국이 제공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일반 돌격대원과 사무원이나 관리자의 급식도 차이가 있었는데, 삼지연시건설돌격대의 남포시연대 일

반 돌격대원의 식사비용은 끼니당 2,500~4,000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 하루에 강냉이밥 600g, 염배추국, 젓갈, 인조고기 등이 제공되었지만, 연대의 당일꾼은 한끼에 노동자 30~40명의 식사비용을 모두 써버리기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지역에 별도로 조직된 돌격대에서도 일반대원에게는 옥수수에 쌀을 섞은 잡곡밥과 된장국이 나오는 게 전부였지만, 기술자로 참여한 경우 매 끼니 고기가 조금씩 나와 부실하지 않았다고 한다. 돌격대 연대 지휘부의 식사는 잡곡과 쌀의 7:3 비율의 잡곡밥과 국, 나물, 김치가 나왔다는 진술이 있었다. 숙소환경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열악하였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대부분 건설 현장이었기 때문에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고, 많은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15명의 돌격대원이 공동으로 숙소를 사용하였으며, 겨울철 난방은 잘되어 지내기가 나왔다는 진술과 대대 인원 25명이 한방에서 지내야했기 때문에 매우 비좁았으며, 난방은 화목난로를 이용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돌격대에서 제공되는 열악한 식사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허약’이라는 영양부족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였지만, 돌격대 내에서의 치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의(軍醫)’가 있는 돌격대에서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지만, 치료는 돌격대원이 개인적으로 구매해오는 주사약을 놔주거나 찰과상 등을 치료해주는 정도였고, 응급환자는 인근의 인민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한다. 규모가 작은 돌격대에는 군의가 없는 경우도 많아 돌격대 대원 중 의료인 출신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돌격대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강도 높은 작업, 장시간 근무 등으로 도망하는 돌격대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속된 중대 돌격대원이 대부분 도망하여 전체 25명 중 5명만 남았던 적도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고, 도주하다가 붙잡혀 관리자 등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례도 많았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힌 돌격대원은 대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였고, 도주하다 붙잡힌 여성은 돌격대장과 남성돌격대원에게 삽자루로 다리와 몸통 등을 수십 회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돌격대에서 급식은 보리밥 7숟가락과 소금 혹은 된장을 주었고, 간혹 미역국을 주는데 미역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작업량은 많지만 식사량이 적어서 허약에 걸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도 허약에 걸렸지만 귀가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돌격대에서 도망치다가 초소에서 잡혔는데, 돌격대 단속원인 규찰대에게 체포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격대로 복귀하였고, 대대장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워낙 도주자들이 많아서 제가 도망치다가 잡힌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2) 해외파견노동자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 사례 중 최초로 수집된 시점은 1990년으로 북-러 양국의 석탄공업부 간의 합영기업에서 광부들의 숙소를 짓는 일을 하였던 경우였다. 이후 1995년을 기점으로 별목노동자의 파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만 국한되었던 파견 국가도 확장되어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으로의 확대되었고, 2010년을 전후로는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파견업종도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에서는 별목으로 시작하여 건설로

변화하였고,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건설이 주류를 이루지만, 동상이나 벽화작업 등에도 종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유럽은 건설노동자와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파견되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소수의 건설노동자와 의사가 파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제조업 분야와 식당 접대원들의 파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IT관련자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발 조건

파견자노동자 선발은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인력을 ‘선발’하기보다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격 사유는 모든 직종에서 공통된 것도 있었지만, 파견 직종, 파견 직위 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 해외에 파견자 선발에서 제외되는 공통적 사항은 중요 시설에서 군복무를 한 자, 가족 중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친척이 있거나 탈북한 친척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 중 해외파견자가 있는 경우 등이었다. 이는 파견 후 현지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북한의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공통적으로 선발제외 사항 이외에도 건설이나 일반 노동자로 파견될 경우 대학졸업자(건축·미술 전공은 제외), 미혼자, 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한 경우 등은 선발에서 제외되며, 미장 자격이나 기능을 평가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러시아에 파견된 건설노동자는 문서에서 대학졸업 사항을 삭

제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해외파견 중인 가족이 있어 파견이 늦어진 사례도 진술도 있었다. 통역원으로 파견시 고려되는 것으로, 27세 이상은 기혼자여야 하며 27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대학성적과 최소 외국문 출판사의 해외파견외국어시험담당 부서에서 시행하는 필기나 구술 시험을 봐야하는데, 영어급수 5급 이상은 되어야 선발이 가능하다는 진술이 있었다. 보통 해외파견자는 기혼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통역원의 인원부족으로 27세 이전에 미혼인 상태로 1차례 파견을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진술이 있었다. 의사로 파견될 때는 병원근무 경력 10년 이상으로 급수는 3~4급, 당원이 된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선발 후 2~6개월간의 영어 강습을 받은 후 회화능력 평가에서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당 봉사원은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전문학교나 대학 졸업자를 우대하였고, 23세 이하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며, 부모가 모두 생존해야 한다고 하였다. 군복무 중 일반 노동자로 파견되는 경우 복무 중 표창을 받은 사람은 우선 선발되고, 미혼자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어야 하며, 탈영 경력이 있거나, 복무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선발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 중에 월남자가 있거나, 정치범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토대에서 걸려 제외되고, 가정불화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서 특수기관인 중앙당, 군수공장, 軍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나 본인이 특수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파견에서 제외됩니다. 주간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간부로만 파견 보내고 노동자로 파견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만 갈 수 있었고, 예외적으로 통역의 경우 총각이어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발 절차

선발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추천을 받으면서 선발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파견주관 기관에서 인력양성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에 들어가 일정기간을 근무한 후 추천대상자가 되는 등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선발 절차는 선발을 위한 추천으로 시작하는데, 사업소의 간부와 지도원이 담당한다고 하였다. 추천 대상자가 되면 간부과에서는 신원조회와 보증인 면담을 하고 직장 보위원의 평정서 등을 바탕으로 선발자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서류작성이 진행되는 시점에 사업소의 간부와 지도원과 간부과장 면담을 실시하며, 이후 작성된 서류를 대외건설지도국 간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서류는 지도국의 간부부 지도원이 확인한 후 간부부 업무담당자, 간부부 부장, 조직비서, 책임비서 면담 등으로 이어지고, 이후 서류가 중앙당으로 넘어가 중앙당 8과 지도원 등과 면담한 후 선발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동자를 파견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대외건설지도국으로 산하에 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이하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에서 근무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과 일반기업소의 노동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였던 보인다. 이외에 중앙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자를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군복무 중인 병사를 파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외건설지도국의 파견절차는 사업소의 노동자가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게 되면 파견대상이 되는데, 1년~2년 정도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간관리자인 직장장 등으로 파견될 때는 사업소 단계에서 사업소 간부와 지도원과 간부과장 이외에 조직비서와 당비서의 면담이 추가되고, 중앙당 면담시 8과 지도원과 과장의

면담을 거쳐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비준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군복무 중인 사병을 노동자로 파견할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외건설자양성소의 대상자를 파견하거나 공병대의 사병 중 선발된 경우를 파견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견절차는 추천자의 서류를 여단에 제출하면 여단의 간부부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없으면 여단과 군단의 면담을 실시하게 된다. 신체검사를 마친 후 추천자에 대한 문서를 총정치국에 보내고, 총정치국 면담을 한 후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추천자를 면담하는 사람은 여단은 여단장, 정치위원, 간부부장, 보위부장이고, 군단은 군단 간부지도원이며, 총정치국 면담은 대좌급 군관이 진행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의사는 소속과 파견 주관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속된 병원의 관할지역 도·시당의 면담부터 시작하며, 이후 중앙당과 중앙당의 파견주관기관 관할부서, 중앙당 해외파견자 담당 부서인 8과, 보위부 등의 면담을 거쳐야 하지만, 파견주관기관에 이미 뇌물을 주고 내정자로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식당 봉사원은 평양의 대외봉사학원이라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거나 추천을 통해 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봉사학원의 교육과정은 1~2년으로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식당의 지배인이 봉사원을 직접 선발하는 경우이다. 식당봉사원으로 근무 중 추천을 받아 선발되는 경우는 식당이 소속된 상급기관에서 면접을 보았다고 한다. 선발 후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양 소재 식당에서 봉사원으로 약 1년 동안 근무한 후 그간의 평정서를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신원조회를 한 뒤 파견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파견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군복무 중 건설 노동자로 파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물을 사용하였다는 공통된 진술이 있었다. 대외건설지도국 산하의 사업소 노동자들은 파견자 선발 절차 개시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충족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발되기 위해 사업소의 간부와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통상적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사업소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는 권한은 간부와 지도원에게 있기 때문이며,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는 사업소의 간부지도원에게 50달러, 직장 보위원에 50달러, 신체검사 시 30달러를 주었다는 진술과 사업소 간부와 지도원에게 100달러를 주었는데, 처음 파견되는 사람은 50달러, 재파견자는 100달러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사업소의 노동자가 아닌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뇌물이 필요하였다고 하는데, 지방 기관의 노동자로 대외건설지도국 파견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지도국 간부과장, 거주지 시군당 간부과장, 간부지도원, 신체검사 기관인 평양제2인민병원 당비서 등에게 총 1,500달러를 뇌물로 주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의사 파견시에도 뇌물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공고를 통해 선발하는 형식이지만, 내정자가 되기 위해 뇌물을 주어야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선발 전 중앙당 파견주관기관 관할부서와 8과에 총 4,500달러의 뇌물을 주었고, 면담이 있을 때마다 300~500달러를 뇌물로 주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소속 기관에서 파견하는 때에 선발되기 위해 추천권한이 있는 부서장에게 1,500달러를 주고 내정되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통역원의 경우에도 소속된 사업소의 간부와 지도원, 대외건설지도국 간부부 지도원, 중앙당 간부부 지도원 등 서류나 자격 등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총 1,500달러의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파견

회사의 해외파견 담당직원에게 300달러를 주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통역으로 외국에 파견 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500~1,000달러를 주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견 시 뇌물은 직종,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파견국가에서 얼마나 벌 수 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후방총국에서 파견되는 의사들의 경우 5,000달러 이상을 주고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파견이 확정되면 중앙당·외무성·안전성·무역성 등의 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파견되는 국가의 관습이나 예절 등과 함께 적의 공작을 조심하라는 것, 세계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며, 대간첩투쟁관을 관람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관리자로 파견되는 경우는 사전강습을 따로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대상자는 사장, 통역, 직장장, 의사 등이었고 한꺼번에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의 내용은 일반노동자에 대한 사전 교육 내용에 더해 북한의 지지자들을 많이 만들라는 것, 자본주의에 물들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노동보수

건설노동자는 파견기관이 현지에 설립한 회사에 소속되며, 현지 북한회사는 파견국가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회사 간 계약은 북한 회사가 하도급을 받는 형태이거나, 현지회사에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형태도 있었다. 파견된 노동자는 현지 북한회사에서 관할하며, 회사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북한회사에서 파견국 현지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에서 현지회사와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형식을 따랐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매우 드문 경우였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북한회사와 파견국 회사 간의 계약에 대한 세부 내용과 매달 받아야 하는 임금 등을 알고 있는 경우도 드물었다.

러시아나 몽골과 같이 하도급으로 전체공사의 일부를 맡는 경우는 노동자 임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사비 전체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작업에 단가를 정해놓고 작업량을 확인하며, 일정량의 작업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비용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총액에서 국가계획분, 체류·운영비, 파견 시 선지급 비용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되는데, 정산된 금액을 노동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회사는 많지 않았고, 지급될 금액에서 용돈이라는 명목의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파견 종료 시 일괄 지급하거나,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였다고 한다.

러시아 건설업 파견노동자는 한 달에 한번 임금을 결산하여 생활비로 지급받았다가 3달에 한번으로 바뀌었고 노동자별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서 노동자 중에는 받을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더 상납해야하는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국가계획분은 2019년까지 1인당 월 650달러였다고 하며, 국가납부 200달러를 제외한 450달러는 식비 50달러, 회사운영비 월 100~150달러였다고 진술하였다.

몽골의 건설업 파견 노동자의 임금은 매달 다르게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30달러 내외가 보통이었다고 한다. 임금지급에 불만이 있던 노동자들이 사장에게 항의하기도 하여 200달러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금액을 내려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일정하

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국에 납부하는 금액은 매달 1인당 300달러~670달러였으며, 국가계획분, 식비, 회사·직장 운영비, 당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대북제재 이후에는 대사관 운영비까지 포함되었다고 한다.

중동지역 건설업은 현지 북한회사에서는 인력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체류국의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을 일괄로 지급하면 현지 북한회사는 이를 일괄 관리하고 노동자에게는 고지만 하였다. 노동정량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초과 달성시마다 30달러씩 늘리고, 미달시마다 30달러씩 줄이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노동자는 매달 1천 달러 이상은 벌었지만, 상납금 명목으로 750달러를 납부하여 노동자에게는 100달러 정도만 지급되었다고 한다. 다른 파견국가에서도 월평균 26일 하루 10~12시간으로 계산하여 노동자 1인당 급여를 지급하는데, 국가계획분 500달러를 납부하고 노동자에게는 100달러 정도만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경우는 파견국 상대 회사에서 개별 현금카드에 임금을 지급하였지만, 북한 회사가 노동자 개인 급여를 모두 인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는 모르는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고 하였다. 북한이 현지에 만든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재료비 등과 임금을 받는 형태도 있었는데, 급여는 현지 화폐로 지급되었고, 금액은 1인당 520달러 정도였지만, 20%만 노동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국가납부금, 회사경영비, 식비, 현지인 알선 수수료, 관리비, 당비 등으로 차감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유럽지역 파견 노동자에게는 2~3개월에 한 번씩 노동자 1인당 1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를 지급하였다가 2017년 체류국 세금

이 인상되었다는 명분으로 100~150달러 정도만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는 총 급여에서 국가계획분 등을 공제한 것으로 전체임금의 15~25% 정도였다고 한다. 노동자의 1인당 실제 보수는 1,500달러 정도였지만, 당국에는 70%정도만 보고한 후, 상납금을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사장이 착복하기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 건설업은 기술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기사의 경우 200달러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국가계획분은 1인당 연 5천 달러로 전체 소득의 80%로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건설노동자 파견에 중간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직장장, 통역, 재정원 등은 매달 200달러 이상 연간 4천 달러 정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스크바 경우에는 노동자 1명당 1년에 7,000달러를 상납하는데, 국가계획분 3,500달러와 노동자 거주비, 유류비, 세금 등 회사 운영비 명목의 3,500달러를 합한 금액입니다. 7,000달러 공제한 나머지를 노임으로 지급합니다. 제가 있던 작업반의 경우에는 노동자 23명 중 1~2명은 1년에 3,000달러를 받았지만, 5~6명은 마이너스도 있었으며, 평균 1년에 1,000달러 정도 받았습시다.”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도 노동보수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의사는 파견국의 병원에 고용되거나 개인적으로 의원을 개원하는 형태로 일하였는데, 현지 병원 고용의사는 병원 측에서 지급하는 월급 중 계획분을 제외하면 200~300달러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경우는 매월 국가계획분 이외의 금액이 수입이 되는데,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지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경우 월 1,000~1,500달러의 임금 중 상

납금이 700달러였는데, 2017년경 800달러로 상승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개인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경우 상납금은 650달러로 이중 국가계획분 500달러, 대사관 운영비 50달러, 정책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IT업 파견자는 매달 100달러를 받고 파견 종료시 귀국하면서 성과급을 추가로 받는 형태였다고 하며, 국가계획분은 1인당 월 1,500달러로 전체수익의 40%이며, 10%는 현지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40%는 생활비와 파견책임자 몫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의류제조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 파견된 노동자가 수령하는 임금도 건설노동자와 비슷하여 매달 100~200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는 파견한 기관과 도시에 따라 국가계획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던 경우도 있었는데, 러시아 건설노동자의 상납금은 2005년 전후로 노동자 한명이 매달 100달러의 국가계획분을 납부하다가 매달 200달러까지 올랐으며, 2008년에는 800달러로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모스크바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는 2019년 매달 500달러 정도였던 상납금이 2020년 600달러로 상승하였고, 2021년 680달러 정도로 상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파견노동자는 2016년 즈음 매월 600달러, 2017년 700달러를 납부하였다고 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된 노동자는 2015년경부터 매달 1천 달러 정도를 매월 납부하였다는 진술하였고, 다른 노동자는 2018년 정도부터 상납금이 계속 상승하여 매달 1천 달러 이상을 상납해야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건설업 노동자에 대한 낮은 임금과 과도한 상납금은 노동자들이 '청부'라는 개별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직장장이나 보위원 등에게 매달 뇌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청부를 하는 노동자도 있었고, 일부 회사에서는 파견 초기부터 작업반별로 개별적으로 청부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부 노동자는 일당 임금을 받거나, 회사 내 청부노동자를 독립된 작업반으로 구성하여 주택건설, 인테리어 작업 등 소규모 공사를 맡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일감을 구하는 것부터 계약과 공사대금 지급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속 북한회사의 개입이 없었고, 정해진 납부금만 상납하면 되었다고 한다. 청부로 개인활동을 하는 노동자는 작업의 양에 따라 수익에 차이가 있으나, 계획분 상납 후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익이 남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중동지역에서는 청부를 허락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5명 미만의 인원이 함께 하도록 하여 주로 가정집 수리 등 소규모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청부노동자에게 매월 조별로 850달러를 상납하는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파견된 국가의 통제로 인해 청부가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1,000루블(16달러 정도)을 받았고, 1년에 한번씩 연간 계획총화로 1~3만 루블(170~500달러) 정도를 주었습니다. 받은 돈이 부족하다 보니 저는 청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회사 관리 성원들은 매달 200달러씩 지급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청부를 하면서 월 평균 8~9만 루블을 벌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계획분으로 월 4만5천 루블(750달러)을 바쳤고, 이와 별도로 직장장에게 월 2,000루블 보위원에게 월 2~3,000루블을 바쳤습니다.”

근로시간

북한의 해외파견노동자는 일부 파견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시간의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체류국에서 북한회사의 업무 형태, 체류국과 북한 회사간의 계약형태의 변화는 노동자를 장시간 작업시간에 노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지 북한회사가 노동력만 공급하던 업무형태인 경우는 근로시간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하도급계약으로 일감을 얻는 북한 회사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최대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건설업에 파견된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노동자의 하루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휴일이 거의 없는 상태로 파악되었다. 중동지역, 유럽 등에 파견된 경우는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작업시간이 비교적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러시아에서 일하였던 건설노동자는 오전 7시30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자정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하루 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 새벽 2~3시까지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9년에도 작업시간이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였으며,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는 2~3일씩 밤을 새기도 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매일 작업시간이 16~17시간이 넘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한 달에 2일 정도 휴일이 있으면 매우 많은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러시아 이외 파견국가에서는 당국 또는 현지회사의 근로감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몽골은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작업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작업한 적

도 있었다고 한다. 주말에도 휴일 없이 일하여 연중 휴식이 가능한 날은 설날, 김일성, 김정일 생일, 몽골의 국가명절 1일로 총 4~5일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중동지역은 금요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하였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고,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씩 노동하였다는 사례와 주 6일 금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오전 6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작업하였으며, 식사 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매일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은 기술지도와 설계, 측량, 토목 등을 담당하여 파견 국가 회사에 고용된 형태로 일하였는데,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었고, 일주일에 5~6일을 근무하였다고 한다. 유럽지역도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작업시간이 정해져 있어 하루 11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 중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휴일은 격주로 하루만 쉬어 한달에 2일만 쉬었다고 진술하였다. 식당봉사원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빙과 공연을 하였고, 월 3회 휴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아침에 7시에 기상해서, 8~12시까지 오전근무, 12~13시 식사, 13~22시까지 오후 근무를 합니다. 할당된 일감을 채우지 못하면 새벽 5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녁 취침은 일이 끝나고 들어오는 대로 잤습니다. 토·일요일 상관없이 계속 일하였습니다. 개인 휴식 시간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제공되었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잠을 잡니다.”

드물게는 장시간의 근로시간에 불만이 쌓인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 2018년 몽골에서 북한의 해외파견노동자의

작업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임금이 매우 적다는 등 한국 보도의 내용을 본 노동자들이 태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오후 6시에 작업을 끝내는 것이었다고 한다.

안전과 재해

안전교육·감독과 안전장비의 제공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관리 감독은 이뤄지고 있었고, 안전장비의 제공은 사업장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건설현장에는 러시아 감독관이 상주하고 있었다는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안전장비의 제공은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는 제공하였지만, 장갑, 작업복 등 일부는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몽골에서는 안전장비는 노동자가 구매해야 했다는데, 북한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현지회사와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안전교육과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외의 국가에서는 현지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노동 감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도 모두 지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회사의 안전장비 지급용 비용을 북한 회사 측에서 횡령하여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중동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는 처음 작업에 투입되기 전 현지 회사의 안전책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추락사고 등에 대한 영상 시청과 현장에서 교육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유럽지역 파견 건설노동자는 안전교육을 파견국 회사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한번에 1~3시간 정도

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며, 안전모, 장갑, 안전화, 안전조끼 등 모두 부족하지 않게 지급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파견국 회사에서 근무에 필요한 안전도구가 지급되면 현장에 나와 있는 당 간부나 지배인 등이 장비를 되팔아 착복하였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생활환경

노동자의 생활공간도 파견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러시아 건설노동자는 컨테이너 같은 임시숙소를 이용하였지만, 이외의 파견국에서는 보통 건설현장 인근의 숙소를 임차한다고 하였다. 이는 파견국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연관이 있는데, 북한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건설노동자는 따로 숙소를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건설현장 안에 마련된 컨테이너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부로 소수인원이 작업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인 건물의 지하 등에서 지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도 러시아와 유사하였는데, 컨테이너나 주택을 임대하였으며, 많은 인원이 사용하기에 비좁은데다가 청결하지도 않았고, 에어컨 가동을 잘 하지 않아 매우 불편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반면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는 노동자 숙소로 소형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에어컨이나 온수가 잘 나와 환경은 쾌적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유럽지역도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깨끗한 환경이었지만, 비좁았다고 진술하였다.

감시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파견된 시기, 파견 지역, 파견된 직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보위원의 정보원 활용과 검열로 나타났다. 북한 회사에 관리자로 해외에 파견되는 사람은 사장, 당비서, 보위원, 통역원, 회계원, 의사 등이며, 이 중 보위원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현지이탈이나 외부정보접촉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파견국 북한 회사 1곳에 보위원 1명이 파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위원이 직접 감시하기도 하지만, 정보원을 두고 파견 노동자의 동향을 세부적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통 건설노동자는 작업반이나 직장단위로 작업현장이 다른 경우가 많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노동자 중 ‘스파이’로 불리는 정보원을 둔다고 한다. 청년노동자들도 소수의 인원이 조를 이뤄 움직이기 때문에 조원 중에 정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정보원은 노동자들의 특이 사항이나 규정위반 사항 등을 보위원에 수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금지사항인 외국인 접촉, 단독 행동, 스마트폰 소지 등을 위반한 경우라고 한다. 개별 활동을 하는 형태의 파견에서도 정보원은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고체계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거주 지역 이외 외출이 필요할 때는 보위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동선을 통보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해외 파견자에 대한 소지품 등의 검열도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보위원의 검열 목적은 주로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단체 생활을 하는 일반 노동자는 정보원의 보

고가 있을 때나 파견종료로 복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지품 검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파견기간 중 일주일에 2~3 차례씩 소지품 검열을 받았다는 경우가 있었고, 전체 인원에 대한 검열 시 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낸 상태에서 보위원 단독으로 하여 불만이 많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의사 등 개별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검열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 보위원이 집으로 찾아와 편지, 컴퓨터 등을 모두 꺼내놓도록 한 뒤 검열을 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검열 등으로 보위원에게 단속된 사람은 뇌물로 무마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무마의 대가로 보위원의 요구대로 정보원 역할을 해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파견 노동자는 본국으로 송환되면 다시 파견되는 것이 어려워 보위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보위지도원과 직장장의 관계가 좋으면 5-6개월마다 소지품 검열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장장을 믿지 못하고 불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노동자들이 모르게 일 나간 다음에 보위지도원이 직장장을 호출하여 검사를 시작합니다. 보위지도원은 대개 노동자 중에 스파이를 심어놓고 스파이로부터 받은 보고를 근거로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제

해외 파견자들에 대한 통제는 여권의 회수, 외출 금지, 외부정보접촉 금지, 휴대전화·스마트폰 제한 및 금지, 생활총화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파견 노동자의 대부분은 파견지에 도착하여 입국심사가 끝나는 대로 회사 측에 여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권을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경우는 대외 활동이 필요한 직장장, 통역, 보위원 등의 관리 인원이며, 개별

적으로 일감을 구해 일하는 청부노동자에게도 개인이 여권을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의 여권은 사장이나 직장장 등이 일괄 보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근로감독 등을 엄격히 했던 일부 파견국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노동자 개인에게 여권을 소지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 파견자 중 개별적 청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꼬삐(copy)’라고 부르는 여권·비자·노동허가증의 복사본을 지급하였지만, 회사가 계약한 건설현장에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복사본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외의 국가에서도 여권소지와 외출에 대한 통제가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몽골이나 중동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권과 거주증 등을 회사에서 일괄로 보관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된 의사의 경우도 파견국에 도착하면 대사관에서 모두 관리하였고, 현지 거주증만 소지하도록 하거나 여권복사본만 주었다고 한다. 반면 유럽지역은 여권과 외국인 거주증 모두를 개인이 소지하도록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파견 초기에는 단장이 모두 관리하고 있었다가 현지에서 북한 파견 노동자의 관리가 강압적이라는 내용의 현지보도를 계기로 노동자가 여권을 소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파견지에서 단체로 이동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외국인 거주증을 단장이 모두 가지고 있어 인신매매로 의심을 받은 후로 거주증까지도 개별적으로 소지하도록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파견 노동자는 단독으로 외출이 허용되지 않아 숙소와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 자유롭게 갈 수 없었으며, 현지인을 접촉하는 것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 중 노동자로 파견된 경우는 회사에서 외출을 허용하지 않아 가까운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도 허락을 받고 2인 이상 동행해야 가능하였다는 경우가 있었다. 직장장이 장시간의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였는데,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 경찰에 단속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휴일에 외출이 가능했던 경우에도 3~4명이 조를 이뤄야했으며, 외출 시 거주증을 조장에게만 주거나, 외출일지를 쓰도록 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개별적으로 일을 하였던 의사는 거주지 인근에 외출하는 것은 비교적 제한이 덜하였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단장과 보위에 보고해야 했다고 하였다. 파견노동자의 현지 이탈이 발생하면 노동자 전체에 대한 외출이 전면 금지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해외 파견자는 외부정보 접촉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파견노동자를 상대로 출국 전에 실시하는 사전강습에서 외국인이나 한국인을 접촉하거나 휴대전화기와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외국영상물·출판물·성경책 등을 보지 말 것을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부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들은 현지인이나 외국인을 만날 때 반드시 통역원을 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며, 노동자를 감시하는 사항에는 현지인이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식당 근무 노동자가 외국인과의 대화를 한 것이 드러나 비판서를 쓰도록 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외부정보 접촉에 대한 통제는 현지 TV 시청, 라디오 청취, 출판·영상물 접촉, 휴대전화 사용, 인터넷 접속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V는 노동자들의 숙소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현지 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녹화된 북한 방송만 볼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출판·영상물 등이 저장된 CD·USB 등은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

도록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나 휴가 등으로 북한에 돌아가는 노동자에 대해 검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란물 동영상이 저장된 CD를 다량 소지하였다가 적발된 노동자에게 한 달간 비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원으로 일반 노동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청부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보위원에게 자신의 위치 등을 매일 보고 해야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는 인터넷접속이 불가능한 것(이하 2G핸드폰)으로만 제한하였는데, 관리인원과 청부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노동자에 대한 2G핸드폰에 대한 통제는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시 한국제품이 아닌 2G핸드폰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례와 청부를 하지 않는 일반노동자들도 2G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노동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지의 중고시장이나 이주노동자로부터 구매하였으며, 사용 목적은 인터넷 접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접촉하는 것들은 주로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뉴스, 북한이탈주민 채널 등 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열에서 발각되면 한국 영상물을 접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파견노동자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터넷 접속과 외부정보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보위원의 검열도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스마트폰 사용이 인정된 통역원의 경우 접속 기록을 수시로 검열하였다고 하며, 청부노동자들이 생활총화를 위해 매주 회사로 오면 2G핸드폰을 꺼내 보위

원에 보여주도록 하였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검열용 휴대전화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소지로 단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뇌물을 주고 무마한다고 하였는데, 2020년 일반노동자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2번이나 단속되었고, 기기를 압수당하고,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고, 스마트폰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했던 경우도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국인 유튜브 운영채널 등을 시청하다가 단속되면 강제송환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러시아에 파견된 일반노동자가 스마트폰 소지와 한국 영상물을 보았다는 이유로 송환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휴대전화 소지는 모든 노동자들이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스마트폰 소지는 금지였지만 노동자들은 모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중고를 사서 사용하였는데, 전화통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인터넷을 하기 위함입니다. 보위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하는데,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에 노동자들의 숙소를 검열하였습니다. 보위원에게 스마트폰을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인터넷 검색 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잡습니다. 확인되면 보위원이 송환할지 말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데, 회사의 사장과 당비서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그런데 송환이 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직장장이 뇌물을 주고 무마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활총화는 해외파견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주 실시되고 있었으며, 파견지의 근무환경에 따라 요일이나 방법 등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주 주말을 이용하여 작업장별로 세포비서 등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이때 청부로 외부에 나가있던 노동자도 모두 들어오도록 하였다고 한다. 호상비판, 방침전달, 동영상 등

을 시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 중 파견되었거나 인민군 소속 회사는 생활총화를 비롯한 정치모임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하였으며, 매주 실시하는 주총화는 물론 매월 실시하는 월총화까지도 하였다고 한다. 파견자가 대부분 당원인 경우에도 매주 생활총화와 함께 학습회, 강연회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총화까지 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중동지역은 지역특성상 노동자들의 휴식일인 금요일에 생활총화를 하였다고 하며, 의사 등 개별 활동 파견자 중 원거리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참여를 허가하기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지만 생활총화를 매주 대사관에서 나오는 학습제강을 직장장이 10분 정도 설명하는 형식으로만 실시하였다는 사례와 규정상 매주 실시하여야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충성심은 계획분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총화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그 시간에 노동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당비서가 지배인의 눈치를 보느라 생활총화를 형식적으로 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생활총화를 하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020년 COVID-19 발생으로 생활총화는 중단되었으며, 보위원이 한 달에 한 번 대사관에서 배부하는 학습자료를 나눠주는 것으로 총화를 대신하였다고 하였다. 소규모 인원으로서 일하던 곳에서는 파견기간 중 한 번도 생활총화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례와 수백 명이 파견되었던 곳에서도 생활총화를 매주 일요일 점심시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에는 노동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당원이었습니다. 당원이 아닌 3명은 일이 워낙 바쁘니 기록만 남기는 형태로 형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관리성원 당원은 자기들끼리, 노동자들 당원은 직장장이 책임 하에 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총화도 문건만 작성하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잠을 5시간밖에 못자니 생활총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북제재와 COVID-19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1.29)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안 2397호(2017.12.22.)³³⁰는 인적교류 금지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미 파견되어 있는 해외노동자의 복귀와 새로운 해외노동자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회피 방법을 동원하여 러시아와 중국 등에 노동자를 여전히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피 방법은 노동자를 관광이나 유학으로 위장하여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었다.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는 제재 이전에는 공무용 통행증발급이 가능하였지만, 대북제재 이후 공무용 통행증 발급이 불가하게 되자, 관광비자로 출국한 뒤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의 국경지역으로 돌아와 세관에서 출입국 도장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복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복귀하여 유학(교육)비자로 변경한 후 다시 나왔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일반노동자는 자신이 속한 대학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다. 중간관리자 등은 현지 대학에서 일부 교육을 받는다는 진술도 있었다.

330 UN Doc. S/RES/2397(2017), sectoral 8: 회원국은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할 것을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북제재 이후 러시아에 관광비자로 들어가 청부를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북한에 입국하였다가 나오기를 반복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중동지역에서는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현지에 설립한 회사의 사장을 현지인으로 채용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회사는 하도급 공사를 맡아 운영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2020년 COVID-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였다. 국경봉쇄 조치로 해외파견이 결정된 노동자의 출국이 무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파견되어 있었던 노동자 중 파견 종료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노동자의 입국도 불가능해졌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북제재 직전에 파견된 노동자는 파견국에서 노동허가 또는 거주허가가 나오지 않아 불법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대북제재 이전 파견자 중 비자가 만료되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들어갈 수 없어 불법체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 파견노동자 중 대북제재로 거주허가가 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로 청부일을 하였다는 사례가 있었고, 2019년 해외노동자의 본국송환으로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 불법체류 중 파견국의 이민청에서 북한 노동자 전체를 출석하도록 하고 보호소에 구금한 상태로 취조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후 이민청에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북한으로의 입국이 불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1인당 850달러 상당의 돈을 지불한 후, 최소 5일에서 2개월 임시거주허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몽골에서도 2019년 6월 노동자 모두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연장되지 않아 노동자 1인당 하루 1만 투그릭(약 3달러)의 벌금을 내면서 지내야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노동허가증 없이 교육비자로 노동을 하다가 러시아 경찰이 건설 현장에 정기적으로 검열을 나오면 보통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합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노동자 4명이 노동허가증 미소지로 노동하다 단속되어 이민국에서 넘겨져 조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북한 국경이 봉쇄되어 추방되지는 않았고 대신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2019년 이전에 파견되어 노동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들만 귀북했는데, 전부는 아니고 약 70% 정도만 철수했습니다. 나머지는 2019년 이후 파견된 자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계속 건설 활동을 했습니다.”

4. 교육권

세계인권선언은 제26조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은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집단을 포용하며,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증오와 불관용을 가르쳤던 나치시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교육을 인권의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교육의 목표는 자유·정의·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³³¹

사회권규약도 제13조에서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인정하며, 교육권의 실현을 위하여 규약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당사국은 인권과 자유의 존중, 포용과 평화의 증진이라는 규약상의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제13조 제1항), 초등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제공하고, 중등 및 고등 교육에 있어서도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중등교육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제13조 제2항). 또한 당사국은 학부모에게 자녀를

.....

³³¹ 교육은 국민국가가 출현하면서 부모의 책임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책임으로 바뀌었고,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권)’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인정되었다. 그런데 국가는 교육을 특정 정치 이념 등의 주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교육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육권은 국가를 통한 자유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위하여 공립학교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며(제13조 제3항), 사립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자유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제13조 제4항).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당사국은 교육권의 실현을 위해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등 교육여건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그리고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한 없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³² 또한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은 아동을 포함한 학생 및 학부모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적합해야 하며, 교과과정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³³³

북한은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교육권을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3조에서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원법, 교육강령집행법 등을 두고 있다. 북한은 2019년에 제출한 제3차 UPR 보고서에서 2014년에 ‘교육발전을 위한 국가전략(2015-2023)’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한 단계별 이행을 위해 5개년 전략(2016-2020)을 실시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³³⁴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들은 2015년 이후 제·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원격교육법(2020)이 제정되었다.

.....

³³²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1999), The right to education, para. 6.

³³³ *Ibid.*, para. 50.

³³⁴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4.

가. 무상의무교육

사회권규약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등교육이 ‘의무적’이라는 것은 아동이 초등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결정은 부모, 후견인, 국가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 부모, 후견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교육이 무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이러한 초등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모든 당사국의 ‘즉각적인 의무’라고 밝히고 있다.³³⁵ 중등 및 고등교육의 경우에도 무상교육이 점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당사국은 장학제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³³⁶

북한은 2012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집행령’을 채택하여 ‘12년 무상의무교육제’를 도입하였고, 사회주의헌법 및 보통교육법에서 이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³³⁷ 보통교육법(2015)에 따르면 학령기(5세~16세)의 모든 국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제11조), 중등일반교육의 학제는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총 12년으로 구성되고(제10조), 이 기간 동안 모든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제13조). 교육기관의 운영비용도 국가 또는 단체의

335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1999), The right to education, para. 51.

336 *Ibid.*, para. 53.

337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11년제에서 12년제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사회주의헌법(2019)」 제45조 및 제47조.

예산으로 보장하며,³³⁸ 교과서나 교육비품의 경우도 국가가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한다고 규정하여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³³⁹

이러한 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실제로 학령기의 아동들이 무상의무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북한의 소학교는 물론 고급중학교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학습에 필요한 제반 비용뿐만 아니라 학교운영비용, 꼬마계획³⁴⁰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수집되었다. 학교수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요금’이라고 불리는 일정 금액을 학교에 지불하고 받았다는 증언이 많았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는데, 일부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경우에도 현 교과서로 제공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 교과서 수가 학생 수보다 적다보니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교과서를 우선 지급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학년을 마치면 교과서를 다음 학년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과서를 깨끗하게 써야 한다’고 매번 말했다고 한다. 한편 2013년에 12년제로 학제가 개편되면서 북한 당국이 개정된 교과서를 학교에 배부했을 때에는 새 교과서로 전권을 받았다는 증언들도

338 「교육법(2015)」 제23조(교육기관의 운영비용) 교육기관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한다.

339 「보통교육법(2015)」 제16조(교과서 및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같은 것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 때에 출판,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강령집행법(2016)」 제38조(교육도서, 교육물 보장)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 학년도를 계기로 교육강령집행에 필요한 교육도서와 각종 교육물의 수요, 이용실태를 고려함에 따라 제 때에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340 꼬마계획은 소년단원들이 좋은 일하기 운동의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세운 계획을 이르는 말;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4권, 2017. 488쪽.

있었다.

“12년제가 도입되어 국가에서 새 교과서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경에 12년제에 들어가는 학급만 새 교과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현 교과서를 매년 재활용합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분실된 경우 등이 있어 학생 수에 비해 교과서 수가 늘 부족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추가 지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복은 대체로 국정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2014년까지는 학교에 국정가격을 내고 교복을 받았는데, 2015년부터는 시장에 있는 양복점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한다. 교복을 입지 않고는 학교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인맥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입었던 교복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돈이 없어 교복을 마련하지 못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사이즈도 맞지 않는 현 교복을 주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 중에는 교복이 작아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자 사복을 입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교과과정에 포함된 현장학습에의 참가를 이유로 학교에서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8년에 학교에서 칠보산 견학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 견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했다고 한다. 견학비용은 1인당 150위안이었는데, 반 학생 50명 중 비용을 낸 30명만 참석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평양견학이 있었는데, 견학비용이 1인당 200위안이었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반 학생 중 13명만이 평양으로 견학을 갔다고 한다.

‘학교·교실 꾸리기’라고 칭하며 학교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교장실

꾸리기, 교실꾸리기, 연구실꾸리기, 컴퓨터실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담임선생이 학생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난방비 명목으로 매년 돈을 거두었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선생님이 학교에 도색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 한 사람당 석회가루 500g씩을 내거나 일정 금액을 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학교 복도 현관 옆에 붙이는 삽화의 인쇄비도 학생들에게 부담시켰다고 한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교실현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교꾸리기 비용은 증가했다고 한다. 중학교에서 경리원으로 근무했다는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교실의 현대화를 위해 교실마다 텔레비전, 노트북, 투시기, 태양광판 등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예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당시 당국이 지원해준 예산은 교원 월급과 교사용 교과서, 학적부, 실험시약 등 교구비품 구입 용도의 예산뿐이라고 한다. 2018년에 학교에서 책상과 의자를 도색하고 교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하며 백목칠판을 화이트보드로 바꾸는 등 학교를 현대적으로 꾸려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 1인당 미화 30달러씩 내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소학교 때부터 고급중학교 때까지 전 학년 학생들에게 ‘꼬마계획’이라고 불리는 상납 과제와 각종 지원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꼬마계획 중에 ‘토끼가죽 제출하기’가 있는데, 학생 1명당 매년 토끼가죽 2~3장을 학교에 내야 했다고 한다. 한 학부모는 도시에서 살다보니 토끼가죽을 직접 마련할 수 없어 장마당에서 구입해야 해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토끼가죽을 걷는 시기에는 학

급반장의 엄마가 해당 금액을 학교에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학부모로부터 개인당 할당된 금액을 걷는 경우도 있었다. 파철, 파지, 파비닐 등을 제출하는 꼬마계획도 있었는데, 학생 혼자서 제출할 수 있는 양의 과제가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인민부대·돌격대 등의 지원을 위해 부과되는 각종 경제과제가 수시로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부과하는 비용이 다양하고 빈번하다 보니 최근에는 학생들이 매달 일정 금액씩 돈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학년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학부모 모임에서 학부모에게 ‘매달마다 그냥 중국돈 150원씩 내면 학교에 도움이 많이 된다. 후에 지원 사업 등을 위한 비용들을 매번 요구받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편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학생들도 엄마 손을 잡고 함께 가는데, 저도 거기 있었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돈이나 물품을 학교에 내도록 교원에 의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사가 학생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해준 사례도 있었지만 대체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돈이나 물품을 내지 못한 학생을 교사가 동급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집으로 돌려보내 가져오게 하였다. 한 증언자는 담임선생이 학교에서 요구한 돈을 낼 때까지 매일 반 친구들 앞에서 이름을 불러 일어서게 한 뒤 언제까지 낼 거냐고 다그쳤고, 돈을 낼 때까지 교실 칠판에 적어둔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선생님이 내라는 꼬마계획을 내지 않았다고 소학교 학생을 학교에 밤늦게까지 잡아두어 학부모를 학교로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결국에는 경제

적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과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그 부모에게 동급생을 보내거나 담임이 직접 찾아가 출석을 권유할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학생이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등교생으로 처리해 학교명단에서 삭제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학교운영비용과 경제적 과제들을 내지 못하면 담임 선생님이 내지 않은 학생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그런 대우가 싫어서 엄마를 졸라 어떻게 해서든 돈을 학교에 냅니다. 소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학교에 내는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돈을 못내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혼나고 창피하고 하니까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 교육기회에의 평등

(1)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당사국 내의 모든 사람이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³⁴¹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교육기회에 있어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은

.....

³⁴¹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1999), The right to education, para. 6.

2018년에 학교에서 추천하여 소년궁전 스키부에 선발되었으나, 체육종합지도원이 자신의 출신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발명단에서 자신을 제외했다고 진술하였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이주민 자녀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을 받지 못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정치범수용소에도 소학교와 중학교가 있지만 일반 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이 책가방 대신 지게를 지고 출석하고 학교에서 농사짓는 법에 대해 배운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대학 진학 시에도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2019년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본인 문건에 어머니가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어 출신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8년에 의학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교육과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행방불명이라 너 같은 아이는 대학에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한다. 중학교 졸업 후 농민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공업전문학교도 진학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 경제력에 따른 차별

북한에서는 교육기회에 있어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무상교육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장기간 결석하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2018년에 아들이 소학교 학생이었는데, 당시 학급 정원의 25% 정도가 경제

적 부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고 한다. 빈곤계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중학교의 경우에는 출석률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많아 소학교에서 고급 중학교로 갈수록 출석률은 낮아졌다고 한다. 북한이 2017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정기보고서 관련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에서 각급 학교의 출석률이 98% 이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고한 것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⁴²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교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 대우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편이 어려워 돈을 내지 못한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담임선생이 난방비를 많이 납부한 순서대로 학생들의 교실 자리를 배치하면서, 난방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은 따듯하게 지낼 자격도 없다며 난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앉혔다고 한다. 학교에 돈을 잘 내고 교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학생들에게는 명예학생이라고 하며 표창장 등 상장을 수여하고, 각종 노력 동원에서 제외시켜주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반장 등 학생간부가 되려면 학급에 돈을 많이 내야하고, 학생간부와 일반 학생 간에 차별도 심하다고 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차별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와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담임은 학급반장 등 열성자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을 차별합니다. 열성자가 되려면 학교에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학교 꾸리기, 국가 사업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학교에서 돈을 많이 요구하는데, 반장 등

342 CRC/C/PRK/Q/5/Add.1 (2017), para. 9.

이 되려면 별도로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그 돈을 받아 교사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자체가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공부도 열성자들만 대상으로 특별과외 등 형식으로 추가로 더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학습진도가 일반 학생들 보다 빠릅니다. 수업도 이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일반 학생들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자리만 채울 뿐입니다. 그리고 담임이 특하면 ‘못사는 것들은 배울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개가 되어 똥이나 치우고 살아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담임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그런 식의 차별을 당연시 했습니다.”

(3) 지역 간 교육 불평등

북한은 2019년에 제출한 제3차 UPR 보고서에서 중등교육에 있어 도시와 시골 지역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훌륭한 교육 여건과 환경을 갖춘 시범학교로 변모한 사례를 다른 시골 학교에 일반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³⁴³ 동보고서에서 북한은 유능한 교사와 교원연구원 강사들이 시골 학교 교사의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³⁴⁴

북한에서는 시내 지역과 시골 지역 간에 교육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시골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간 적이 있다는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교육시설이나 교원의 수준에서 차이가 컸다고 한다. 시내 학교에 비해 시골학교는 규모도 작고 현대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낙후되어 있었으며, 교원들도 정

343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6.

344 *Ibid.*, para. 46.

식 교사가 아닌 교원대학 실습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동네가 가난하다보니 학생들에게서 돈을 받기 힘들니까 교사들이 수업에 성의도 없었고 수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북한에서 교직원이었다는 증언자는 북한 당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없는 북한의 현실에서 학교를 현대적으로 꾸리는 일은 온전히 학부모의 도움에 달려있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학교는 학부모의 도움으로 현대화 작업을 했다고 한다.

다. 교육여건

(1) 교육시설

사회권규약위원회에 따르면 당사국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육기관, 학교 내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등 교육권 실현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³⁴⁵ 나아가 도서관, 컴퓨터실 등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반 시설들도 교육권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다.³⁴⁶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6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차 정기보고서에서 학생들에게 최신의 교육 장비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했다. 특히, 모든 학교에 컴퓨터와 기타 IT장비를 보급함으로써 교육을 정보 중심으로 현대

345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1999), The right to education, para. 6.

346 *Ibid.*, para. 6.

화하였다고 강조하였다.³⁴⁷ 또한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 보고서에서 교육의 질, 환경 및 조건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국가 문제로 여겨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평균 GDP의 8.6%를 지출하였다고 기술하였다.³⁴⁸ 또한 북한은 동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18년에는 여러 학교가 시범학교로 전환되어 다목적 교실, 수준 높은 교육 장비 및 비품, 실험실, 야외 학습장, 적절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³⁴⁹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교육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 현대화 작업이 진행된 경우에도 양호실, 도서관, 식수시설과 위생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한 증언자는 소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 학교 현대화 작업을 했는데, 화장실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 2019년에도 학교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했고 손 씻는 시설도 없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다니던 중학교에 2019년에도 수도시설이 없어 학교 밖에 있는 우물을 계속 이용했다고 한다.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업에 사용할 수는 없었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 2019년에 학교를 현대화한다고 돈을 걷어 컴퓨터실이 마련되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실질적으로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컴퓨터실

.....

³⁴⁷ CRC/C/PRK/5, para. 193.

³⁴⁸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2.

³⁴⁹ *Ibid.*, para. 45.

은 고급중학교에만 있었는데 컴퓨터가 딱 3대만 있었고 학생들이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컴퓨터실에 컴퓨터들이 있었지만 작동되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 교원 처우

사회권규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은 교육권 실현에 대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를 개선할 의무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교원법(2015) 제5조에서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을 우대하고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교원 우대 조치의 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³⁵⁰

북한에서는 실제로 교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교원에게 제공하는 월급과 식량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여 교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학부모에게 비공식적으로 수업료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과외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텃밭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농사일을 시킨다고 한다.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도움이 없으면 교원들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교원들도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소학교 교원으로 근무했던 증언자는 교원들 대다수가 학부모

.....

³⁵⁰ 「교원법(2015)」 제42조(교원우대의 요구) 교원을 우대하는 것은 교원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교육 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조건이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을 우대하고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장을 통해 비공식 수업료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잘사는 학부모에게 연락해 원조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학부모에게 매달 돈을 받고 학생에게 개별강습을 해주는 교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교원의 월급과 배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보니 어떤 교원들은 학교에서 꼬마계획이나 학교운영비용을 요구할 때 금액을 좀 더 보태 학부모에게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9년에 교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노력 동원하지 말라는 교장의 지시가 있었으나 중학교 담임선생이 자신의 개인 텃밭에 학생들을 동원시켜 농사일을 시켰다는 증언도 있었다.

“교원 월급이 급수에 따라 매번 규정대로 지급되었지만, 그 금액으로는 쌀 500g 사기도 힘듭니다.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교원 1인당 6개월분의 감자를 배급해줍니다. 감자는 학생들이 농촌지원으로 간 농장에서 제공됩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월급과 배급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합니다. 교원들은 생계를 학급반장, 분단위원장을 맡은 학생들의 부모에게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호소해서 돈을 받아 해결합니다.”

라. 교육목표에 부합

(1) 과도한 사상 교육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교육은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지향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고,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인종, 종족

및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이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은 이러한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교육의 내용이 아동에게 적합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수용할 수 있도록 편견 없는 객관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⁵¹ 특정 종교나 신념을 강제하는 공교육은 사회권규약 제13조에 규정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의무적인 군사교육은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³⁵²

북한은 보통교육법 및 교육강령시행법에서 다른 일반교육 보다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울 것을 명시하고 있다.³⁵³ 수집된 증언을 통해서도 북한의 교과과정은 사상 주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년 학제 개편을 통해 김정은 우상화교육이 추가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중심의 정치사상 교육에 김정은 관련 과목이 신설되어 북한의 학생들은 소학교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의 어린 시절을, 초급중학교 때는 이들의 혁명활동을, 고급중학교에서는 이들의 혁명역사를 배운다고 한다. 또한, 정치사상 과목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일반 과목보다 더욱 중요시되고, 출결 및 시험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한다.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양강도에서 학교를 다닌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³⁵¹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1999), The right to education, para. 28.

³⁵² *Ibid.*, para. 28.

³⁵³ 「보통교육법(2015)」 제40조(정치사상교육, 일반지식교육, 체육, 예능교육)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상과 도덕, 다방면적이며 깊은 지식,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일반과목에 대한 교육, 기초과학기술 과목에 대한 교육, 외국어, 예능, 체육과목에 대한 교육을 옹기 결합시켜야 한다; 「교육강령집행법(2016)」 제8조(교육과정안작성의 요구 및 내용) 교육기관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고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교육과정안을 현실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소학교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어린 시절을 배우고, 초급중학교에서는 혁명활동을 배우는데, 김정숙과 김정은의 내용을 학기마다 번갈아 가며 배웠다고 한다. 정치과목 수업은 결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험도 꼭 봐야 하며 제일 중요한 과목이어서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만점 맞아도 혁명역사에서 시험을 못 보면 최우등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정치사상교육은 일상적으로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은 중요한 정치행사에 집단 동원되어 수업시간 외에도 조선소년단 및 청년동맹 등의 조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사상을 학습하고 실천한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소학교 3학년에 조선소년단에 입단해서 붉은 넥타이를 매며 수령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한다. 소년단 활동 시 배웠던 원칙 중 기억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배지 등을 정중히 모시고 이를 철저히 보위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고 한다. 소년단, 청년동맹 활동 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노래를 배워 수시로 불러야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 군사 훈련

북한은 고급중학교 교과과정에 실탄훈련이 포함된 붉은청년근위대³⁵⁴라는 의무적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훈련의 목적은 전투력을 갖춘 결사대의 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제로 14~15세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

³⁵⁴ '붉은청년근위대'는 1970년 김일성의 지시로 창설된 학생군사조직으로, 고급중학교 남녀 학생 14~16세로 구성되며, 매주 토요일 총 160시간 교내 훈련과 7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실탄사격훈련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일교육원, 『2017 북한 이해』, 106쪽).

이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일주일간 합숙하며 총 분해와 조립, 실탄을 사용한 총 쏘기 등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2019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소에 입소해서 10일간 훈련을 받았는데, 군사교육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해서 불참한 학생은 없었고, 교육과정에서 실탄 3발을 쏘는 사격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은 고급중학교 2학년때 받았습니다. 당시 15세였습니다. 양강도 소재 군훈련소에서 7일간 훈련받았습니다. 그 중 사격훈련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사격훈련 첫날은 탄이 없는 진짜 총인 자동보총을 들고, 컴퓨터 스크린 앞에 서서 레이저 빛으로 사격 판을 맞추기 훈련을 합니다. 거리별로 총을 조준해 사람의 인체 중 어디를 맞출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웁니다. 둘째 날은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사람모형을 맞추는 훈련을 받고, 셋째 날은 실탄 3발이 들어있는 자동보총을 들고 연습합니다.”

5. 사회보장권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등으로 인해 생계가 결핍된 경우 누구나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 제9조에서는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증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19호에서 “사회보장권은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북한 사회주의헌법(2019) 제72조는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국민에게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를 수혜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2조에서는 “사회보험이란, 질병·부상·임신·해산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여 주는 인민적 시책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가. 연금

(1) 연로연금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국가는 특정연령부터 노인 수당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⁵⁵ 북한에서도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37조에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특별히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4조에서는 “국가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노동연한을 가진 경우에 연로연금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로자보호법(2012) 제14조에서는 “연로자는 국가로부터 연로연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연로연금은 근속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중 남성 60세 또는 여성 5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근속노동연한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 연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로연금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현금과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연로보장 연금으로 700원을 지급받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같은 시기 쌀 600g과 현금 60원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연로연금으로 매달

355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9,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para. 15.

700~800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는데, 당시 700원으로는 쌀 1kg이나, 소금 1kg도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한다.

“연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노동연한이 연속 2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57세로 나이 조건을 되었지만 노동연한이 25년이 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의 경우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로보장금은 2019년 당시 북한돈 700원으로, 쌀 1kg도 못 샀습니다.”

(2) 노동능력상실 연금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37조에 따르면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은 당국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3조에서는 “국가는 노동재해·질병·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의 노동능력상실 판정을 받으면 지급되는 연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수집되지 않았으나 아주 적은 금액이었다고 한다. 몸이 불편하여 일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뇌물을 주어야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보장금이 너무 적어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노동능력상실로 판정받더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다수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1년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제대한 후 사회보장대상자로 등록되었는데 당국으로부터 연금 등의 경제적 지원은 없었다고

한다. 2017년 사회보장 대상이었지만 연금 등 금전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근무 중 산업재해로 팔이 절단되어 사회보장을 받은 경우에도 당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며 생계를 해결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편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3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받고 노동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사회보장’을 받았다고 표현하였다. 북한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노동교양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회보장 대상이 되면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직장에 나가지 않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6개월 이상 노동능력상실로 판정되어 사회보장 대상이 되면, 금전적 혜택은 없으나 노동의 의무가 면제되어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증언이었다. 사회보장 판정을 받아 직장에 나가지 않기 위하여 진료소 의사와 인민병원 과장에게 뇌물을 주고 6개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례들도 다수 수집되었다.

“제 아버지가 ‘사회보장’이셨습니다. 연로보장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부터 시작하는데 매달 북한돈 3천 원 정도를 지급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60세까지 북한 남자들은 기업소나 공장에 그 기업소나 공장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나가야할 의무가 있고, 만약 안 나가면 8.3. 수익금을 매달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무직이어도 노동단련대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에 1번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 정말 아픈 것인지 아픈 상태가 나아진 것인지 국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유가족 연금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19호에서 “국가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부양금액 손실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³⁵⁶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7조에서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 연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에서 유가족 연금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증언은 수집된 바가 없으나, 2010년대의 증언에 따르면 유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돌격대에서 갱도를 만드는 작업 중 갱도가 무너지면서 인부 2명이 사망했는데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례에 따르면 협동 농장원이나 돌격대원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2005년 함경남도의 협동농장에서는 탈곡작업을 하던 농장원의 머리가 탈곡기에 빨려 들어가 즉사하였는데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2006년 돌격대에서 잦은 사고로 사망자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사망자의 가족에게는 ‘전사증’만 주었고 별도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2007년 평안북도 삭주군 소재의 한 공장에서는 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2008년 자강도에서 작업을 하던 돌격대에서 발파작업 중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유가족에 대

.....

³⁵⁶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9,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paras.1-3; para.17.

한 북한 당국의 보상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국으로부터 유가족 연금을 받지 않았으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소·돌격대 내부에서 돈을 모아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사례도 수집되었다.

나. 보조금

(1) 일시적 노동능력상실 보조금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19호에서는 건강이 나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소득상실 기간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⁵⁷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3조에서는 “국가는 노동재해·질병·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 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법(2015)에 따르면 일시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임산산업소의 한 작업소에서는 겨울철 벌목작업을 하다가 동상에 걸려도 치료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은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1년 임산작업소에서 일하며 발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

³⁵⁷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9,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para. 14.

데 당국으로부터 치료비와 생계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금은 없었다고 한다. 2019년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산업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0년 이전의 경우에도 근무 중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수집된 바가 있다. 2000년 농장에서 감자를 수확하는 기계에 끼인 돌을 빼려다가 팔이 빨려 들어가면서 팔을 절단하게 되었는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치료비와 생계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고 한다. 2005년 장갑을 끼고 일하다가 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엄지손가락이 끊어져 수술을 받았는데 당국으로부터 치료비나 보조금은 지급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07년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부상을 입었지만 그 기간 동안 임금이나 보조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2008년 해외노동자로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조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양강도 헤산시 소재 합영회사에서 일했는데, 작업 도중에 손가락을 다쳐 절단했습니다. 2007년 5월경 오전 작업 중이었으니까 한 11시 정도였습니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병실이었는데, 오른쪽 검지의 위 두 마디가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한 달간 입원해 있었고,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입원에서 완치되는 동안인 3개월간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2) 다자녀 양육 보조금

북한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하여 특별 혜택·보

조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2013) 제20조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21조에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그 아이들은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⁵⁸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31조에서도 3명 이상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생활비를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과 2019년 각각 다자녀양육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다자녀 양육보조금은 1인당 월 5,000원씩,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고급중학교 졸업 전까지 지급되었다고 한다. 다자녀양육보조금은 2019년 석 달에 한 번 지급될 때도 있었는데 보조금이 너무 적어서 다자녀를 양육하기에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 1인당 500원이었던 다자녀양육보조금은 2017년부터 5,000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3자녀 이상의 경우 아이 하나당 고급중학교 졸업 전까지 북한돈 5,000원을 매달 줍니다. 그래서 규정상은 매달 북한돈 15,000원이 제공됩니다. 동사무소 소장이 지급하는데 매달 지급되지는 않았고, 3개월 1번꼴로 지급되었는데 45,000원이 제공되었습니다. 북한돈 15,000원으로는 쌀 4kg도 못 삽니다. 보조금이 너무 적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58 「어린이보육교양법(2021)」 제21조에는 한번에 둘 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휴휴가를 더 주며, 특히 3명 이상의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유제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의 건강을 특별히 돌보아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기타

북한의 연로자보호법(2012) 제12조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 연로자는 국가가 부양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8조에서는 노동능력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연로자들을 양로원에서 무료로 돌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 보고서에서 노인보호 비상임위원회가 내각, 도·시·군 지역에 조직되었고, 노인 보호전략계획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평양에 새로운 요양시설이 설립되어 모든 도립 요양시설이 이를 모델로 하여 노인들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강조하였다.³⁵⁹

최근 북한의 일부지역에서 노인보호시설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북한 당국은 매체를 통해 2017년 평양에 양로원을 건설했다고 선전했다고 하는데, 같은 시기 함경남도에서 양로원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 양강도 혜산시에 보호자 없는 노인을 수용할 양로원이 있는 4층짜리 건물을 건설하여 2018년 완공되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2019년 양강도 삼수군에서도 양로원을 목격한 증언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7년에 평양에 양로원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선전도 많이 했습니다. 보호할 수 없는 자녀가 없는 노인들이 절차만 밟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7년~2018년경에 도마다 양로원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
³⁵⁹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77-81.

연로자보호법(2012) 제12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연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로원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인맥·뇌물 등을 이용하여 부모를 양로원에 입소하도록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이 있습니다. 양강도 삼수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는 분이 노인돌봄시설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양강도 혜산시 거주 노인으로서 자식으로 아들 1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이 부양하기 귀찮으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사업해서... 노인돌봄시설 입소 조건이 굉장히 엄격해서 그 시설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1. 여성

인권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서는 모든 인류 구성원에 대한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며,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성별을 비롯하여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서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남녀에게 동등하게 확보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³⁶⁰ 한편 여성은 임신과 출산·양육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 그 존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에 대한 권리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³⁶¹이 제3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81년 9월에 발효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등에 있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³⁶⁰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3;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2-3.

³⁶¹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을 금지하는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고,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2002년 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년 제2·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9년·2014년·2019년 총 3차례의 UPR에서 특수 집단의 권리로서 여성권을 구분하고, 여성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위한 VNR 보고서에서 향후 여성의 권한 보장을 우선시하고 여성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 다방면에서의 교육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 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7조에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2조에서는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정책이며, 국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 “성평등 관련 국가법을 올바로 시행하며, 더 많은 여성을 정부기관 및 기타 조직의 간부에 임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정과 사회, 교육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는 최근까지도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거나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고, 딸에게는 아들과는 달리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남존여비 사상에 기반한 차별이 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는 입당이나 승진 등이 남성에 비하여 어려웠다고 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대학 진학은 적었고, 입당·승진·직업배치 시에도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비유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여성은 배제하고 남성을 대상으로만 선발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여성은 결혼을 하면 실적을 잘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공부를 잘 한다 하더라도 석·박사과정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수재반에 편성해주지 않는 등의 교육에서의 차별도 존재했다고 한다.

“러시아 대학에서는 매년 북한에서 일정 인원을 국가장학생으로 추천받아 입학시켰습니다. 북한에서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시험에 응시할 필요 없이 러시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재혼을 했으면 그 자녀들이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범죄 경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만 선발했습니다. 여자들은 유혹에 약하고 빨리 변절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나. 여성에 대한 폭력

(1) 가정폭력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37조에서 여성은 인신의 불가침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며, 제46조에서는 가정에서 여성에 대

한 폭행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가정폭력은 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신고를 받는 기관원들이 대부분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인 경우가 많아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당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북한 당국의 소극적 개입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신고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고, 외부에서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여 주변이웃들이 신고하였고 안전부 안전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신고하면 안전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은 범죄가 아니라 훈계라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며 법적 해결을 요청하는 여성에게 안전원은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며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신고했지만 안전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여성은 폭행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가정폭력은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렸습니다. 2014년 봄에 양강도 대흥단군 보안서 소속 분주소에 찾아가 한 번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리니까 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런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집안일이다. 집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자가 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집이 많았습니다. 70~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법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니 매일 여자들이 맞고 사는 것입니다. 보안원이 신고건을 처리해 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막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성폭력

북한의 형법(2022) 제319조와 제320조에 의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폭력에 대해 최고 9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부칙(2010) 제9조에서는 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정이나 학교, 군대, 돌격대, 구금시설 등에서 성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였다는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는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고하더라도 당국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여성 피해자는 신고로 성폭력 사건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창피해하고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분위기로 인해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이 되어서 낙태수술까지 받았던 피해자는 그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으나 가정사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어 3~4번 낙태수술을 한 경우에도 주변인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망신스럽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사례로는 고등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성폭행을 당하여 교육기관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토대가 좋아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중등학원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초급당 비서에게 발각된 적이 있었는데 가해자는 혁명화를 갔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학원으로 복귀하였다고 한다.

군대 내에서는 상급자 또는 동료 군인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급자는 노동당 입당 등 각종 이권을 제공해줄 수 있음을 내세우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여군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피해를 당한 여군들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고도 묵인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군대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불명예 제대를 당했다는 사례도 수집되었다.

“남성 상관에 의한 여군 성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간부 20여명이 노동당 입당 등 각종 이권 등을 악용해서 이들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여군들이 거부하면 어렵고 고된 일을 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간부들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가 올라봐 크게 문제를 제기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돌격대 내에서의 성폭행 사례도 수집되었다. 평양시에서 돌격대 소대장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이 되었고, 사단장이 이를 인지하고 낙태를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고 한다. 수감시설 내에서 관리자에 의한 수감자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례도 다수 수집되었다. 집결소에서 집결소장에게 여성 수감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완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한다. 신의주시 안전부 관할 집결소에서도 집결소장과 계호원들에 의한 여성 수감자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양강도 보천군 안전부 구류장과 혜산시 안전부 구류장에서도 계호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밀수로 체포되어 예심을 받은 기간에 예심과장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다. 모성 보호

세계인권선언 제25조 2항에서는 “모자(母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결혼·임신·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출산휴가제를 도입해야 하며,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³⁶²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7조에서 산전산후 휴가 보장, 다

.....
³⁶²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rticle 11(2).

자녀의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등 모자(母子)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59조에서는 여성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고 수유할 영아가 있는 경우이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야간 노동을 시킬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1) 임신부 지원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51조에 따르면 여성의 출산에 대하여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술을 제공하여야 하고, 보건기관과 기업소, 단체 등은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보건법(2012) 제10조에서는 무상치료원칙에 따라 출산이 무료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국가보고서에서 산모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고,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등 산모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당국의 제도적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임신부에 대한 당국의 의료지원 및 출산서비스 제공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신중인 여성에 대한 산전 검진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임신기간 중 진료소에서 호담당 의사에게 간단한 진료를 받았고, 초음파 검사는 유료로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8년 당국에서 실시하는 임신부에 대한 정기 검진은 없었고, 인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산전 초음파 검진을 받고 태아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6년 함경북도 청

진 소재의 함경북도산원에서 자연분만을 했는데 입원 및 출산 비용은 무상이었으나, 조산원에게 감사 인사의 의미로 30위안을 주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8년 양강도 대흥단군에서는 진료소의 조산원을 집으로 불러와 출산시 도움을 받았고 사례비로 북한돈 30,000원을 주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출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처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 의료진 없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8년 가정집에서 출산하던 산모가 출산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대흥단군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총 2번 받았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남편의 인맥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흥단군 농사리 진료소의 조산원을 불러와서 집에서 출산했습니다. 조산원에게 북한돈 30,000원을 주었습니다.”

(2) 산전산후 휴가 및 보조금

사회권규약 제10조에 따르면 임신부는 출산 전후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같은 기간에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부여 받아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에서는 여성이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와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에서 여성은 2010년에 채택된 노동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출

산후가뿐만 아니라 정기 및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³⁶³ 2015년에는 사회주의노동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산전 60일, 산후 90일이었던 휴가기간을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전산후 휴가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기계공장에서 임신 9개월 차에 선반공으로 일하던 임신부는 몸이 좋지 않았으나 휴가를 낼 수 없어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다가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 되었다고 한다.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농장에서는 임신 5개월 차에 몸이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산전산후 휴가는 출산 직전 막달에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다가 쓰러져 결국 유산이 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19조에서는 산전산후 휴가 기간 동안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산전산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전산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2018년 산전산후 휴가는 쓸 수 있었지만 임신부를 위한 별도의 보조금이나 추가 배급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임신부에 대한 식량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9년 임신부에 대한 특별 식량공급이 이루어져 임신부에게 1일 0.65kg, 월 20.15kg을 배급해 주었다는 증언이 있었다.³⁶⁴

.....

³⁶³ 북한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으로서 2016년 제출한 제2·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이 법을 채택함으로써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자평하였다.(UN Doc. CEDAW/C/PRK/2-4 (2016), para. 30)

³⁶⁴ 같은 시기에 일반 사무원에게는 1일 0.45kg, 월 13.95kg이 배급되었다고 한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평안남도 북창군 탄광의 식량 공급소에서 일했습니다. 계산원으로서 배급표를 발급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국가에서 배급되는 정기공급은 매달 기준보다 적게 공급해줍니다. 사무원인 경우 8급이 적용되어 하루에 0.45kg이 배급되는데, 임신부는 6급이 적용되어 하루에 0.65kg이 배급됩니다.”

라. 탈북 여성의 인권 실태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신매매 경험을 한 탈북여성 가운데는 자신이 인신매매 되는지 모르고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탈북하기 위하여 탈북 브로커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었는데 브로커 중 일부는 중국인과 연계하여 탈북 여성들을 중국남성에게 시집을 보내거나, 유흥업소 등에 매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많은 경우 중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돌아간다는 생각에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도강하였는데 도강한 이후 인신매매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진술이 수집되었다. 2015년 도강한 후에 인신매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 한족남성에게 시집을 갔다는 사례, 같은 해 중국에 있는 조선족 식당에서 2달만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북한으로 바로 올 수 있다는 말에 도강하였지만 인신매매되어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7년 한국으로 오기 위해 도강하였지만 인신매매 당하여 한족에게 시집을 가야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5년 중국에 도착해서야 인신매매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은 화상채팅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살기 위해 중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국가 배급도 전혀 없었고 중국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문만 믿고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역전에 ‘중국에 가면 돈을 벌수도 있고 배불리 살 수도 있다’면서 접근하는 40대 여성들의 말을 믿고 중국으로 팔려가는 북한 어린 여자들과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중국에 도착하니 조선족 인신매매브로커가 있었고, 그 사람이 ‘다른 일자리는 없다. 중국 남자에게 시집가서 사는 방법 밖에는 없다, 여기서 나가면 강제복송되어 총살된다’고 협박했는데, 그때 인신매매인 것을 알았습니다. 팔려가기 싫었지만 복송되면 총살된다고 믿었기에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탈북 과정에서 자신이 인신매매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탈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인신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5년 도강브로커가 중국에 가면 매매되어 중국 남성에게 시집을 가야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인신매매선(線)을 통해 탈북하여 한족 남성에게 시집을 갔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또한 1차 탈북 후 2015년 강제송환되어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2018년 2차 탈북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신매매되어 중국남성에게 시집을 갔다는 사례도 있었다.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브로커 등에 의해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였고, 체포되면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었고, 2018년까지 화상채팅을 하면서 채팅방 조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지만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것 등이 우려되어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탈북 여성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 송환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국경으로 이송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며, 북한 내에서도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북한 내에서는 보통 도 또는 시 보위부로 송환되어 집결소를 거쳐 등록거주지 안전부로 이송되며 재판을 받거나 기관에서 행정처벌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제송환된 탈북여성은 이송 과정에서 나체·체강수색,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강제송환되어 함경북도 비법월경자집결소로 이송되었을 때 남성 관리원 2명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옷을 다 벗게 한 뒤 나체검사와 체강수색을 실시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한편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여 강제송환된 경우에는 강제낙태의 대상이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강제낙태는 주로 강제송환 후 처음 수감되는 보위부 또는 이후에 이송되는 집결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평안북도 신의주시 보위부에서는 강제송환된 임신 3개월 차의 여성을 외부 병원으로 데려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낙태하도록 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고, 2016년 양강도 도집결소에서 임신 8개월 정도의 임신부를 강제 낙태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강제송환된 여성들은 보위부 등의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탈북하였고 인신매매된다는 것을 몰랐으며 중국에서 매매된 피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로서 보호 조치를 받거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에서의 행적을 문제 삼아 조사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신매매되어 시집을 간 후 3개월 만에 도망

쳐 이동하던 중 체포된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였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2015년 말 재판판을 받은 결과 노동교화형이 결정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구류장에서 계호원 등이 강제송환된 여성들만 벌을 주거나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었다.

“탈북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었고, 팔려간다는 것도 중국에 도착해서야 알았기 때문에 송환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것은 마음이 나빠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에 팔려갔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체포되어 송환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의주로 가서 구류장에 있는 동안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강제송환된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의 ‘국경비법출입죄’나 행정처벌법의 ‘국경비법출입행위’ 등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탈북하여 4년간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2016년 송환되어 등록거주지로 이송된 뒤 비법월경죄로 노동교화형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사례, 중국에서 4년 6개월가량 체류하다가 송환된 여성이 2017년 비법월경죄로 노동교화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 등이 수집되었다.

“소화장애와 담낭이상으로 혜산시 제1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나, 나올 때에 진단명은 영양실조로 되었습니다. 병보로 석방되어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8년 4월 혜산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고 비법월경죄로 노동교화형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탈북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교양처리되어 처벌 없이 방면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 14세에 인신매매되어 2년간량 중국에 체류하다가 강제송환되었는데 탈북 시 나이가 미성년이었던 이유로 교양 처리되었다는 사례, 13세에 인신매매되었다가 강제송환되어 교양처리 된 사례 등이 수집되었다.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은 여성 중 일부는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다고 증언하였다. 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했으며 가족에 대한 감시는 물론, 차별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국이 이들을 과도하게 감시를 하는 이유는 재탈북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교화소에서 형을 마치고 등록거주지로 돌아왔을 때 주변의 감시가 너무 심하여 다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짧은 시간동안 외출을 하더라도 당국에서 소재를 파악하려 하는 등 감시가 심하여 외출을 할 때는 인민반장에게 알려야 했고 가족에 대한 감시도 심해서 동생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는 진술이 수집되었다. 자신의 탈북과 강제송환으로 아버지가 직장에서 철직되었다는 사례와 강제송환된 후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었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비법국경출입죄로 노동교화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감시 뿐 아니라 저희 가족에 대한 감시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는 담당보위지도원은 물론 보위부 통보원이나 인민반장 등이 하였는데, 제 동생이 보천군의 친척집에 갔다 오면 그 친척집을 찾아가서 동생이 무슨 일로 왔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출소하고 난 뒤 감시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2. 아동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필요성이 1924년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시작으로 여러 국제인권문서에 명시되어 왔다. 그 후 1989년 채택되고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법적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 등을 인정하고, 당사국에게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990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북한은 1996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제1차 이행보고서를 시작으로 2016년 제5차 이행보고서까지 제출해 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매회 최종견해에서 북한이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대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해 왔다.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일부를 수용하면서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 제정, 2013년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신설, 2014년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하였다.³⁶⁵ 또한,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 보고서에서 아동질병 통합 관리 도입 등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영아 사망률과, 만성 및 급성 영양실조비율이 감소했다고 기술하였다.³⁶⁶ 한편 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2조 및 어린이보육교양법(2013) 제10조에서 아동을 '출생 후부터 16세 까지인 자'로 정의하고 있어 북한에서 17세인 자는 아동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와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가. 아동의 형사사법

아동권리협약 제37조와 제40조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 이른바 '법에 저촉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당사국은 사법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법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7조에서 아동이 특별한 사법 보호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제47조에서 아동범죄 사건을 취급하고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동 형사사법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³⁶⁵ UN Doc. CRC/C/PRK/5 (2016), paras. 8, 17, 21.

³⁶⁶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2.

(1) 사형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a항은 아동에 대한 사형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2022) 제37조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48조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14세 이상 아동에 대하여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동이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처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2018년 겨울에 미신 및 종교행위를 이유로 2명이 공개총살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아동이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2015년에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경기장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아동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 체포·구금 제한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b항은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이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 기간 이뤄져야 한다는 '자유박탈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차 정기보고서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조사는 해당 아동의 자택이나 관할 재판소에서 부모의 입회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 기간(2008년~2015년) 동안 아동을 구금

하거나 감금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였다.³⁶⁷

수집된 증언 중에 17세 미만 아동들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던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노숙 아동(꽃제비)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억류된 사례들도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2018년 당시 15세의 나이로 체포되어 구금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시보안서로 이송되어 대기실에서 12일간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109그룹이 실시한 외부정보 단속에서 한국 영화 소지 및 시청을 이유로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제 컴퓨터에서 한국 영화를 발견하고는 ‘이런 것을 본다면서, 정신이 썩었다’는 등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곧바로 109그룹 사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서 3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보안서 대기실에는 12일간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3) 구금 아동에 대한 특별조치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c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 수용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가족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 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15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구금 시 성인과 함께 수용되며,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되었을 때 성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고, 고정자세를 강요당하는 등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

.....

³⁶⁷ UN Doc. CRC/C/PRK/5 (2016), para. 235.

다. 구금 시 면식 이외에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2017년 당시 15세 나이로 강제송환 되어 보위부에 구금되었는데, 성인과 같은 호실을 사용하며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도보위부에는 한 달간 있었습니다. 성인과 함께 같은 호실에 구금되어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보통 20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고정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점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고, 서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대소변 시 계호원의 허락을 받아 가야하고, 조사 등을 위해 구류장 밖을 나갈 때는 손을 내밀면 계호원이 족쇄를 채우고 기어서 구류장 문을 엉덩이부터 뒤로 나간 뒤 고개를 숙인 채로 다녀야 합니다. 구류장 내 규율을 어기면 계호원이 규율을 어긴 수감자를 폭행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배려나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14세 이하의 아동이 성인과 격리되어 구금된 사례도 수집되었다.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에 중국에서 함께 강제송환되었던 14세 아이와 12세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 피구금자들과 분리되어 구류장 내 주방창고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은 고정자세 없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

(4) 송환 아동에 대한 처벌 금지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49조에서 14세 이상의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2022) 제117조에 따르면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양은 아동의 경우 부모, 청년동맹 또는 거주하고 있는 리(읍, 구, 동)에서 책임진다고 한다. 북한은 2016년 아동권리협약

제5차 정기보고서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아동권리보장법에 따라 범행 시점의 연령이 14세 이상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강제송환된 아동에게도 탈북 동기와 목적 등을 조사한 후 사회적교양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³⁶⁸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강제송환된 17세 미만의 아동은 성인과 동일한 조사기관·구금시설을 거쳐 사회적교양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에 조사과정에서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아동이라는 이유로 성인에 비해 간단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강제송환된 아동이 성인과 분리되어 별도의 공간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차별 없이 석방된 사례도 있었다. 반면에 강제송환된 아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수집되었다.

“2016년 북송 당시 여동생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여동생은 북송된 후 비법국경출입죄를 이유로 교화형 1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14세 미만의 경우만 아동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그 이상은 교화형도 가능합니다. 북한에서 14세 이상은 성인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검찰과 지도원 등 법일꾼들이 이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368 UN Doc. CRC/C/PRK/5 (2016), para. 232.

나.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 등 양육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학대, 구금시설 내에서의 폭행 및 잔혹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협약 당사국에게는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막고,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당사국에게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가정에서의 폭력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43조에서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2022) 제294조에서 어린이 보호·관리태만죄를, 동법 제296조에서는 학대괄시죄를 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자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은 형법에 가족, 친척을 상대로 한 범죄 중 어린이 보호·관리태만죄와 학대괄시죄에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나,³⁶⁹ 2022년 형법 개정을 통해 이를 삭제하고 ‘가벼운 일반범죄’의 경우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고만 규정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측의 용서가 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모호해졌다.³⁷⁰ 북한은 2016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차 정기보고서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부모는 없다고 보

369 2015년 7월 22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로 수정 보충된 「형법」 제19조.

370 2022년 5월 17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67호로 수정 보충된 「형법」 제31조.

고한 바 있다.³⁷¹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당국의 개입과 지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아동 시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는데, 보통 북한에서는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을 부모의 훈육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보고 신고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2013년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증언자의 머리채를 손에 쥐어 벽에 머리를 박고 집에 있던 각자로 부러질 때까지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런 식의 폭행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인민반장과 마을주민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지는 않았고, 담당안전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증언자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고, 노숙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보안서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폭행은 사적인 일이라고 하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말고도 마을에 가정폭력이 있곤 했는데 그 때마다 보안원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2) 학교 및 보호시설에서의 폭력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26조는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폭언 및 폭행 등을 가하는 교원의 행위를 금지하

³⁷¹ UN Doc. CRC/C/PRK/Q/5/Add.1 (2017), para. 80.

고 있다. 북한은 2016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차 정기보고서에서 일부 중등학교 교원이 학생을 지나치게 꾸짖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그 후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과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고하였다.³⁷² 또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기술한 바 있다.³⁷³

수집된 증언 중에 교육기관과 아동보호시설 내에서 교사가 아동을 폭행, 폭언 등의 학대를 가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한 증언자는 노력동원을 나간 학생들이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보호시설 내 규율을 위반했거나,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등학교 교사들이 아동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꼬마과제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노동동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동을 체벌하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소학교 내내 학교를 무단결석했다, 꼬마과제를 내지 않았다, 공부를 못한다 등의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에게 맞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담임 선생님이 자(가로 7센티, 세로 1미터, 두께 1센티, 나무)로 학생 종아리를 때렸고, 맞다가 자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체벌을 받은 아이들 부모님들이 학교로 찾아와 담임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벌을 이유로 학교선생님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학교 내 체벌 문제에 대해 해당 학부모가 신소를 제기하거나 담임선생님을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학교

³⁷² UN Doc. CRC/C/PRK/5 (2016), para. 88.

³⁷³ *Ibid.*, para. 88.

내 체벌도 감소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2018년 초 급중학교 때 교사에게 칠판대로 종아리를 맞아 멍이 심하게 들었는데, 이에 대해 아버지가 선생님을 찾아가 항의하자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2017년에 아동보호시설에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교원을 징계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교양원이 3학년 학생을 책대로 등과 허리를 때렸습니다. 초등학교 원장 선생님이 교양원을 초등학교 비판무대에 세워서 사람들이 세계 비판했습니다. 초등학교원생들은 김정은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고아들의 실태가 김정은에게 날마다 보고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폭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 여파가 대단했습니다. 교양원은 이 사건 이후로 3개월 동안 정직을 먹었습니다.”

(3) 구금시설에서의 폭력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51조에 사법기관은 아동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아동권리협약 제5차 정기보고서에서 사법절차과정에서 고문이나 학대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였다.³⁷⁴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조사 및 구금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아동 시기에 구금 과정에서 성인과 같은 체강수색을 당해 고통스러웠다고 한

.....
³⁷⁴ UN Doc. CRC/C/PRK/Q/5/Add.1 (2017), para. 77.

다. 2019년에 안전부 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을 때 안전원이 자백을 강요하며 각목으로 때리다 각목이 부러지자 손으로 온몸을 때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안전부 구류장에서도 아동 피구금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구류장에서 계호원들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계호원들은 고정자세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폭행 방법도 여러 가지였는데, 철창 가까이 오도록 하고 바로 폭행을 하기도 했지만, 손을 철창살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죽 띠 같은 것을 이용하여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4) 성착취 및 성적 학대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18조에서 아동에 대한 유괴와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6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차 정기보고서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성매매 등 성적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다 처벌을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³⁷⁵

북한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의 성매매를 보았거나 이에 대해 들었던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성매매수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아동까지 모두 단속하였다고 한다. 탈북 과정에서 미성년인 상태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례들도 다수 수집되

.....
³⁷⁵ UN Doc. CRC/C/PRK/5 (2016), para. 116.

었다.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속아서 중국인과 매매혼을 당한 경우였다.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생계조차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민반의 한 아줌마가 중국에 가면 돈을 벌어 북한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중국에 가면 너는 시집가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돈을 벌어 북한에 오면 된다. 내가 보장하니 걱정 말고 중국에 가자’고 했습니다. 탈북 당시 16세였습니다. 알고 보니 소개받은 여자는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탈북 후 저를 중국남자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완강히 거부했지만 어린 나이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시집간 중국남자는 정신이상자였습니다.”

다. 아동 노동

아동권리협약은 제32조에서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에게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2019) 제31조,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15조,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19조 등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은 금지된다.³⁷⁶ 형법(2022) 제110조에 따라 노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노동을 시킨 자는 노동단련형을 받을 수 있다. 보통교육법(2015)은 제42조에서 “학생들을 교육강령집

³⁷⁶ 「보통교육법(2015)」 및 「아동권리보장법(2014)」에 따르면 17세 이상부터 노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정간 충돌하고 있다.

행과 관련 없는 일에 동원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와 제53조에서는 학생들을 학습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을 경우 그 책임자는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교육강령집행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교과과정과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학생노동은 불법이라고 보고하였다.³⁷⁷ 그러나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제5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 당국이 아동들에게 광범위한 노동을 요구함으로써 아동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안녕을 방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³⁷⁸

(1) 학생 노력동원

북한은 2017년에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고급중학생부터 매 학년마다 3주간 농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생산 노동을 경험한다고 언급하며, 교과과정에 있는 생산노동 이외에 아동 노동은 금지된다고 답변하였다.³⁷⁹ 수집된 진술에 따르면 북한에서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방과 후 노동, 교사 등 개인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생산노동은 ‘농촌지원 활동’이라고 불리며, 전체 학년 또는 몇 개 학급이 장거리에 있는 농장으로 이동해서 농장원들 집에서 숙식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모내기, 감자수확 등 농사일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한다. 동원 기간이나

³⁷⁷ UN Doc. CRC/C/PRK/Q/5/Add.1 (2017), para. 47.

³⁷⁸ UN Doc. CRC/C/PRK/CO/5 (2017), para. 54.

³⁷⁹ UN Doc. CRC/C/PRK/Q/5/Add.1 (2017), paras. 42–43.

횃수는 학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9년에 고급중학교를 다녔다는 증언자는 학교에서 농촌지원은 고급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고, 1년에 1번 실시했는데, 5월말에서 6월초로 3주간 동원되었다고 한다. 협동농장 농장원의 집에 들어가서 합숙생활을 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모내기, 김매기 작업을 했고, 일이 많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 일했다고 한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 힘들었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2018년 고급중학교 1학년 때부터 농촌동원이 시작되었는데, 횃수는 1년에 2번, 시기는 8~9월로 매회 20일씩 총 40일 동안 동원되었다고 한다. 동원기간 동안 매일 9시부터 20시까지 일했고 점심 1시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증언자는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쉬지 않고 전투적으로 일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든 일을 피해 중간에 도망치는 학생들이 생기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먼 곳으로 농촌 동원을 가게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체육이나 음악, 미술학습 소조에 있는 아이들은 농촌지원 활동에서 면제해주기 때문에 체육소조에 이름을 걸어놓고 농촌동원에 나가지 않았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이를 위해 어머니가 체육선생님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다. 한편, 한 증언자는 초급중학교 때 농촌지원 활동에 동원된 적이 있다고 한다. 진술에 따르면 매년 모내기 기간에 15일간 협동 농장에서 숙식하며 모내기 작업을 했다고 한다.

“농촌지원활동도 있는데, 국가 주도로 고급중학교 1학년부터 동원되는데, 일 년에 1번 있고, 기간은 20일입니다. 차로 2~3시간 떨어진

농장에서 숙박하면서 감자 캐기를 했습니다. 매일 휴일 없이 20일간 10시간 넘게 농사일을 해야 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개인별로 농지를 분배하는데 매일 여자는 50평, 남자는 70평이 주어졌고, 그 해당 평수에 있는 농지의 감자를 모두 캐야합니다. 그 양을 못 채우면 논밭에서 채울 때까지 학생 전부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북한에서는 방과 후 학생 노동 동원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학교에서부터 고급중학교까지 방과 후 노동 동원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다. 농촌 지역의 학교의 경우, 농사로 바쁜 철인 봄과 가을에 학생들이 학교 근처 농장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원 횃수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 강도도 강해진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소학교 2학년 때부터 1년에 3번, 일주일씩 방과 후 학교 근처 협동농장에 동원되어 평별에서 봄에는 강냉이 심기, 가을에는 강냉이 따기 등의 농사일을 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각 학급의 담임선생이 당국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하자면서 학생들을 농장으로 인솔하였다고 한다. 다른 증언자는 초급중학교를 다닐 때 봄, 가을 농장의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 근처 농장에 동원되었다고 진술했다. 5월에만 5차례 동원되었는데, 보통 오전 수업만 받고 오후 1시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시켰다고 한다. 가을에는 감자 캐기, 겨울에는 퇴비주기 작업에도 동원되었는데, 가을에 감자 캐기를 할 때에는 한 달 정도 학교에서 수업을 아예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방과 후 노동으로 학교 근처 건설 현장에도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고급중학교 2학년 때 북부 철길 건설현장에 2학년 전 학생들이 동원되어 오전수업을 받지 않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자갈 나르기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 학생당 10kg가량 자루를 날라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2019년에 초급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학교 일과에서 평일은 오후 3시부터 작업동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따금씩 일요일에 나오라고 하여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근의 강가에 가서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채취한 자갈과 모래는 삼지연건설꾸리기 공사현장에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인근의 농장 등에 가서 옥수수나무 뿌리 뽑기, 풀 뽑기, 감자 캐기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동원되어 노동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여름철 더위에 풀 뽑기를 할 때나...가을에 감자 캐기를 하는 9월이 되면 북한은 서리가 내리는데, 그럴 땐 매우 추웠습니다.”

북한은 교장 또는 교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부업지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교사 개인에 의한 학생 노동동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측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초급중학교 때부터 담임선생의 부업지에 동원되었다고 진술했다. 학생들이 3명씩조를 이뤄서 갔는데, 동원방식은 담임선생이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초급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급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담임선생의 부업지에 학급 학생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담임선생마다 다르긴 한데, 학생들에게 ‘자신의 부업지가 있는데, 도와줄래?’라는 식으로 부탁합니다.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집에서 출발해 부업지에서 9시~12시까지 3시간가량 농사일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시키지 말라?’는 방침이 돌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 부업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 교장이 교사들에게 이런 동원을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 기타 아동 노동

북한에서는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강제되는 아동 노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을 돌격대에 차출하여 일하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7년 당시 14세 나이에 돌격대에 강제 동원되었는데, 동원된 발전소 측에서 아동인 것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청년동맹에서도 16세 미만 아동들을 건설 보수 작업 등에 집단동원하곤 했는데 아동노동에 대한 단속이나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인민반의 노동동원에 빠지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대신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동원된 28명 중 3명 정도는 12~14세 아동이었고, 성인과 똑같은 할당량을 받고 같은 조건에서 일했다고 한다.

“인민반장이 어머니 대신 제가 나오면 더 좋아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북한에서는 중학교 학생들도 김매기 작업 등에 동원되기 때문에 16세 미만 아동들의 노동 동원이 비법인지는 몰랐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민반의 노동 동원에 가족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응해야 합니다. 인민의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빠지면 벌금의 의미로 인민반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 동원마다 돈을 내기에는 일반 가정의 경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못 가면 아이들이라도 나갑니다. 힘들지 않은 작업이 없었습니다. 성인과 똑같은 할당량을 받아 채워야 했습니다. 자갈 나르기도 무겁고 힘들었고, 김매기의 작업의 경우 1시간을 걸어가 땀벌에서 작업을 해야 했는데, 거의 하루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라.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처우

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 따르면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31조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아동권리협약 제5차 정기보고서에서 자연재해,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양육시설에 위탁하여 그들에게 양질의 생활환경 및 학습 여건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⁸⁰ 또한 북한은 대안 양육시설 운영 지침을 강화하였고, 아동의 식량권 보장 등 양육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시설보호 아동에게 매일 생선, 과일, 우유 등 다양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³⁸¹ 2021년 VNR 보고서에서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67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양로원이 신설되거나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³⁸²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동보호시설 내 양육 환경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2017년경에 자신의 집 근처에 있던 낡은 애육원이 신축되었다고 진술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도 모두 현대식으로 정비되어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뀌었다는

380 UN Doc. CRC/C/PRK/5 (2016), para.109.

381 *Ibid.*, para. 109.

382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13-14쪽.

증언도 있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등학교 조리사로 일했다는 증언자는 북한 당국이 초등학교에 식재료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진술했다.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고아들을 돌봐주는 곳으로 8살부터 12살까지 들어와서 소학교 과정을 배우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2017년에 고아시설이 김정은 방침에 의해 도마다 새 건물로 꾸러졌습니다. 식사는 도루묵이 하루 3끼 보장되고, 반찬을 3가지 이상 해야 합니다. 이런 식재료가 국가에서 다 보장을 해줍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훔치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중등학교 등 시설에서 퇴소한 학생들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희망에 따라 취직한다고 주장하였다.³⁸³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중등학교 졸업생 대다수가 돌격대에 강제배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군대에 보내지고, 신장이 작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은 돌격대나 공장노동자로 배치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퇴소연령이 되면 학생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158센티 이상이면 군대로 보내고 나머지는 집단적으로 돌격대에 배치됩니다. 제 오빠는 청년돌격대에 강제 배치되었습니다. 간혹 방직공장 등에 무리배치도 되는데, 제가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2016년 아동권리협약에 제출한 제5차 보고서에서 뿐만 아니라, 2019년 UPR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도 노숙아동(일명

383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5.

‘꽃제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노숙아동들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다³⁸⁴. 이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 내 노숙아동의 수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가정으로의 복귀나 대안보호 위탁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³⁸⁵

노숙아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꽃제비 상무’라고 불리는 단속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단속된 꽃제비들은 구호소, 방랑자 집결소 등으로 불리는 수용시설에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부실하고, 수용환경이 열악한데다 규율 또한 엄격하다고 한다. 수용된 후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그로 인해 결국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018년 이후에는 꽃제비 수가 늘었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사자를 목격하였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탈북하기 전까지 장마당 인근에서 꽃제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주에 한번 정도 312상무 직원 2명이 꽃제비 상무에 수용되어 생활을 잘하는 꽃제비 4~5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꽃제비 단속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잡히면 무조건 312상무에 잡혀가게 됩니다.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 자리에서 손이나 발 또는 주변에 있는 돌로 피가 터지게 때립니다.”

384 UN Doc. CRC/C/PRK/Q/5/Add.1 (2017), para. 51.

385 UN Doc. CRC/C/PRK/CO/5 (2017), para. 56.

3. 장애인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³⁸⁶ 이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정신을 구체화하여 유엔 총회는 1975년 ‘장애인권리선언’,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³⁸⁷을 채택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³⁸⁸

북한은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16년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후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2017년 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고, 2018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³⁸⁹

386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

387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388 *Ibid.*, Article 4.

389 Initi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C/PRK/1(2018).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차별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에서는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8조에 의하면 협약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을 증대하고 장애인의 기술·장점·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장애에 근거한 법적 차별이나 사실상의 차별을 해소하며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차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³⁹⁰ 따라서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1) 북한에서의 장애인 인식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된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³⁹¹ 2018년 제출한 최초 이행보고서에서는 “장애인 문제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하였고, 지방 기관의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강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역량·사회기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³⁹⁰ UN CESCR, General Comment No. 5,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s. 15-18.

³⁹¹ 조선중앙통신(2018.5.19.); 조선중앙통신(2018.11.11.).

2015년까지 평양에서 거주했던 진술자는 북한에서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사람들로 부터 회피 대상이었다는 진술도 수집되었다.

“2017년에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30살 남자 2명을 봤는데 형제였고 둘 다 병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40대 부부가 병어리입니다. 북청 장마당 짐 보관집에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둘 다 병어리였고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우리랑 다르니까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북한 장애자보호법(2013) 제6조에는 ‘국가는 인민들을 교양하여 고상한 인간애를 지니게 하고 장애자를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하며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라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제출한 최초 이행보고서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른 공민과 동등한 법적 보호와 편익을 향유한다.”라고 보고하였다. 2021년 VNR보고서에서는 “장애자보호법(2013)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무능력한 인민의 사회적 보호와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장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 김형직군 고읍노동자구에는 또 다른 장애인의 출생을 막기 위하여 왜소증 장애인들을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산골마을에 모아놓은 ‘난쟁이마을’이 1990년대에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2019년까지도 김형직군에서 ‘난쟁이 마을’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그리고 2017년경 평양 거주 장애인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2019년에도 장애인을 이주시키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양강도 삼수군의 제한구역으로 강제이주 되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난쟁이 마을이 김형직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주되어 온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쟁이들을 배려하여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난쟁이가 또 나올까봐 거주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장애인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의 평양 거주를 제한했지만 2020년경 장애인에 대한 평양 거주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는 거주지 제한 이외에 강제 불임수술 등의 신체의 자유 침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으로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불임 수술이 강제로 시행되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5년 왜소증 장애인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수술을 시키기 위해 군병원의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난쟁이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한다. 2017년 선천적으로 왜소증 장애인이었던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막기 위하여 군인민병원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가족의 동의만 있다면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생체 실험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2013년경 난쟁이가 일반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군 보안서에서 ‘너는 난쟁이이니까 아이를 가지면 안된다’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2014년경 딸아이를 낳았답니다. 군 보안서에서 안전원 3명이 출동하여 그 난쟁이를 군 인민병원에 끌고 가서 강제로 불임수술을 실시했습니다.”

나. 장애인 권리 실태

(1) 이동 및 편의시설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와 제20조는 당사국들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장애자보호법(2013) 제47조와 제48조에서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편리성 보장, 교통수단·편의시설·체신수단 이용의 편의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제출한 최초 이행보고서에서 장애자 근무시설 및 생활시설의 설계 지침 제공, 중증장애자에 대한 무료택시 시범운영 등 장애인 이동성 보장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있었음을 기술하였다.³⁹² 또한 2019년 제출한 제3차 UPR국가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건축 공간 설계표준이 개정되었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물 없는 인프라 건설이 삼지연군 개조 계획과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392 UN Doc. CRPD/C/PRK/1 (2018), para. 120.

그러나 북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목격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의 가족으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상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맹인아파트의 주변이나 단지 내에는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특수 설비나 시설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시설이 관리되지 않아 항상 땅이 고르지 않았다고 한다.

(2) 치료 및 재활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장애인이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의 독립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도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⁹³ 장애인권리협약 제26조는 당사국이 장애인에 대한 훈련 및 재활을 위하여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확대해야 하고, 장애인의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증진해야 하며,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보조기구와 기술을 숙지하여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장애인보호법(2013) 제11조에서는 “장애 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전문적인 회복치료와 함께 장애의 원인·발병과 관련한 조사·연구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4조에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자전거 같은 장애자에게 필

.....
³⁹³ UN CESCR, General Comment No. 5,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 34.

요한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장애자의 보조기구 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는 쓰기 편리하게 설계하고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제출한 최초 이행보고서에서는 장애인 재활지원을 돕기 위해 전문가와 담당자의 실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³⁹⁴

북한 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재활을 돕는 교정기구를 생산하고 장애인 전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함흥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의족·의수 등 교정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전용 기구들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담당진료소 또는 병원에서 병력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교정기구를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국이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활·의료 기기·치료 지원을 한 것은 없었다는 청각장애인 가족의 증언이 수집되었다.

한편 나선시에서 장애인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인 ‘장애인 요양소’를 목격한 사례가 수집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장애인 요양소는 시에서 운영하며 병원은 아니었고 장애인들의 회복·요양을 돕는 시설이었다고 한다. 요양소는 병원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원칙적으로 장애인들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증언이었다.

(3) 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

.....
³⁹⁴ UN Doc. CRPD/C/PRK/1 (2018), paras. 164, 167.

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5호에서 국가가 정규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하고,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³⁹⁵

북한은 장애인보호법(2013)에서 교육보장, 취학보장,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 특수학교 및 직업학교 조직운영, 특수교육교재의 출판 등 장애인의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제출한 최초 이행보고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 교수법 연구 및 교원 교육실시, IT 기술을 이용한 교육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³⁹⁶ 2019년 제3차 UPR 국가보고서에서는 2015년 맹인학교 및 농인학교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직업교육과 적절히 연계한 12년 의무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 대학에 개설된 원거리 교육시스템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³⁹⁷

북한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로 ‘농아학교’와 ‘맹인학교’가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평양시, 함경남도 금야군과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북도 청진시, 황해북도 봉산읍, 강원도 원산시에 농아학교가 있으며, 평양시 강동군, 함경북도 경성군 등 4~5군데에 맹인학교가 있다는 내용이였다. 농아학교는 소학교 과정부터 고등중학교 과정까지 10년 교육과정이며, 수화로 수업을 진행한

395 UN CESCR, General Comment No. 5,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 35.

396 UN Doc. CRPD/C/PRK/1 (2018), para. 146.

397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76.

다고 한다. 특수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입학하여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었거나 특수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2005년부터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삼봉농아학교를 봤습니다. 지금도 학교는 있습니다. 농아학교는 병어리, 귀머거리, 반병어리들이 다니고 그곳에서 소학교 과정부터 고등중학교 과정을 배웁니다. 수업은 수화로 진행됩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사는 학생도 이 학교로 와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학생수는 다 합쳐서 20명 남짓이었습니다.”

(4) 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며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에 있어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국가는 장애인이 정규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³⁹⁸

북한의 장애인보호법(2013) 제32조에서는 “장애정도와 성별, 연령, 체질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동법 제34조에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노동보호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7조에서는 “노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다.”라고 노동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2018년 제출한 최초 이행보고서에서

398 UN CESCR, General Comment No. 5,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 20.

는 “장애자가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각종 작업장을 조직·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³⁹⁹ 2014년 제출한 제2차 UPR국가보고서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특수 직장을 별도로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애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노동 직장’과 ‘맹인직장’ 등 장애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인들이 배치되는 직장은 ‘경노동 직장’으로 불리며 평양시 사동구역, 함경북도 온성군·연사군, 양강도 혜산시 등지에서 목격되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경노동 직장에 배치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업무가 주어지며, 하루 6시간 노동을 하고 두부·국수·떡·못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는 거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익금을 납부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함경북도 회령시 남문동·성천동,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북도 박천군 등지에서 맹인공장을 목격했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맹인공장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공장 근처의 맹인아파트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했다고 한다. 맹인공장에서는 쌀자루를 해체하여 실로 만드는 작업, 못 제작 등의 일을 했다고 한다. 한편 장애인이 일반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시계수리 기술을 가진 장애인이 일반 직장이었던 시계수리소에서 근무한 사례가 수집되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일반 직장인 제철소의 검사와

399 UN Doc. CRPD/C/PRK/1 (2018), para. 169.

에서 일하며 제철소 내로 들어오는 재료나 물건을 검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5) 생활지원 및 사회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에서는 당사국이 장애인들을 위한 적절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5호에서 국가는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거나 고용의 기회를 박탈당한 장애인에 대하여 적절한 소득을 지원하고, 음식·주거·기타 물질적 요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보조제도 등의 지원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⁴⁰⁰

북한은 장애인보호법(2013) 제3조에서 장애자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북한 당국이 제출한 최초 이행보고서에서는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의식주와 같은 생활조건 일체를 제공하며, 인민의 생계 개선을 위한 당국의 모든 계획에 장애자 복지 문제를 반영하고 있고, 타인의 부양이 필요한 장애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⁰¹

북한 당국이 장애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7년 장애인 가정에 매달 생선을 공급해주었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농아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장애학생들에게 유엔에

400 UN CESCR, General Comment No. 5,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s. 28, 33.

401 UN Doc. CRPD/C/PRK/1(2018), paras. 173, 179.

서 지원한 동복, 식량, 학용품 등을 나누어주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을 장애인협회에서 나누어 주는데 적절하게 제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지원 물품이 주로 평양 거주 장애인에 한정되었다고 하며, 대체로 품질이 좋은 지원 물품을 협회의 관계자들이 빼돌려 판매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수집되었다.

(6) 문화·체육 생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당사국은 장애인의 창조적·예술적·지적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⁰²

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국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제출한 제2차 UPR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들이 예체능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국제 장애인의 날에 공연을 하고, 2012년에 개최된 패럴림픽에도 참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장애인협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들이 국제기구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1년경 창광원이라는 평양 최초의 수영장에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례가 수집되었다.

40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0.

(7) 영예군인 지원

북한은 장애인보호법(2013) 제7조에서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우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⁴⁰³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헌법⁴⁰⁴, 사회주의상업법⁴⁰⁵, 편의봉사법⁴⁰⁶, 교육법⁴⁰⁷, 어린이보육교양법⁴⁰⁸, 인민보건법⁴⁰⁹, 연로자보호법⁴¹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⁴¹¹ 등에서도 영예군인에 대한 우대와 우선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일반 장애인에 비해 영예군인인 장애인들은 당국의 지원이나 사회보장에서 우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장애인과 달리 영예군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등급에 따

403 영예군인이란, 전투나 군사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이라는 북한식 표현이다.(국가인권위원회,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2016. 191쪽).

404 「사회주의헌법(2019)」 제76조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05 「사회주의상업법(2021)」 제65조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는 혁명투쟁공로자, 영웅, 전쟁노병, 영예군인 등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훈을 세운 공로자에 대한 상업봉사활동을 적극 조직하고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406 「편의봉사법(2019)」 제37조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웅, 전쟁노병, 영예군인, 교원, 과학자 같은 사회적으로 우대하여야 할 대상들에게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407 「교육법(2015)」 제18조 국가는 영예군인, 무의무탁학생에게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보장한다.

408 「어린이보육교양법(2013)」 제19조 국가는 혁명열사, 애국열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돌린다.

409 「인민보건법(2012)」 제12조 국가는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사회주의애국화생자가족, 영웅, 전쟁노병,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410 「연로자보호법(2012)」 제5조 국가는 혁명투사와 혁명투쟁공로자, 영웅, 전쟁노병, 영예군인, 공로자 같은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연로자를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도록 한다.

411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11조 사회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의 형태로 주는 보조금
2. 영웅,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 사회보장자에게 주는 우대금(보약값 포함), 연금, 보조금
3.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사회주의애국화생자가족에게 주는 보조금.

라 지원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한다. 영예군인은 특류·1급·2급·3급으로 구분되며 특류는 특수부대나 특수업무 수행자인 경우, 부상당한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으로 나뉜다고 한다. 특류 영예군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정기배급·약품·생필품·난방 등을 지원받으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도당에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영예군인의 가족으로서 당국이나 후원단체로부터 식량·약품·생필품·난방 등을 부족함 없이 지원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특류와 1급 영예군인은 집을 주고 정기적으로 배급을 줍니다. 약품관리소에서 약품을 명절마다 공급해주고, 명절마다 상업관리소에서 비누, 칫솔, 콩나물 1kg, 과자 한봉지, 술 한병, 양말, 세수수건 등을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당에 신소하여 제기할 수 있고, 후원단체가 있어서 겨울에 화목이 필요하면 그곳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1년에 40일씩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도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입원시켜서 해주는데 이틀에 1번 토끼곰(토끼고기 곰탕)도 해주고, 혈장도 맞고, 종합적으로 검진을 하여 치료를 해줍니다.”

영예군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영예군인에게 매월 1,700원의 연금이 지급되었고, 태양절마다 ‘보약대’ 명목으로 5,000원이 추가지급 되었는데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반면 군복무 중 생긴 부상으로 인해 손발을 모두 절단하고 장애인이 되었지만 의족 이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1. 정치범수용소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 모든 사람은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데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⁴¹²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중대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 중 처형되지 않는 경우 정치범수용소로 실종된다고 밝히고 있다.⁴¹³

이에 대해 북한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이른바 정치범이라거나 정치범수용소란 표현 자체가 없으며, 있다면 반국가 범죄자와 형법 집행을 위한 교화소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⁴¹⁴

북한에는 정치범을 따로 수용하는 곳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북한주민들은 이를 ‘관리소’라고 부른다. 정치범수용소 수용자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은 소위 간첩행위, 반역행위 등을 한 경우와 그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탈북 전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수용소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
⁴¹²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이하생략)

⁴¹³ UN Doc. A/HRC/25/CRP.1 (2014), para. 729.

⁴¹⁴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UPR 심사(19.5.9) 시 북한중앙재판소 참사 발언 요지.

곳에서 생활한 경우는 드물어서 2017년 이후 발생한 사례는 매우 적다.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진술한 경우 중 정치범으로 수용된 사람은 없었고, 정치범의 가족으로 수용된 경우와 정치범수용소에서 근무하는 기관원의 가족인 경우가 있었다.

가. 정치범수용소 현황

(1) 수용소 운영

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인데, 수집된 시설의 위치는 함경북도 4곳, 함경남도 3곳, 평안남도 2곳, 자강도 2곳이었다. 이중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은 5곳으로 평안남도 2곳, 함경북도 2곳, 함경남도 1곳이다.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범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14호·18호, 함경북도 화성군 16호·청진시 25호, 함경남도 요덕군 15호 등이다. 수용소의 규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곳은 14호, 18호, 15호였다. 18호는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하고 있고, 대동강 지류를 경계로 개천시의 14호와 마주보고 있었다. 2006년 개천시 자양리 일대로 이주하면서 상당수의 수용민이 사면되었고, 일부 인원만 새로운 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4호(평안남도 개천시)는 2014년에 장성택과 관련된 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구)18호 지역까지 확장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⁴¹⁵ 즉 14호 관리소

.....
⁴¹⁵ UN Doc. A/HRC/25/CRP.1 (2014), para. 739: 진술에서는 “18호 정치범수용소는 2006년 평안남도

는 시설 및 수용인원이 확대되었고, 18호는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14호의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구역은 수용규모를 축소 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폐쇄된 수용소는 함경북도 온성군 12호·회령시 22호, 함경남도 단천시 21호·덕성군 17호, 자강도 화평군 농출리관리소 등 5개 시설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 수용소의 폐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12호는 1985년경, 17호는 1980년대 중반, 농출리관리소는 1993년경, 21호는 2001년경, 22호는 2012년경 폐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쇄된 사유에 대해 김정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근무하던 기관원이 탈북하여 수용소에 대해 국제사회에 증언하였다는 등의 진술이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사면된 수용민은 폐쇄 후에도 기존 거주지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을 폐쇄된 수용소로 이주시킨 경우도 있었다. 12호는 폐쇄 후 인근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나 수용소 기관원으로 일했던 사람 등을 이주시켰다는 진술이 있어, 기존 수용민은 다른 시설로 이송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2호는 2012년경 폐쇄 후 이곳에 함경북도 화성군의 농장원들을 이주시켰으며, 수용자는 화성군의 16호 관리소로 이송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21호는 폐쇄된 후에도 그곳에 거주하던 사면된 수용자가 살거나, 일반주민이 이주하여 살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강도 동신군의 24호도 폐쇄된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된 진술은 없었다.

.....

북창의 시설이 폐쇄되기 전까지 점차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18호 정치범수용소가 있던 자리에는 단기 노동구금시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주민은 사면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었다. 수용소에 수용된 후 사면되지 않은 사람은 ‘이주민’이라고 하고, 사면된 이주민은 ‘해제민’이라고 한다. 해제민은 수용소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고, 공민증이 발급되는 등 일반주민과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공민증의 주소지에 ‘관리소’라는 명칭이 기재되는 등 일반주민과 구분되고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 수용소에서 근무하는 기관원을 ‘관리성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 관리소 내 ‘일반민’에 해당한다. 일부 수용소의 관리성원과 가족은 해제민과의 구분을 위해 자신들을 ‘대내’라고 불렀다는 진술도 있었다. 정치범수용소의 구역에 대한 명칭도 따로 있었는데,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수용소 내에서도 기관원 이외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을 말한다. 수용소의 일부구역을 완전통제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용소 전체가 완전통제구역인 경우도 있었다. 혁명화구역은 수용소 내에 존재하는 혁명화 처벌 이행장소를 말한다. ‘혁명화’는 혁명적 의식을 고취하는 징벌 전반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혁명화처벌 기간은 1년~3년까지라고 하며, 처벌 결정은 국가보위성에서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운영 중인 수용소에 수용되는 이주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14호는 정치범 본인만을 수용하며, 완전통제구역이라는 공통된 진술이 있었다. 15호는 현재 완전통제구역만 남았을 것으로 보이며, 가족까지 수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 16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지만, 22호가 폐쇄되면서 이주민을 16호로 수용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22호는 가족까지 수용되었다

는 진술로 보아 16호도 가족까지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18호는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완전통제구역은 가족까지 수용되고, ‘혁명화구역’은 처벌대상자만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25호는 정치범 본인만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용소는 시설의 특성상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수용민의 도주가 쉽지 않은 깊은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2호가 해제된 이후인 1987년 가을같이 농촌동원에 동원되어 방문한 경우가 있었는데,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노동자구에서 20km가량 깊은 산골로 들어가야 했고, 산도 높아 아주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21호가 해제된 2003년경 산에서 약초를 채취하다가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위치한 곳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였다. 깊은 산악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탄광·광산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함경북도 온성군의 12호는 탄광지역이고, 평안남도 북창군의 (구)18호는 석탄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탄광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함경남도 단천시 21호는 검덕광산이 인근이며, 자강도 동신군 24호도 금광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수용소에서 노동력을 공급하였다고 한다.

수용소는 마을 형태와 교화소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을형태는 14·15·16·18호라는 진술이 있었다. 마을 형태의 수용소에서는 가족을 동반 수용하는 곳으로 거주지, 농장이나 공장 등 일터, 병원과 학교, 노동교양대 등 일반민 거주 지역에 설치된 시설이 있었다. 교화소 형태의 수용소는 25호로 수용소 안에는 숙소와 작업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감자 관리를 교화소와 유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범수용소는 1970년대를 전후로 시설의 수와 규모가 확대되었고, 가족까지 수용하게 되면서 마을형태의 모습이 된 것으로 보인다. 평안남도 북창군의 (구)18호는 정치범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 이후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동일한 이유로 함경북도 온성군 12호와 회령시 22호, 함경남도 덕성군 17호 등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함경남도 요덕군 15호와 덕성군 17호는 1970년대 중반 대규모의 주민이 수용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함흥시 등에서 수백 명의 가족단위 주민들이 한꺼번에 15호에 수용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17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이주민이 수용되었다가, 1980년대 초중반 17호의 폐쇄를 앞두고 18호로 대거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기관은 국가보위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는 사회안전성이 운영하기도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현재 운영중인 18호는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하고 있을 당시 주소가 북창군 봉창리 사회안전부 2918군부대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일반 시군급에 해당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폐쇄된 21호도 사회안전성 산하 교화국에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며, 15호와 17호도 사회안전성에서 관할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2) 수용소의 규모

정치범수용소는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수용소 전체의 넓이도 매우 넓었는데, 여러 개의 ‘리’나 ‘노동자구’를 합쳐 놓은 크기였다고 한다. 15호의 혁명화구역은 함

경남도 요덕군 입석리라는 한 개의 리 전체가 해당되었다는 진술과 혁명화구역 초입부터 주요 생활시설이 있는 곳까지 도보로 30분 정도 소요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완전통제구역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다. 16호는 함경북도 화성군부터 다른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구)18호는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노동자구와 봉창리를 합쳐서 조성하였다가 1995년경 득장노동자구는 일반지역으로 개방하고, 봉창리만 수용소로 운영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봉창리에만 한정되어 있을 때도 협동농장의 작업반이 13개였고, 각 작업반에서 담당하는 토지는 일반 농장보다 넓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현)18호는 2006년 평안남도 개천시로 이전하면서 이주민을 대폭 축소하였다는데, 개천시 자양리 일대 수용소 구역은 자전거로 40분 정도의 거리였다는 진술이 있어 이전 북창군에서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25호는 다른 수용소와 운영형태가 달라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수용소 안쪽에는 건물 몇 개동과 운동장이 있었다고 한다. 수용소 인근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수용소에서 근무하는 기관원 등의 주택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14호의 규모 등에 대한 진술은 수집되지 않았다.

폐쇄된 수용소들의 규모에 대해 17호는 함경남도 덕성군의 7개 이상의 ‘리’가 해당되었다고 하며, 광역시 한 개 ‘구’ 정도의 크기만큼 넓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수용소의 관리동과 이주민의 거주 지역은 4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21호 수용소는 수용소 마을 구역에서 작업장인 광산구역까지 걸어서 2시간 이상 걸리며, 함경북도 길주군, 양강도 운흥군, 함경남도 허천군 등 3개 군을 경계로

하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노동자구 1개보다 더 큰 크기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입구에서 기관원 사택이 있는 곳까지 7개의 초소가 있었고,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먼 거리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함경남도 단천시의 대흥구 대흥동을 중심으로 북서쪽으로는 양천동과 북대천 상류지역, 동남쪽으로는 대신동에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보인다. 22호는 기관원의 자녀와 이주민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달랐는데, 두 학교의 거리가 차량으로 20분 정도였다고 한다. 최소한 4개 이상의 ‘리’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도 있었다.

“1984년 관리소 내부에 있는 시누이의 집에서 1달 정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검덕광산의 초대소에서 차를 갈아타고 3시간을 가니 1호 초소가 나왔습니다. 1호 초소에서 검열을 두 시간 받고, 30분을 차타고 들어가니 2호 초소가 나왔고, 또 30분을 들어가니 3호 초소가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초소 7개를 지나서 시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검덕광산의 초대소에서부터 시누이 집까지 총 7시간이 걸렸습니다. 21호 관리소의 소속 또는 관리 주체는 사회안전성 산하 교화국이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의 수용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15호, 18호, 22호 정도이고, 비교적 상세하게 추정할 수 있는 수용소는 18호였다. (구)18호는 2006년 이전하기 직전 6,000세대⁴¹⁶정도가 거주하였고, 주민 수는 약 3만 명 정도라고 한다. 북창군에서 개천시로 이전할 때에는 이주민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뤄졌고 평안남도 개천시 자양리 일대의 (현)18호는 이전 당시 이주민 200세대와 기관원 등 일반민(해제민 포함) 600세대 정도만 남았다

.....
⁴¹⁶ 진술에 의하면 이주민 2,500-3,000세대, 해제민 1,000세대, 기관원 등 일반민 2,000세대 정도였다고 한다.

고 한다. 이전한 이후에도 완전통제구역 내 이주민에 대한 사면이 지속되어 2015년 이후에는 100세대 미만으로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술이 있었다.

22호가 폐쇄되기 전 전체 세대수나 인구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으나, 기관원 240세대가 거주하고, 8개의 중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1개 학교에 240세대의 기관원 자녀가 다녔다고 한다.

15호는 2000년대 혁명화 구역의 수용인원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 300명 정도가 수감되었다가 입소자를 줄이는 형식으로 2000년대 중반 무렵 절반 정도인 150명가량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나. 수용 사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경우는 ‘정치범’ 당사자와 그 가족인데, 관련된 진술은 1950년대 말에 수용된 사례부터 최근까지 다양하게 수집되었다. ‘정치범’의 수용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성분 문제, ‘말반동’ 등 김일성·김정일 권위 훼손과 관련된 문제, 간첩행위, 종교활동, 북한 내 권력다툼이나 기관원의 횡령 등 비위와 관련된 문제,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거나 본인의 한국행 시도, 인신매매나 한국거주자 통화 등 한국 관련 문제 등이었다.

성분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는 일제강점시기 자산계급이었다는 이유, 전쟁 시기 국군을 조력하였다는 이유 등이 있었다. 기관원

의 가족으로 수용소에서 1980년대 초까지 거주한 경험자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부모나 조부모의 토대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조부모의 토대로 인해 수용되었던 경우는 부모나 자신이 왜 수용되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지 일제강점기 및 전쟁시기의 일 때문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말반동이나 김일성·김정일 등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수용 사유가 되기도 하였는데,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중앙방송의 보도가 시끄럽다며 스피커를 뜯어 처벌받은 사례, 3대 세습에 대해 비판하며 지도자는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여 처벌받은 사례, 술자리에서 김일성 정권에 대해 비난하거나 김일성·김정일 정치는 인민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처벌된 사례, 초상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처벌된 사례, 김일성 초상화에 낙서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처벌된 사례, 복송된 재일교포의 가족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 등이었다. 말반동 등에 대한 처벌로 정치범수용소 수용된 경우는 주로 1980년대 전후이지만, 2010년 이후에도 관련된 사례가 수집되었다.

간첩행위로 처벌받아 수용소에 수용된 경우도 있었는데,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면서 중국전화기를 사용하고 한국 사람과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용되거나, 북한의 신문과 잡지 등을 중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국경지역에서 중국을 오가며 한국 사람에게 산삼을 팔았다는 이유로 수용된 경우와 간첩과의 연계를 수용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군관이 한국에 북한의 문건을 넘겨 처벌되거나 남북의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하면서 국정원의 스파이로 일하였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종교활동을 하여 수용된 경우로는 탈북 후 중국체류 중 북한이 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용되거나 북한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웃을 상대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이유, 종교 활동과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 등이 있었다.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탈북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탈북시도 또는 이와 관련된 이유로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북한에서 체포되어 수용되었다는 사례와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이 한국행 시도로 처리되어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탈북 및 송금브로커 일을 하다가 단속되어 수용되거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탈북시키려 하다가 체포되어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주요기관에 근무하던 중 횡령 등 비위로 인해 수용되기도 하였는데, 김일성 별장 건설 중 건설자재를 집으로 가져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와 당자금 횡령과 김정은 방침과제를 허위보고했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가 있었다. 주요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수용되었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심화조 사건’에 의해 정치범으로 지목되어 수용되거나 ‘프룬제 군사아카데미 사건’으로 수용소에 수용된 사례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

혁명화구역에 수용되는 혁명화 대상자는 보위원, 안전원, 군관 등 기관원 간부가 대부분이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당중앙위원회 근무자, 중앙급 체육단 소속 의사, 안전성의 고위간부 등이 수용된 경우였다.

정치범수용소에는 정치범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아버지가 일제강점기 경찰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가족이 1970년대 말 수용된 사례와 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아버지 때문에 수용된 사례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자산계급이었으며 한국에서 군인·경찰 등으로 근무하는 조부의 형제들로 인해 가족이 수용된 사례, 전쟁 시기 국군을 조력한 조부때문에 수용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말반동으로 처벌받은 정치범의 가족이 함께 수용된 사례와 탈북한 가족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밝혀져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1996~7년 있었던 ‘심화조 사건’으로 북창군의 (구)18호 관리소에 관련자의 가족 수백 세대가 수용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3년 장성택이 숙청된 이후 관련된 사람과 그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 2006년에 개방되어 일반민이 거주하고 있던 평안남도 북창군 (구)18호 지역을 다시 수용소로 지정하여 14호에 편입시켰다는 진술도 있었다.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정치범의 가족에 대해 ‘이중처벌’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하지만 사안의 경중, 정치범이 누구인지에 따라 직계혈족 및 방계혈족까지도 수용되는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치 상황 때문에 토대와 출신성분이 수용사유가 된 정치범의 수용절차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보위부 등에 의해 체포·실종된 후, 가족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음을 짐작하게 되고, 기관원을 통해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간첩혐의, 탈북이나 인신매매와 연관된 범죄가 이유인 일부 사례에서는 재판을 받은 후 수용되기도 하였다. 정치범의 가족은 재판을 받고 수용되는 경우가 없

었는데, 이는 최근까지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증언자에 따르면 수용되는 과정은 직장이나 학교 등에 찾아가 체포한 뒤, 기차로 수용소 인근까지 이송하였다고 하며, 당시 같이 이송된 주민이 수백 명에 달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반역행위로 수용된 사람은 화물차에 살림도구를 대강 실었으며, 어린 자녀도 함께 데리고 갔다는 진술도 있었다. 수용될 당시의 상황은 비슷한 진술이 많았는데, 정치범이 체포·실종된 후 ‘검은색 차량’과 기관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나머지 가족과 간단한 살림도구를 실어 데리고 간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2014년 보위부 보위원에게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이유는 남한 사람과 손전화로 통화를 하고 돈을 이관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어느 보위부에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외할머니가 사람을 통해 알아본 결과 어머니가 요덕관리소로 갔다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다. 수용자 처우

정치범수용소 내 수용자 처우를 알 수 있는 내부 생활에 대한 진술은 일부 수용소에서만 수집되었는데 수용 시설, 사면 여부 등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령 15호 내에서도 수용된 구역이 완전통제구역인지 혁명화구역인지에 따라 처우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18호는 이주민과 해제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25호는 교화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마을 형태로 운영되는 곳과 차이가 있었다.

(1) 처형과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이나 비밀처형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18호는 매년 1~2회 정도의 공개처형이 있었고, 대부분의 처형자들은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체포된 경우라고 하였다. 처형 대상자는 체포 후 봉창안전부에서 예심을 받고, 평양의 사회안전성에서 사람이 내려와 공개재판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21호에서도 1980년대 초 이주민 남녀가 수용소에서 금지된 자유연애를 하였다는 이유로 총살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처형을 집행한 기관원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수용소 내 비공개 처형에 대한 내용은 추측하는 진술만 있었다. 수용소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저녁시간대에 총성이 울리면 수용민들은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구)18호에서 처형된 시신은 수용소 내의 골짜기 등에서 처리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북창군 봉창리 18호 관리소 내 대동강변에서 공개처형을 4건 목격하였습니다. 1년에 1~2건 정도 있었습니다. 주로 남성 1~2명을 처별하였고 죄명은 대부분 도주였습니다. 공개처형의 집행기관은 18호 관리소를 관리하는 봉창보안서였습니다. 3건은 총살이었고 1건은 교수형이었습니다. 총살은 보안서 경비대원 3명이 죄수 한명당 3발씩 9발을 쏘았고 교수형은 죄수를 트럭 짐칸에 죄수를 실어 놓고 목을 매단 다음 트럭이 출발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군중(수용민)은 평균 2~3천명이 동원되었는데 기업소·농장·학교 단위로 동원됩니다. 시신을 산속에 묻는다고 들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의 주민인 이주민과 해제민은 광산에 배치되어 강

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18호 수용소의 완전통제구역내 이주민은 모두 탄광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쇄된 수용소의 대부분은 광산지역으로 이주민은 대개 광산에 배치되었다고 하였다. (구)18호에서도 이주민과 해제민의 90% 이상이 중학교 졸업 후 탄광에 배치되었다고 하였다. 탄광에 배치된 사람 중 갱 안에서 굴파는 일을 하는 ‘굴진공’은 이주민이 맡았고, 발파를 하거나 갱이 아닌 지상에서의 업무는 해제민이 되어야 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탄광은 3교대로 운영되었고, 갱 안에 들어간 노동자는 10시간 가까이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외 남성은 벌목, 여성은 누에키우기 등의 일을 하였다고 한다. 농장에 배치된 이주민은 평농장원만 가능하였고, 해제민은 분조장이나 탈곡장의 경비 등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혁명화구역에서는 현장 작업은 주로 남성수용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건설현장 작업, 농사짓기 등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에게는 매일 작업할당량이 있었으며, 작업강도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탄광의 갱 안에서 하는 일에 배치되었습니다. 오빠는 14살에 광산에 배치돼서 일하다가 광산 합숙생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오빠는 광산에서 굴진공을 하다가 해제되어서 발파공을 했고, 언니도 채탄공을 하다가 전차운전공을 했습니다. 탄광일은 3교대인데 아침 8시에 모여서 입갱하고, 10시간 이상 갱에 있고, 식사는 중간에 알아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2) 주거 및 생활환경

수용소 내 이주민의 주택은 단층 건물에 2~4세대 정도 거주하는

형태로 이를 ‘하모니카집’이라고 불렀다. 하모니카 집은 한 칸이 20~30제곱미터 크기로 방 2개와 부엌이 있는 정도로 비좁았다고 한다. 또한 이주민의 거주 주택은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흙을 덧발라 만든 집으로 비만 오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980년대 초 21호의 이주민 거주 주택은 땅을 어느 정도 판 상태에서 나무와 짚, 흙 등을 이용하여 만든 움막집의 형태였다고 한다. 출입구가 좁아 허리를 많이 숙인 상태로 드나들어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수용소 내에서 주거 환경이 나은 지역이나 신축한 주택으로 이사하길 원할 때에는 ‘사업’을 해야 했다는데, 인맥을 이용하거나 뇌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수용소에는 ‘건설 직장’을 두고 수용소 내 건물 유지보수는 물론 주택 등을 신축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가족의 동거가 가능하더라도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일하는 시간을 달리한다는 진술과 남녀가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모범수에 대한 포상의 형태인 ‘표창결혼’만 가능하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지만 수용소 내에서 결혼도 가능하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이주민은 이주민과 해제민은 해제민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주민과 해제민이 결혼하면 결혼등록은 가능하지만, 이주민과 결혼한 해제민은 다시 이주민으로 된다고 한다. 출산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18호 수용소에는 관리소 안에서 태어난 주민이 많았다는 진술과 시아버지의 토대 때문에 수용된 부부가 수용소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1980년대 초 17호가 폐쇄되기 전 한달에 감자, 명태식해, 옥수수, 옥쌀(옥수수 가루를 익혀서 만든 것), 국수 등을 배급받아서 3끼를 다 먹었다고 하며, 아사자는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00년대

초 15호의 혁명화구역에서 수용자는 일 년에 한두 번 물엿, 매 끼니마다 콩기름, 명절에는 돼지고기와 계란을 약간 지급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6~7명 정도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병원에는 환자에게 식사로 쌀·강냉이(7:3)밥, 콩기름을 넣은 나물절임, 시래깃국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구)18호에서는 1989년까지 한 달에 쌀, 옥수수국수, 옥쌀 등을 배급받아 3끼를 다 먹었으며, 1989년 이후 북한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배급량이 줄었고,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는 배급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지만 2006년 북창군에 소재하고 있을 때까지 탄광노동자는 일반 주민과 같은 양이 나왔고, 경제난이었을 당시에 한 달에 5일분 정도는 지급되어 아예 나오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배급은 고난의 행군 때는 한 달에 5일분의 양을 탈 정도로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2000년에는 1달에 보름 정도의 식량이 나와 식량 사정은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배급은 입쌀, 강냉이, 국수, 밀 등을 받았습니다. 고기, 생선 등은 배급받지 못했는데,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명절 때 돼지고기 등도 배급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3) 보건의료와 교육

대부분의 수용소에는 병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병원에서는 이주민과 기관원에 대한 진료에서 차별을 하고 있었으며, 기관원과 그 가족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수용소(15호 혁명화구역)는 2005년을 전후로 군

의 1명과 수용자인 의사 1명, 보조자(간호원) 1명이 있었을 뿐이었으며, 간단한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약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의약품은 매달 한 번씩 공급되었는데, 공급되는 약 중에는 유엔에서 지원한 약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약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소독약을 10% 소금물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완전통제구역 내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링거(포도당, 증류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한다. 결핵환자는 시설내 격리시설에 격리하였지만, 투약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반면, 2019년경 의약품 공급도 비교적 잘되어 약이 없어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기관원, 이주민, 해제민이 병원을 공동으로 이용하였고 차별도 없었다고 하였다.

“병원은 매일 경비원들이 점심이 끝나면, 각 중대와 외래소에서 아픈 혁명화생들을 데리고 병원에 옵니다. 영양실조로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특히 설사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테라미짚’이라는 약이 효과가 좋았는데 그 양이 적었습니다. 이 외에는 약초 등으로 만든 ‘동약’을 투입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마이싱, 페니실린 등 항생제가 한 달에 20인분 분량만 공급되었습니다. 마취약이 거의 공급되지 않아 마취도 없이 칼로 찢어서 고름을 빼고 소금물에 담가두었던 거지로 소독했습니다. 소독약도 공급되지 않아 10% 소금물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마을 형태 수용소 내부에는 대부분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15호는 2곳, (구)18호는 4~5곳, (현)18호는 1곳, 22호는 8곳, 21호는 4곳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이주민의 자녀와 기관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달랐으며, 교육내용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의 자녀는 학교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이주민 중학교 학생에 대한 노력동원이 많이 이뤄지기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반면 기관원 자녀와 해제민 자녀는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사회적 차별 때문에 기관원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수용소 내 학교의 교육내용은 대부분 동일하였지만, 이주민은 외부로 나가는 야영과 견학에서 제외되었고, 실탄 자격연습을 해야 하는 붉은청년근위대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주민과 달리 해제민은 실력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하며, 수용소는 시군단위와 동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군단위 일반지역에 배당되는 대학추천인원과 동일한 인원을 할당받는다는 진술도 있었다.

2.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자유권규약에서 가정(family)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⁴¹⁷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9호에서는 가족이 ‘함께 살 가능성’에 대해 국가는 정치, 경제적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 국내 차원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가족의 화합이나 재결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¹⁸ 또한 자유권규약 제26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65조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을 3대 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국군포로나 이산가족과 같은 소위 남한 출신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복잡한계층에 해당되며,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417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3(1).

418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19, Article 23: The family, para. 1.

알려져 있다.

가. 국군포로

우리 국군포로송환법 제2조에서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일컫는다. 한국전쟁에서 교전했던 유엔군과 공산군은 정전협정 체결을 전후해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교환했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약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실종된 국군의 상당수는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후 현재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귀환했고,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2016년 말 기준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¹⁹

북한에서 국군포로를 목격하거나 이들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들은 경우는 주로 그들의 직계가족, 이웃주민, 직장동료 등이다. 조사대상자 중 국군포로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목격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군포로가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지역은

419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2 통일문제 이해』, 94쪽.

함경남·북도, 양강도, 황해남도 등이었는데, 함경북도에서 확인된 지역은 무산·온성·새별·은덕·부령군과 회령시로 주로 산간과 농촌의 탄광·광산과 협동농장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함경남도는 단천시 검덕노동자구로 파악되었으며, 검덕광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었다. 양강도는 삼수군 등으로 모두 농촌지역이었다.

국군포로 다수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함경북도 새별·무산군과 함경남도 단천시는 수십 명이 무리배치되어 같은 기업소에서 일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들이 소속되어 있던 직장은 새별군 고건원구 탄광, 무산군 무산탄광, 단천시 검덕광산 등 탄광과 광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었다. 이외의 함경북도 회령시, 부령군 등의 탄광과 온성군 등의 협동농장, 양강도의 협동농장, 단천시의 검덕광산의 과수농장 등 국군포로들이 소속된 직장은 일이 힘들다고 알려져 주민들이 배치받는 것을 기피하는 직장이었다. 탄광이나 광산에 배치된 후에도 ‘굴진공’이나 ‘채탄공’처럼 막장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해야 하는 기피업무를 맡아야 했던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국군포로를 ‘43호’⁴²⁰ 대상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까지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시는 남한 출신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특히 국군포로는 탈북할 가능성 등으로 감시가 더욱 심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군포로가 여행·이동을 위해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주지 담당보위원 등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1990년대 중순 이후 2000년대 즈음까지 한국의 국군포로 가족이 이들을 탈북시키는 일

420 진술에 따르면 ‘43호’는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북한에서 지칭하는 용어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북한당국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분류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보인다.

이 많았던 시기에 감시가 더욱 심해졌다는 진술도 있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군포로인데,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탄광에 배치받은 이유가 포로병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경북도 새별군(고진원구)은 포로병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43호 관리자들이라고 합니다. 외조부의 자녀들은 입당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1990년대~2000년대에 남한의 포로 가족들이 포로병을 탈북시켜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이 많았을 때는 더욱 보위부의 감시가 많았습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은 상급학교 진학, 직장 배치, 승진, 입당, 군입대 등 모든 면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포로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하였지만, 대학 입학에 필요한 추천을 받지 못하여 진학이 무산되었는데, 아버지의 출신 때문이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직장배치에서도 차별이 있었다는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국군포로의 자녀는 아버지의 직업을 대물림받는 경우가 많아 탄광이나 농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하였다. 군입대 또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입당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군포로의 자녀가 노동당 입당을 위해 스스로 농장원이 되는 ‘농촌 자원진출’을 하였지만, 입당하지 못하였다는 진술과 함께 국군포로는 노동당에 입당하거나 당에서 일을 하는 당일꾼은 되지 못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만,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군입대자가 줄어들어 입대에 대한 성분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국군포로의 자녀들도 입대가 가능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 납북자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서 한국전쟁 중 납북자(전시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전후납북자)가 포함된다.⁴²¹ 전시납북자의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신고 접수된 납북피해 사건 5,505건에 대해 심사하여 4,777명을 전시납북자로 결정하였다. 전후납북자는 총 3,835명이며, 그중 3,319명이 귀환하였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송환했으며, 9명은 장기간 억류 중 탈북하여 귀환했다. 2022년 12월 말 현재 북한에 억류된 전후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²²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전쟁 중 동원 납북된 ‘의용군’을 전쟁초기부터 북한군 후퇴기 사이에 납북된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다. 전시동원 납북자는 북한의 전시동원계획에 따라 강제로 동원된 남한 주민을 말한다.⁴²³ 동원 납북된 대상은 의용군(인민군 부대의 보충인력), 노무자(노무 동원에 동원되어 전선이나 후방 지역에

42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하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422 통일부, 『2022 통일백서』, 133쪽.

423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2017.

서 노무활동을 하던 노무자), 의료인력(동원된 의사, 간호사, 간호학생 등), 기능직 인력(동원된 기술직, 기능직), 노동자(‘서울시민 전출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이주된 사람) 등이다.⁴²⁴

전쟁당시 인민군 부대의 보충인력인 의용군으로서 참여했던 경우 남한출신, 차별의 대상, 한국 전쟁 참여 경험 등의 공통점 때문에 국군포로와의 구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재북시 아버지를 의용군 출신으로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입국 후 국군포로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 ‘의용군’의 자녀나 이들을 목격한 진술을 바탕으로 하면 납북자는 함경남·북도, 양강도, 평양시 등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종사했던 일도 탄광이나 광산의 노동자도 있었지만, 광산의 선전비서나 영예군인 공장의 노동자도 있었다. 납북자는 감시와 차별의 대상이었다고 하며, 국군포로들과 마찬가지로 탄광·광산 지역에 무리배치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당위원회의 선전비서가 되거나, 노동당으로부터 ‘통일이 되면 고향(한국)의 위원장이 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수여받고, 명절마다 특별선물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저희 이웃에 사시던 노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의용군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여명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고향에 고향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었습니다. 행사 때마다 이 가족은 감시의 대상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머니가 보위부 정보원을 하면서 보위부 사무실에 가게 되면 행사 때마다 감시자 명단에 항상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딸만 3명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424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2017, 116-117쪽.

전후납북자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납북자 중에는 공중 납치된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휴가 중이던 청소년과 시민, 군인, 해안경비대원, 해외에서 납치된 국민 등이 있으나, 대다수는 동해안 및 서해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나포된 어업종사자들이었다. 납북자들은 피랍 및 강제역류 과정에서 자유의 박탈, 가족결합권의 침해, 차별과 감시 등의 인권침해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납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전후납북자에 대한 진술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이 아니고, 신상도 특정되지 않아 상세한 인권침해내용 파악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수집된 진술 중 전후납북자에 대한 목격 사례가 있었는데, 조업활동을 하다가 납북된 어부가 평안남도 양덕군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진술이었다. 진술자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그 어부를 우연히 목격하고, 납북자라는 것을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경우였다.

다. 이산가족

우리의 납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납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 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총 133,677명이

다. 그중 91,777명이 사망하여 현재 생존자는 41,900명이며, 생존자의 85.5%는 70세 이상의 고령이다.⁴²⁵ 이산의 계기 또는 사유는 다양하다. 해방 이후 38도선의 확정에 따른 남북 왕래 차단,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월남, 한국전쟁 기간에 월남·월북 및 납치, 의용군 입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귀환(미송환), 북한 이탈 등이 그것이다.

(1) 월남자 가족

월남자는 한국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여하였다가 행방불명 또는 전사자로 처리되었다가 한국 또는 제3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한국에서 피신이나 임시거주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이다. 북한 당국은 월남자 가족을 복잡한군증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월남자 가족의 대학진학, 입대 등 사회적 지위 획득 과정에서의 차별이 일괄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던 월남자의 가족은 입당은 가능하였지만, ‘당일꾼’, ‘법일꾼(안전원, 보위원)’ 등이 될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군제대 후 입당을 한 상태에서 보위원이 되기 위해 ‘보위대학’ 입학 추천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인민군으로 참전한 큰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지 않아 추천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동교양대의 대장으로 배치되어 ‘행정일꾼’으로 일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다.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

.....

⁴²⁵ 출처 :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시스템(www.union.unikorea.go.kr)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참고.

하였다가 전사 처리되었던 삼촌이 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군관학교를 다니다가 제대되어 ‘당일꾼’이 되지 못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일반 주민으로 전쟁 시 월남한 사람의 가족은 입당이나 당일꾼, 법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큰아버지가 월남하였다는 이유로 자녀가 군대에 가도 입당하지 못하였다는 사례가 있었고, 같은 시기 할아버지가 월남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당이 불가능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대학 입학이나 입대 등이 가능하였고, 행정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월남자 가족 중 이산가족 상봉에 선발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재외거주 가족이 ‘고향방문’을 통해 재북 가족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진술도 있었다.

“할아버지가 6.25전쟁 때 월남자입니다. 2000년경 우연히 부대에서 관리하는 제 문건을 보았습니다. 문건에는 할아버지 형제가 월남하였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복무 중에 김책공대에 추천을 받았고, 평양 있는 대학에 추천을 받고 입학시험을 보았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두 번 모두 탈락했습니다.”

(2) 월북자와 그 가족

월북자와 가족도 특정 대학 입학, ‘당일꾼’, 군관련 직장에서 근무 등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월북자의 가족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한 후에 차별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월북자는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 전쟁 중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 해방 전

중국에서 북한에 간 사람으로 한국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 경우, 한국전쟁 이후 자진하여 월북한 경우이다. 부모님이 한국전쟁 당시 월북하였다는 이유로 자녀가 김일성종합대학 추천을 받고 시험을 치러 합격하였지만 입학이 거부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지방의 농업대학 졸업 후 이산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일꾼’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만난 사례가 있었는데, 월북자가 한국의 형제를 상봉한 경우와 월북자의 자녀가 한국의 친척을 만난 경우였다. 그런데 한국 가족 상봉으로 전에는 없었던 감시와 차별이 있어 남쪽의 친척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가 월북한 이후 소식을 모르던 한국의 고모를 상봉행사를 통해 만나고 난 뒤, 군부대 전기발전소에서 해임되었다는 진술과 시어머니가 상봉행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과 만나고 난 뒤, 자녀들까지 거주지 보위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금강산호텔에서 남한의 고모를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보안원이 찾아왔을 때 남한에 고모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아버지는 후퇴하다가 북쪽으로 오게 되었고 당시 고모는 이미 남쪽으로 시집을 간 상태라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부터 담당보안원들이 수시로 저희 집에 찾아와 못살게 굴고, 인민반에서도 감시를 하였습니다. 저의 오빠는 군 전기사업소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산가족을 찾은 지 열흘 가량 후 해고되었습니다.”

해방 전 중국에서 거주하던 한국사람이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한 출신으로 연변에 거주하다가 1966년 북한으로 간 가족은 말반동으로 조사를 받았고, 정치대학,

사범대, 항공·해운 계통의 대학 입학은 불가하다고 알게 되었으며, 군입대는 가능하였지만 어렵고 힘든 곳에 배치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전화 02-2135-7059
팩스 02-2135-7063

〈비매품〉

